

2024년부러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

2024년부러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

본 책의 내용은 2023년 12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부처별·시기별 주요 제도

핵심사항 삽화

<https://whatsnew.moef.go.kr>

CONTENTS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01 금융·재정·조세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5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6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기획재정부) 7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8
-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기획재정부) 9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10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기획재정부) 11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12
-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를 한시 상향 (기획재정부) 13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기획재정부) 14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기획재정부) 15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16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기획재정부) 17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18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19
-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기획재정부) 20
-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21
- 법인세 최저세율 인화에 따른 배당가산율 조정 (기획재정부) 22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기획재정부) 23
-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24
-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기획재정부) 25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도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기획재정부) 26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기획재정부) 27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기획재정부) 28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기획재정부) 29
-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기획재정부) 30
- 맥주·탁주 총량제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 (기획재정부) 31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획재정부) 32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기획재정부) 33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34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 (기획재정부)	35
•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36
•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37
•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 (기획재정부)	38
•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 (기획재정부)	39
•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 (기획재정부)	40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 (기획재정부)	41
•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기획재정부)	42
•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금융위원회)	43
•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	44
•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금융위원회)	45
•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금융위원회)	46

02 교육·보육·가족

• 늘봄학교 본격 도입 (교육부)	53
•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교육부)	54
•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교육부)	55
•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교육부)	56
•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 조치 강화 (교육부)	57
• 대학과 산업체 연구기관 간 협동수업 신설 (교육부)	59
•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출범 (기획재정부)	60
•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61
•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62
•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여성가족부)	63
•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여성가족부)	64
•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65
•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여성가족부)	66
• 가정폭력 보호시설(이주여성 포함)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 (여성가족부)	67
•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통합운영(온가족보듬사업) (여성가족부)	68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69
•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70
• 아이돌보미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 개편 (여성가족부)	71
•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여성가족부)	72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신규 실시 (여성가족부)	73

-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의무 위반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여성가족부) 74
- 해바라기센터 2개소 확충 및 영상증인신문 인력 배치 (여성가족부) 75
-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기반 강화 (여성가족부) 76
-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 (여성가족부) 77

03 보건·복지·고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 87
- 2024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 109 운영 (보건복지부) 88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영어반 인센티브' 시행
(보건복지부) 89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9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91
-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 92
-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보건복지부) 93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산정방식 개선 (보건복지부) 94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지원 (보건복지부) 95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보건복지부) 96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97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폐지 (보건복지부) 98
-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보건복지부) 99
-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100
-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 차수별 분리 징수 및 현실화 (기획재정부) 101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 102
-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부담 완화 (고용노동부) 103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고용노동부) 104
-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고용노동부) 105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고용노동부) 106
- 안전동행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07
-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고용노동부) 108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109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고용노동부) 110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111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변경 (고용노동부)	112
•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113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사상황 제출 의무 완화 (고용노동부)	114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고용노동부)	115
•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고용노동부)	116
•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고용노동부)	117
•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고용노동부)	118
•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119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120
•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고용노동부)	121
•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설 (고용노동부)	122
•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도입 (고용노동부)	123
•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고용노동부)	124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125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126
•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	127
•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편 (고용노동부)	128
•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동간격 적용 가능 (고용노동부)	129
•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고용노동부)	130
• 데크플레이트 등 거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고용노동부)	131
• 굴착면 붕괴 예방 기술기 기준 합리화 (고용노동부)	132
•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 (고용노동부)	133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개선 (고용노동부)	134
•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고용노동부)	135
•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136
•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137
• 선내 괴롭힘 방지 대책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	138
•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확대 (해양수산부)	139
• 세계 최초 한국 주도 식품규제기관장 협의회 '아프라스' 회의 한국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140
• 마약류 상담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본격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141
• 청소년 취약계층 등 마약류 예방교육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142
•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품목갱신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143
• 한미 공동 AI 활용 의료제품 분야 국제 심포지엄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144
• 수출 애로 FREE(Food Regulation Expert for Export)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145
•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146
• 수입식품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 기준 개정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147
• 백신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교육 본격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148

04 문화·체육·관광

-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연간 13만 원으로 인상 (문화체육관광부) 152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전면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153
- 여행업 등록기준 납입자본금으로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154
-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하여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금지 (문화체육관광부) 155
- 교류의 바다, 연결의 시작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해양수산부) 156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문화재청) 157

05 환경·기상

-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 (환경부) 166
-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환경부) 167
-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환경부) 168
-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 기준 절차 합리적 개선 (환경부) 169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환경부) 170
-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 (환경부) 171
-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시행 (환경부) 172
-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 (환경부) 173
-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 제도」 시행 (환경부) 174
-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환경부) 175
- 가스연소 굴뚝(플레이어스택)에 대한 발열량 기준 시행 (환경부) 176
- 수도시설 운영·관리인력 대상 교육 주기 단축 (환경부) 177
-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 확대 (환경부) 178
-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 의무화 (환경부) 179
- 「환경보건법」 위반 어린이용품의 '자발적 회수' 시행 (환경부) 180
- 청년대상 창업지원사업 '청년 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시행 (환경부) 181
- 국가 주도 도시침수 관리를 위한 「도시침수방지대책법」 시행 (환경부) 182
- 파충류 수입 검역 시행 (환경부) 183
-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 확대 (해양수산부) 184
-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방사능 모니터링 실시 (해양수산부) 185
- 여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186
- 기후변화 상황지도 시범서비스 (기상청) 187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육상특보구역 세분화 (기상청)	188
•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직접발송 제도 확대 (기상청)	189
• 눈의 무게를 고려한 상세 강설정보 제공 (기상청)	190
• 약한 바람에 대한 정보로 황사-미세먼지 예보 강화 (기상청)	191

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데이터분쟁조정 제도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6
• 연구실사고 인정 범위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7
• 통신비 부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8
• 수출입물품 세관검사 수수료 폐지 (기획재정부)	199
• 용도세율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200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기획재정부)	201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202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203
• 사업재편 지원범위에 디지털전환·탄소중립 유형 추가 (산업통상자원부)	204
• 「수소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205
•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 명확히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206
•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207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208
• 벤처기업법 상시화, 인재 유인책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209
• 중소기업 기술보호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중소벤처기업부)	210
• 중소·연안선사 지원제도 개편 및 확대 (해양수산부)	211
• 해양수산 신기술 제품·공사 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한 조달특례 지원 (해양수산부)	212
• 우수재활용 인증제품(GR) FTA 원산증명서 간편 발급 (관세청)	213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특허청)	214
•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특허청)	215
•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 (특허청)	216
• 심판청구서 직권보정제도 도입 (특허청)	217
• 심판참고인제도 도입 (특허청)	218

07 국토·교통

- GTX-A 개통 (국토교통부) 223
- 출산가구에 특별(우선)공급 도입 (국토교통부) 224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국토교통부) 225
-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도입 (국토교통부) 226
- 공동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리강화 (국토교통부) 227
-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 228
- 항공 및 위치서비스 분야에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 229
-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 (국토교통부) 230
-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 연관기업 부지매입비 등 대출이자 지원을 조정(상향) (국토교통부) 231
-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232
-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신규등록 일부 허용 (국토교통부) 233
- 도로점용허가 모바일 기반 서비스 시행 (국토교통부) 234
- K-드론 배송 상용화 표준모델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 235
- 리츠 자산운용 전문인력 보수교육 도입 (국토교통부) 237
-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국토교통부) 238
- 도심융합특구 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 239
-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 혜택 강화 (국토교통부) 240
- 주상복합건축사업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지하층, 복리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 (국토교통부) 241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242
- 대학·전문대 등 내부 도로의 교통안전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 243
- 경제활동 및 지방시대를 지원하는 도로 연결망 구축 (국토교통부) 244
- 택배·배달 생활물류 운송수단 드론·로봇까지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 245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국토교통부) 246
- 부산항 신항 원전자동화항만 신규 개장 (해양수산부) 247
- 국내 무역항에 항만종합서비스업 본격 도입 (해양수산부) 248
-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249
- 공공성을 강화한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추진 (해양수산부) 250
- 보호구역 실태조사 도입 (경찰청) 251
-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 신설 (경찰청) 252
-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경찰청) 253
- 레미콘, 중요 관공공사 현장에 '우선납품제' 도입 (조달청) 254
- 시설공사 적격심사 건설안전 평가 강화 (조달청) 255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08 농림·수산·식품

•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270
• 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 요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271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72
•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농촌 왕진버스)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73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74
•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75
•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76
•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277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278
•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279
•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80
•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281
•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82
•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283
• 축산 농장 전실 설치 시 건축 면적 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284
• 청년들에게 힘을 보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85
•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286
•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287
•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등 금지 (농림축산식품부)	288
•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89
•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라 발생한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기업의 손실에 대한 국가 보상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90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91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92
• 농촌관광 콘텐츠 발굴 및 판매채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93
•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94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	295
• 동물용의약품기 수출 확대 위한 「GMP 인증제도」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296
•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위한 방치된 농업기계 강제처리 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97
• 건전한 과수 묘목 공급 활성화 정책추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298
• 고위험 동물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99
•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300
• 농식품 융합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301
•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 실태조사, 노무관리, 인권보호 교육·상담 지원 등 농업인력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302
• 농작물재해보험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303
• 청년농업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304

- 청년 맞춤형 농업창업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305
-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펀드 신규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306
- 식품·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원가부담 완화 등 지속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307
- 푸드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센터 구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308
-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K-미식벨트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309
- 권위 있는 국제미식행사,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첫 한국 유치 (농림축산식품부) 310
- 곤충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311
-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통한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 (농림축산식품부) 312
-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313
- 국산 밀 품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준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314
- 말·공·가루쌀 관련 지원사업 통합·운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315
- 수확기 벼 매입자금지원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316
-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업용 배수장·저수지 설계기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317
-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요건 대폭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318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319
- 농산물도매시장 양파 출망 반입을 제한하고 기계·수작업망으로 유통방식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320
- 농산물분야 의무자조금의 운영관리 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321
- 인삼경작신고 의무화 및 신고기관 인삼 품목 조합(농협)으로 일원화 (농림축산식품부) 322
- 농식품바우처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323
- 어업경영자금 용자 한도 및 용자 비율 상향 (해양수산부) 324
-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 325
-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대상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 130만 원으로 인상 (해양수산부) 326
- 전체 여성어업인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해양수산부) 327
-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강화 (해양수산부) 328
- 실패장어안강망어업 무동력 선박 형태 바지 허용 (해양수산부) 329
- 우리동네 마트도 수산물 할인행사 참여 가능 (해양수산부) 330
- 어선 고속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대상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 (해양수산부) 331
- 양식장 임대 사업 실시 (해양수산부) 332
-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확대 (해양수산부) 333
- 먹는해양심층수 무라벨 제품 날개 판매 허용 (해양수산부) 334
-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ASTIS)에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신청 및 결과 확인 (농촌진흥청) 335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신고제도 시행 (산림청) 336
-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자격 완화 (산림청) 337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09 국방·병무

• 2024년 병 봉급 인상 (국방부)	344
•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국방부)	345
•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 (국방부)	346
•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국방부)	347
• 군 장병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 (국방부)	348
•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직접청구 앱 구축 (국방부)	349
•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 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병무청)	350
• 사회복무요원 등 정치 운동 금지 (병무청)	351
•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의무와 괴롭힘 금지 (병무청)	352
• 병역판정검사 등 이동중 부상자 치료비 지급 (병무청)	353
•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및 그 자녀 관리 기준 조정 (병무청)	354
• 병역의무자의 병역정보 안전조치 강화 (병무청)	355
• 단기 국외여행허가 신청 즉시 처리결과 확인 (병무청)	356
• 육군 사이버작전병(전문특기병) 신설 (병무청)	357
• 동원훈련 단체수송 및 입영절차 디지털화 (병무청)	358
• 방위사업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 시행 (방위사업청)	359
• 군함 감리 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품목포괄수출허가 적용 (방위사업청)	360
• 주요 연구개발 무기체계 수출예비승인 제도 도입 (방위사업청)	361

10 행정·안전·질서

-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기간통신사업 등록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68
-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 (법무부) 369
- 스톡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 (법무부) 370
- 스톡킹 행위자 접근 차단을 위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법무부) 371
- 안정적인 배당을 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정비 (법무부) 372
- CBT 방식의 변호사시험(논술형) 역대 최초 시행 (법무부) 373
- 난민인정심사 화상면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법무부) 374
- 마약사범재활전담 교정시설 확대 운영 및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법무부) 375
- 향내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해양수산부) 376
-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제한 완화 (해양수산부) 377
- 국제선박보안증서 등 선박증서 온라인 발급 개시 (해양수산부) 378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379
- 해상 안전수칙을 규정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해양수산부) 380
-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381
-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행정안전부) 382
-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QR코드 부여 (행정안전부) 383
-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 여부 결정 (행정안전부) 384
- 법령상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 완화 (법제처) 385
- 지방사무에 관한 법령상 기준 삭제 등 지방자율성 제고 (법제처) 386
-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인사혁신처) 387
-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편 (인사혁신처) 388
- 지방공사·공단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이용 가능 (인사혁신처) 389
- 전국 표준화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 시행 (소방청) 390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소방청) 391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소방청) 392
- 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으로 민원서비스 편의 향상 (재외동포청) 393
- 재외동포인증센터 구축 운영으로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도입 (재외동포청) 394
-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확대 (조달청) 395
-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 공정성·전문성 강화 (조달청) 396
- 부정당제재 사유 발생에 따른 판매중지 사유 삭제 (조달청) 397
- 비촉사업 관련 불공정 전매행위 관리 강화 (조달청) 398
-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게 직접생산확인 제도 개선 (조달청) 399
- 통계데이터 이용 서비스 확대 및 비용 완화 (통계청) 400
-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 신입교육 과목 시간 변경 (경찰청) 401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02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03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본격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04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의무대상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05
•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한 입찰 자료 요청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406
• 대규모유통업자 경영간섭행위 금지 규정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407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408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적 근거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409
• 공익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상향 (국민권익위원회)	410
• 원자력발전소 상시검사 체계로 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411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기획재정부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5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6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7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8
•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9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10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11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12
•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13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14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15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16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17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18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19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20
•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21
•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가산율 조정	22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23
•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24
•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25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도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26
•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27
•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28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29
•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30
•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	31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32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33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강화	34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	35
•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확대	36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37
•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	38
•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	39
•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	40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	41
•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42
•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출범	60
•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 차수별 분리 징수 및 현실화	101
• 수출입물품 세관검사 수수료 폐지	199
• 용도세율 적용대상 확대	200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201

교육부

• 늘봄학교 본격 도입	53
•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54
•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55
•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56
•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 조치 강화	57
•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 간 협동수업 신설	5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데이터분쟁조정 제도 시행	196
• 연구실사고 인정 범위 확대	197
• 통신비 부담 완화	198
•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기간통신사업 등록 허용	368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102
•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부담 완화	103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104
•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105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106
• 안전동행 지원사업	107
•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108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109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110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111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변경	112
•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113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사상황 제출 의무 완화	114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115
•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빈자리 청년취업지원금)	116
•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117
•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118
•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119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120
•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121
•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설	122
•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도입	123
•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124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125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126
•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127
•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편	128
•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등간격 적용 가능	129
•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130
•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131
• 굴착면 붕괴 예방 기술기 기준 합리화	132
•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	133
• 근골격계부담적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개선	134
•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135
•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136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 GTX-A 개통	223
• 출산가구에 특별(우선)공급 도입	224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225
•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도입	226
• 공동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리강화	227
•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228
• 항공 및 위치서비스 분야에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본격 시행	229
•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	230
•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 연관기업 부지매입비 등 대출이자 지원율 조정(상향)	231
•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232
•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신규등록 일부 허용	233
• 도로점용허가 모바일 기반 서비스 시행	234
• K-드론 배송 상용화 표준모델 본격 시행	235
• 리츠 자산운용 전문인력 보수교육 도입	237
•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238
• 도심융합특구 사업 본격화	239
•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 혜택 강화	240
• 주상복합건축사업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지하층, 복리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	241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도 도입	242
• 대학·전문대 등 내부 도로의 교통안전 관리 강화	243
• 경제활동 및 지방시대를 지원하는 도로 연결망 구축	244
• 택배·배달 생활물류 운송수단 드론·로봇까지 확대 시행	245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246

국방부

• 2024년 병 봉급 인상	344
•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345
•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	346
•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347
• 군 장병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	348
•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직접청구 앱 구축	349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270
· 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 요건 완화	271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	272
·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농촌 왕진버스) 도입	273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274
·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275
·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276
·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77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278
· 「농업 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279
·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280
·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	281
·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	282
·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83
· 축산 농장 전실 설치 시 건축 면적 규제 완화	284
·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285
·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286
·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로 보급 추진	287
·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등 금지	288
·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	289
·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라 발생한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기업의 손실에 대한 국가 보상 도입	290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91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92
· 농촌관광 콘텐츠 발굴 및 판매채널 확대	293
· 맹견사육 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294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본격화	295
· 동물용의약품 수출 확대 위한 「GMP 인증제도」 신설	296
·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위한 방치된 농업기계 강제처리 제도 도입	297
· 건전한 과수 묘목 공급 활성화 정책추진 강화	298
· 고위험 동물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299
·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300
· 농식품 융합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301
·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 실태조사, 노무관리, 인권보호 교육·상담 지원 등 농업인력 지원 강화	302
· 농작물재해보험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추진	303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청년농업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304
• 청년 맞춤형 농업창업 지원 확대	305
•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펀드 신규 조성	306
• 식품·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원가부담 완화 등 지속 지원	307
• 푸드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센터 구축 추진	308
•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K-미식벨트 조성	309
• 권위 있는 국제미식행사,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첫 한국 유치	310
• 곤충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311
• 가축운송차량의 분노 유출 방지를 통한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	312
•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313
• 국산 밀 품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준 도입	314
• 밀·콩·가루쌀 관련 지원사업 통합·운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	315
• 수확기 벼 매입자금지원 대상 확대	316
•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업용 배수장·저수지 설계기준 강화	317
•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요건 대폭 완화	318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	319
• 농산물도매시장 양파 줄방 반입을 제한하고 기계·수작업망으로 유통방식 개선	320
• 농산물분야 의무자조금의 운영관리 규제 완화	321
• 인삼경작신고 의무화 및 신고기관 인삼 품목 조합(농협)으로 일원화	322
• 농식품바우처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323

문화체육관광부

•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연간 13만 원으로 인상	152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전면 시행	153
• 여행업 등록기준 납입자본금으로 완화	154
•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하여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금지	155

법무부

•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	369
•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	370
• 스토킹 행위자 접근 차단을 위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371
• 안정적인 배당을 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정비	372
• CBT 방식의 변호사시험(논술형) 역대 최초 시행	373
• 난민인정심사 화상면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74
• 마약사범재활전담 교정시설 확대 운영 및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375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87
• 2024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 109 운영	88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89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9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91
•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시행	92
•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93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산정방식 개선	94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지원	95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96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97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폐지	98
•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99
• 고령·은둔 청년에 대한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	100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 추진	202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203
• 사업재편 지원범위에 디지털전환·탄소중립 유형 추가	204
• 「수소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205
•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 명확히 규정	206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61
•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62
•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63
•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64
•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65
•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66
• 가정폭력 보호시설(이주여성 포함)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	67
•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통합운영(온가족보듬사업)	68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69
•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70
• 아이돌보미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 개편	71
•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72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신규 실시	73
•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의무 위반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74
• 해바라기센터 2개소 확충 및 영상증인신문 인력 배치	75
•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기반 강화	76
•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	77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137
•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사업	207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설	208
• 벤처기업법 상시화, 인재 유인책 도입	209
• 중소기업 기술보호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210

해양수산부

• 선내 괴롭힘 방지 대책 본격 시행	138
•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확대	139
• 교류의 바다, 연결의 시작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156
•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 확대	184
•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방사능 모니터링 실시	185
•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186
• 중소 연안선사 지원제도 개편 및 확대	211
• 해양수산 신기술 제품-공사 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한 조달특례 지원	212
• 부산항 신항 완전자동화항만 신규 개장	247
• 국내 무역항에 항만종합서비스업 본격 도입	248
•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대상 확대	249
• 공공성을 강화한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추진	250
• 어업경영자금 용자 한도 및 용자 비율 상향	324
•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325
•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대상 수산공직직불제 지급단가 130만 원으로 인상	326
• 전체 여성어업인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327
•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강화	328
•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무동력 선박 형태 바지 허용	329
• 우리동네 마트도 수산물 할인행사 참여 가능	330
• 어선 고속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대상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	331
• 양식장 임대 사업 실시	332
•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확대	333
• 먹는해양심층수 무라벨 제품 날개 판매 허용	334
•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376
•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제한 완화	377
• 국제선박보안증서 등 선박증서 온라인 발급 개시	378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379
• 해상 안전수칙을 규정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380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	381
•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382
•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QR코드 부여	383
•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 여부 결정	384



환경부

•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	166
•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167
•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168
•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 개선	169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170
•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	171
•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시행	172
•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	173
•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 제도」 시행	174
•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175
• 가스연소 굴뚝(플레어스택)에 대한 발열량 기준 시행	176
• 수도시설 운영·관리인력 대상 교육 주기 단축	177
•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 확대	178
•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 의무화	179
• 「환경보건법」 위반 어린이용품의 '자발적 회수' 시행	180
• 청년대상 창업지원사업 '청년 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시행	181
• 국가 주도의 도시침수 관리를 위한 「도시침수방지대책법」 시행	182
• 파총류 수입 검역 시행	183

법제처

• 법령상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 완화	385
• 지방사무에 관한 법령상 기준 삭제 등 지방자율성 제고	386

식품의약품안전처

• 세계 최초 한국 주도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 회의 한국 개최	140
• 마약류 상담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본격 운영	141
• 청소년 취약계층 등 마약류 예방교육 확대	142
•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품목갱신 시행	143
• 한미 공동 AI 활용 의료제품 분야 국제 심포지엄 개최	144
• 수출 애로 FREE(Food Regulation Expert for Export) 운영	145
•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146
• 수입식품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 기준 개정시행	147
• 백신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교육 본격 실시	148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387
-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편 388
- 지방공사·공단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이용 가능 389

관세청

- 우수재활용 인증제품(GR) FTA 원산증명서 간편 발급 213

기상청

- 기후변화 상황지도 시범서비스 187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육상특보구역 세분화 188
-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직접발송 제도 확대 189
- 눈의 무게를 고려한 상세 강설정보 제공 190
- 약한 바람에 대한 정보로 황사-미세먼지 예보 강화 191

경찰청

- 보호구역 실태조사 도입 251
-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 신설 252
-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253
-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 신입교육 과목·시간 변경 401

농촌진흥청

-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ASTIS)에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신청 및 결과 확인 335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문화재청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157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 시행 359
- 군함 감리 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품목포괄수출허가 적용 360
- 주요 연구개발 무기체계 수출예비승인 제도 도입 361

병무청

-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350
- 사회복지요원 등 정치 운동 금지 351
- 사회복지요원의 성실복무 의무와 괴롭힘 금지 352
- 병역판정검사 등 이동중 부상자 치료비 지급 353
-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및 그 자녀 관리 기준 조정 354
- 병역의무자의 병역정보 안전조치 강화 355
- 단기 국외여행허가 신청 즉시 처리결과 확인 356
- 육군 사이버작전병(전문특기병) 신설 357
- 동원훈련 단체수송 및 입영절차 디지털화 358

산림청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신고제도 시행 336
-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자격 완화 337

소방청

- 전국 표준화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 시행 390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391
- 참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392

재외동포청

- 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으로 민원서비스 편의 향상 393
- 재외동포인증센터 구축·운영으로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도입 394

조달청

- 레미콘, 중요 관급공사 현장에 '우선납품제' 도입 254
- 시설공사 적격심사 건설안전 평가 강화 255
-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확대 395
-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 공정성 전문성 강화 396
- 부정당제재 사유 발생에 따른 판매중지 사유 삭제 397
- 비촉사업 관련 불공정 전매행위 관리 강화 398
-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게 직접생산확인 제도 개선 399

통계청

- 통계데이터 이용 서비스 확대 및 비용 완화 400

특허청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214
-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215
-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 216
- 심판청구서 직권보정제도 도입 217
- 심판참고인제도 도입 218

공정거래위원회

-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한 입찰 자료 요청 대상 확대 406
- 대규모유통업자 경영간섭행위 금지 규정 신설 407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도입 408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적 근거 마련 409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상향 410

금융위원회

-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 전세대출까지 확대 43
-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44
-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45
-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4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402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 시행 403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본격 시행 404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의무대상 개선 405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발전소 상시검사 체계로 개편 411

시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1월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5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6
- 기획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기획재정부) 7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8
-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기획재정부) 9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10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기획재정부) 11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12
-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기획재정부) 13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기획재정부) 14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기획재정부) 15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16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기획재정부) 17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18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19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기획재정부) 20
-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21
-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가산율 조정 (기획재정부) 22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기획재정부) 23
-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24
-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기획재정부) 25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도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기획재정부) 26
-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기획재정부) 27
-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기획재정부) 28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기획재정부) 29
-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기획재정부) 30
- 맥주 탁주 증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 (기획재정부) 31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기획재정부) 33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34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 (기획재정부) 35
-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36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 (기획재정부)	38
• 향수 여행차 면세한도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 (기획재정부)	39
•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 (기획재정부)	40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 (기획재정부)	41
• 대한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 전세대출까지 확대 (금융위원회)	43
•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	44
• 대학과 산업체 연구기관 간 협동수업 신설 (교육부)	59
•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61
•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62
•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65
• 가정폭력 보호시설(이주여성 포함)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 (여성가족부)	67
• 취약 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통합운영(온가족보듬사업) (여성가족부)	68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69
•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취업 지원 서비스 신규 실시 (여성가족부)	73
•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 (여성가족부)	77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	87
• 2024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 109 운영 (보건복지부)	88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보건복지부)	89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9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91
•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보건복지부)	93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산정방식 개선 (보건복지부)	94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지원 (보건복지부)	95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보건복지부)	96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97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폐지 (보건복지부)	98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	102
•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부담 완화 (고용노동부)	103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고용노동부)	104
•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고용노동부)	105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고용노동부)	106
• 안전동행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07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고용노동부)	110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111
•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113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적상황 제출 의무 완화 (고용노동부)	114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고용노동부)	115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고용노동부)	116
•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고용노동부)	117

•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고용노동부)	118
•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119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120
•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고용노동부)	121
•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설 (고용노동부)	122
•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도입 (고용노동부)	123
•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고용노동부)	124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125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126
•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 (고용노동부)	133
•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137
• 선내 괴롭힘 방지 대책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	138
• 마약류 상담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본격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141
• 청소년 취약계층 등 마약류 예방교육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142
• 수출 애로 FREE(Food Regulation Expert for Export)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145
•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146
• 수입식품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 기준 개정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147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환경부)	170
•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 (환경부)	171
•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시행 (환경부)	172
•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환경부)	175
• 가스연소 굴뚝(플래어스택)에 대한 발열량 기준 시행 (환경부)	176
•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 확대 (환경부)	178
•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 확대 (해양수산부)	184
• 눈의 무게를 고려한 상세 강설정보 제공 (기상청)	190
• 데이터분쟁조정 제도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6
• 수출입물품 세관검사 수수료 폐지 (기획재정부)	199
• 용도세를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200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기획재정부)	201
•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서류 명확히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206
• 중소기업 기술보호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중소벤처기업부)	210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특허청)	214
•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 (특허청)	216
•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	228
•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도 도입 (국토교통부)	230
•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 연관기업 부지매입비 등 대출이자 지원을 조정(상향) (국토교통부)	231
•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232
•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신규등록 일부 허용 (국토교통부)	233
• 도로점용허가 모바일 기반 서비스 시행 (국토교통부)	234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보호구역 실태조사 도입 (경찰청)	251
• 시설공사 적격심사 건설안전 평가 강화 (조달청)	255
•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75
•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82
•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85
• 전략적물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적불금 단가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286
•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89
• 고위험 동물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99
•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300
• 농식품 융합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301
• 청년 맞춤형 농업창업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305
• 식품-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원가부담 완화 등 지속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307
• 푸드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센터 구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308
• 밀·콩·가루쌀 관련 지원사업 통합·운영 - 전략적물산산업화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315
• 수확기 벼 매입자금지원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316
•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업용 배수장·저수지 설계기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317
•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요건 대폭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318
• 농산물도매시장 양파 줄파 반입을 제한하고 기계 수작업망으로 유통방식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320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 및 융자 비율 상향 (해양수산부)	324
•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	325
•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대상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 130만 원으로 인상 (해양수산부)	326
•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강화 (해양수산부)	328
• 실배양어안강망어업 무동력 선박 형태 바지 허용 (해양수산부)	329
• 우리동네 마트도 수산물 할인행사 참여 가능 (해양수산부)	330
•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자격 완화 (산림청)	337
• 2024년 병 봉급 인상 (국방부)	344
• 장병내일준비자금 재정지원금 인상 (국방부)	345
•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 (국방부)	346
•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국방부)	347
• 병역의무자의 병역정보 안전조치 강화 (병무청)	355
• 주요 연구개발 무기체계 수출예비승인 제도 도입 (방사청)	361
•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기간통신사업 등록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68
•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 (법무부)	369
•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 (법무부)	370
• 스토킹 행위자 접근 차단을 위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법무부)	371
• CBT 방식의 변호사시험(논술형) 역대 최초 시행 (법무부)	373
•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해양수산부)	376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379

- 해상 안전수칙을 규정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해양수산부) 380
-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QR코드 부여 (행정안전부) 383
-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인사혁신처) 387
-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편 (인사혁신처) 388
- 지방공사·공단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이용 가능 (인사혁신처) 389
- 전국 표준화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 시행 (소방청) 390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소방청) 391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소방청) 392
-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확대 (조달청) 395
- 수익계약 적합성 평가, 공정성·전문성 강화 (조달청) 396
-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게 직접생산확인 제도 개선 (조달청) 399
- 통계데이터 이용 서비스 확대 및 비용 완화 (통계청) 400
-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 신입교육 과목·시간 변경 (경찰청) 401

2월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109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변경 (고용노동부) 112
-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편 (고용노동부) 128
- 한미 공동 AI 활용 의료제품 분야 국제 심포지엄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144
-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연간 13만 원으로 인상 (문화체육관광부) 152
- 여행업 등록기준 납입자본금으로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154
-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 의무화 (환경부) 179
- 「환경보건법」 위반 어린이용품의 '자발적 회수' 시행 (환경부) 180
- 청년대상 창업지원사업 '청년 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시행 (환경부) 181
- 「수소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205
- 리츠 자산운용 전문인력 보수교육 도입 (국토교통부) 237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국토교통부) 246
- 경관보전직불금 초치 지급 요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271
-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 실태조사, 노무관리, 인권보호 교육·상담 지원 등 농업인력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302
- 곤충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311
- 국산 밀 품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준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314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신고제도 시행 (산림청) 336
-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직접청구 앱 구축 (국방부) 349
- 사회복무요원 등 정치 운동 금지 (병무청) 351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준보전 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제한 완화 (해양수산부) 377
- 국제선박보안증서 등 선박증서 온라인 발급 개시 (해양수산부) 378
-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 여부 결정 (행정안전부) 384
- 대규모유동업자 경영개선행위 금지 규정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407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408

3월

- 늘봄학교 본격 도입 (교육부) 53
-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교육부) 54
-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 조치 강화 (교육부) 57
-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여성가족부) 64
-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136
- 백신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교육 본격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148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전면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153
-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하여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금지 (문화체육관광부) 155
- 국가 주도의 도시침수 관리를 위한 「도시침수방지대책법」 시행 (환경부) 182
- 약한 바람에 대한 정보로 황사-미세먼지 예보 강화 (기상청) 191
- 사업재편 지원범위에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유형 추가 (산업통상자원부) 204
- 심판청구서 직권보정제도 도입 (특허청) 217
- 심판참고인제도 도입 (특허청) 218
- GTX-A 개통 (국토교통부) 223
- 출산가구에게 특별(우선)공급 도입 (국토교통부) 224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국토교통부) 225
- K-드론 배송 상용화 표준모델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 235
-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 혜택 강화 (국토교통부) 240
- 레미콘, 중요 관공공사 현장에 '우선납품제' 도입 (조달청) 254
-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270
-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농촌 왕진버스)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73
-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279
- 축산 농장 전실 설치 시 건축 면적 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284
- 권위 있는 국제미식행사,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첫 한국 유치 (농림축산식품부) 310
- 군함 감리 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품목포괄수출허가 적용 (방사청) 360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02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03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의무대상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05
- 원자력발전소 상시검사 체계로 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411

4월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획재정부)	32
·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37
·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금융위원회)	46
·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의무 위반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여성가족부)	74
·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100
·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국토교통부)	238
· 도심융합특구 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	239
·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249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74
·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281
·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등 금지 (농림축산식품부)	288
· 맹견사육 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94
· 전체 여성어업인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해양수산부)	327

5월

· 세계 최초 한국 주도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 회의 한국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140
·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품목갱신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143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문화재청)	157
·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 (환경부)	166
·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환경부)	167
· 파종류 수입 검역 시행 (환경부)	183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육상특보구역 세분화 (기상청)	188
·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직접발송 제도 확대 (기상청)	189
· 연구실사고 인정 범위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7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202
·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특허청)	215
·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도입 (국토교통부)	226
·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 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병무청)	350
·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의무와 괴롭힘 금지 (병무청)	352
· 방위사업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 시행 (방사청)	359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6월

•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출범 (기획재정부)	60
•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환경부)	168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203
•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위한 방치된 농업기계 강제처리 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97
•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ASTIS)에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신청 및 결과 확인 (농촌진흥청)	335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적 근거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409

기 타 : 2023년 하반기 기 시행되었거나 2024년 시행 예정(날짜 미정)

•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발행 (기획재정부)	42
•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금융위원회)	45
•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교육부)	55
•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교육부)	56
•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여성가족부)	63
•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여성가족부)	66
•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70
• 아이돌보미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 개편 (여성가족부)	71
•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여성가족부)	72
• 해바라기센터 2개소 확충 및 영상증인신문 인력 배치 (여성가족부)	75
•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기반 강화 (여성가족부)	76
•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	92
•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보건복지부)	99
•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 차수별 분리 징수 및 현실화 (기획재정부)	101
•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고용노동부)	108
•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	127
•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동간격 적용 가능 (고용노동부)	129
•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고용노동부)	130
• 데크플레이트 등 거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고용노동부)	131
• 굴착면 붕괴 예방 기술기 기준 합리화 (고용노동부)	132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개선 (고용노동부)	134
•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고용노동부)	135
•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확대 (해양수산부)	139
• 교류의 바다, 연결의 시작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해양수산부)	156

-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 개선 (환경부) 169
-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 (환경부) 173
-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 제도」 시행 (환경부) 174
- 수도시설 운영·관리인력 대상 교육 주기 단축 (환경부) 177
-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방사능 모니터링 실시 (해양수산부) 185
-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186
- 기후변화 상황지도 시범서비스 (기상청) 187
- 통신비 부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8
-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207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208
- 벤처기업법 상시화, 인제 유인책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209
- 중소·연안선사 지원제도 개편 및 확대 (해양수산부) 211
- 해양수산 신기술 제품·공사 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한 조달특례 지원 (해양수산부) 212
- 우수재활용 인증제품(GR) FTA 원산증명서 간편 발급 (관세청) 213
- 공동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리강화 (국토교통부) 227
- 항공 및 위치서비스 분야에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KASS)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 229
- 주상복합건축사업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지하층, 복리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 (국토교통부) 241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242
- 대학·전문대 등 내부 도로의 교통안전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 243
- 경제활동 및 지방시대를 지원하는 도로 연결망 구축 (국토교통부) 244
- 택배·배달 생활물류 운송수단 드론·로봇까지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 245
- 부산항 신항 완전자동화항만 신규 개장 (해양수산부) 247
- 국내 무역항에 항만종합서비스업 본격 도입 (해양수산부) 248
- 공공성을 강화한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추진 (해양수산부) 250
-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 신설 (경찰청) 252
-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경찰청) 253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72
-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76
-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277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278
-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80
- 그린바이오산업을 중핵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283
-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로 보급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287
-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라 발생한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기업의 손실에 대한 국가 보상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90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91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92
- 농촌관광 콘텐츠 발굴 및 판매채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93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 295
- 동물용의료기기 수출 확대 위한 「GMP 인증제도」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296
- 건전한 과수 묘목 공급 활성화 정책추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298
- 농작물재해보험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303
- 청년농업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304
-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펀드 신규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306
-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K-미식벨트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309
-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통한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 (농림축산식품부) 312
-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313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319
- 농산물분야 의무자조금의 운영관리 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321
- 인삼경작신고 의무화 및 신고기관 인삼 품목 조합(농협)으로 일원화 (농림축산식품부) 322
- 농식품바우처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323
- 어선 고속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대상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 (해양수산부) 331
- 양식장 임대 사업 실시 (해양수산부) 332
-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확대 (해양수산부) 333
- 먹는해양심층수 무라벨 제품 날개 판매 허용 (해양수산부) 334
- 군 장병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 (국방부) 348
- 병역판정검사 등 이동중 부상자 치료비 지급 (병무청) 353
-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및 그 자녀 관리 기준 조정 (병무청) 354
- 단기 국외여행허가 신청 즉시 처리결과 확인 (병무청) 356
- 육군 사이버작전병(전문특기병) 신설 (병무청) 357
- 동원훈련 단체수송 및 입영절차 디지털화 (병무청) 358
- 안정적인 배당을 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정비 (법무부) 372
- 난민인정심사 화상면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법무부) 374
- 마약사범재활전담 교정시설 확대 운영 및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법무부) 375
-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381
-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행정안전부) 382
- 법령상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 완화 (법제처) 385
- 지방사무에 관한 법령상 기준 삭제 등 지방자율성 제고 (법제처) 386
- 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으로 민원서비스 편의 향상 (재외동포청) 393
- 재외동포인증센터 구축 운영으로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도입 (재외동포청) 394
- 부정당제재 사유 발생에 따른 판매중지 사유 삭제 (조달청) 397
- 비축사업 관련 불공정 판매행위 관리 강화 (조달청) 398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본격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04
-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한 입찰 자료 요청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406
- 공익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상향 (국민권익위원회) 410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01 금융·재정·조세
- 02 교육·보육·가족
- 03 보건·복지·고용
- 04 문화·체육·관광
- 05 환경·기상
- 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07 국토·교통
- 08 농림·수산·식품
- 09 국방·병무
- 10 행정·안전·질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금융·재정·조세



1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5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합니다.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기액에서 공제됩니다.

After

직계존속

최대 1억 원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2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추가공제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구분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최대 공제율
	현행	개정안				
대기업	3	5		10		15
중견기업	7	10		10		20
중소기업	10	15		15		30

3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7

기획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기획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기획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After

- (대상) 기획발전특구 내 창업 (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 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 원)



4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43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Before

그동안 신용대출에 대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운영중이었습니다.



After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가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5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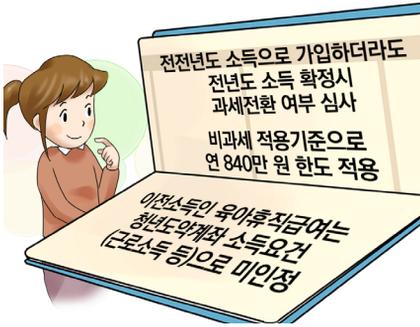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44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시행일: 2024년 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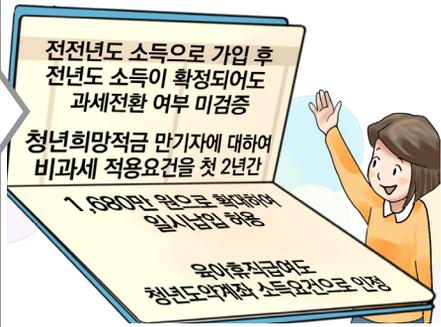
Before

지금까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After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가입·지원을 강화합니다.



6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45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Before

지금까지 보험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시, 서류를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일일이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After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합니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증여자) 직계존속

▣ (공제한도) 1억 원

※ 단,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총 4년)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개정내용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23.11월)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추진배경 결혼·출산비용 세부담 완화
- 주요내용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추가공제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 (기본공제)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에 대한 공제율 상향
- (추가공제)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를 적용

구 분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최대 공제율
	현 행	개정안				
대기업	3	→ 5		10		15
중견기업	7	→ 10		10		20
중소기업	10	→ 15		15		30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 **추진배경**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신설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3)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 (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법인세 ·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 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 원)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22.7월)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 **추진배경** 지역발전 거점 육성을 통한 지방투자 활성화
- **주요내용**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신설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2-215-4216)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합니다.

- ▣ (감면율) 10년간 50%
- ▣ (적용기한) '23.12.31. → '28.12.31. (5년 연장)
- ▣ (적용대상)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 추가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제개편안 발표('23.7월)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 **주요내용**
 - (적용기한) '23.12.31. → '28.12.31. (5년 연장)
 - (적용대상)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 추가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6)

선원(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선원과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 (비과세 한도) 월 300만 원 → 월 500만 원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제개편안 발표('23.7월)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 추진배경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 주요내용 (비과세 한도) 월 300만 원 → 월 500만 원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6)

고용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과 대상 업종을 확대합니다.

*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 ▣ (대상업종) 컴퓨터 학원 등 추가
-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3년 연장)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제개편안 발표('23.7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 **주요내용**
 - (대상업종) 컴퓨터 학원 등 추가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3년 연장)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6)

민간주도 R&D 역량강화와 기술개발 유인 제고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합니다.

▣ (비과세 한도) 연 500만 원 → 연 700만 원

▣ 사용자인 개인사업자와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제개편안 발표('23.7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 **추진배경** 기술개발 유인 제고
- **주요내용**
 - (비과세 한도) 연 500만 원 → 연 700만 원
 - (적용제의 대상) 사용자인 개인사업자와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6)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요건 및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합니다.

▣ (공제한도) 연 300 ~ 1,800만 원 → 연 600 ~ 2,0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2,000만 원	1,800만 원	800만 원	600만 원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개정내용은 공제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주택요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계개편안 발표('23.7월)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추진배경**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공제한도) 연 300 ~ 1,800만 원 → 연 600 ~ 2,000만 원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6)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3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10% 상향합니다.

▣ 공제율

- 1천만 원 이하: 15%
-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30%
- 3천만 원 초과: 40%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제개편안 발표('23.7월)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 추진배경 기부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공제율) 3천만 원 초과 기부금: 40%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3)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대폭 상향(4,000 → 7,000만 원)되고, 최대지급액이 인상(자녀 1인당 80 → 100만 원)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추진배경** 출산·양육 지원
- **주요내용**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6)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하여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합니다.

▣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제개편안 발표('23.7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추진배경 출산·양육 지원
- 주요내용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6)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영유아(6세이하)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 요건을 폐지합니다.

- ▣ 산후조리비용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기준 폐지
- ▣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 추가: 6세이하 부양가족 추가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제개편안 발표('23.7월)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등

- **추진배경**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산후조리비용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기준 폐지
 -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 추가: 6세이하 부양가족 추가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5)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상향 (연 1,200 → 1,500만 원)됩니다.

*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추진배경** 노후생활 안정 지원
- **주요내용**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에 포함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추진배경** 육아휴직 지원
- **주요내용**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범위 확대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장애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장애인 의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3)

장려금 수급자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이 인상(장려금 산정액의 90% → 95%)됩니다.

* 정기 신청기한(5.31.)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 **추진배경**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지원
- **주요내용** (지급금액 인상) 장려금 산정액의 90% → 95%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1)

2024년 1월 1일부터 연결납세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연결자법인의 범위가 현행 모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자법인에서 90퍼센트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으로 확대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22.7월)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 **추진배경** 연결납세제도 활용도 제고
- **주요내용**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을 모법인이 90퍼센트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으로 확대
-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가산을 조정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배당소득 이종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이 조정됩니다.

▣ 2023년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배당가산율이 11%에서 10%로 조정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 세제개편안 발표

배당소득 이종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을 조정

- **추진배경**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종과세 조정
- **주요내용**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배당소득에 곱하는 배당가산율을 11%에서 10%로 인하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연간 납입액 한도가 상향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위한 납입액 한도를 종전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 세제개편안 발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한도 상향

- **추진배경**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확대
- **주요내용**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등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시 직전년도 소득이 있어야 하고, 만약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되었습니다.
- 내년부터는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을 허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 세계개편안 발표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 **추진배경**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대한 가입요건 완화
- **주요내용** 비과세소득만 있는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도 가입을 허용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청년도약계좌등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직전년도 소득 확정 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상반기중 가입자는 직전년도 소득 확인이 안되어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하고, 이후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내년부터는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직전년도 소득 확인이 안되는 상반기 중 가입자는 전전년도 기준으로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 세제개편안 발표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 **추진배경**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요건 완화
- **주요내용**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1~7월 기간 중 가입시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판단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도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1)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해서도 현행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적용합니다.

-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취득한 창업·벤처기업의 주식에 대해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과 출자금에 대한 10%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 비과세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소득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 세제개편안 발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추가

- **추진배경**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 **주요내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차익 비과세 및 출자금 소득공제 적용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과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며,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합니다.

- (저율과세 구간 확대)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구간을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합니다.
- (사후관리 요건 완화)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합니다.

저율과세 구간 확대는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연부연납 기간 확대는 '24.1.1.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사후관리 요건 완화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23.11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 **추진배경**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주요내용** 저율과세 구간과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등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 **시행일** (저율과세 구간·연부연납 기간 확대) 2024년 1월 1일
(사후관리 요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중 업종 유지요건을 완화합니다.

▣ (사후관리 요건 완화)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합니다.

개정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 **추진배경** 가업상속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기간에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
- **시행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일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공익법인이 매 과세연도마다 출연재산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지출제도를 정비합니다.

-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변경)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가액 산정 시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5개년도의 평균가액을 사용합니다.(종전 3개년도 평균가액 사용)
- (지출실적 산정기준) 종전 당해 과세연도 사용실적만 지출실적으로 인정하였으나, 당해 과세연도와 직전 4개 과세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도 지출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위반 시 제재 합리화)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은 지출 미달금액의 20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5% 이하 보유 공익법인은 지출 미달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종전에는 미달지출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단, '2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또는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중 선택 가능)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23.11월)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 추진배경 공익법인의 지출의무 관련 제도 합리화
- 주요내용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일정비율 의무지출제도 합리화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3)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세액상당액을 환급해주는 사후환급 제도가 확대됩니다.

*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 구매시 ① 즉시환급, ② 도심환급 및 ③ 출국장환급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

- 사후환급 최소 기준금액을 인하(건당 3→1.5만 원)하고 즉시환급(1회 50→100만 원, 총 250→500만 원) · 도심환급(500→600만 원) 한도를 상향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구입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 추진배경 외국인 관광활성화 및 편의 제고
- 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현 행	개 정
◎ 사후환급 최소 기준 - 1회 거래가액 3만 원 이상	◎ 최소 기준 인하 - 1회 거래가액 1.5만 원 이상
◎ 즉시환급 한도 - 1회 거래가액 50만 원 미만 - 총 거래가액 250만 원 이하	◎ 한도 상향 - 1회 거래가액 100만 원 미만 - 총 거래가액 500만 원 이하
◎ 도심환급 한도 - 1회 거래가액 500만 원 이하	◎ 한도 상향 - 1회 거래가액 600만 원 이하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맥주 탁주의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 매년 물가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는 폐지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정부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주종간 세부담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법정세율의 30% 범위내에서 조정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제개편안 발표('23.7월)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

- **추진배경** 매년 의무적인 주세율 조정에 따른 주류가격 상승을 방지하고, 종가세-종량세 주종간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주세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탄력세율* 제도로 전환
* 법정세율의 ±30% 범위내에서 조정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1)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하여 낮은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 인하)이 적용됩니다.

* (프로판) 20 → 14원/kg, (부 탄) 275 → 176.4원/kg

개정내용은 2024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제개편안 발표('23.7월)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추진배경**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및 연료간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해 낮은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 인하)을 적용
* (프로판) 20 → 14원/kg, (부 탄) 275 → 176.4원/kg
- **시행일** 2024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3)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 (공제대상)

-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
-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공제율) 투자 또는 출자액의 3%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 추진배경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 주요내용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 (세액감면 확대)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7 → 10년) 확대*

* (현 행) 5년 100% + 2년 50% → (개정안) 7년 100% + 3년 50% 감면

- (업종요건 완화)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업종요건 유연화*

* (현 행)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동일
(개정안)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강화

- **추진배경**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 **주요내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시 세액감면 폭 및 기간 확대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 (☎ 044-215-4663)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 체계*(IF)에서 합의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됩니다.

*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현재 145개국 참여)

■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은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기준 15%미만의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세액의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

- 추진배경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
- 주요내용
 - (적용대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 (추가세액) 국가별로 실효세율 기준 15%미만 분
 - (신고·납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내*
 - * 최초적용연도에는 18개월 내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044-215-4151)

가산세 적용 합리화를 위하여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해서도 개인과 동일하게 가산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확대

- **추진배경** 가산세 한도 적용 합리화
- **주요내용**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에 「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 추가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044-215-4151)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청구 등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의 범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소액사건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6~10명으로 구성,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또한, 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심리·결정할 수 있습니다.

*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구성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 추진배경 신속한 조세불복 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리 제고
- 주요내용
 - 조세불복 소액사건 기준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
 - 이의신청·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및 조세심판 청구 중 주심 단독처리 대상 확대
- 시행일 2024년 4월 1일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044-215-4152)

강제징수 절차 합리화를 위해 매수인이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취득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매각결정기일 변경을 허용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

- **추진배경** 강제징수 절차 합리화
- **주요내용** 최고가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 전 재산 취득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허용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공매공고 하는 분부터 적용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7)

향수의 여행자 면세한도가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됩니다.
(*24. 1. 1.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반입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무조정실 홈페이지>보도자료>민생규제혁신방안 발표(*23.11월)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 **추진배경** 여행자 편의 제고
- **주요내용**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반입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적용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1)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 및 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조치* 기한을 2개월 연장합니다.

* 휘발유: 리터당 396.7원, 경유: 리터당 238원, 석유가스 중 부탄: 킬로그램당 176.4원

발전연료의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른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조치* 기한을 6개월 연장합니다.

* 발전용 LNG(10.2원/kg), 고열량탄(41.6원/kg), 중열량탄(39.1원/kg), 저열량탄(36.5원/kg)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입법예고>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3.12월)

유류세,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연장

- **추진배경**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 등
- **주요내용**
 - 휘발유, 경유, 부탄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조치 기한 2개월 연장
 - 발전연료(LNG, 유연탄 등) 한시적 인하조치 기한 6개월 연장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1)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이 50억 원 이상으로 2023년 중 변경됩니다.

- 이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주식 양도세 조정 보도자료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

- 추진배경**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
- 주요내용**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개정(안)〉

구 분(종목당)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2%	4%
보유금액	(현행) 10억 원 → (개정) 50억 원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기획재정부 국채과 (☎ 044-215-5134)

2024년 상반기부터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됩니다.

-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되며, 최소 10만 원부터 연간 총 1억 원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 만기 보유시에는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14%) 혜택이 적용되며,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입자격 및 투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자격: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1인 1계좌) • 투자금액: 최소 10만 원, 연간 최대 1억 원
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물 및 20년물
상환조건 및 적용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일에 원금·이자 일괄 수령 •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 지급 * 표면금리: 전월 발행한 동일 연월 국고채 낙찰금리 * 가산금리: 시장상황 등 고려 매월 결정·공표 • 매입액 총 2억 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유통·환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유증·강제집행 외 소유권 이전 불가 •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 가능(가산금리, 복리, 세제혜택 미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개인투자용 국채, 확실한 자산형성 위한 새로운 선택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 **추진배경** 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 **주요내용**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 **시행일** 2024년 상반기(추후 공지)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 02-2100-2992)

2024년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23.5.31일부터 신용대출 대상으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운영 중

▣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 소득, 신용등급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된 심사가 이루어지는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주택 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검증할 필요

▣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기존 대환대출 이용의 핵심 불편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의 경우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보도자료] 이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도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 **추진배경**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대상을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주담대, 전세대출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
- **주요내용**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 대상을 아파트 주담대, 전세자금대출로 확대
- **시행일** 2024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 02-2100-1686)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국세청, 매년 7월경)이라도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3.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이에 따라,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한 후 추후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여부를 검증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2024년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한도를 현재 첫해 840만 원에서 첫 2년간 1,680만 원으로 개정하여, 일시납입금이 8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의안번호 2125135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소득에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 **추진배경**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가입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국세청에서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매년 7월경)에는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여부 및 과세적용 여부를 결정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
 -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하여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을 확대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금융위원회 보험과 (☎ 02-2100-2962)

2024년 10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해집니다. (*'23.10.24일, 「보험업법」 개정)

* 「의료법」 상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 상 약국의 경우, '25.10.25일부터 시행

- 현재 보험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시, 일일이 서류를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앞으로는 보험업법 개정('23.10.24.)에 따라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 이를 통해 고령층·취약계층을 포함한 보험 소비자는 기간 단순 청구절차 불편 등으로 미청구되었던 소액 보험금 등을 보다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국민 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 **추진배경**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
- **주요내용** 보험회사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 「의료법」 상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 상 약국의 경우, '25.10.25일부터 시행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금융위원회 은행과 (☎ 02-2100-2953)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며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 기존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등에 비해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 특히, 임원 성과급 뿐만 아니라 직원의 성과급·희망퇴직금 및 배당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됩니다.
- 2023년도 경영현황은 2024년 4월말 공개되고, 2023년도 이후 경영현황은 차기년도 4월말까지 공개할 계획입니다.
- 은행 경영현황에 대한 투명성·정보접근성이 제고되어 국민과 시장의 견제·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보도자료>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발표[보도참고]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 **추진배경** 은행 경영현황에 대한 투명성·정보접근성 제고를 통해 국민과 시장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
- **주요내용** 주요 공개항목: 은행 기본정보(영업점, 직원수 등), 자산/부채, 수익(이자·수수료이익, 예대금리차 등)/비용(성과급, 희망 퇴직금 등), 당기순이익 활용(배당, 자본적립 등)
- **시행일** 2024년 4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2

교육·보육·가족



1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53

늘봄학교 본격 도입

시행일: 2024년 3월

Before

지금까지 교육격차 해소 및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After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국에 본격 도입합니다.



2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54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시행일: 2024년 3월 1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엄정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 의무화, 위반 시 조치 강화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제도 신설 및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3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61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꾸준하게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중위 60% 이하 (자녀연령) 만 18세 미만 자녀 (지원금액) 월 20만 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금액) 월 35만 원

After

앞으로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소득기준) 중위 63% 이하 (자녀연령)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지원금액) 월 21만 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자녀 연령	지원 금액
0 ~ 1 세	40 만 원
2세 이상	35 만 원

4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62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양육비용 부담 경감,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23)

소득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비율	
	0~5세	6~12세
75% 이하	85%	75%
120% 이하	60%	20%
150% 이하	15%	15%
150% 초과	.	.



After

앞으로도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24)

소득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비율		
	1자녀		2자녀
	0-5세	6-12세	
75% 이하	85%	75%	본인 부담금 10%추가 지원
120% 이하	60%	30%	
150% 이하	20%	15%	
150% 초과	.	.	



5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63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행일: 2024년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약 6만 명

- 지원내용 : 학습지원,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비

- 지원액(연간) : 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60만 원

6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64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시행일: 2024년 3월 1일

Before

고립·은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고립·은둔 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합니다.

After

- (지원 대상) 고립·은둔 학교 밖 청소년(9~19세) 및 그 가족

- (지원내용) 방문 상담, 방문 학습, 치유프로그램, 자립 지원 등



7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65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다양한 위기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 클리닉' 프로그램 운영

고위기청소년 종합심리평가 사업(6개월)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3년)

After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마음건강 회복 등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 클리닉' 프로그램 전담인력 신규 배치하여 많은 청소년을 대기 없이 신속 지원

고위기청소년 종합심리평가 사업(1년)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5년)

8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66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시행일: 2024년 하반기

Before

지금까지 스톡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긴급주거지원 시범사업 시행
6개 시·도 운영

After

스토킹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사업운영기관 전국 17개 시·도 확대

24시간 운영 및 주거지원 시설 내 안전장비 구축

8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67

가정폭력 보호시설(이주여성 포함)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현재는 가정폭력 보호시설(이주여성 포함)에 일정기간
입소후 퇴소한 경우 피해자 본인에 한해 자립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After

내년부터는 동반 아동에 대해서도 1인당 25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합니다.



늘봄학교 본격 도입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 044-203-6522, 6606)

2024년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국에 본격 도입합니다.

- '24년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 '24년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합니다.
- 대학, 기업, 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한 학생의 성장·발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교육비 경감 등 학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 늘봄학교 업무는 교원과 분리를 원칙으로 추진하여, 학생·학부모를 비롯해 교원까지 모두 만족하는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늘봄학교 본격 도입

- **추진배경**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등 자녀 양육 부담 완화로 여성 경력단절, 초저출산 문제 극복(국정과제 84-2)
- **주요내용** 초1 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 무상 지원,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 **시행일** 2024년 3월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044-203-6978/6979)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 '24. 3. 1. / 법률 제19741호, 2023.10.24., 일부개정)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합니다.
-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교육부 소식|보도·설명·반박|보도자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높이고 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추진배경** 학교폭력 가해학생 엄정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
- **주요내용**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하위법령 정비 거쳐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 의무화, 위반 시 조치 강화
 -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제도 신설 및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 **시행일** 2024년 3월 1일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 (☎ 044-203-7192)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이원화 체제로 인한 비효율과 격차 초래를 해소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합니다.

- ▣ 관리체계 일원화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 ▣ 안정적인 업무 이관과 서비스 전달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23.12.8.)에 따른 중앙부처 업무 이관을 먼저 추진하고, 지방 단위 이관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보도·설명·반박)보도자료>교육부,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로 책임 있는 유보통합 실현한다. ('23.7.28.)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 **추진배경**
 - 유보통합 쟁점들을 책임있게 조율하여,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 조기 실현되도록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이원화 체제로 인한 비효율과 격차 초래를 해소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 추진
- **주요내용**
 - (기본방향) 보건복지부, 시·도청, 시·군·구청의 영유아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 (이관범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 업무
 - (이관전략) 중앙 - 지방 순차 이관 (先중앙, 後지방) 추진
- **시행일** 2024년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 044-203-6747/6735)

학생들의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 중1을 2024년부터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을 집중 지원합니다.

-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초3, 중1 시기에 학습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하여 학습 결손을 조기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단계이며, 중1은 초등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단계로, 이 시기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벌어지기 쉬워 집중지원 필요 (23.6.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 초3, 중1 대상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년 초 개별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중점 지원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학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정규수업-방과후 연계 교과보충 및 튜터링, 방학 중 학습도약 계절학기 운영 등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 **추진배경** 최근 기초학력 미달 비율 상승 등 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 심화
- **주요내용**

 - (학력진단 강화) 초3·중1 전체 학생들이 학년 초 성취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지원
 - (체계적 학습지원) 학업성취 수준 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규수업 및 방과후 지도, AI 맞춤형 학습, 학습 관리 튜터링 연계 제공
- **시행일** 2024년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 조치 강화

교육부 교원정책과 (☎ 044-203-6487)

2024년 3월 28일부터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의 조치가 강화됩니다.

- 교권 보호 4법 개정(23.9.27.)에 따라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은 즉시 시행
-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교장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며 위반시 징계 조치합니다.
- 보호자 등의 악성 민원,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합니다.
- 출석정지 이상 조치 학생을 특별교육 의무 이수 대상으로 확대하고, 전학 조치 대상자는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전에 전학을 선행 조치합니다.
- 이에 따라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일부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적극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교육부 누리집>보도자료>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통과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 조치 강화

- **추진배경**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 학교 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 확립 추진
- **주요내용**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장 또는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은폐하는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 「형법」상 공무방해죄, 무고죄, 업무방해,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추가
 -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조치하고, 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고,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근거 마련
 -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대상 확대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
 -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권보호위원회(시·도, 지역)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 부과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 제출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실태조사의 주체를 관할청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변경,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보호조치,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 조사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
- **시행일** 2024년 3월 28일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 간 협동수업 신설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 (☎ 044-203-6935)

2024년 1월부터 대학생들이 산업체·연구기관 등에서 대학의 정규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23. 12월 ~ '24. 1월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공포 예정)

□ 대학이 학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보유한 산업체나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정규 교육과정을 해당 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협동수업' 제도*가 신설됩니다.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까지 협동수업을 통해 취득 가능

□ 이에 따라 '협동수업' 제도를 활용하는 대학의 학생들은 실제 현장에서 최신·첨단 인프라에 기반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협동수업 제도 시행

- **추진배경** 산업체·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첨단 인프라를 대학 교육에 직접 활용하여 고등교육의 현장성과 질 제고 추진
- **주요내용**
 - 대학이 산업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협동수업 제도 도입
 - 학생은 협동수업을 통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까지 취득 가능
- **시행일** 2024년 1월 예정(고등교육법 시행령 법제심사 중)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출범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사업팀 (☎ 044-215-2991)

2024년 6월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모아 학습자·교육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이 출범합니다.

-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의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데 모아 학습자에게 원스톱 경제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습자의 연령과 관심사 등에 적합한 콘텐츠를 추천하고, 학습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하도록 검색·로그인 편의를 제공합니다.
- 학교 교사·지역경제교육센터 강사 등 교육자가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 현행 경제교육포털인 경제배움e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으로 통합될 계획입니다.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출범

- **추진배경** 다양한 경제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공 및 검색 기능에 강화한 신규 플랫폼 구축
- **주요내용**
 - 정부·공공·민간의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연계
 - 시의성 높은 주제에 대한 최신 학습자료 제공
 - 개인 연령·관심사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검색 기능 강화
 - 경제교육 교사, 지역경제교육센터 강사에 대한 교수 학습자료 공유 및 소통 채널 제공
- **시행일** 2024년 6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51)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이 중위 60% 이하에서 중위 63% 이하로 상향됩니다.
-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도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됩니다.
 - 한부모가족의 2006년 7월생 자녀는 제도 개선 전 2024년 6월까지만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했으나, 제도 개선으로 12월까지 지원 가능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인상되며,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 필요
- **주요내용**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63% 이하
 - (지원연령) 만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
 - (지원금액)
 - (한부모) 월 20만 원 → 월 21만 원
 - (0~1세 자녀 양육 청소년한부모) 월 35만 원 → 월 40만 원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여성가족부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02-2100-6365)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가구 대상을 11만 가구로 늘립니다.

* 지원가구: ('23) 8.5만여 가구 → ('24) 11만여 가구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 비용 90%를 지원합니다.

< 2023년 >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비율	
		0~5세	6~12세
㉠형	75% 이하	85%	75%
㉡형	120% 이하	60%	20%
㉢형	150% 이하	15%	15%
㉣형	150% 초과	-	-

⇒

< 2024년 >

정부지원비율		
1자녀		2자녀 이상
0~5세	6~12세	
85%	75%	본인부담금10%추가지원
60%	30%	
20%	15%	
-	-	-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다문화·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대폭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추진배경**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및 양육비용 부담 경감, 시설보육의 시각지대 보완
- 주요내용**
 -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일부 확대
 - *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 ('23) 15% → ('24) 20%
 - *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 ('23) 20% → ('24) 30%
 -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0~1세) 돌봄 비용의 90% 지원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02-2100-6369)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초등 연 40만 원, 중등 연 50만 원, 고등 연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교육활동비는 주민등록소재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다문화·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대폭 확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추진배경** 지난 10년간 전체 학생 수는 649만 명에서 529만 명으로 20% 감소한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5.6만 명에서 18.1만 명으로 225% 증가하고 있으나, 동일연령대 국민과의 학력격차는 벌어지고 있어 다른 취약계층보다 두텁게 지원 필요
 - * 고등교육기관 취학을 격차: ('15) 14.8%p → ('18) 18%p → ('21) 31%p('21년 고등교육기관 국민 전체 취학을 71.5% 대비 다문화가족 자녀 40.5%)
- 주요내용**
 - 규모: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약 6만 명 교육활동비 지원
 - * 지원단가: 초등 연 40만 원, 중등 연 50만 원, 고등 연 60만 원
 - 대상: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 가구의 7세~18세 자녀
 - 신청: '24년 5~7월 중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인 후 개별 신청 (신청서류 등은 신청 시 확인)
 - 지급: 가족센터에서 대상자 선별 후 '24년 하반기 지급
- 시행일**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02-2100-6316)

고립·은둔 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고립·은둔 청소년의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 상담과 방문 학습·치유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종결 후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등으로 연계하여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를 지속 지원합니다.
- 2024년 3월부터 일부 지자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됩니다.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 **추진배경** 고립·은둔 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내용**
 - 지원 대상: 고립·은둔 학교 밖 청소년(9~19세) 및 그 가족
 - 지원 내용
 - (방문 상담) 전문 상담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자 및 청소년 상담, 고립·은둔 실태 및 기간, 개인별 수요 등 반영하여 지원계획 수립
 - (방문 학습) 개인별 학습역량 진단 및 학습계획 수립 → 방문지도도를 통해 교육 지원, 자가학습 진도 모니터링 → 검정고시, 모의고사 등 지원
 - (치유 프로그램) 고립·은둔 청소년 소모임 및 멘토링 프로그램, 힐링 글쓰기 등 마음·신체 돌봄 프로그램, 가족상담 및 부모 자조모임 등
 - (자립 지원) 교육, 진로, 직업체험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사후 관리
 - 신청 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문의(www.kdream.or.kr)
- **시행일** 2024년 3월 1일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02-2100-6275, 6278)

다양한 위기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 자살·자해를 시도하는 고위기 청소년과 부모 등 가족이 참여하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프로그램 전담인력을 신규로 배치(105명)하여, 더 많은 청소년을 대기 없이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고위기청소년 종합심리평가 사업’ 사업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합니다.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수당(월 40만 원) 지원기간을 확대(3 → 5년)하고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 (‘23년) 쉼터 퇴소 청소년 → (‘24년) 쉼터+자립지원관(사례관리 포함) 퇴소 청소년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위기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강화한다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 **추진배경**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상담1388의 정신건강 상담건수가 늘어나는 등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어,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 위기가도가 심화되지 않도록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프로그램 전담 인력 신규 배치
 - 고위기청소년 종합심리평가 사업기간 확대(6개월 → 1년)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기간 확대(3 → 5년) 및 대상자(자립지원관 청소년 추가) 확대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02-2100-6427)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 긴급주거지원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별 거주 방식으로 원룸·오피스텔 등을 지원 (최대 30일)하는 사업입니다.
- 입소자 안전 보호를 위해 주거시설 내 가정용CCTV, 112신고 연계 장비 등을 구비하여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됩니다.
* 운영기관: (‘23년) 6개소 → (‘24년) 17개소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 **추진배경**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3.7.18.)에 따라 피해자 보호·지원 필요
- **주요내용**
 - 긴급주거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 24시간 운영체계 및 안전 장비 구축
- **시행일** 2024년 하반기 전국 확대 실시

가정폭력 보호시설(이주여성 포함)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트킹방지와 (☎ 02-2100-6424)
여성가족부 권익구조과 (☎ 02-2100-6455)

가정폭력 피해자(이주여성 포함) 및 피해아동 자원 강화를 위하여 '퇴소자 자립지원금'을 동반아동에게도 추가 지원합니다.

■ 현재는 가정폭력 보호시설(이주여성 포함)에 일정기간 입소후 퇴소한 경우 피해자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피해자 본인에 한해 5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용 용도: 주거마련(보증금, 월세), 생활,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

■ 내년부터는 원가정으로 복귀가 어렵고 동반아동이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일상생활로의 조기회복과 건강한 자녀양육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동반 아동에 대해서도 아동 1인당 250만 원씩 추가로 지원 됩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이주여성 포함)
동반아동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 추진배경 피해자 자립지원을 위해 동반아동 자립지원금 신설
- 주요내용
 - (변경 전) 피해자 본인 기준 1인당 5백만 원(동반아동 포함) 지원
 - (변경 후)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여성가족부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통합운영(온가족보듬사업)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02-2100-6329)

1인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상담 및 지원 서비스가 통합되어 전국 가족센터에서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일부 가족센터에서 대상별로 가족서비스를 지원함에 따라 지역별 서비스 편차와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 2024년부터는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온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하여 전국 가족센터에서 상담, 사례관리,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아우르는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명('23)	센터수(개소)	사업명('24)	사업내용
가족희망드림지원	98	취약·위기 가족 통합 지원 (온가족 보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생애주기별 다양한 갈등상황을 경험 중인 가족에 대한 상담 • 사례관리: 서비스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제공 및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등 자원 연계 •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부모·양육교육,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원가정 회복지원 및 면접교섭 프로그램 등 • 긴급위기지원: 긴급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심리·정서, 돌봄지원
가족상담전문인력	183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36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173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20		
원가정 회복지원사업	14		
면접교섭 서비스	18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통합운영 (온가족보듬사업)

- **추진배경** 가족 대상별로 일부 가족센터에서 지원하던 사업을 통합하여 사각지대 없이 지원
- **주요내용** 가족전문 상담, 가족희망드림,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원가정회복지원, 면접교섭 서비스를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온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하여 전국 가족센터에서 제공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51)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 학업 등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 필요
- **주요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63% 이하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25만 원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4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을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시설유형을 가족형태에서 입소 자녀의 연령과 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 안정적인 주거와 자립 준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하고, 연장사유도 폭넓게 인정합니다.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도 강화합니다.

- 매입임대 운영호수를 266호에서 306호로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액을 9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한부모시설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 **추진배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와 자립 준비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개편 및 입소기간 연장
 - (유형개편) 모자·부자·미혼모자가족 등 9종 → 출산·양육·생활·일시지원 4종
 - (입소기간) 유형별 상이, 최소 6월~최장 3년 → 최소 6월~최장 5년
 -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 ('23) 266호, 보증금 9백만 원 → ('24) 306호, 보증금 1천만 원
- **시행일** 2023년 10월 12일(매입임대 주거지원: 2024년 1월 1일)

아이돌보미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 개편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관리체계개선TF (☎ 02-2100-6247)

2024년부터 아이돌보미 인력풀 확보를 위해 공공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체계를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하고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교육대상에 민간까지 포함할 예정입니다.

- 공공·민간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교육생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형 수업방식(토론, 역할시연 등)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합니다.

아이돌보미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 개편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인력을 양성하여 아이돌봄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 내용은 2024년부터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에서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더 빠르고 편리하게

아이돌보미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 개편

- **추진배경** 아이돌봄 인력풀 및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아이돌봄 인력 양성체계 전면 개편 필요
- **주요내용** 아이돌보미 양성체계를 선 교육, 후 채용으로 변경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민간까지 교육 대상에 포함
- **시행일** 2024년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02-2100-6374)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를 모집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새일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 지역 훈련기관, 지역 대학 등 다양한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해 결혼이민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적합·유망 직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 훈련을 실시합니다.

■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주지 인근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다문화가족 더 촘촘하게 지원한다

결혼이민자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사업 운영

- **추진배경** 다문화가구원 115만 명 중 결혼이민자 귀화자 인구는 40여만 명에 이르며, 국내 정착 주기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필요
- **주요내용**
 - 규모: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0개소(직업훈련기관과 연계)
 - 지원내용·방법
 - (사전교육: 가족센터) 사전 직업 소양교육, 전문 한국어 교육 실시
 - (직업훈련: 훈련기관)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개발·운영
 - (사후관리: 가족센터 등) 취업연계 및 취업유지 현황 파악 등
 -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 신청: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센터에 개별 신청 (신청서류 등은 신청 시 확인)
- **시행일**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신규 실시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02-2100-6319, 6317)

진로·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가 신규 실시됩니다.

■ 맞춤형 직업훈련, 인턴십, 직장체험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이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직업훈련 510명, 인턴십·직장체험 340명 총 850명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는 2024년 1월부터 16개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 **추진배경** 진로·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
- **주요내용**
 - 지원 대상: 학교 밖 청소년(15~24세)
 - 지원 내용
 - (직업훈련 지원) 학교 밖 청소년 희망 직업훈련*을 정부 인증 직업훈련과정 등과 연계하여 훈련 지원
 - *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 컴퓨터 전문기술 훈련 등 희망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강 지원
 - (인턴십 지원)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후 실제 현장에서 일 경험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지역 기업* 연계를 통해 인턴십 제공
 - * 자동차, 조리사, 헤어미용사, 카페 바리스타, 제과기능사 등 일 경험 지원
 - (취업연계 지원)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대상 생활습관개선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 연계 지원
 - * 생활습관 개선, 직장예절, 참여 청소년의 중도포기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등
 - 신청 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문의(www.kdream.or.kr)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의무 위반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 02-2100-6392)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체계가 강화됩니다.

▣ 국가기관 등*의 장이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공직유관단체 등

▣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3.4월)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의무 어기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23.3.30.)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 **추진배경**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및 공공부문 성폭력사건 대응 강화
- **주요내용**
 - 공공부문 기관 내 성폭력 사건 통보의무 등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 기관장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 단축(3개월 → 1개월)
- **시행일** 2024년 4월 19일

해바라기센터 2개소 확충 및 영상증인신문 인력 배치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와 (☎ 02-2100-6398)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를 확충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365일 24시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 현재 해바라기센터는 전국에 39개소가 운영 중으로, 2024년까지 2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 * 충남 1개소(상반기), 전남 1개소(하반기) 개소 예정
-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올해 25개 센터에 인력을 배치한데 이어, 2024년에는 13개 센터를 추가 확대하여 배치할 예정입니다.
 - *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출석으로 인한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원이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

해바라기센터 신규 확충 및 영상증인신문 인력 배치

- 추진배경 성폭력 등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해바라기센터 기능 강화
- 주요내용
 - 신규 해바라기센터 2개소 확충 예정
 - 영상증인신문 사업 전담인력 13개 센터(각 1명) 추가 배치(총 38개 센터)
- 시행일 2024년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기반 강화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 02-2100-6306)

복합피해 등 개별 지원기관에서 대응하기 어려웠던 고난도 사례에 대해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사업을 확대 실시(2개소 → 5개소)합니다.

■ 여성긴급전화1366 중심 「통합솔루션지원단」을 시범운영*하여 광역단위 지역 자원을 연계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부산·경기1366센터 2개소('23.4.~)

■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솔루션지원단」 운영 기관을 2024년 5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 **주요내용** 통합사례관리 제공, 광역단위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및 중대 사건 총괄 등
 - (목적) 신종범죄, 복합피해 등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별 지원 인프라 격차 해소
 - (추진체계) 중앙 기능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광역기능은 1366센터에서 수행



- (지원사례) (가정폭력, 성폭력 복합 피해자)
 - ① 긴급보호지원(1개월), 무료 의료·법률 동시 지원, ② 가족 분리,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지원, ④ 사후 모니터링
- **시행일** 2024년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100-6204)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급변하는 산업·노동시장에 대응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기술 및 숙련수준 제고를 위한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이 확대됩니다.

▣ 신기술·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AI·SW·바이오·반도체 등) 과정* 확대로 경력단절여성 등이 전문성을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 ('21년) 59개 → ('22년) 66개 → ('23년) 74개 → ('24년) 79개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

- 추진배경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과정 개편 필요
- 주요내용 미래유망직종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AI·SW·바이오·반도체 등) 확대를 통한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양질의 일자리 연계
- 시행일 2024년 1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3

보건·복지·고용



1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8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꾸준히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신청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지원기준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162만1천 원

2023년 주거급여	
신청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
기준임대료	급지·가구별 16만 4천 원~ 62만 6천 원 수준

2023년 교육급여	
교육활동 지원비	초 41만 5천 원 중 58만 9천 원 고 65만 4천 원

After

약자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이 대폭 확대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신청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지원기준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183만 4천 원 (+21만 3천 원)

2024년 주거급여	
신청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기준임대료	급지·가구별 17만 8천 원~ 64만 6천 원 수준(+1만 1천 원~2만 7천 원)

2024년 교육급여	
교육활동 지원비	초 46만 1천 원 중 65만 4천 원 고 72만 7천 원

2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88

2024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 109 운영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그동안 자살예방, 정신건강, 청소년 등 상담·신고 번호가 분산되어 안내되었습니다.



After

이제는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가 기억하기도 쉽고 긴급성을 담은 '109'로 바꿉니다.



3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89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지금까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 0세반 정원 3명, 현원 2명 가정 >

(원칙) 현원 아동당 지원

부모보육료 2명분 + 기관보육료 2명분 지원

After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0~2세반)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가 시행됩니다.



< 0세반 정원 3명, 현원 2명 가정 >

(원칙) 현원 아동당 지원

(추가) 영아반 인센티브 도입

부모보육료 2명분 + 기관보육료 2명분
+ 인센티브(기관보육료) 1명분

4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0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공사예정금액 공공 50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After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5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03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부담 완화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종전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인상된 보험료율이 적용되었습니다.



After

앞으로는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6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04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기존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200 ~ 300만 원



After

앞으로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200 ~ 450만 원



7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05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잠정)

Before

그동안 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는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안전보건조정자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

After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

8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0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그동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에는 다소 제약이 있었습니다.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현도를 구입



· 임대비의 20%

Aft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확대되고
공사종류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방식으로 개편됩니다.



CPR(심폐소생술)
교육비 인정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 인정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현도를 구입

· 임대비의 40%로 확대

9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07

안전동행 지원사업

시행일: 2024년 1월

Before

'21년부터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명	안전투자 혁신사업
사업기간	'21년 ~ '23년(3년간)
지원조건	소요비용의 50% (최대 7천만 원~1억 원)
지원대상	(위험기계 교체)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노후 안전검사기계 6종 (위험공정 개선) 부리산업, 제조업 기업·추락 고위험 3대 업종

After

안전투자혁신사업을 위험공정 개선 중심의
안전동행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지원합니다.

사업명	안전동행 지원사업
사업기간	'24년 ~ '29년(6년간)
지원조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 소요비용의 50%(최대 1억 원)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 소요비용의 40%(최대 8천만 원)
지원대상	(대·중소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 제조업 중 부리공정,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등을 통해 지원받는 사외 하청사업장

10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08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시행일: 2023년 11월 14일

Before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이 건축법령과
상이하여 두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법령	작업장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까지 수평거리 50m 이하
건축법령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까지 보행거리 30m 이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 보행거리 50m 이하
	자동화 생산시설+자동식 소화설비+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장 보행거리 75m 이하
	무인화 공장 보행거리 100m 이하

After

앞으로는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1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140

세계 최초 한국 주도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 회의 한국 개최

시행일: 2024년 5월

우리나라 주도의 최초
아·태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출범

아프라스

식품 안전 분야 국제협력

(연대 강화, 수출지원) 한국과 교역량이 많은 외국
규제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규제장벽 이슈 발생 시 신속한 해소,
글로벌 스탠다드 주도 등을 통해 수출지원



세계 최초 한국 주도 식품규제기관장협의체
'아프라스' 회의 한국에서 개최합니다.

- 세계 최초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의 초대 의장국으로 한국이 선출되어 내년 5월 서울에서 각국의 규제기관장들이 참석하는 '아프라스' 회의를 개최합니다.

12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141

마약류 상담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본격 운영

시행일: 2024년 1월

Before

마약류 예방·재활을 위해 마약류 상담을 전담하는
하는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23.9.27.부터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After

시간·공간적 제약없이 마약류 예방·재활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합니다.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본격운영

13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142

청소년 취약계층 등 마약류 예방교육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청소년·취약계층 등 전문강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예방교육이 확대됩니다.

마약과 끝낼 신호, SOS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143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품목갱신 시행

접수시작일: 2024년 5월

의료기기 품목갱신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 의료기기 업체는 제품별로 지정된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4)

2024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4인 가구) 인상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2%p 상향(기준 중위 30% → 32%)

■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023년 월 최대 162만 1천 원에서 월 21만 3천 원 인상된 2024년 월 최대 183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 4인 가구 월 21만 3천 원 인상은 지난 정부 5년 간 인상한 19만 6천 원보다 높은 수준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 → 48%로 상향하고, 기준임대료를 급지·가구별 1.1 ~ 2.7만 원(3.2 ~ 8.7%) 인상합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천 원, 중학교 65만 4천 원, 고등학교 72만 7천 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 약 10만 명, 주거급여 약 11만 명이 새롭게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4인가구 기준)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 **추진배경** 약자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강화
- **주요내용**
 - (생계급여) 2024년 지원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 가구) 인상 - 4인 가구 월 최대 183만 4천 원 수급 가능
 -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기준 중위 47% → 48%), 기준임대료 인상 (급지·가구별 1.1~2.7만 원)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2024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 109 운영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044-202-3899, 3898)

자살예방 상담번호 1393이 '기억하기도 쉽고 긴급성을 담은 3자리 번호 109'로 바뀝니다.

※ 109는 '① 한 명의 생명도, ② 자살 zero, ③ 구하자'라는 의미

- ▣ 그 동안 자살예방(1393), 정신건강(1577-0199), 청소년(1388) 등 분산되어 안내되던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은 2024년 1월 1일부터 109에서 모두 전담하여 수행합니다.
- ▣ 이제 누구나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을 때, 365일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통해 자살예방을 위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와 함께 청년층에 익숙한 SNS 상담 역시 2024년 중 도입될 계획입니다.
- ▣ '109' 운영을 위한 시스템 준비와 상담 인력 확충을 통해 상담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국민통합위원회·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보도자료)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관련 보도자료

자살예방 상담번호 통합 개편

- **추진배경**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상황에서 기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의 낮은 인지도와 상담사 부족 등으로, 다수의 상담번호를 함께 안내해야 하는 문제점 개선
- **주요내용** 3자리로 기억하기 쉽고, 119(화재 등 재난 신고)와 같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 상황'이라는 인식을 담은 전화번호 109로 자살예방상담전화 통합 개편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62)

2024년 1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0~2세반)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가 시행됩니다.

- 아동 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받는 어린이집 영아반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 저출산에 따라 어린이집 영아반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저출산 대책의 핵심인 영아반 보육 인프라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 추진배경 현원 아동당 지원하는 현 보육료 지원체계 상, 0세반 정원(3명) 대비 1명이 부족한 2명 재원 시,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보육교사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여 운영상 어려움 발생
- 주요내용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4, 3095)

2024년 1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합니다.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여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 * 단,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미지원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금지기준을 개편하고,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여 재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합니다.
 - *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1.02 ~ 2.28억 원
 - 4급지(서울/경기/광역·청원·세종/기타), 1.95 ~ 3.64억 원 (서울 기준 59.7% ↑)

이를 통해 약 5만 명이 의료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추진배경: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요건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강화 필요
- 주요내용:
 -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금지기준 개편 및 공제액 상향 조정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 전·후 비교〉

(단위: 만 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현행	22,800	13,600	10,150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청원	기타
개편	36,400	29,400	28,300	19,500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4)

2024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 다인(6인 이상), 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 * 자동차재산 환산율은 100% 적용 중
-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재 50% 산정)하고, 기준을 완화(승용차 1,600cc 미만 → 2,000cc 미만)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추진배경**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탈락하는 사례 개선 필요
- **주요내용**
 - 다인·다자녀 수급가구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기준을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서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
 -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준 완화
 - 승용차 1,600cc 미만 → 2,000cc 미만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 044-202-2667/2668)

보건복지부는 2023년 9월 4일(월)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은 2023년 9월분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하여 진료비용 등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였습니다.(’23.10.16.~12.15.)
- 2024년부터는 비급여 보고 의무가 의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며, 보고대상 항목도 1,017개* 이상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 * 급여화, 급여기준 변경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3월분 진료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보고
- 보고받은 자료는 건강보험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비급여 정보를 확대 제공하며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23.9.5.)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시행

- **추진배경** 비급여 현황 파악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강화
- **주요내용**
 - (보고대상) 1,017개* 이상 비급여 항목
 - * 급여화, 급여기준 변경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상기관) 전체 의료기관
 - (보고횟수) 병원급 연 2회, 의원급 연 1회
 - (대상기간) 병원급 3·9월 진료내역, 의원급 3월 진료내역(각 1개월분)
 - (보고내역)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진료내역
 - (보고방식) 보고항목만 추출하여 시스템에 업로드
- **시행일** 2023년 9월 4일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71)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 2024년 1월부터 0세 아동은 매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매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 ('23) 0세 매월 70만 원, 1세 매월 35만 원('22년 출생아부터 적용)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가 상기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더 클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
- 신청은 온라인(① 복지포털(www.bokjiro.go.kr) ② 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미정) 부모급여 지원 확대

부모급여 지원사업

- **추진배경**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 **주요내용**
 - (지원대상) 0~1세 아동
 - (지원금액)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23)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22년 출생아부터 적용)
 - (지급방식) 현금 또는 바우처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산정방식 개선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 044-202-2664)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산정방식 개선

- **추진배경** 재난적의료비 총액 산정방식 변경을 통한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개선
- **주요내용**
 - (현행) 동일 질환에 한정하여 총액을 산정함에 따라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하여 지원 불가한 경우 발생
 -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60만 원, 50% 초과~100%이하 연 소득 10%, 100%초과~200%이하 연 소득 20%
 - (개선) 환자 1인당 발생하는 모든 질환에 대하여 의료비를 합산*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의료비 지원보장 강화
 -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방식과 동일

현 행	개선(안)
◆ 만성신부전증이 있는 사람이 암에 걸린 경우, ▲ 만성신부전증 의료비, ▲ 암질환 의료비 각각 산정	◆ 만성신부전증 + 암질환 의료비 전체 합산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8)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을 인상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의 합계액 2억4천1백만 원 이하(대도시), 금융재산 600만 원(생활준비금 공제 후) 이하
-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3.16% 인상(4인가구 기준)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기준은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높은 수준의 지원을 실시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 추진배경 위기상황에 처한 생계곤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생계지원금 인상
 - (현행) 1인가구 623,300원, 4인가구 1,620,200원
 - (변경) 1인가구 713,100원, 4인가구 1,833,500원
 - 소득기준 완화
 - (현행) 1인가구 1,558,419원, 4인가구 4,050,723원
 - (변경) 1인가구 1,671,334원, 4인가구 4,297,434원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044-202-3393, 3394)

2024년부터 고위험 임신부*의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을 확대합니다.

*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다둥이 임신,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전 출혈 등 19대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임신부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현재 1년 4개월)을 2년으로 확대하고, 2년 후라도 의사 소견 시 예외기간을 인정하여 지원합니다.

*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선천성 이상아 500만 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 ~ 1,000만 원 한도 지원)

고위험 임신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 추진배경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위해 임신·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주요내용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등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044-202-3397)

출생 초기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2024년부터는 다자녀 가구 출생아에게 확대 지원됩니다.

- 첫째아에게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에게는 3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출생 초기 양육비용을 두텁게 지원하고 둘째아 이상 출산을 장려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개요

- **추진배경** 출생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통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가 책임 강화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4.1.1일 이후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원
 - (신청권자)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방식)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지급)
 - (사용처) 유흥업소·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 (사용기한)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폐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044-202-3396, 3403)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여 더욱 촘촘히 지원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여 2024년 1월부터 거주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한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최대 1백만 원, 총 2회)을 2024년 4월(예정)부터 지원하고,
- ▣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신 준비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2024년 4월(예정)부터 지원합니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여성 10만 원(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초음파), 남성 5만 원 (정액 검사), 2024년 부부 8만 2천쌍(60개 지자체)에게 검진비를 지원하고,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폐지

- 추진배경 임신·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주요내용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 (既 시행) 서울·부산·대구·인천·세종·경기·전남·경북·경남
 - ('24년 시행예정) 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제주
- 시행일 2024년 1월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044-202-3877)

우울·불안 등 마음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 누구나 도움받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사업을 실시합니다.

- 2024년에는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자, 자살 고위험군 등 정신건강 위험군 8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동 사업은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더 많은 국민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

- 추진배경**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예방·조기발견
- 주요내용**
 - (2024년 지원대상) 정신건강 위험군* 8만 명
 - *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로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자, 자살고위험군 등
 - (지원방식)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지급
 - (지원내용)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회당 5-60분씩 평균 8회 예정)
 - ※ 추후 변경 가능
 - (제공인력) 전문심리상담 제공 가능인력
- 시행일** 2024년 하반기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044-202-3703, 3706)

온라인을 통해 위기징후 청년 누구나 간편하게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이 가능해집니다.(‘24.7월)

■ 129콜을 통해 가족 등 주변에서도 도움요청이 가능합니다.(‘24.7월)

■ 초기상담을 거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24.4월)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비고
초기상담	• 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상담 등) 등 마음건강	자가진단
일상회복	• 일상생활 회복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 은둔자 주축 참여한 SNS '일상생활 챌린지' 등 * 신체/예술/놀이활동/3끼식사 등 * 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	관계형성
	• 공동생활 홈(Home) (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은둔특화
가족 대인 관계 회복	•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부모참여
	• 당사자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 관리 * 탈고립·은둔 성공경험 청년, 민간 자원봉사자 등 구성원 서포터즈 구성	대인접촉 소통기술
일 경험	•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등 연계 * 자조모임,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각종 청년정책(일경험 등) 지원 연계	사회복귀 시도

■ 실태조사 결과 공식 도움을 요청한 1,903명에 대한 우선 지원을 실시합니다.(‘24.4월)

■ 가족안전망이 취약한 자립준비청년 중 고립·은둔 고위험군 지원을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 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우선 지원합니다.(‘24년 계속)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 **추진배경**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 및 사회 재진입을 위해 예방부터 발굴-지원-사후관리 등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
- **주요내용** 4개 지역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전담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총 32명) 하여 초기상담, 일상생활 및 사회관계 회복 등 고립 정도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시행일** 2024년 4월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 차수별 분리 징수 및 현실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8)

2024년도 관세사 시험응시부터 1차·2차 차수별로 3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차수별 일부 환불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 ▣ (응시수수료) 1차·2차 시험 통합 2만 원 → 차수별 3만 원
- ▣ (일부환불) 시험 접수 취소시, 1차 시험 시행 20일 전 60%, 10일 전 50% 환불
→ 차수별 시험 시행 20일 전 60%, 10일 전 50% 환불

참고 자격시험 제도의 적정 운영을 위한 자원 확보 및 제도 개선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 차수별 분리 징수 및 현실화

- 추진배경 자격시험 제도의 적정 운영을 위한 자원 확보 및 제도 개선
- 주요내용 ① 1차·2차 차수별 3만 원 납부
② 1차·2차별 시험 시행 20일 전 60%, 10일 전 50% 일부환불
- 시행일 2023년 12월 1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044-202-7419)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3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을 대신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법령 검색)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 추진배경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한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

- 주요내용

구분	'23년까지	'24.1.1.부터
공공	50억 원 이상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민간	100억 원 이상	

* (적용례)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른 적용일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로 하지않는 경우 도급계약 체결일)하는 건설공사

- 3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부담 완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73)

2024년 1월 1일부터는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사업주 전액 부담)

- 150명 미만 : 1만분의 25
- 150명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1만분의 45
-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 1만분의 65
- 1천명 이상 : 1만분의 85

-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되었으나,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 고용증가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주가 변화된 경영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 추진배경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고용증가로 다음 요율 적용 시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주요내용 기업의 고용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 등이 증가하여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그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함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12)

20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 개편내용: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적용기간) 첫 3개월 →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 ~ 300만 원 → 월 최대 200 ~ 450만 원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사용기간별 최대지급액(예시)〉

구분	父 1개월	父 3개월	父 6개월
母 1개월	父: 200 母: 200	父: 500(200+150+150) 母: 200	父: 950(200+150+150+150+150) 母: 200
母 3개월	父: 200 母: 500(200+150+150)	父: 750(200+250+300) 母: 750(200+250+300)	父: 1,200(200+250+300+150+150+150) 母: 750(200+250+300)
母 6개월	父: 200 母: 950(200+150+150+150+150+150)	父: 750(200+250+300) 母: 1,200(200+250+300+150+150+150)	父: 1,950(200+250+300+350+400+450) 母: 1,950(200+250+300+350+400+450)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추진배경** 생후 18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육아휴직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 지원

* 월 상한액은 매월 인상하여 지급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36)

건설안전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 그간 산업안전분야 기사·산업기사 자격자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안전보건조정자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개정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 **추진배경** 안전보건조정자 자격기준 확대
- **주요내용** 건설안전분야 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지정 자격에 추가
- **시행일** 2024년 1월 1일(잠정)
* 개정령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3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확대되고 공사종류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방식으로 개편됩니다.

-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제한되었던 ①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 ②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를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단, 공사종류는 7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검색>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

- **추진배경**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 **주요내용**
 - (사용품목 확대) ①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 인정 ②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
 - (공사종류 개편)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개편
- **시행일** 2024년 1월 1일(단, 공사종류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안전동행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044-202-8851)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024년부터 위험공정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추진합니다.

*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위험기계교체 지원은 종료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및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은 개선 비용의 50%를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금속제련업

- 또한,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사외 하청 사업장으로써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 등은 개선비용의 40%를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참고 안전동행지원사업 홈페이지(<http://anto.kosha.or.kr>)>사업안내>사업공고

안전동행 지원사업 추진

- **추진배경** 산업안전분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한시사업인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위험공정 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지원
- **주요내용**
 - 대·중소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 (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소기업' 기준 제조업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
 - (지원) 소요금액의 50%(최대 1억 원)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중소기업' 기준 해당 사외하청 사업장으로써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지원) 소요금액의 40%(최대 8천만 원)
- **시행일** 2024년 1월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044-202-8852)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평거리 50m 이하 건축법 준수시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23.11.14.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까지 보행거리 30m 이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 보행거리 50m 이하 자동화 생산시설+자동식 소화설비+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장: 보행거리 75m 이하 무인화 공장: 보행거리 100m 이하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최근 제·개정 법령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 추진배경** 반도체 업계 등의 규제개선 요구
- 주요내용**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시행일** 2023년 11월 14일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044-202-7419)

2024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23. 10. 31. 개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 건설근로자법령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건설공사 포함)의 사업주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 또는 이용조치 해야 합니다.

* 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정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기준	2024년 2월 1일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추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 또는 이용조치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내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 **추진배경** 건설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 **주요내용**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 기존의 화장실 설치기준에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추가
- **시행일** 2024년 2월 1일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044-202-7222)

2024년 1월부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지원합니다.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 지원(3개월 단위, 1년간)
 -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 지원)
- 기간,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 ※ 주 35시간 이상에서 15~30시간 이내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시 월 최대 50만 원 지원
- 2024년부터는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기타 2024년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예정)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추진배경**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연장+소정근로)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 **주요내용**
 - (지원요건)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 (단축 전 3개월 주 평균 실근로시간) - (단축 후 3개월간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지원 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간, 3개월 단위
 - (지원액)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최대 100명)
- **시행일** 2024년 1월 1일(예정)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44-202-7350)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2024년부터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23년 기준, 260만 원 미만)을 완화하여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지원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 **추진배경** 두텁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지원기준) 소규모사업(근로자 10인 미만)의 저임금(월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 *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종사자 부담분은 지원
 - (지원수준)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의 80%
 -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변경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044-202-719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구분		가구단위 소득	가구단위 재산	취업경험	지원내용	
I 유형	요건심사형 *요건 해당시 의무 지원	중위소득 60% ↓	4억 원 ↓ (청년: 5억 원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 원, 6개월)	
	선발형 *예산 상환에 따라 선별	비경활		중위소득 60%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중위소득 120% ↓		무관
II 유형		중위소득 100% ↓ (청년: 소득 무관)	무관	무관	취업지원 + 취업활동비용 (예: 훈련참여수당 월 28.4만 원, 6개월)	

- 2024년 2월 9일부터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이 15세부터 34세+병역의무 복무기간(최대 3년)으로 확대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1인 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 원) 내에서 소득이 발생 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탐색,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참고 지원요건 등 상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청년 연령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변경

- 추진배경** 청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소득활동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 촉진
- 주요내용**
 - (청년 연령범위 확대) 18~34세에서 15~34세+@(병역의무기간 포함)로 확대
 - (소득활동 인정범위 확대) 1인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 원)까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 시행일** 2024년 2월 9일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97)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활용 지원을 확대·강화합니다.

- 유연근무 활용 기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택·원격근무 컨설팅'을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 인프라 구축비 지원도 '재택·원격근무'에서 '선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정보보안시스템+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의 50%(2천만 원 한도)
 - * 선택·시차출퇴근 인프라(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의 70%, 연 250만 원 기준(3년) 지원
- 재택·원격·선택근무 장려금에 있어서도 소규모 사업장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을 신규 유형으로 추가하여 지원합니다.
 - *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1년간) 사업주 지원
 - * 소규모 사업장 육아기 시차: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 원(1년간) 사업주 지원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관련 사업장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재택·원격근무 컨설팅'을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으로 기능 강화
 -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재택·원격근무에서 선택근무·시차출퇴근 활용을 위한 근태관리시스템까지 확대
 - 소규모 사업장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에 대해 유연근무 장려금 신규 지원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2024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가 완화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27조 개정)

■ 기존에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연 2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 1회로 축소하여 사업주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기존) 매년 1월 31일, 7월 31일까지 연 2회 제출 → (개정) 매년 1월 31일까지 연 1회 제출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 **추진배경**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

• **주요내용**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횟수 축소(연 2회 → 연 1회)

구분	기존	개편 후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 '해당 연도 고용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	전년 동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	(삭제)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9)

저출산 등으로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 수요 감소와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신설합니다.

- (지원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 임대인과 임차인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 경우 제외
- (지원기준) 인가받은 직장어린이집 건물의 임차비로 연간 실제 소요된 월세 투자비용의 80% (임차보증금 제외)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 **추진배경**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신설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제3자의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 (지원기준) 인가받은 직장어린이집 건물의 임차비로 연간 실제 소요된 월세 투자비용의 80%(임차보증금 제외)
- **시행일** 2024년 1월 (예정)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53)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청년들을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합니다.

- '23.10.1.~'24.9.30 기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신설

- 추진배경 빈일자리 업종 사업장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와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
- 주요내용 '23.10.1.~'24.9.30. 기간 ① 빈일자리 업종의 ②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③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 지급
 - ①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
 - ③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 중이 아닌 자
- 시행일 2024년 1월 22일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044-202-7277)

2024년 다문화 청년 200명 대상의 폴리텍 직업훈련과정을 새롭게 운영합니다.

- 전국 다문화가구 거주지역 분포와 직업훈련 수요를 고려하여 2024년 운영 캠퍼스와 학과를 선정하고,
- 산업현장형 기술교육과 한국어, 직장문화 등 다문화 청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모집 캠퍼스 및 학과, 일정 등의 신입생 모집 계획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폴리텍, 다문화 자녀 기술교육 이끈다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 **추진배경** 학업과 구직, 취업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 청년을 위한 특화 직업훈련 신설 및 2024년 시범운영
- **주요내용**
 - (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200명
* 만 18~24세 청년을 주 대상으로 하되, 훈련 수요에 따라 연령범위 확대 검토
 - (주관기관) 한국폴리텍대학
 - (훈련수준 및 기간) NCS 레벨 2~4 수준(기존 '전문기술과정'과 동일), 6개월
 - (훈련내용) 전공과목, 한국어, 직장문화 적응, 진로상담 등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044-202-7290)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 지원 등을 위해 청년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 ▣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합니다.
- ▣ 2024년 신규사업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을 대상으로 1인당 年 3회 한도로 지원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 **추진배경**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응시료를 지원
- **주요내용**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
 - * 지원금 소진 시까지, 1인당 年 총 3회 지원으로 제한
 - * 10개 국가기술자격 시험 시행기관 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에 대해 지원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 2년 시범사업(예정)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11)

디지털 신기술 분야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분야와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기존 디지털 분야 중심의 훈련에서 첨단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21대* 신기술 분야로 훈련 분야가 대폭 확대되며,
 - * 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5G6G, 일반SW,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이차전지, 차세대디스플레이, 3D프린팅, 첨단소재, 반도체, 나노, 로봇, 드론, 바이오헬스, 에코업, 신재생에너지, 수소
 - 첨단산업·디지털 신기술과 융합하는 융·복합 분야 및 수요가 있음에도 훈련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공급 부족 분야까지 훈련을 지원합니다.
- 그간의 훈련이 구직자 중심이었다면, 직무역량 향상을 원하는 재직자들에게 특화된 '재직자 도약 과정'을 새롭게 운영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 규정 일부개정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훈련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제도개선 추진
- 주요내용
 - (훈련분야 확대) 기존 디지털 중심 → + 첨단산업 + 융·복합 + 기타 훈련 공급 부족 분야
 - (지원대상 확대) 기존 구직자 중심 → + 재직자
- 시행일 2024년 1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18)

2024년 1월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 ▣ 기존에는 연매출(수입금액) 1.5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지만,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매출(수입금액) 4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합니다.

- ▣ 또한,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지만,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특수고용형태종사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영세 자영업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 제공
- **주요내용** 자영업자는 연매출(수입금액)을 4억 원 미만으로,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을 500만 원 미만으로 제한 기준 상향 조정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13)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돌봄서비스 분야(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아이돌봄 인력 양성과정)는 훈련된 인력이 현장인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합니다.

▣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은 전액 환급과정으로 운영됩니다.

-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훈련받은 분야와 동일한 직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자비 부담 비율에 따라 선 부담한 훈련비를 환급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돌봄서비스 훈련 분야에 전면 적용됩니다.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 추진배경 저출생·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아이돌봄 및 노인돌봄으로 대표되는 돌봄 서비스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분야별 인력수요전망, 직무 역량 등을 조사하여 적정수준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훈련 신설
- 주요내용
 - 훈련비 지원
 - (지원 훈련과정)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
 - (선 부담 훈련비 환급) 돌봄서비스 분야 훈련에 참여하고,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선 부담한 훈련비 환급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설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044-202-7278)

대기업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우수한 중장기 훈련프로그램을 공유·개방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를 2024년부터 신규 도입합니다.

- 대기업은 자사근로자 중심으로 운영하던 우수 훈련프로그램을 협력업체, 동종업계 중소기업 등 근로자에게 개방하고,
- 훈련수료생에 대한 역량평가·인증체계를 병행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체계적인 역량개발을 지원합니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설

- **추진배경** 대기업-협력사가 수직적 계열을 이루는 산업계 특성상, 중소기업 역량강화가 곧 산업경쟁력으로 직결되므로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체계적인 직업훈련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운영기관) 우수한 훈련프로그램을 보유한 대기업(대학 위탁 운영 가능)
 - (훈련대상) 중소기업 등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 (지원내용) 훈련운영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도입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044-202-7224)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지원하는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합니다.

- 구직자는 '사전이론교육' 과정을 통해 원하는 분야·기업에 대한 탐색과 기초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고,
- 기업은 기초교육 과정을 이수한 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어 구인난 해소, 숙련기간 단축, 훈련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 일학습병행제 신설

- **추진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과 산업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13년 일학습병행 도입하여 운영중이나, 재직자의 직무향상 훈련 위주('14년~현재까지 재직자 비율 72%) 운영으로 청년의 조기입직 촉진 기능 약화,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의 조기입직 기능 강화 도모
- **주요내용**
 - (운영기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일학습병행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기능대학, 산업교육기관 등)
 - (훈련대상) 미취업 청년 구직자
 - (지원내용) 사전이론교육(직무관련 기초교육 등), 훈련비(이론교육+현장 훈련), (필요 시) 직장적응 서비스
- **시행일** 2024년 1월(예정)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044-202-7278)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내 비전문 외국인력(E-9) 근로자에게 직무·언어·문화 교육을 제공하는 'E-9 특화훈련'을 2024년부터 본격 확대합니다.

- 외국인력 입국 초기에 3주 이상의 직무·언어·문화 교육을 종합 제공하여 사업장 조기적응 및 장기근속을 도모합니다.
- 2023년에는 조선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으로, 2024년부터 뿌리산업 등 타업종으로 확대하여 총 4,000명의 외국인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 **추진배경**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하여 비전문 외국인력(E-9) 도입 규모 대폭 확대
→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훈련 필요

- **주요내용**
- (운영기관) 대기업 등 공동훈련센터
 - (훈련대상) 비전문 외국인력(E-9)
 - (훈련내용) 직무+언어+문화 교육

① 직무 훈련	② 한국어교육	③ 문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 조선사별 ▶ 여건·수요 반영한 표준화된 직무훈련 • (산업안전) 산업별 안전보건교육 통한 사업장 안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활한 훈련 수강 및 생활 영위) 업무 수행과 실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회화 교육 및 원격훈련 콘텐츠 등 통해 언어 장벽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적응) 한국 문화 교육 및 한국 근로자 교류 활동 등 • (장기 정착화) 조선업 등 산업별 비전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심리상담 등
총훈련시간의 70% 이상	총합하여 훈련시간의 30% 이하	

- (지원내용) 훈련운영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 **시행일** 2024년 1월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970)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 비율	상여금	25%	20%	15%	10%	5%	0%
	복리후생비	7%	5%	3%	2%	1%	0%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 **추진배경**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4년 최저임금 시행
- **주요내용**
 - 2024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9,860원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전부 산입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0)

30인 이하 사업장 재직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든든하게 보장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 첫째, 그동안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던 재정지원금*이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 사용자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년간 지원
- 둘째, 재정지원 요건이 완화됩니다.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서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 2023년 월평균보수 242만 원 미만 근로자 → 2024년 월평균보수 268만 원 미만 근로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 추진배경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부담 경감 및 근로자 노후보장 강화
- 주요내용 • 대상확대: (現)사용자 → (改)사용자+근로자(신설) (각 사용자부담금의 10% 지원)
 • 요건완화: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現)120% → (改)130% 미만인 근로자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 (☎ 044-202-882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확대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이 개선됩니다.

- 첫째,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됩니다.
- 둘째,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되며,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도 개선됩니다.
 -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경우 채용 시 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 4시간으로 완화
 - **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 이수 후 1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
- 셋째,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이 감면됩니다.
 -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 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 교육시간이 감면되며, 정기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시간이 감면됨
 - ** 보건에 관한 사항만 교육하는 사업(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은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 해당 안전보건교육 시간의 2분의 1 감면
- 넷째,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산안법 시행규칙 개정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 **추진배경**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부각
- **주요내용**
 -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
 -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가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
 -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 교육시간 감면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채용 시 정기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추가
- **시행일** 2023년 9월 27일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편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로드맵이행총괄팀 (☎ 044-202-8867)

2024년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방식 및 품목이 다양해집니다.

■ 2023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안착됨에 따라 기존 공모 방식에서 상시·공모* 신청방식으로 연중 클린사업장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상시신청: 2023년도 지원품목(일부품목 제외), ② 공모신청: 사업장 희망 스마트 안전장비 신청(자율품목) 및 신청이 집중·과열 예상되는 일부품목(관리품목)

■ 2023년도 지원품목(29종) 이외에 사업장에서 희망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신청(공모)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 및 다양한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사업장 스마트 안전장비 신청 → 제품평가(검증 등) → 품목지원 → 전국확대검토

■ 또한, 지원품목 제안제도 및 유관기관(중기부 등)* 협업에 따른 추천제품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 등이 접목된 기타 스마트 안전장비를 발굴하여 신규품목의 다양화를 하였습니다.

* 중소기업벤처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업을 통해 지원품목 신속등록 확대

※ 지원품목 신청 → 투자계획 확인 및 결정 → 선지급 및 시설개선 → 투자완료 및 보조금 지급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편

- 추진배경 수요자인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 신청방식 및 품목의 다양화
- 주요내용 사업장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되도록 사업방식을 상시·공모 신청방식으로 변경하고 스마트 안전장비를 직접 선택하는 신청품목 확대 및 신규품목 발굴 다양화
- 시행일 2024년 2월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가능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37)

2023년 11월 14일부터는 불가피한 사유로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 비계 구조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 받아 현장 상황에 맞도록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장 내부의 보수공사 등을 위해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장비 도어의 개방, 시설물의 간섭 등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된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애로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앞으로는 비계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는 경우, 현장 상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現) 가로 1.85m, 세로 1.5m 이하로 설치 → (改) 구조검토 후 각 2.7m 이하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비계기둥 설치 기준 개정

- **추진배경** 비계기둥 설치 기준 합리화
- **주요내용** 구조검토 등을 통해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 간격 적용
- **시행일** 2023년 11월 14일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40)

2023년 11월 14일부터는 건설공사 중 주요구조부의 설계나 시공방법을 변경할 때 구조안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 중 당초 계획된 설계나 시공방법을 변경할 때는 그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을 미리 검토하여 위험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건축물 전체가 붕괴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대형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 이에, 앞으로는 기둥, 보, 바닥 등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시공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을 통한 구조안정성 확인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1월 14일 이후 건축물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구조부 설계·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 **추진배경** 건설공사 중 붕괴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재발 방지
-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제6호) 건축물등의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의무 신설
- **시행일** 2023년 11월 14일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40)

최근 잇달아 발생한 건설공사 붕괴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이 시행됩니다.

▣ 대형 붕괴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나, 뚜렷한 안전기준이 없던 데크플레이트(강제 갑판, 보 형식 동바리)에 대한 설치기준이 핵심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 * ① 접합부 걸침길이 확보 및 고정, ② 보 거푸집 하부 동바리 사이에 추가 동바리 또는 수평연결재 설치, ③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 또한, 그간 건설현장의 기술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준수하기 곤란했던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현행화합니다.

- * ① 목재 및 비계용 강관으로 만든 동바리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 삭제 ② CPB 등 초고층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 중인 타설장비도 안전기준 적용 ③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자재별 세부 강도기준을 산업표준으로 대체

개정내용은 2023년 11월 14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안전보건규칙 개정

- **추진배경** ① 대형 붕괴사고 재발 방지 및 ②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안전기준 현행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 이행
- **주요내용**
 - (데크플레이트 설치 안전기준 명확화) ① 접합부 걸침길이 확보 및 고정, ② 보 거푸집 하부 동바리 사이에 추가 동바리 또는 수평연결재 설치, ③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시공
 - (현행화) ① 목재 및 비계용 강관으로 만든 동바리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 삭제, ② CPB 등 초고층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 중인 타설장비도 안전기준 적용, ③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자재별 세부 강도기준을 산업표준으로 대체
- **시행일** 2023년 11월 14일

굴착면 붕괴 예방 기율기 기준 합리화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40)

그간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웠던 굴착면 붕괴예방 기율기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습한 흙, 마른 흙 등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기준은 삭제하고, ① 모래, ② 흙, ③ 연암, ④ 경암 등* 지반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건축관계법령상 기준과 일치됩니다.

* (모래) 약 29° / (흙) 약 40° / (연암·풍화암) 45° / (경암) 약 63° 이하

■ 또한 현장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설계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기율기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준

개정내용은 2023년 11월 14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굴착면 붕괴 예방 기율기 관련 안전보건 규칙 개정

- **추진배경** 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과제(안전기준 현행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 및 ② 규제개선 요구 이행
- **주요내용**
 - (개정 전, 제338조) 별표 11의 기준을 준수하되, 흙막이 등 조치 시 예외
 - (개정 후, 제339조) 별표 11의 기준을 준수하되, 흙막이 등 조치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기율기 준수 시 예외
- **시행일** 2023년 11월 14일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38)

2024년부터 모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공평한 입찰·낙찰 가점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간, 시공순위 1천위 이내 종합건설업체에 한정하여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노력도를 평가하고 공공 발주공사 입·낙찰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여, 1천위 이내에 포함되지 못하는 중·소 건설업체(약 1만 9천개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 이에, 평가대상을 모든 종합건설업체로 확대하고 평가지표를 재정비하여, 중·소 건설업체 사업주의 적극적인 현장활동 참여를 유도합니다.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5년에 평가되는 2024년도 실적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검색>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건설업체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정

- **추진배경** 기간 1천위 이내 종합건설업체에 한정하여 진행하던 평가를 전 종합건설업체로 확대하고 평가기준을 개편하여 공평한 입찰·낙찰 가점 기회를 제공
- **주요내용**
 - 평가대상 확대: 시공능력순위 1천위 이내 종합건설업체
→ 모든 종합건설업체
 - 평가기준 개편: 중·소 건설업체가 포함됨에 따라 평가기준을 재정비하여 사업주의 적극적인 현장활동 참여 유도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개선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044-202-8892)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초래하는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시 실시해야하는 (수시)유해요인조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2항 관련

- ▣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로 개선하였습니다.
- ▣ 아울러, 최근 1년 이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시)유해요인조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입법·행정예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골격계질환 수시유해요인조사 합리화

- **추진배경**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산재승인) 시 즉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실시 시기 및 대상에 대한 혼란 발생
-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2항에 따라 근골격계질환자(산재승인) 등의 사유 발생 시 실시하는 유해요인조사에 대하여 조사시기·대상 개선
 - (적정 조사시기 부여)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재발방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사시기를 '1개월 이내'로 함
 - (조사대상 합리화)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작업에 대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경우 생략 가능
- **시행일** 2024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 시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044-202-8857)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다가 사망 등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는 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개정, 시행 '23.11.14.)

- 또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제작 및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7 개정, 시행 '23.12.2.)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낮은 산업안전기준 개선으로 기업활력은 높이고 현장은 더욱 안전하게,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추진배경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 할 수 없도록 제한 (단, 내린 상태에서 유도자 배치 및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 예외)
 -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시 다음과 같이 설치
 - 강재의 강도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쉽게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서 수평형(안전바 등)이나 수직형(방지봉 등) 등의 형태로 설치
 - (수평형) 상부 안전난간대에서 높이 5cm 이상에 설치하고 전 길이에서 압력이 감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수직형)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과상승이 감지되도록 상부 안전난간대 모서리 4개소에 60cm 이상 높이로 설치할 것. 단, 수직형과 수평형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직형은 2개 이상 설치
- 시행일 2023년 11월 14일부터 고소작업대 이동 제한, 2023년 12월 2일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에 과상승방지장치 설치기준 적용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044-202-8857)

2024년 3월 2일부터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가 시행됩니다.

- ▣ 화물의 운반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리프트 중 그간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0.5톤 미만의 리프트에서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사용단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개정, 시행 '24.3.2.)

2024년 3월 2일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기준이 강화됩니다.

- ▣ 기존에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던 낙하방지장치를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토록 하는 한편,
- ▣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는 모두 설치하여야 합니다.(「안전검사 고시」 별표 3 개정, 시행 '24.3.2.)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사고다발 산업용 리프트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검사 대상 확대
 - 산업용 리프트의 추락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검사기준 강화
- **주요내용**
 - 안전검사 대상 유해 위험기계에 적재하중 0.5톤미만의 산업용 리프트 추가
 - 산업용 리프트 운행거리와 관계없이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 설치
- **시행일** 2024년 3월 2일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 044-204-7857)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예산을 100억 원 증액*하고, 지원비율도 20 ~ 50%에서 50 ~ 80%로 상향됩니다.

* ('23년) 50억 원, 20 ~ 50% → ('24년) 150억 원, 50 ~ 80%

〈 현행 〉

(단위: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23 지원비율	50%		30%		20%		
'23 월지원액	20,475	23,400	15,750	17,550	12,870	14,040	15,210

〈 개정 〉

(단위: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24 지원비율	80%		60%		50%		
'24 월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개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의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 **시행일** 2024년 1월

선내 괴롭힘 방지 대책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044-200-5743)

선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위한 선원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 선원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작성해야 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조사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또한, 위반자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도 선원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선원법

선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안

- **추진배경** 현행 「선원법」에는 선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없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선원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규정을 선원의 근로환경에 맞춰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 마련
- **주요내용**
 - ①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의 선내 괴롭힘 금지,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사실 확인 및 조사, 피해선원 보호 등 조치 규정
 - ② 선박소유자는 '선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포함해 취업규칙 작성
 - ③ 관련 규정 이행력 확보를 위해 처벌규정 신설
- **시행일** 2024년 1월 25일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확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243)

여객선과 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주민들의 해상교통수단 조기 확충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 추진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확보하여 항로를 운영하고, 인건비, 유류비 등 항로운영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 2023년에는 10개 항로를 선정하여 뱃길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10개 항로를 추가로 확대 지원합니다.
- 전국 40개소 소외도서 주민들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보장을 위해 2027년까지 소외도서를 제로화 하겠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확대 (계시예정)

소외도서 항로 운영지원

- **추진배경** 여객선·도선이 다니지 않고 연육교 등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섬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교통 제공 필요
- **주요내용** 여객선, 도선 등이 다니지 않는 소외도서 주민의 해상교통수단 구축을 위해 지자체가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항로운영비용 지원(인건비,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안전 관리비 등)
- **시행일** 2024년 1분기

세계 최초 한국 주도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 회의 한국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 043-719-1354)

세계 최초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의 초대 의장국으로 한국이 선출되어 내년 5월 서울에서 각국의 규제기관장들이 참석하는 '아프라스' 회의를 개최합니다.

- 또한, 내년 1월에 회원국의 합의로 식약처에 사무국이 설치됩니다.
- 내년 아프라스 회의에는 호주,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등이 참석할 예정이고, 식품 분야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 및 역내 규제 조화를 위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보도자료>대한민국, 아프라스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

세계 최초 한국 주도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회의 개최

- **추진배경** 세계화 기조 둔화와 자국 우선주의로 비관세장벽(규제장벽)은 증가하여 유사 입장국 공조 및 연대 중요
- **주요내용**
 - 명칭: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 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 (APFRAS)
 - 회원국: ('23) 호주,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 ('24~) 인도네시아, 칠레 등 관심국가 중심으로 가입 확대
- 옵저버: ('23) WHO(세계보건기구),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 ('24~)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참여 확대
 - 조직, 역할: (기관장 회의) 회원국 식품 규제기관장들이 비전 및 아젠다에 관하여 논의, (실무협의체) 회원국 분야별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식품안전관리 디지털화, 역내 식품규제환경 분석, 탄소 중립 등에 관한 과제 추진, (사무국) 기관장회의 및 실무협의체 운영, 안건 조정, 회원국 관리 등
- **시행일** 2024년 5월

마약류 상담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본격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 (☎ 043-719-2582)

2024년부터 취약시간에 마약류 충동·갈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개소합니다.

-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마약류 관련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2023년 9월 27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2024년부터 본격 개소합니다.
-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는 시간·공간적 제약없이 마약류 예방·재활을 위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통해 전국민 누구나 무료로 마약류 전문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중독재활센터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중독재활센터 연계 및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상담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시범사업 및 본격 운영

- 추진배경 마약류 범죄 발생빈도가 야간시간대(18시-09시)에 집중되는 등 중독 문제가 고위험화되는 추세지만, 야간시간의 대응체계 부재
- 주요내용
 - 기간: '23.9.27.(수) ~ 12.31.(일), 96일간
 - 장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앙 중독재활센터 5층(상담실)
 - 근무형태: 4조 2교대(1조당 2명)
- 시행일 2024년 1월 본격 운영 예정

청소년 취약계층 등 마약류 예방교육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 (☎ 043-719-2582)

학교 안팎의 청소년·청년층 등에게 마약류 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오·남용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 유아·초·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196만 명, 군인·경찰 등 성인 6만 명 등 연간 202만 명에게 연령·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 ▣ 또한, 마약류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습효과를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취약계층 등 마약류 예방교육 확대

- **추진배경** 마약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상별 맞춤형 마약류 예방교육 확대를 통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주요내용**
 - 학교 안팎의 청소년·청년층 등 대상으로 맞춤형 마약류 예방교육 확대 실시
 - 마약류 예방 전문강사가 실시하는 예방교육 확대
 - 유아, 청소년(초·중·고등학생, 학교밖 청소년) 196만 명, 청년층(군인, 대학생 등), 학부모 등 성인 6만 명 등에게 맞춤형 예방교육 제공
 - 학교·군부대 등 마약류 예방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강사 맞춤형 교재 제작·보급
 - (대상) 유아, 청소년(초·중·고등학생, 학교밖 청소년), 군인, 외국인 등
 - (교재 제작) 책자형 및 디지털형(e-book)으로 제작
 - (교재 보급)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학교밖지원센터, 군부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보급 추진
- **시행일** 2024년 1월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품목갱신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 043-719-5009)

2024년부터 의료기기 품목갱신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 ▣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는 업체가 최신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자료를 5년마다 제출하면 식약처가 그 적합성을 검토하여 제조·수입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 이에, 의료기기 업체는 제품별로 지정된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2025년 1월 첫 유효기간 만료 품목이 발생, 2024년부터 본격 품목갱신 신청 접수 예정
- ▣ 앞으로도 식약처는 유통 의료기기의 주기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시판 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 고시 등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품목갱신 시행

- 추진배경 「의료기기법」 개정(‘20.4월)에 따른 품목갱신 시행(‘20.10월)
- 주요내용

 - (목적) 의료기기 허가등(허가·인증·신고) 유통제품의 주기적 안전성·유효성 확보
 - (유효기간) 허가·인증·신고일로부터 매 5년
 - (제출자료) 유효기간 동안 안전성·유효성 유지 증명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 (갱신기준) 안전성·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없을 것, 생산·수입실적이 있을 것
 -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식약처: 허가제품(3·4등급), 정보원: 인증·신고제품(1·2등급)
- 시행일 2024년 5월 품목갱신 신청 접수

한미 공동 AI 활용 의료제품 분야 국제 심포지엄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 043-719-1352)

한국 식약처와 미국 FDA 양국의 공동 주관으로 한국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의료제품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 ▣ 2024년 2월, 국내외 규제 당국자, 업계, 학계가 한국 서울에 모여 AI를 활용한 의료제품의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혁신기술 활용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 이번 심포지엄을 기반으로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급속도로 성장하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제품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 글로벌 진출의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한미 첨단기술동맹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마련한다

한미 공동 AI 활용 의료제품 분야 국제 심포지엄 개최

- **추진배경** 의료제품 발전 위한 AI 활용에 관한 협력각서 체결('23.4.27.)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미 공동 주관 국제 심포지엄 개최 추진
- **주요내용**
 - (목적) 의료제품 발전 위한 AI 활용경험 공유, 의료제품 안전성·유효성 확보 위한 혁신기술 활용 제고에 있어 규제기관 역할 논의
 - (명칭) AIRIS* 2024, Use of AI in Medical Product Development
* AI Regulatory & International Symposium
 - (주관) 한국 식약처 / 미국 FDA 공동 주관
 - (장소) 한국 서울
 - (참석규모) 주요국 규제기관 담당자, 국내외 업계 학계 등
- **시행일** 2024년 2월 26일 ~ 2월 29일 (3박 4일)

수출 애로 FREE (Food Regulation Expert for Export)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043-719-2032)

수출 애로 FREE 서비스를 통해 국내 식품 업계의 수출 준비 단계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 주기에 걸쳐 종합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합니다.

- 국내 식품 업계가 수출 준비 시 수입국의 통관·유통 기준에 대한 정보를 쉽고, 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외 기준규격 제공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 또한, 수출업계 대상 해외 규제상담, 수출국 식품안전 담당 공무원 초청 설명회를 제공하고 민·관 기술정보 공유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합니다.
- 아울러, 국내 식품에 대한 수출국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수입국 규제기관과의 기술 협의로 식품업계의 수출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출 애로 FREE 서비스 운영

- 추진배경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 쏠단계 종합 지원
- 주요내용
 - 해외 기준규격 제공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규제정보 제공 등 식품 수출기업 지원
 - 국내외 식품안전관리 조화를 위한 규제기관 교류 운영
 - 수출 규제 해소 및 상대국 규제기관 대응
- 시행일 2024년 1월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 043-719-3851)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도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하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시행합니다.

*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 외에는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

- ▣ 주요 축산물 5종(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 중 어류에 우선 시행되며, 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될 경우 0.01 mg/kg을 적용합니다.
 - 단, 성장보조제 및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기준을 적용합니다.
- ▣ 향후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어류'에 해당되지 않는 축·수산물로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 추진배경 축·수산물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수입식품 안전
관리 강화
- 주요내용 축산물 5종(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 중 어류에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검출 시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하여 관리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수입식품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 기준 개정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 (☎ 043-719-2210)

2024년 1월 1일부터 수입식품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기준에서 '제품명'이 제외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10] 개정·공포('23.6.9.), 시행('24.1.1.)

** 식품: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
축산물·가공품: 생산국·해외작업장·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

▣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제품명' 삭제로 연간 6천 건 정밀검사건 감소, 검사수수료 및 물류비용 등 절감 혜택이 기대됩니다.

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 포함)이 적용 대상이며, 현행대로 제품명별로 수입신고 하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인정은 '제품명'을 제외하고 실적 인정 됩니다.

참고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알림자료>교육홍보자료>교육자료>23년 수입식품 영업자 온라인 민원 설명회 자료('23.11.08)

동일사 동일식품 기준 변경 시행

- **추진배경** 수입식품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기준 변경
- **주요내용**
 - 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의 동일사 동일식품 기준에서 '제품명'을 삭제하고, 기존 대로 제품명별로 수입신고 하되, 제품명을 제외하고 실적인정
 - 개선사항: 동일사 동일식품 기준에서 제품명 제외

현 행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 • 축산물·가공품 : 생산국·해외작업장·제품명·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 • 축산물·가공품 : 생산국·해외작업장·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백신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교육 본격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043-719-3310)

국내 백신 개발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이하 백신센터, 전남 화순)’에 전문교육시설을 구축하여 백신 핵심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합니다.

- 백신센터는 백신 규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실습동을 지난 2023년까지 신축을 완료하고 올해 2024년부터 규제기관 심사자·조사관, 업계 규제관련 종사자, 관련 전공자 및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동 교육은 백신 개발과 제품화에 필요한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제조공정, 품질관리, 생물안전관리 분야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FDA 등 규제당국의 인허가 획득 시 필요한 실태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의실사 교육 및 사례 중심 토론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교육실습동
구축·운영

- 추진배경 백신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교육시설 구축·운영
- 주요내용 • 백신센터 교육실습동 신축(~'23.12월) 후 백신 규제과학 핵심 인력 양성 교육 실시('24년)
 •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FDA 등 해외 인증 인허가 대비 모의실사 교육 및 사례토론
- 시행일 2024년 3월 목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4

문화·체육·관광



1 문화체육관광부

자세한 내용은 p.152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연간 13만 원으로 인상  시행일: 2024년 2월 1일

Before

꾸준하게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하였습니다.



After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58만 명,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자세한 내용은 p.153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전면 시행  시행일: 2024년 3월 22일

Before

그동안 게임물 내에서 제공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 관련 규정은 없었습니다.



After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정보공개 의무화가 전면 시행됩니다.



3 문화재청

자세한 내용은 p.157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Before

지금까지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 용어 및 분류체계를
사용·운영하여 왔습니다.



After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연간 13만 원으로 인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 044-203-2516)

2024년에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인상*됩니다.

*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ARS (1544-3412)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2만 9천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개요

- 주요내용**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58만 명
 - 문화예술 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연간 13만 원의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발급
- 시행일** (발급기간) 2024년 2월 1일(목)~2024년 11월 30일(토)
 - ※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2024년 11월 29일(금) 18시까지 (이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전면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044-203-2444)

2024년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됩니다.

-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해당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컴플리트 가차, 독립시행이 아닌 경우, 천장제도 역시 표시의무 대상으로 포함해 게임이용자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 컴플리트 가차: 확률형 아이템 등을 모아 특정 조합을 완성시켜 보상을 얻는 방식
- 독립시행이 아닌 경우: 특정 시행결과가 다른 시행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 천장제도: 이용 조건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보도자료)거짓 확률 표시 차단하고, 확률 표시 의무화해 게이머 권리 보호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 추진배경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확률 공개를 통한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 조성
- 주요내용 게임물 내에서 제공되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 확률정보 등을 게임이용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투명하게 공개
- 시행일 2024년 3월 22일

여행업 등록기준 납입자본금으로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 044-203-2840)

법인이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자본금 증빙을 위한 대차대조표 제출이 불필요해지고 납입자본금에 대한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로 간소화 됩니다.

- 관광진흥법 개정(23.7월)으로 여행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 아닌 납입자본금으로 적용 받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2월 9일부터 법인의 여행업 등록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여행업 등록기준 자본금, 납입자본금 으로 명시

- 추진배경 여행업 등록 법인의 자본금 의미가 불명확해 증빙자료 등 혼선 야기하여 법제처 유권해석에 맞게 법령 개정
- 주요내용 법인의 여행업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을 납입자본금으로 명시하여 규제 완화
- 시행일 2024년 2월 9일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하여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금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044-203-2732)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개정 내용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 **추진배경** 공연산업 성장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관람권 등을 매입하고 되파는 온라인 암표 매매 행위 증가
- **주요내용**
 - 금지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 2024년 3월 22일

교류의 바다, 연결의 시작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044-200-6058)

우리나라 해양교류의 역사와 가치, 해운항만의 미래를 함께 보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개관합니다.

-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에 위치한 월미도 갑문 매립지에 부지 27,601㎡, 연면적 17,318㎡(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어 2024년 하반기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 바다를 통한 문물교류와 확장을 보여주는 해양유물 전시는 물론이며, 세계 해운·항만 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는 해양문화복합공간을 제공합니다.

※ 주요구성: 해양교류사실, 해운항만실, 해양문화실, 어린이박물관 등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홈페이지

2024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 **추진배경** 수도권 해양문화 확산 거점이 될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 **주요내용** 해양교류사실, 해운항만실, 해양문화실, 어린이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해양교류’와 ‘해운항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선보이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 **시행일** 2024년 11월(잠정)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문화재청 국가유산정책기획단 (☎ 042-481-3196)

2024년 5월 17일부터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됩니다.

('23. 5. 16.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 ▣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년 5월 17일 시행됩니다.
- ▣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이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遺産)'으로 변화합니다.
- ▣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연계하여 기존 문화재 분류체계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하고, 통칭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였습니다.

※ 국가유산: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 세계유산과 상응하는 개념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새소식)보도/설명)재화적 성격의 문화재 체제 → 문화·자연·무형의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 **추진배경** '문화재(財)' 용어가 확장된 문화재 정책범위를 포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상이하여 개선된 기준 필요
- **주요내용** 변화하는 문화재 정책환경과 국제기준에 연계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전면 개선
-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5

환경·기상



1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166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

시행일: 2024년 5월

Before

고등안 홍수 대응 강화를 위해 대하천 본류 중심으로 전국 75개 홍수특보 지점을 관리하였습니다.



After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를 도입하여 홍수특보 지점을 확대합니다.



2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167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시행일: 2024년 5월

Before

집중 호우로 인해 일어나는 내수침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After

홍수재해 위험에 대비해 한강권역을 포함한 도시침수 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168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시행일: 2024년 6월 1일

Before

배출권의 이월제한 기준은 순매도량만큼 다음 이행년도로 이월할 수 있었습니다.



After

이제는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합니다.



* 해당연도의 무상할당량이 배출량보다 적은 업체의 경우, 보유한 배출권 전량 이월 가능합니다.

4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169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 개선

시행일: 2023년 12월 19일

Before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절차 및 기준이 경직되게 운영된 면이 있었습니다.



After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5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170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합니다.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각종 규제*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규제특례 제도를 운영합니다.

*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재활용 기준 및 방법 등

After

신속처리
(규제 존재 여부를
30일 내 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안전성 시험·검증)

임시허가
(최대 2년까지 임시
시장 출시 가능)

6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171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

시행일: 2024년 1월

Before

종전에는 개별 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검토하여 순환자원을 인정하였습니다.



After

앞으로는 개별 사업자 신청 없이도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을 일괄 지정·고시합니다.



7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172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시행

시행일: 2024년 1월

Before

지금까지 반도체 업종에 생산설비 특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적용 시행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시설기준 일괄 적용

After

생산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디스플레이 업종에도 적용됩니다.



제조설비 내 배관에 대해 국제기준 인증 인정

설비 내 안전장치를 시설기준으로 인정

안전장치를 갖추고 소량 취급하는 설비는 소량취급시설 기준 적용

8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173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

시행일: 2023년 12월 31일

Before

기존에 팔공산은 도립공원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관리체계 일원화(대구, 경북)

도립공원(1980년 지정) 당시 탐방로 등 기본시설 조성

멸종위기종 관리체계 부존재

After

팔공산이 신규 국립공원으로 승격·지정됩니다.



관리체계 일원화(국립공원공단)

노후시설 전면개선 및 다양한 탐방·체험인프라 조성

멸종위기종 모니터링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구역 설정

9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174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촉진 제도」 시행

시행일: 2023년 12월 31일

Before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촉진 제도」를 시행합니다.

- 유기성폐자원 발생·처리량 중 일정비율을 생산목표로 부여, 미달성 시 과징금 부과, 생산목표는 직접생산, 위탁생산, 생산실적 거래로 달성 가능해집니다.

After

구분	공공	민간
시행	'25 ~	'26 ~
의무 생산자	전국 지자체	유기성폐자원 대규모 배출·처리자
바이오 가스화 대상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분뇨,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생산목표 (5년 주기 재설정)	발생·처리량의 50%	발생·처리량의 10%
달성방법	직접생산, 위탁생산, 생산실적 거래 (공공은 실적 거래 시, 거래로 구입한 생산실적의 90%만 인정)	

10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184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중

국내 해역으로의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에 대한 감시를 꾸준히 하였습니다.

수산물의 안전을 위해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을 확대합니다.

구분	정기조사 (정밀분석)	긴급조사 (신속분석)
조사정점	52개	75개
조사대상	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해수
조사항목	세슘, 플루토늄, 삼중수소, 스트론튬 등	세슘, 삼중수소



구분	정기조사 (정밀분석)	긴급조사 (신속분석)
조사정점	60개	105개
조사대상	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해수
조사항목	세슘, 플루토늄, 삼중수소, 스트론튬 등	세슘, 삼중수소

11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185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방사능 모니터링 실시

시행일: 2024년 2분기

Before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방사능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우리 해역으로의 방사능 물질 유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After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 실시

조사 대상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10개 정점
조사 주기	연 2회(상·하반기)
조사 항목	세슘, 삼중수소



12 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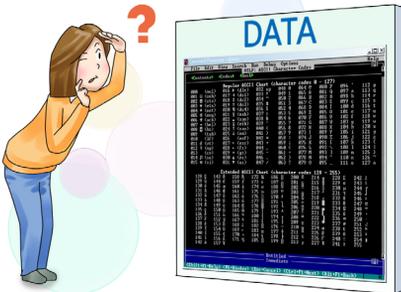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187

기후변화 상황지도 시범서비스

시행일: 2023년 12월 29일

Before

기존에는 데이터 위주의 기후통계 및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제공하였습니다.



After

앞으로는 지도 기반으로 쉽게 조회하고 분석 활용할 수 있는 기후 변화 추세 및 미래 전망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

환경부 물재해대응과 (☎ 044-201-7664)

홍수 대응 강화를 위해 올해 대하천 본류 중심이던 전국 75개(국가 63, 지방 12) 홍수특보 지점을 2024년 5월부터 223개(국가 94, 지방 129*) 지점으로 확대합니다.

*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이 12개에서 129개 지점으로 10배 이상 확대

■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 기술*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 1단계(AI활용 자동예측 및 위험지점 도출) → 2단계(물리모형 검증 및 특보 발령)

■ 홍수특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특보 발령·전달체계를 간소화·자동화*합니다.

* ① (기존) 한 지점씩 특보 발령 → (개선) 한지점 또는 다수지점 동시 발령 가능, ② (기존) 주의보, 경보 순차적 발령 → (개선) 급격한 수위 상승 예상 시 바로 경보 발령 가능, ③ (기존) 전산시스템에 발령서, 전파내용 수동 입력 → (개선) 자동 입력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

- **추진배경** AI를 활용하여 대하천 본류 중심 전국 75개 홍수특보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확대 운영
- **주요내용**
 - 기존 전국 75개 홍수특보지점을 223개 지점으로 확대
 - AI모형 홍수예측 및 물리모형 검증체계 도입
 - 홍수특보 발령·전달체계 개선
- **시행일** 2024년 5월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환경부 물재해대응과 (☎ 044-201-7664)

관거시설의 배수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 호우로 인해 일어나는 내수침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침수지도가 기존 607개 읍·면·동에서 한강권역을 추가한 1,135개소로 확대됩니다.

- 2024년 2월부터 홍수위험지도 시스템에 접속하여 한강권역에 30, 50, 100년 빈도의 강우 시나리오를 적용한 침수 예상도를 열람하여 재해 대비를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500년, 기왕(既往) 최대강우 시나리오를 추가로 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 또한, 2025년부터 영산강·금강권역 519개(영산강 230, 금강 289) 읍·면·동에 대해서도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 (floodmap.go.kr)

한강권역 도시침수 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 **목적** 홍수재해 위험에 대비한 위험지도의 대국민 공개 추진
- **주요내용**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작성을 완료하여 528개 읍면동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대국민 제공
- **시행일** 2024년 5월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93)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이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완화됩니다.

- ▣ 할당업체는 배출권 매도량에서 매수량을 제외한 순매도량의 3배를 다음 이행년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해당연도의 무상할당량이 배출량보다 적은 업체의 경우, 보유한 배출권 전량 이월 가능합니다.
- ▣ 2024년 '23년 탄소배출권(KAU23)' 이월 신청부터 반영됩니다.

참고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방안('23.9.20.)

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 완화

- **추진배경** 수급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 **주요내용**
 - (필요성)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보다 남은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차기연도 이월제한으로 이월하려는 물량만큼 매도해야 하므로 배출권 제출시기 가격 급락
 - (개선방안) 배출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이월제한 기준 완화
 - 잉여(무상할당량 > 배출권)업체: 순매도량의 1배 → 순매도량의 3배
 - 부족(무상할당량 < 배출권)업체: 이월 불가 → 부족한 양보다 더 매수한 경우 전량 이월 가능
- **시행일** 2024년 6월 1일 (2024년 KAU23 이월 신청 시부터 반영)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 개선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044-201-727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 '23.12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변경협의 절차 및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구조를 개선합니다.

*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조정,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 시 판단기준 신설 등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을 조정하여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 환경부 누리집>알림·홍보>보도·설명>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 개선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주요 내용

- **추진배경**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상의 어려움을 개선
- **주요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간투자사업 전략평가 적용 합리화, 약식전략평가 대상에 소하천·하천기본계획 추가, 전략평가 협의내용 조정 절차 신설
 -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요청 기한(10일) 규정, 변경협의 대상 명확화,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 평가 규모(10만kW) 조정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 소규모 평가 대상 제외, 연접규정에 따른 소규모 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변경협의 기준 합리화
 - (기타)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자격기준 조정
- **시행일** 2023년 12월 19일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044-201-7347)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각종 규제*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규제특례 제도를 운영합니다.

*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재활용 기준 및 방법 등

-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관련 규제를 알 수 없는 경우, 규제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30일 이내 규제의 유무를 확인하여 알려드립니다.
- 또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의 범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 결과 안전성, 규제 정비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규제 담당 행정기관은 법령 정비에 착수하게 됩니다.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 **추진배경** 탄소중립 달성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시대적 화두인 상황에서, 증가한 폐기물 규제개선 수요에 단력적으로 대응 필요
- **주요내용**
 - (신속 확인) 규제 여부에 대해 30일 내 신속 확인 및 규제 여부 통보
 - (실증 특례) 법령에 따라 추진 곤란(규제 ○, 안전성 미흡) → 일정 조건하에서 실증테스트 허용 → 실증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 법령 정비
 - (임시 허가) 법령에 따라 추진 곤란(규제 ○, 안전성 확보) → 시장출시 위한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유효성 등 입증되면 관련 규제 법령 정비
- **시행일** 2024년 1월 1일(예정)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044-201-7350)

2024년 1월부터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의 순환이용이 쉬워집니다.

- ▣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시행됩니다.
- ▣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규제 면제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한다

순환자원 지정· 고시제 시행

- **추진배경**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신설'
- **주요내용**
 - (제도개요)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에 대해 개별 사업자의 별도 신청없이도 환경부가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하여 폐기물 규제 면제
 - (대상품목) ① 폐지, ② 고철, ③ 폐금속캔, ④ 알루미늄, ⑤ 구리, ⑥ 전기차 폐배터리, ⑦ 폐유리
 - (준수사항) 이물질 혼입 방지, 수출시 관련법 준수, 사전정보 등록 등 모든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준수사항 및 품목별 세부기준 준수 필요
- **시행일** 2024년 1월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시행

환경부 화학안전과 (☎ 044-201-6837)

반도체 업종에 이어 디스플레이 업종에도 생산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완제품·모듈 형태로 설치·운영되는 디스플레이 업종 제조설비가 국제인증*을 받은 경우 화학물질 관리법의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기준

■ 또한, 누출 검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소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가 작은 밀폐공간(예: 캐비닛)에 설치된 경우 소량취급시설로 관리됩니다.

참고

현행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 개정 예정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시행

- **추진배경**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시설기준이 디스플레이업종 제조설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관련업계에서 시설기준 준수 어려움 해소
- **주요내용** 완제품, 모듈형태로 설치운영되는 디스플레이 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시설기준 마련
- **시행일** 2024년 1월(예정)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

환경부 자연공원과 (☎ 044-201-7314)

팔공산 국립공원이 2016년 태백산 이후 7년만의 신규국립공원으로 승격·지정되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도 견인할 예정입니다.

- ▣ 국립공원 지정에 따라 훼손지역 복원, 문화유산지구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자연·문화 자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 ▣ 노후화된 공원시설은 전면개선 하여,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생태·탐방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국립공원의 브랜드가치를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대구·경북의 진산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

팔공산국립공원 승격

- **추진배경** 대구·경북 승격 건의('21.5월),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 **주요내용** 팔공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23번째 국립공원 지정)
- **시행일** 2023년 12월 31일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 제도」 시행

환경부 생활하수과 (☎ 044-201-7027)

2023년 12월 31일부터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모법 '22.12.30. 제정)

■ 유기성폐자원에는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이 포함되며, 유기성폐자원 발생량을 고려하여 공공·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게 됩니다.(공공 '25년, 민간 '26년부터)

* (공공) '25년 50% → '50년 80%, (민간) '26년 10% → '50년 80%로 단계적 확대

- 공공 의무생산자는 전국 지자체이며, 민간 의무생산자는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처리자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입니다.

■ 또한,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바이오가스센터를 신설하여 기술지원, 운영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제도 시행을 통해 유기성폐자원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화석연료(LNG) 대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 제도 시행

- **추진배경** 유기성 폐자원의 환경적·사회적 효용성을 높이는 재활용 방안인 바이오가스화 촉진
- **주요내용**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
 - (주요내용) 유기성폐자원 발생·처리량 중 일정비율을 생산목표로 부여, 미달성 시 과징금 부과, 생산목표는 직접생산, 위탁생산, 생산실적 거래로 달성 가능
 - 바이오가스센터 및 정보시스템 설치·운영, 의무생산자 재정지원 등
- **시행일** 2023년 12월 31일
 -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공공 2025년 1월 1일, 민간 2026년 1월 1일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044-201-669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경영지원실 (☎ 02-2284-1970)

2024년부터 환경정보공개제도가 단계적으로 개편됩니다.

■ 국제사회의 ESG 공시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글로벌 공시기준과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환경정보공개제도가 개편됩니다.

* 국제회계기준(IFRS) 기후공시 최종안('23년 6월) 등

■ 유형분류 단순화(제조·공공행정 등 6개 ▶산업전반·산업기반 2개), 공개단위 전환(사업장 단위 ▶법인 단위), 공개항목 변경 및 공개시기 단축(12월말 ▶8월말)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 국내기업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거쳐 확정·발표('24.上)

■ 2024년 개편 첫해에는 유형분류 단순화, 공개항목 일부 개편, 공개단위 전환 시범사업 등이 시행됩니다.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주요 내용

- **추진배경** 환경정보공개제도의 글로벌 공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 **주요내용**
 - (유형분류 단순화) 업종별 6개 → 산업전반·산업기반(공공행정) 2개
 - (공개단위) 사업장 단위 → 법인 단위 공개 ('24년 시범사업 후 확대)
 - (공개항목) 핵심 정보(온실가스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은 의무화, 비핵심 정보(환경관련 수상·협약, 환경오염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등)는 과감히 제외·통합
 - (공개시점) 글로벌 ESG 공시 시점 등을 반영하여 공개 시기 조정(12월 → 8월말)
 - *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이상 주권상장법인 대상 의무화('25년) 예정
 - (기업지원) ① 환경정보 측정 기초역량 강화, ② 측정·검증 방법론 마련, ③ 온실가스 감축사업 연계 등 지원책 강화
-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단계적 시행

가스연소 굴뚝(플레어스택)에 대한 발열량 기준 시행

환경부 대기관리과 (☎ 044-201-6914)

2024년 1월 1일부터 원유·석유화학 또는 제철·제강업의 생산공정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안전상의 이유로 연소시키는 굴뚝(플레어스택)의 평시 관리를 위해 발열량 기준이 도입됩니다.

- ▣ 평시에 사업장은 플레어스택의 연소부 발열량을 일정 기준(2,579kcal/Sm²)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 경우 완전연소를 통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효과가 큼.
- ▣ 그동안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이용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여부를 상시 감시하였는데, 발열량 기준을 준수할 경우 광학가스카메라를 이용한 감시는 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가스연소 굴뚝 관리를 위한 발열량 기준 도입

- **추진배경**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원 관리 강화
- **주요내용**
 - 스팀-혼합공기 보조방식의 경우 총발열량 2,579kcal/Sm²(290BTU/Sft²) 이상, 연소용 공기 보조방식의 경우 총발열량 64kcal/Sm²(24BTU/Sft²) 이상으로 관리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스팀 유량, 혼합공기 유량, 연소용공기 유량, 배출가스 총 발열량 및 유량을 상시 모니터링
 -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총발열량 기준 준수 여부 및 모니터링 내용 기록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수도시설 운영·관리인력 대상 교육 주기 단축

환경부 수도기획과 (☎ 044-201-7119)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도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인력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주기가 단축됩니다.

▣ 당초에는 3년마다 35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했으나 이제는 2년마다 35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대한민국 전자관보(관보보기)대통령령제33883호(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또는 국가정보보령센터)수도법 시행령

수도시설 관리인력 대상 교육 주기 단축

- **추진배경** 수도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및 유출사고 등 수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수도시설 관리인력의 전문성 강화
- **주요내용**
 - (당초) 3년마다 35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 (변경) 2년마다 35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 (적용특례) 당초 교육주기에 따른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 고려하여 특례 적용
 - 당초 교육주기 만료일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남은 경우 '23.11.21. 기준 1년 이내에 교육 이수
 - 당초 교육주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 남은 경우 종전의 3년 주기 적용하여 다음 교육주기 계산
- **시행일** 2023년 11월 21일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 확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 044-201-7061)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폐수배출량이 많은 수질자동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측정자료 공개를 연간 배출량에서 일일 배출량으로 확대하고, 분기별로 연 4회 공개합니다.

* 처리용량 700톤/일 이상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폐수 배출량 200톤/일 이상 사업장 등

※ 공개 누리집: 수질 TMS 배출량공개시스템(www.soosiro.or.kr/open)

또한, 수질자동측정기기 수질오염물질 초과 판단기준을 종전 '3시간 평균치'에서 '24시간 평균치'로 합리화합니다.

■ 이에 따라 배출부과금 산정기준도 24시간 평균치가 적용되며, 24시간 평균치로 수질을 관리하여 처리수질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종전에는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초과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실시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 확대한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수질TMS 제도 개선방안

- **추진배경** 현행 수질TMS 초과 판단기준의 한계제기 및 빅데이터 활용성 미흡으로 물환경보전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 **주요내용**
 -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측정기기부착사업장 배출부과금 산정기준 개선
 - 측정기기부착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공개 확대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 의무화

환경부 생활환경과 (☎ 044-201-6799)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24년 2월 17일부터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23.8월 개정)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지자체에 제출하고 입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함

-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을 공고하고, 입회를 원하는 입주예정자는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입회 절차에 따라 입주예정자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입회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실내라든 측정 지점수를 최대 12세대에서 20세대로 확대하고 측정 결과 보고 시 측정 원자료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측정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23.12월 개정 시행)

참고

환경부 누리집(알림·홍보)뉴스·공지·보도·설명>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도 높인다('23.11.5.)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 의무화

- **추진배경**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 절차 개선
- **주요내용**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예정자 입회 하에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
- **시행일** 2024년 2월 17일

「환경보건법」 위반 어린이용품의 ‘자발적 회수’ 시행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044-201-6754)

「환경보건법」 위반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신속하게 회수토록 하여 어린이 환경안전을 강화합니다.

-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자가 시중에 판매한 어린이용품이 「환경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발적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 또한,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를 이행하였을 때 형을 감면토록 하여 자발적 회수를 유도하고, 위대한 어린이용품의 판매를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어린이용품 자발적회수 제도 도입

- **추진배경**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유통 조기 차단을 통한 어린이 환경안전 관리를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필요
- **주요내용**
 - (자발적 회수) 「환경보건법」 제24조제3항의 고시 내용 또는 제24조제10항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시중에 판매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보고, 자발적 회수 등 조치 실시
 - (형의 감면)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을 때 「환경보건법」 위반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 **시행일** 2024년 2월 17일

청년대상 창업지원사업 ‘청년 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시행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03)

녹색산업분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청년 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 기업을 말함

■ 선정된 청년창업기업 30개사는 아이디어 구체화·시제품 제작, 환경 인·허가, 인·검증 등 창업활동에 83백만 원 내외의 창업자금이 지원됩니다.

■ 아울러, 녹색산업분야에 투자한 이력이 있는 민간운영사(창업기획자)를 청년창업기업에 매칭하여 창업교육, 상담(멘토링), 진단(컨설팅), 투자연계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등록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함

청년 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 개요

- **추진배경** 녹색산업분야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창업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
- **주요내용**
 - (지원대상) 39세 이하가 대표인 3년 이내의 창업기업 30개사
 - (창업자금) 8천 3백만 원 내외
 - (녹색창업 트레이닝 프로그램) 녹색산업분야에 특화된 트레이닝 프로그램
 - (녹색창업교육) 아이디어 구체화, 팀빌딩, 기업가정신, 기업회계, 홍보 / 마케팅, 환경트렌드, 인·허가 등 창업에 필요한 기본소양교육
 - (1대1 컨설팅) 지원기업 진단기반 사업추진전략 수립
 - (후속투자) 민간운영사(엑셀러레이터)를 통한 투자연계 등
- **시행일** 2024년 2월

국가 주도의 도시침수 관리를 위한 「도시침수방지대책법」 시행

환경부 물재해대응과(☎044-201-7551)

2024년 3월 15일 도시지역에서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법」이 시행됩니다.(‘23. 9. 14. 제정)

- 국가 주도의 도시침수방지를 위해 기존 정책의 성과분석, 권역별 침수 취약성 분석, 국가 단위의 로드맵 제시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또한, 도시지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법, 하수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설계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아울러, 도시침수예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도시지역의 침수상황 발생·예상 시 신속하게 국민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하천+하수도를 연계한 도시지역 침수예보 체계

도시침수방지법 시행

- **추진배경** 통상적인 대책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어 침수방지 시설을 연계한 대책 추진 및 침수예보체계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홍수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 주도의 침수방지 대책 추진
 -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반적 설계기준보다 과거 최대강우량 등을 고려해 설계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검토
 - 도시하천의 수위뿐만 아니라 하수관로 수위 등을 연계 분석해 도시지역의 침수를 예측하여 국민께 정보 제공
- **시행일** 2024년 3월 15일

파충류 수입 검역 시행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044-201-725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 (☎ 062-949-4332)

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되는 인수공통감염병 등과 같은 질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5월 19일부터 파충류에 대한 검역이 시행됩니다.

(‘21. 5. 18.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해외에서 국내로 파충류를 들여오는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야생동물 검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검역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야생동물 중 포유류·조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전염병을, 양서류는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생물질병에 대해 수입검역을 실시중

▣ 파충류 검역에 관한 사항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wadis.go.kr)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검역제도 시행

- 추진배경 해외에서 수입되는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함
- 주요내용 야생동물을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수입검역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
- 시행일 2024년 5월 19일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 확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044-200-5287)

2024년에는 해양방사능 감시망이 127개 정점에서 165개 정점으로 확대됩니다.

- 방사성물질로 인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에, 정기조사(정밀분석)를 52개소에서 60개소로, 긴급조사(신속분석)를 75개소에서 105개소로 확대하여 우리 관할 해역으로의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입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정기조사(정밀분석) 40개소, 긴급조사(신속분석) 33개소 → 38개소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보도자료>24년 해양방사능 감시 강화

해양방사능 감시 강화

• **추진배경** 국내 해역으로의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에 대한 감시 강화

• **주요내용**

구분	합계('23→'24)	정기조사('23 →'24)	긴급조사('23 → '24)
조사정점	127 → 165 (+38)	52 → 60 (+8)	75 → 105 (+30)
분석방법	-	정밀분석	신속분석
조사대상	-	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해수
조사항목	-	세슘, 플루토늄, 삼중수소, 스트론튬 등	세슘, 삼중수소
조사기간	-	최대 2개월에 1회	매월

• **시행일** 2024년 1월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 고시 개정)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방사능 모니터링 실시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044-200-5241)

2024년부터는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에서도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이 시작됩니다.

- ▣ 태평양 도서국 인근을 흐르는 북적도 해류는 우리 해역으로 직접 유입되는 쿠로시오 해류와 연결되는 중요 해역입니다.
- ▣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10개 정점에 대해 연 2회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동 조사를 통해 우리 해역으로의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가 사전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

- **추진배경** 우리 해역으로의 방사능 물질 유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 확보
- **주요내용**
 - 조사 대상: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10개 정점
 - 조사 주기: 연 2회(상, 하반기)
 - 조사 항목: 세슘, 삼중수소
- **시행일** 2024년 2분기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23)

2023년 12월 28일부터 어장청소를 하지 않은 어업권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22.12.27. 「어장관리법」 개정)

- 어업권자가 어업·양식활동을 하는 동안 어장청소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어업권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합니다.
 - ※ 면허면적 1ha 당 50만 원, 연 2회(1회당 최대 250만 원)
-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에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었던 과태료 제도는 폐지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자율적인 어장 환경 개선 노력을 위해 어업인 책임을 강화한다.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 추진배경 어업권자의 어장관리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 주요내용 어장청소를 하지 않은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 시행일 2023년 12월 28일

기후변화 상황지도 시범서비스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 (☎ 042-481-7425)

과거부터 미래까지 기후변화 추세와 미래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기반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2100년까지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데이터가 아닌 지도 기반으로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별 상세 기후변화 및 응용정보와 전지구 기후변화 전망 정보를 분포도, 그래프 등을 통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4종의 기후정보 및 27종의 극한기후지수가 주소, 행정구역(시군구)별로 시계열, 도표가 포함된 대시보드 형태로 서비스
 - IPCC SSP 시나리오(4종)에 따른 전지구 및 남한상세 기후변화 전망을 시대(21세기 전/중/후반), 연대(10년), 연, 계절, 월별로 서비스
 - 사용자 활용 편의를 위한 선택·표출된 데이터 및 이미지의 다운로드 기능 가능
- 2024년 12월에는 기후변화 영향정보,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 온실가스 정보 등 관련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상황지도 시범서비스

- 추진배경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는 기후변화 과학정보 및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요구 증가
- 주요내용
 - (지도서비스)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과거기후, 감시, 예측정보)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동네 지도로 제공
 - (분석 기능) 기후변화 과학정보를 요소별, 시대별, 영역별로 동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화면 분할 및 지도 동기화 기능 및 대시보드 형태의 지역별 기후변화 분석 정보 제공
- 시행일 2023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육상특보구역 세분화

기상청 예보정책과 (☎ 02-2181-0496)

2024년 5월부터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육상특보구역을 세분화하여 운영합니다.

-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위험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변화하는 기상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단일 구역으로 운영하던 특보구역을 부산광역시는 3개, 울산광역시는 2개 구역으로 세분화합니다.

※ 여름·겨울철 시험운영('23년 5월~10월, '23년 12월~'24년 3월) → 정식운영('24년 5월)

- 서울특별시 특보구역 세분화('20년 5월)를 시작으로 국가 중요시설과 인구가 집중된 광역시와 특별시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육상특보구역 세분화 시행

- 추진배경** 기후변화로 과거 경험하지 못한 위험기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재 대응책 필요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1개 구역 → 3개 구역(부산동부, 부산중부, 부산서부)
 - (울산광역시) 1개 구역 → 2개 구역(울산동부, 울산서부)
- 시행일** 2024년 5월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직접발송 제도 확대

기상청 예보정책과 (☎ 02-2181-0493)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 강한 비가 관측될 경우 기상청이 직접 해당 읍·면·동 지역으로 긴급재난문자(40dB 이상의 소리 및 진동 동반)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1시간 누적 강수량 50mm와 3시간 누적 강수량 90mm 동시관측 시

■ 2023년 6월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운영 되었던 이 제도가, 2024년에는 광주·전남 지역을 포함하여 확대 실시될 예정입니다.

※ ('23년) 수도권(시범) → ('24년) 수도권(정규운영) + 광주·전남(시범)

■ 확대된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 여름철 방재기간이 시작되는 2024년 5월 15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직접발송 제도 확대

- 추진배경**
 - 기후위기에 따른 위험기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 강한 호우 시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 발송 필요성 대두
 - * 신림동 반지하 사고('22.8.8.) 당시 기상청 호우(긴급) CBS제도가 있었다면, 사고발생(최초 구조신고) 약 20분 전 CBS 발송으로 인명사고 예방 가능했을 것으로 기대
 - 첫 제도 도입 단계에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만 대상으로 기상청 재난문자 직접발송 시범운영 실시('23.6.15.~10.15.)
- 주요내용**
 - (문자종류) 긴급재난문자로서 40dB 이상 알림 및 진동 동반(수신거부 가능)
 - (발송기준) 50mm/1h & 90mm/3h 동시관측시
 - (지역단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발송
 - (운영지역) ('23년) 수도권(시범) → ('24년) 수도권(정규) + 광주·전남(시범)
- 시행일** 2024년 5월 15일

눈의 무게를 고려한 상세 강설정보 제공

기상청 예보정책과 (☎ 02-2181-0496)

2024년 1월부터 눈의 무게까지 고려한 상세 강설정보를 제공합니다.

- 현재는 눈이 내리는지, 눈이 내린다면 얼마만큼의 눈이 내리는지에 대한 예보를 제공하였다면, 앞으로는 눈 속의 수분까지 고려하여 '무겁고, 많은 눈'과 같은 정성적인 정보도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 눈이 많이 오는 전라와 강원 동해안 지역을 우선으로 제공하고 차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눈의 무게를 고려한 상세 강설정보 제공

- **추진배경** 같은 양의 눈이 내리더라도 습기를 많이 포함한 눈이 많이 내리면 시설물 붕괴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한 지원책 필요
- **주요내용** (현재) 눈의 유무 및 눈의 양
(개선) 눈의 유무 및 눈의 양과 함께 '무거운 눈'과 같은 정성 정보도 제공
- **시행일** 2024년 1월

약한 바람에 대한 정보로 황사-미세먼지 예보 강화

기상청 예보정책과 (☎ 02-2181-0493)

강풍에 의한 피해 저감을 위한 바람 예보 뿐 아니라, 약한 바람에 의한 황사, 미세먼지 등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황사-미세먼지 예보를 지원하는 약한 바람 맞춤형 기상정보를 확대합니다.

- 환경부와 협업하여 황사-미세먼지 예보를 생산하는 기상청은 2023년에 약한 바람에 대한 맞춤형 기상정보 4종*을 개발한 데 이어, 2024년에는 3종**의 기상정보를 새롭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 상세 풍속 및 약한 바람 영역(지상/1.5km고도), 행성경계층 고도, 지상 강수

** 대기 정체지수, 역전층 정보, 대기안정도

- 새롭게 개발되는 맞춤형 기상정보는 2024년 3월부터 봄철 황사-미세먼지 예보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약한 바람에 대한 정보로 황사-미세먼지 예보 강화

- **추진배경** 황사-미세먼지에 대한 국민피해 및 관심도 증가에 따라 보다 정확한 예보를 위한 맞춤형 기상정보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약한바람 정보 등 황사-미세먼지 예보 맞춤형 기상정보 생산과 활용
※ ('23년/4종) 상세 풍속 및 약한 바람 구역(지상/1.5km 고도), 행성경계층 고도, 지상 강수 → ('24년/3종 추가) 대기 정체지수, 역전층 정보, 대기안정도
- **시행일** 2024년 3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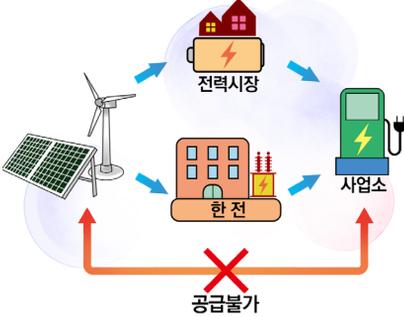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202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 추진

시행일: 2024년 5월 1일

Before

그동안 모든 발전설비는 전력시장 거래가 원칙으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직접 공급이 불가능했습니다.



After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습니다.



2 특허청

자세한 내용은 p.214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그동안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간 500만 원까지 비과세되었습니다.



After

현장 연구원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직무발명 비과세 혜택이 확대됩니다.



3 특허청

자세한 내용은 p.215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시행일: 2024년 5월 1일

Before

등록되어 있는 상표 또는 먼저 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출원하더라도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After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라도, 선권리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표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 단, 상표와 지장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는 적용 제외.

4 특허청

자세한 내용은 p.216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잠정)

Before

그동안 다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의 신청 대상이 한정적이었습니다.



After

다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 신청대상이 확대됩니다.



데이터분쟁조정 제도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 (☎ 044-202-6292)

「데이터 산업법」에 따라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23년 10월)하였으며, 2024년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된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 전반을 수행합니다.
-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는 데이터 전문가(분쟁위원)와 함께 원만한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신속하고 공정한 데이터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보도자료)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데이터분쟁조정 제도 도입

- **추진배경**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관련하여 복잡·다양한 이해관계간 갈등 속에, 데이터에 대한 부정사용 방지·보호 및 공정·합리적인 데이터 활용 문화 정착을 위해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도입·운영
- **주요내용**
 - (조정대상)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 관련 분쟁
 - (신청방법)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www.ddrc.go.kr)
 - (조정절차) ① 분쟁조정 신청 접수, ② 조정위원 구성, ③ 사실관계 확인 & 당사자 의견 청취, ④ 조정안 제시, ⑤ 수락시, 조정성립
 - (조정비용) 무료
 - (기타문의)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지원반
 - 053-230-4210 / 4202 / 4268
 - ddrc@nia.or.kr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연구실사고 인정 범위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044-202-4852)

2024년 5월 1일부터 연구실안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연구실사고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중 입은 피해를 연구실사고로 보았으나,
- 앞으로는 산, 강 등 자연 공간, 건물 복도, 타 기관 연구실, 외부 현장실습 공간 등 연구실 밖에서 연구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연구실사고에 포함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사고 범위 확대

- **추진배경** 외부공간에서 연구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연구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연구실 밖에서 연구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연구실사고 범위에 포함
 - 외부공간에서 연구활동 중 사고를 당한 연구자에게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사고보상 실시
- **시행일** 2024년 5월 1일

통신비 부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 044-202-6655)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23.11월)의 후속조치로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등 중저가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 통신사와 협의하여 데이터 중·소량 이용자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4만 원대 중반인 5G 요금 최저구간이 3만 원대로 낮아지며,
- 2~3종에 불과하여 선택권이 제한적인 소량(30GB 이하)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이 보다 세분화됩니다.
- 또한, 단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제조사와 협의하여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 3~4종이 ’24년 상반기 내 출시될 예정입니다.
- 이처럼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으로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보도자료)통신비 부담완화 방안 발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 **추진배경** 중저가 요금제·단말기 선택권 확대 등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 추진계획 발표 및 후속조치 이행
- **주요내용**
 - 11월부터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토록 개선
 - ’24년 1분기 내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및 소량 구간 세분화
 -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 연내에 2종, ’24년 상반기 내 3~4종 출시 유도
 - 요금·마케팅·품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강화
- **시행일** 2024년 상반기

수출입물품 세관검사 수수료 폐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7)

수출입물품의 세관검사 시 부과하던 수수료를 폐지합니다.('24. 1. 1. 개정 「관세법」 시행)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세관검사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제개편안 발표('23.7월)

수출입물품 세관검사 수수료 폐지

- **추진배경** 관세분야 제도 합리화 및 수출입기업 부담 완화
- **주요내용** 수출입물품의 세관검사 시 부과하던 수수료 폐지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세관검사하는 물품부터 적용

용도세율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044-215-4431)

지금까지 할당관세 등 9개 탄력관세 제도에 대해서만 용도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용도세율: 동일물품에 대해 통관 이후 특정용도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24년부터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및 편익관세 등에도 용도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용도세율 적용대상 확대

- **추진배경** 정책효과성 제고 및 납세자 재산권·이익 보장을 위해 용도세율 적용 대상 확대
- **주요내용**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편익관세에 대해서도 부과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차등적인 관세율을 부과하는 용도세율 적용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044-215-447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이 취소되고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 **추진배경** 부정한 방식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해 인증수출자 제도의 신뢰성 제고
- **주요내용**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고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조항 신설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 044-203-3916)

2024년 5월 1일 이후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을 추진합니다.
(‘23. 10. 31. 「전기사업법」 개정)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ESS에 저장 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 판매사업이 신설됩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 신설

- **추진배경**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수요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높은 변동성 등 전력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 추진
- **주요내용**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직접 공급 허용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ESS에 저장 후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신설
- **시행일** 2024년 5월 1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044-203-3907)

지산지소(地產地消)형 지역에너지로의 전환이 본격화됩니다.

(’23.6.13. 제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4.6.14.))

- 지역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 직접 거래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제도와 더불어
 - * 지정 절차: 시·도지사 신청 → 산업부(전문기관 검토) → 에너지총 심의·확정
- 대규모 전기 사용 시설이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전력수요의 특정지역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통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요

- **발의배경**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 및 비용 증가로 수요자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요구 확대
- **주요내용**
 - (전력계통영향평가) 평가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지역 내 입주하려는 신규 대규모 전력소비자의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 평가 실시
 - (분산e 특화지역) 전력 직접거래 등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특화지역 도입
 - (배전망운영) 배전사업자에게 배전계통에 연결된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예측·감시·평가 수행 등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 부여
 - (통합발전소) 소규모의 분산에너지를 통합하여 시장에 입찰·참여하는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사업 신설 및 등록*제도 규정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인력·시설 등을 갖추도록 등록 요건 규정
- **시행일** 2024년 6월 14일

사업재편 지원범위에 디지털전환·탄소중립 유형 추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 044-203-4231)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재편이 보다 쉬워집니다.

-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재편 제도 지원범위가 확대됩니다.

 - * 사업재편 지원유형: (기존) ① 과잉공급 해소, ② 신산업진출, ③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추가) ④ 디지털전환, ⑤ 탄소중립
-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분야로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도 컨설팅·R&D·자금 등 사업재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사업재편 제도 지원신청 문의: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www.oneshot.or.kr)
- 개정내용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연혁>법률 제19288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주요 개정 내용

- **추진배경**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탄소중립 기초 확산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촉진 필요
- **주요내용** 디지털전환·탄소중립 추진 사업재편 기업을 법상 지원대상에 추가

 - ‘디지털 전환’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 기술과 산업공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
 - ‘탄소중립활동’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
- **시행일** 2024년 3월 29일

「수소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 044-203-3957)

2024년 2월 1일부터 「수소의 날」(매년 11월 2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됩니다.

- 금번 개정을 통해 수소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으로써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수소의 날」 세계(글로벌) 수소 선도국 도약 결의를 다져

「수소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 추진배경**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수소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 주요내용** 「수소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데 기여
- 시행일** 2024년 2월 1일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 명확히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044-203-3896)

2024년 1월 4일부터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예외사유가 명확해집니다.

(‘23. 1. 3. 일부개정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기존에 하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던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 전기공사 분리발주 사유가 아래와 같이 명확히 규정되어 해당 사유로만 분리발주 예외가 되며, 그 외의 건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합니다.

〈아 래〉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사
3.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 시행 후 기존의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던 분리발주 예외사유는 삭제될 예정이며, 개정된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로만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 규정

- **추진배경** 기존에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던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분리발주 제도의 취지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아래와 같이 법령상 명확히 규정함
〈아 래〉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사
3.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 **시행일** 2024년 1월 4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044-204-7526)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 02-2100-2993)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 제도를 신설·지원합니다.

■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드립니다.

* 상호금융기관(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 관련 기관인 중소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세부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공지할 계획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 **추진배경**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지원내용) 기 납부한 이자 중 일부 환급 지원
* 세부운영방안 마련 중
- **시행일** 2024년 (미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25)

2024년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한시)을 2,520억 원 규모로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식 등은 2024년 상반기 중 별도 공고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설

- **추진배경**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영세 소상공인 (구체적 지급 기준 등은 별도 공지)
 - (지원내용)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 (총 2,520억 원 규모)
- **시행일** 2024년 상반기 중 별도 공고

벤처기업법 상시화, 인재 유인책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044-204-7706)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벤처기업법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시화하였습니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재 유인책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비상장 벤처기업이 성과조건부 주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창업·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및 겸직할 수 있는 공공기관 연구원의 범위를 전 분야 연구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벤처기업법 개정

- **추진배경** 벤처기업 지원정책 안정적 추진을 위해 법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신규 인재 확보 방안 도입 근거 마련
- **주요내용** 벤처기업법 유효기간 삭제,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창업벤처 근무를 위해 휴·겸직 가능한 공공기관 연구원 범위 확대
- **시행일** 2024년 7월 15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5)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 가능성과 피해 배상액을 높였습니다.

▣ 위탁기업이 기술유용 등 행위시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현행 3배 이내)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민사소송 절차 시,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였습니다.

상생협력법 및 기술보호법 개정

- **추진배경**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 자료 송부요구권을 개선하여 사전예방 가능성·피해 배상액 개선
- **주요내용**
 - (지원대상) 기술분쟁 소송 당사자인 중소기업
 - (개정내용)
 - 중소기업 기술분쟁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향
 -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 관련 법원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 **시행일** 2024년 1월 9일 공포 예정

중소·연안선사 지원제도 개편 및 확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044-200-5716)

2024년부터 중소기업·연안 해운선사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이 확대됩니다.

☐ 해양진흥공사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을 외항선사에서 내항(연안)선사까지 확대하고, 지원규모 또한 5년간 총 5,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 중소기업 선사가 선박 도입 시 투자지원 확대 및 보증요율을 인하하여 금융 제공

☐ 또한,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연안선사를 포함하고, '선박담보부 보증사업**'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연안선사의 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선사가 운영자금 대출 시, 공사 예치금 이자를 통해 대출이자의 일부(2%) 지원

** 선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선박을 담보로 대출 시, 잔여 담보가치에 대해 보증 제공

☐ 이 밖에 지방 선사에 대한 방문 홍보 및 컨설팅 지원, 환경규제 대응 바우처 지급 등 비금융적 지원도 함께 추진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보도자료)중소·연안선사 지원 확대(예정)

중소·연안선사 지원 제도 개편 및 확대

• **추진배경** 해운시황 하락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연안선사의 경영 위기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지원 제도 확대

• **주요내용** (선박도입)「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규모 및 대상 확대, 상환기간 연장 등

구분	현행	개선(안)
지원대상	중소 외항선사	중소 외항·내항 선사
지원범위	•(투자)중고선 도입 및 S&LB •(보증)친환경 신조	•(투자)신조·중고선 도입 및 S&LB •(특별)신조·중고선 도입 및 기존 선박 담보부 대출
지원한도	LTV 70% 이내	LTV 80% 이내
금융기간	5년(균등상환)	5년 + 거치기간 1~3년
지원규모	'22~'26년 간 2,500억 원	'23~'27년 간 5,000억 원

• (경영지원)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 확대(외항→외·내항) 및 '선박담보부 보증사업' 신설

• (비금융지원) 지방 선사 대상 홍보 및 컨설팅 강화, 환경규제 대응 바우처 제공 등

• **시행일** 2024년 1분기

해양수산 신기술 제품·공사 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한 조달특례 지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 044-200-6221)

‘해양수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공사에 대한 확인 절차가 새롭게 마련되고 조달특례가 지원됩니다.

-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해양수산 신기술 개발·활용 제품, 시설 공사 실적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확인을 받은 기업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계약에 대해 수의계약, 평가가점 등의 조달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계약예규 등의 개정·시행 시기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신규 추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기술 개념도, 설계도 수준만 보유해도 신기술 인증 가능)	지원내용: 기업이 신기술마크 사용가능, 대출지원 등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 공사 실적 인증 (해당 기술을 실제 구현하여 제품제작, 실제 공사 현장에서 활용한 경우에만 인증 가능)	지원내용 : 제품-수의계약대상 공사-실적평가가점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해양수산 신기술 제품·공사 실적에 있는 기업 조달특례 지원

해양수산 신기술
제품 공사실적에
있는 기업 특례조달
지원(예정)

- **추진배경** 해양수산 신기술 개발·활용 제품의 활용 제고를 위해 조달특례 등 지원책 마련 필요
- **주요내용** 해양수산 신기술 개발·활용한 제품, 시설 공사 실적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고, 해당 기업의 공공계약에 대한 수의계약, 평가가점 등 조달특례 지원
- **시행일** 2024년 9월 15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GR) FTA 원산지증명서 간편 발급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042-481-7968)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제품*) 25개 품목에 대해 2023년 9월 7일부터 FTA 원산지증명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 GR(Good Recycled): 탄소감축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제품 중 품질·친환경성을 평가하여 우수제품으로 정부(국가기술표준원)가 인증

■ GR인증제품은 국내 재활용 원재료를 100% 사용하여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재활용 제품으로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재활용 타이어 분말, 폐화석 비료 등 총 25개 품목*입니다.

* (25개 대상품목)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정제연료유, PMMA 재활용 MMA 유기복합물, 재활용 석재를 이용한 포장블록, 성복토 및 뒷채움용 철강슬래그, 재활용 트레드 타이어, 재활용 폴리우레탄 고무분말, 재활용 타이어 분말, 인조잔디용 고무분말, 폐화석 비료, 공업용 탄산칼슘, 폐분, 부산물 비료(퇴비), 남은 음식물 사료(건식), 사료용 어분, 사료용 육골분, 육분, 혈분, 사료용 유지, 폐알루미늄을 이용한 알루미늄 탈산제, PMMA 재활용 산화알루미늄, 재활용 인듐, 재활용 주석, 재활용 코발트, 재활용 구리

■ 앞으로 주요 GR인증제품 수출업체는 GR인증서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증빙서류

일반 수출품목(8종)	원산지 간편인증 품목(1종)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입증자료 (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물품공급계약서, 원산지확인서 등 7종)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참고 관세청 홈페이지(보도자료)·공지사항)친환경 정책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를 관세청장
인정하는 원산지
(포괄)확인서로 지정

- **추진배경** 우수재활용 물품의 원산지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여 FTA 활용 수출 지원
- **주요내용**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 물품은 해당 인증서로 원산지를 간이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지정 및 대상품목 지정
- **시행일** 2023년 9월 7일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 042-481-5920)

2024년 1월 1일부터 종업원들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지배주주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그간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간 500만 원까지 비과세되어 왔으나, 연구 현장에서는 연구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직무발명 비과세 혜택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 이에 2024년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범위가 7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등을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직무발명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 실제 연구자가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소득세 부담 회피
- 연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됨으로써 연구의욕이 더욱 고취되고 혁신기술 창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 **추진배경**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기술개발 유인을 제고하고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등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042-481-5377)

2024년 5월 1일부터 '상표 공존 동의제'가 시행됩니다.

-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라도, 선권리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표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 단,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는 적용 제외
- 시행일 이전에 출원된 상표라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출원 건들은 모두 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제도를 통해 공존하게 된 상표 중 어느 하나가 부정 목적으로 사용되어 수요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경우,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소상공인 상표 사용에 '숨통'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 **추진배경** 안정적인고 활발한 상표 등록·사용의 장려, 상표 분쟁의 사전 방지 및 출원인의 절차적 편의 제고
- **주요내용**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당사자간의 적법한 동의계약서에 의해 선등록(출원)상표와의 동일·유사를 이유로 한 등록거절이유(상표법 §34①7 또는 §35①)가 해소되는 방식
- **시행일** 2024년 5월 1일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

특허청 특허제도과 (☎ 042-481-8243)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특허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이 확대됩니다.

■ 국가첨단기술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대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어 이차전지 기술분야로 확대되고,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우선심사 신청대상은 17개에서 19개 기술분야*로 늘어납니다.

* 기존 (①인공지능, ②사물인터넷, ③삼차원 프린팅, ④자율주행차, ⑤빅데이터, ⑥클라우드컴퓨팅, ⑦지능형로봇, ⑧스마트시티, ⑨가상·증강현실, ⑩혁신신약, ⑪신재생에너지, ⑫맞춤형 헬스케어, ⑬드론, ⑭차세대 통신, ⑮ 지능형반도체, ⑯첨단소재, ⑰블록체인) + 추가(⑱스마트제조, ⑲차세대바이오의약품)

■ 변경내용은 2024년 1월 (잠정) 시행일 이후 우선심사 신청되는 출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주요제도)특허/실용신안제도)우선심사제도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

- **추진배경**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변화 주기가 짧은 기술에 대한 심사역량을 집중하면서 우선심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국가첨단기술 및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분야를 확대
- **시행일** 2024년 1월(잠정)

심판청구서 직권보정제도 도입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 042-481-5583)

2024년 3월 15일부터 심판장 직권보정제도가 도입됩니다.

(*23.9.14. 개정 특허법 제141조/상표법 제127조/디자인보호법 제128조)

-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중 경미하고 명확한 잘못이 있는 경우 별도의 보정요구서 발송 대신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직권보정 사항에 이상이 있어 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 청구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함
- 그리고 심판장의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도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판청구서 직권보정 제도

- **추진배경** 심판 절차의 지연,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심판청구서 직권보정 제도 도입
- **주요내용** 심판청구서에 잘못 기재한 것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 별도의 보정요구서 대신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 심판청구서 직권보정제도 도입
- **시행일** 2024년 3월 15일

심판참고인제도 도입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 042-481-5583)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건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의견서 제출 과정을 통해 청취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23.9.14. 개정 특허법 제154조의3/상표법 제141조의2/디자인보호법 제142조의2)

- 심판장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공적 성격을 띠는 참고인에게 의견 청취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생명중단 장치’에 대한 특허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지에 대하여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또는 ‘의료윤리에 능통한 법학자’에게 해당 의견서 제출
- 심판장은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양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 일방당사자에게 유리한 참고인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정 관련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하여 규정합니다.

심판참고인제도 도입

- **추진배경** 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공단체 등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심판참고인제도 도입
- **주요내용**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공적 성격을 띠는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여 의견 청취
- **시행일** 2024년 3월 15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7

국토·교통



1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p.223

GTX-A 개통

시행일: 2024년 3월

Before

지금까지 지하철 버스 기준으로 수서~동탄, 운정~서울역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 길었습니다.



수서~동탄 79분 소요
(지하철, 버스 기준)
파주 운정~서울역 50분 이상 소요
(지하철, 버스 기준)

After

GTX-A 개통으로 '초연결 광역경제 생활권' 시대가 본격 개막됩니다.



수서~동탄 19분 소요
(3월 수서~동탄 개통)
운정~서울역 20분 소요
(연말 파주 운정~서울역 개통)

2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p.224

출산가구에 특별(우선)공급 도입

시행일: 2024년 3월 25일

Before

종전에는 혼인가구 중심으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혼인가구 중심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제공

After

출산가구에 주택 특별(우선)공급 제도가 신설됩니다.



자녀 출산 시 특별(우선)공급
제도 신설

3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p.225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시행일: 2024년 3월 25일(예정)

Before

그동안 주택 특별공급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동일한 날에 모두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After

동일 일자에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하여 당첨 효력이 인정됩니다.

부부가 동일한 날에 모두
당첨된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 인정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당첨자에 대해서는
당첨자로 관리하지 않음
청약통장을 미사용한 것으로 간주



4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p.226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도입

시행일: 2024년 5월

Before

현행 알뜰교통카드는 이동 거리에 비례하여 지원되고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수반되어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알뜰교통카드

대중교통	알뜰	~2천 원	2~3천 원	3천 원~
일반	~250원	~350원	~450원	
청년	~350원	~500원	~650원	
저소득	~700원	~900원	~1,100원	

이동거리 비례 적립(최대 800m)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After

K-패스는 이동한 거리와 관계없이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며, 알뜰교통카드보다 상향된 적립률로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K-패스

대중교통	K-패스	적립률	예)1,500원 기준
일반	20%	300원	
청년	30%	450원	
저소득	53%	800원	

이동거리 무관(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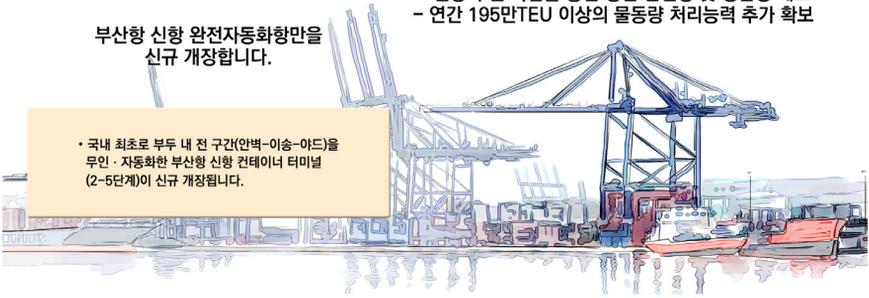
부산항 신항 완전자동화항만 신규 개장

시행일: 2024년 상반기

부산항 신항 완전자동화항만을
신규 개장합니다.

• 국내 최초로 부두 내 전 구간(안벽-이송-야드)을
무인·자동화한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2-5단계)이 신규 개장됩니다.

- 국내 최초 부두 내 전구간(안벽-이송-야드) 완전자동화
- 현장 무인 작업을 통한 항만 안전성 및 생산성 제고
- 연간 195만TEU 이상의 물동량 처리능력 추가 확보



GTX-A 개통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 044-201-3981)

2024년 3월 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합니다.

- 현재 열차 운행과 관련된 주요 공사를 모두 마치고, 개통 전 마지막 점검인 종합시험운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수도권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2024년 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개통되어,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50분에서 20분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이로써 빠른 속도로 수도권의 주요 경제·산업·문화 거점이 연결되는 '초연결 광역경제 생활권' 시대가 본격 개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GTX-A 수서~동탄, 종합시험운행 본격 착수

GTX-A 개통

- 추진배경 수도권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30분 출퇴근 시대를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을 빠르게 연결하는 GTX 추진
- 주요내용
 - 사업구간: 운정~동탄 82.1km
* (민자) 운정~삼성 42.6km, (재정) 삼성~동탄 39.5km
 - 총사업비/기간: 5조 6,603억 원 / '19년~'24년
- 시행일 GTX-A 수서~동탄 '24.3월 개통, 파주 운정~서울역 연말 개통

출산가구에게 특별(우선)공급 도입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044-201-4517)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51)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 가구에 대해 연간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을 도입합니다.

* 공공분양(뉴·홈, 3만호), 민간분양(1만호), 공공임대(3만호)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특별(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 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를,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20%를 특별(우선) 공급하며,
 - 공공임대의 경우 통합공공임대 내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10%) 신설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중 일부를 우선 지원합니다.
- 또한,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하여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설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아이와 함께 행복한 일상, 출산 가구 주택 지원 강화한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 신설

- 추진배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가구에게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도입
- 주요내용 자녀 출산 시 공공·민간주택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제도 도입
- 시행일 2024년 3월 25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51)

앞으로는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하여 당첨 효력이 인정됩니다.

- 기간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되었으나,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3월 25일(예정)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 추진배경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혼인·출산 가구에 혜택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당초)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청약에 모두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
 - (개선)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에 모두 당첨되었으나 둘 다 당첨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먼저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 당첨 효력 인정
 -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국민주택 + 국민주택 등에 신청한 경우 모두 불인정
 - 선 접수분이 아닌 동일한 날의 다른 당첨 주택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를 하지 않고, 당첨자로 관리하지 않으며, 청약통장을 미사용한 것으로 간주
- 시행일 2024년 3월 25일(예정)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도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 044-201-5082)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최대 60회까지 환급받게 됩니다.

- 현행 알뜰교통카드는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지원되고 별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수반되어 다소 불편하고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 내년 5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K-패스는 이동한 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적립함으로써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며, 적립률도 알뜰교통카드보다 상향되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K-패스) 도입

- 추진배경 고물가 지속, 전국 대중교통비 인상 등에 따라 서민·청년층 등 대중교통 실수요자의 교통비 부담 가중
- 주요내용
 - (K-패스 신규 도입)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금액의 일정비율 (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최대 60회까지 환급
 - (기대효과)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을 개선(출·도착기록 불필요) 하고, 적립 혜택도 확대하여 이용자 편의·혜택 대폭 강화
 - * 회당 1,500원씩 60회 지출 기준, (알뜰) 일반 청년 저소득층 1.5~2.1~4.2만원 vs (K-패스) 일반 청년 저소득층 1.8~2.7~4.8만원 절감
 - **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기 발급된 카드로 K-패스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 예정
- 시행일 2024년 5월

공동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리강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3)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관리주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진단 실시(기본사항 점검, 이상 발견시 업체 연락), 용역 및 공사 시행·감독 등을 합니다.
 - ※ 해킹 발생, 설비 고장 등은 전문공사 및 용역업체를 통해 조치
- 개정내용은 2024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 관리 강화

- 추진배경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건(21년)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사생활 유출 등 안전성이 우려되면서 홈네트워크 관리 필요성이 대두
-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관리규약 준칙 항목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법령상 근거 마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함으로써 안전관리자 지정 및 주기적이고 일상적인 점검을 실시
- 시행일 2024년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044-201-3384)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뉴·홈(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9560호, 시행 2024.1.19.)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 **추진배경**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필요성 증가와 민간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에도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여야 한다는 요구
- **주요내용**
 -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그 요청을 수락할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함 (법률개정안 제13조의2)
 -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함(법률개정안 제66조 및 제68조)
- **시행일** 2024년 1월 19일

항공 및 위치서비스 분야에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 항행위성정책과 (☎ 044-201-4350)

2024년도부터 GPS의 위치오차(15m~33m)를 1~1.6m 이내로 축소하는 보정신호를 우리나라 전역에 전용위성으로 제공해 보다 정밀한 위치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가 본격 시행됩니다.

* KASS(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카스): GPS의 오차를 축소해(15~33m→1~1.6m) 위성으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시스템의 한국형 명칭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세계 7번째로 개발·구축한 KASS는 '23.12월말부터 항공분야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으며, 현재 GPS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 분야 등에서 활용·접목이 가능합니다.
- 이를 통해, 항공교통분야 외에도 UAM·드론·내비·안전·농업 등 다양한 GPS 활용분야에서 보다 정밀하고 신뢰도 높은 위치정보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항공위성서비스(KASS)로 위치정보서비스 정확성 높인다('23.7.27.)

정밀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항공위성서비스
(KASS) 개시

- 추진배경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위성항법 표준에 따라 전 국토에 1~1.6m 이내의 정밀한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개발·구축
- 주요내용
 - (주요목표) 항공안전 강화, 수용능력 증진 등을 위한 항공용서비스를 주요 목표로 추진 중, 정밀위치정보를 활용하는 타 분야 확산도 추진
 - (구축규모) 전국 지상시스템(기준국7, 위성통신국2, 중앙처리·통합운영국2) 및 정지궤도 위성 2기(임차)
- 시행일 2023년 12월 28일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044-201-3857)

2024년 1월 1일부터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는 새로운 등록번호판 제도가 시행됩니다.

- ▣ 적용대상은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자동차이며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합니다.
- ▣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법인승용차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4년 시행 정책 및 예산사업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

- **추진배경** 고가의 차량을 법인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
- **주요내용**
 - (적용대상) 8천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법인소유, 리스·렌트*, 관용차**)
 - * 리스·렌트는 1년 이상 장기 임차 차량
 - ** 보안, 경호, 수사 등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
 - (취득가액 판단기준) 자동차제작증상 출고가액이 8,000만 원 이상
 - * 이전등록 차량(중고차):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
 -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는 승용차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 연관기업 부지매입비 등 대출이자 지원을 조정(상향)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 (☎ 044-201-4470)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의 요청에 따라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업 연관기업에 지원해 오고 있는 '부지 매입비·건축비·분양비의 대출 이자' 기준금리를 상향하였습니다.

- '23년까지 일괄적으로 2.0% 적용해 오던 이자액의 금리를 '집행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23.12.31.기준 3.5%)'로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상향되는 효과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건축착공 또는 입주기업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044-201-447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 연관기업 대출이자 지원을 조정 (상향)

- 추진배경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실질적인 창업 등의 지원을 위해 현실에 맞게 대출이자 지원을 조정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 (지원대상) 혁신도시 입주기업
 - (지원 규모 및 기준) 입주승인 받은 날로부터 3년간

* 지원비율: 대출원금 6억 원 이하(이자액의 80%이내), 6억 원~12억 원 이하(이자액의 70% 이내), 12억 원 초과 ~ 18억 원 이하(이자액의 60% 이내), 대출원금 18억 원 초과(이자액의 50% 이내)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044-201-3512)

종합·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방법이 건설안전과 품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 시공능력평가의 과도한 경영평가액 상하한을 하향조정하고 신인도평가액의 상하한액은 확대합니다.
- 또한 신인도평가 가감점 항목에 건설안전·품질, 건설현장 불법정행위, 중대재해 처벌 여부 등을 신설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시공능력평가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2 검색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

- **추진배경** 시공능력평가에 건설사업자의 실적, 기술능력 및 품질·안전관리 등 실제 시공능력의 반영도를 개선
- **주요내용**
 - 건설사업자 대상의 시공능력평가에서 실적평가액 대비 경영평가액의 상하한을 조정하여 경영평가 비중을 줄이고
 - 신인도평가에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 관련 항목이 포함
- **시행일** 2024년 1월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신규등록 일부 허용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044-201-3537)

2024년 1월 1일부터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의 영업용(대여사업용) 신규등록이 일부 허용됩니다.

- 전년도 말 영업용 건설기계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덤프트럭은 3%, 콘크리트펌프는 5% 범위내에서 영업용을 신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덤프트럭은 약 1,390~1,430대, 콘크리트펌프는 약 290~300대 규모로 추정('24년)
- 다만,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등록가능 대수가 모두 등록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신규등록을 제한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법령정보>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일부개정고시

수급조절 건설기계 신규등록 일부 허용

- **추진배경** '23년 12월 수급조절 기간 만료에 따라 대상 건설기계의 수요·공급 예측을 통해 수급조절 필요성 재검토
- **주요내용**
 -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3톤 미만 소형타워크레인은 기존과 같이 등록제한 유지
 -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펌프는 전년도말 기준 3%~5% 범위내 영업용 신규등록 허용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도로점용허가 모바일 기반 서비스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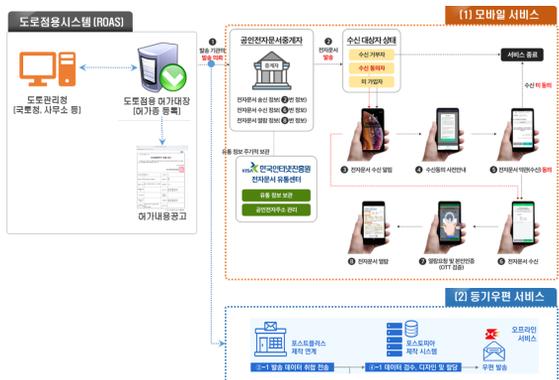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 044-201-3917)

도로관리청은 단순반복 수작업 등으로 등기를 발송하는 현행 업무를 모바일 발송 후 미수신자에게 자동 등기발송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 도로점용자는 허가증 발급을 위해 도로관리청에 직접 방문하는 등 불편함을 해소하고, 허가문서의 우편발송에 따른 분실우려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 2023년 12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 202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서비스 개요

• 주요내용 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 발급 및 등기우편 자동발급



• 시행일 2024년 1월 (자동 등기발송은 '24.3월)

K-드론 배송 상용화 표준모델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 044-201-4206)

2024년부터 섬·공원·항만에서 K-드론배송 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 K-드론배송 : 드론배송 가이드라인, 안전관리 체계, 드론식별시스템 및 인프라 등 종합적 시스템을 포괄하는 한국형 드론배송 체계

- 전국 유인섬과 공원 휴양지 및 산간마을에서 일반 택배(3kg 이하)나 치킨 등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비용은 섬에서는 5천 원, 공원 3천 원 가량으로 주문앱 결제가 가능합니다.
- 자자체가 요건을 갖추어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24.1~2월)에 신청하여 선정되면 사업이 시작됩니다.
- 선정된 지자체 드론배송지역에는 드론비행로, 드론안전관리시스템, 드론상황실, 드론배송거점 및 배달점 등이 구축됩니다.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 시행

- 추진배경 제2차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23~'32년)의 주요 추진과제로써 드론배송 상용화 표준모델 적용하여 주민편의 증진
- 주요내용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단위사업으로 선정시 섬·공원·항만 대상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 실시
 - (일정) 지자체 사전 설명회('23.12월), 공모 및 선정('24.1월~2월), 사업 시행('24.3월)
 - (규모) 섬배송 10개(광역·도) 이내, 공원 5~10개(시·군) 이내, 항만 3개 이내
- 시행일 2024년 3월

[K-드론배송 상용화 표준모델 개요]

① 섬 배송	② 공원 배송	③ 항만 배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태: 유인섬과 육지간 택배물, 편의점물품, 치킨 등 배송, 농수산물 역배송 (거점 3개 이상, 배달구간 10~2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태: 도심공원, 캠핑장/야영장, 해수욕장, 관광지 등에 편의점물품, 치킨·김밥 등 배송 (거점 3개 이상, 배달구간 10~2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태: 항만 주변 정박 선박 및 해상 레저지역에 음식물과, 선박용품, 낚시·생활용품 등 배송 (거점 1~3개, 배달지역 항만 인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송업체 : 국산드론제작업체 (초경량비행장치사용 사업자, 150kg 이하 배송기체 4대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송업체 : 국산드론제작업체 (초경량비행장치사용 사업자, 150kg 이하 배송기체 4대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송업체 : 국산드론제작업체 (초경량비행장치사용 사업자, 150kg 이하 배송기체 4대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송주기 : 구간당 주 1~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송주기 : 주중~주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송주기 : 주중~주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송비 : 5천원 (10km, 3kg/3호박스 이내, 5kg/4호 박스 - 8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송비 : 3천원(5km, 3kg/3호박스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송비 : 배송업체 설정

• K-드론배송 인프라 구축 지원: 드론실증도시사업 단위사업으로 선정 4~5억 원 지원

- ① [배송업체 운영지원] 1.2억원(10km 이상 장거리 배송시 1.5억원), ② [드론비행로구축] 거점-배달점 10~20개, 배달구간당 5백만원
- ③ [비행테스트] 3~5천만 원 ④ [드론안전관리시스템구축] 2천만 원
- ⑤ [유통물류연계] 5천만 원 ⑥ [거점] 컨테이너 2개, 이착륙장 3개(이륙1, 착륙2), 펜스(4개 기동), 전기&에어컨 설치, 5천만 원 내외(지자체 예산), [배달점] 착륙장1, 펜스(4개 기동), 안내판, 5백만 원 내외(지자체 예산)
- ※ [배달점주소지정] 행안부 자체 예산 ⑦ [드론상황실 구축] CCTV 설치 및 모니터링, 드론영상수신시스템 등 1.5억 원

리츠 자산운용 전문인력 보수교육 도입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 044-201-3415)

리츠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자산운용 업무를 계속 하고자 하는 경우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개정 내용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리츠 자산운용 전문인력 보수교육 도입

- 추진배경 리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 도입
- 주요내용 리츠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3년 주기의 보수교육 도입
- 시행일 2024년 2월 1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국토교통부 도시정비산업과 (☎ 044-201-4465)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 및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전국 51곳)에 적용 가능합니다.

- ▣ 정부가 가이드라인 성격인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도시 재구조화 방향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정비가 가능합니다.
- ▣ 노후계획도시는 특별법을 통해 주거·상업·일자리를 복합화하여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미래도시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노후계획도시 보도자료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 추진배경 1기 신도시의 기반시설, 아파트 등의 노후화로 인해 악화된 정주환경 개선
- 주요내용
 - (마스터플랜 수립) 정비기본방침(정부)-정비기본계획(1기 신도시)을 '24년 중 투트랙 병행하여 수립 진행
 - (기본방침) 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한 적정밀도계획, 단계별 정비물량 산정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도시 재구조화) 인구·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 개선요구 등을 반영하여 낡은 신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제시
 - (특례규정) 특별정비구역 내 안전진단 완화·면제, 도시·건축규제 완화,
 - 공공기여, 이주단지 조성 등 공공성 인정 시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면제
- 시행일 2024년 4월 (예정)

도심융합특구 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 044-201-4731)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고, 지방 5개 광역시에 사업이 본격화 됩니다.

-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문화)를 집약하여,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기업에게 매력적인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법이 시행되면 시·도지사등은 기본(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국토부장관은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합니다. 이와 함께 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건축규제 완화, 부담금 감면,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됩니다.
- 앞으로 도심융합특구 사업으로 인해 도심내 기업 유치 및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이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도심융합특구법

도심융합특구법 주요내용

- 추진배경 지방 대도시 도심에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개발로 기업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 (정의) '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① 지방 도심에 ②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구축하고 ③ 민·관의 자원을 집중하는 구역
 - (지정대상) 비수도권으로서, ① 인프라가 우수한 광역권 거점, ② 기업 등 우수한 입지여건, ③ 대학 등 집적 가능, ④ 기업 창업에 유리한 지역
 -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시·도지사등) → 기본계획 승인 및 지구 지정(국토부) → 실시계획 수립(시행자) → 실시계획 승인(국토부) → 조성
 - (지원사항) 도시·건축규제 완화, 각 부처의 다양한 특구 중첩 지정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연계·집중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 (운영관리) 특구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설립
- 시행일 2024년 4월 25일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 혜택 강화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044-201-4632)

2024년부터 다자녀가구의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보다 강화합니다.

▣ 2024년 3월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열차(KTX·SRT) 운임 할인을 30%에서 50%로 확대합니다.

▣ 또한, 2024년 하반기부터는 다자녀가구 철도 이용인원 제한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혜택의 폭을 넓혀가겠습니다.

* (현재) 최소 3명 이상(부모1 포함) → (개선) 2명(부모1, 6세 미만1명) 이용에도 할인

그간 철도운영사(코레일·에스알)는 선제적으로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운임 할인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철도운영사의 다자녀 기준(2명 이상) 완화: 코레일('19.1월~), 에스알('21.10월~)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 혜택 강화

- 추진배경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제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철도운임 할인 혜택 강화
- 주요내용 • (기준)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 대해 3명 이상 철도이용시 30% 운임할인
 • (변경)
 - 다자녀가구 중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운임할인 확대(30% → 50%, '24.3월~)
 - 다자녀가구 2명*만 철도를 이용해도 운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확대('24년 하반기)
 * 다자녀가구 2명(부모 1명, 6세 미만 유아 1명 限)
- 시행일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할인 강화('24년 3월 말)
 기존 다자녀가구 철도이용 인원제한 완화('24년 하반기)

주상복합건축사업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지하층, 복리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 044-201-5050)

주상복합건축사업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지하층, 주민공동시설 등은 건축연면적 산정시 제외합니다.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은 지하층, 복리시설 등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는데 반해, 주상복합건축사업은 제외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개정 내용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합리화

- 추진배경 주택건설사업은 지하층, 부대시설 등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지만, 주상복합건축사업(건축법)은 제외 규정이 없음
- 주요내용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간 형평성 도모 및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주상복합건축사업도 지하층, 주민공동시설 등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부담금 산정
- 시행일 2024년 7월 1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 044-201-3852)

2024년 7월부터 고속도로 등 다수의 시·도에 걸친 광역권 자율주행 여객·화물운송 서비스 실증이 용이해집니다.

▣ 그동안 시범운행지구*는 해당 시·도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지정이 가능해 자율주행 간선 화물수송 등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자율주행 서비스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통해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지역

▣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수 시·도에 걸친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광역권 자율주행 서비스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도 도입 개요

- 추진배경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체계 유연화를 통한 기업의 자유로운 실증·연구 지원
- 주요내용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체계 유연화
 - 다수의 시·도에 걸친 시범운행지구를 시·도지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시행일 2024년 7월

대학·전문대 등 내부 도로의 교통안전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 044-201-3868)

교통사고는 빈번하나 제도적 규율이 미흡한 대학교 도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대학교 도로의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 '단지내도로'에 포함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를 의무화합니다.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 개정 내용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단지 내 도로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내 도로 포함

- **추진배경**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등 이륜차 사용 및 배달 오토바이의 교내 진입 증가 등으로 인해 학교 내 교통사고 우려가 증가
 - 그러나, 대학교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대학교 내 사고 발생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교통안전대책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의 도로를 「교통안전법」 '단지내도로'에 포함하여 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확보
 - 대학교 내 단지 내 도로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
 -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중대사고 통보 의무), 지자체정의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시행
 - * 안전표지(일시정지,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 **시행일** 2024년 8월 17일

경제활동 및 지방시대를 지원하는 도로 연결망 구축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 044-201-3891)

주요 거점도시와 산업단지, 공공주택지구, 관광지 등을 연결하고 지방도시 시가지 우회도로를 적기 개통하여 경제활동 및 지방시대를 지원합니다.

- ▣ 파주-양주 고속도로(25km) 개통을 통하여 수도권 제2순환망의 75%를 완성하고 수도권 메가시티를 지원합니다.
- ▣ 경제거점인 서울과 행정거점인 세종시를 연결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북측 구간인 안성-구리 고속도로(72km)도 연내 개통하여 수도권 동부의 간선축을 강화합니다.
- ▣ 또한 장항국가산단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국립생태원-동서천 IC, 봉담공공주택지구의 교통 편의 확보를 위한 팔탄-봉담 등 국도망 확충을 통해 경제활동도 적극 지원합니다.
- ▣ 아울러, 지방시대 지원을 위해 충남지역의 거점인 천안시와 경북지역의 거점 도시인 안동시 우회도로도 개통합니다.

참고 2024년 추진 도로건설사업 현황(예산기준)

구분	'24년 개통	계속 사업	'24년 예산 (억원)
고속도로 (민자제외)	파주-양주, 안성-구리 등 2개	함양-울산 등 17개	17,432
일반국도	국립생태원-서천 등 17개	고성-통영 등 68개	15,140
국대도	서북-성거 등 3개	용진-우아 등 6개	2,277
국지도	와부-화도 등 5개	갈천-가수 등 53개	3,493

경제활동·지방시대 지원하는 도로 연결망 구축 시행

- **추진배경** 주요 거점도시와 산업단지, 공공주택지구, 관광지 등을 연결하고 지방도시 시가지 우회도로를 적기 개통하여 경제활동 및 지방시대 지원
- **주요내용**
 - 파주-양주 고속도로(25km) 개통을 통해 수도권 제2순환망의 75%를 완성하고 수도권 메가시티 지원
 -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서울-세종 북측 구간인 안성-구리 고속도로(72km)를 연내 개통하여 수도권 동부의 간선축 강화
 - 일반국도 개통을 통한 국가산단, 공공주택지구의 경제활동 지원과 충남, 경북 거점 도시에 우회도로를 개통하여 지방시대 지원
- **시행일** 계속(5년~10년 소요)

택배·배달 생활물류 운송수단 드론·로봇까지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 044-201-4152)

「생활물류법」상 택배업 및 배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화물차 및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이 추가되어 물류서비스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아마존·월마트 등 세계적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드론·로봇배송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최근 국내 생활물류업계에서도 드론·로봇 배송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드론·로봇 배송 예시〉



- 향후 드론이나 로봇을 이용하려는 택배사업자는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또는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금회 개정안은 택배사·용달협회·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생활물류법 상 운송수단으로 드론·로봇을 포함키로 협의('21.11, 한걸음모델)한 이후, 2년 만에 첨단배송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택배·배달 생활물류 운송수단 드론·로봇까지 확대 시행

- 추진배경 세계 라스트마일 첨단배송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드론·로봇 배송에 대한 법적근거 부재로 신산업 발전에 한계
- 주요내용 생활물류법 상 운송수단에 기존 화물차,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로봇까지 확대하여 물류서비스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지원
- 시행일 2025년 1월 이후 * 개정안 통과 : 2023년 12월 20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신설)을 통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합니다.(19~34세 무주택자)

- ▣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요건,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 등을 적용하고,

 - * (가입요건) 소득 연 3천 6백만 원 → 5천만 원 이하, (이자율) 최대 4.3 → 4.5%, (납입한도) 월 50 → 100만 원
 -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자동 전환가입
 - 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으로 예금 가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을 허용합니다.
 - * 청약당첨시 청약기능은 상실, 인출은 계약금 납부목적에 한해 1회 가능
- ▣ 또한, 해당 통장으로 청약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4.5% 청약통장, 2.2%대출’ 세트로 청년 내집 마련 지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 추진배경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추진
- 주요내용 • (지원대상) 19~34세 무주택 세대원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
 • (저축한도) 월 약정일에 2만 원~100만 원 이하로 납입 가능
 • (이자혜택) 5천만 원 한도내, 연간이자율 최대 4.5% 이자 지급
- 시행일 2024년 2월 (예정)

부산항 신항 완전자동화항만 신규 개장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 044-200-5753)

국내 최초로 부두 내 전 구간(안벽-이송-야드)을 무인·자동화한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2-5단계)이 신규 개장됩니다.

* (접안능력) 5만톤급 3선석 / (연간 하역능력) 195만TEU / (선석 길이) 1,050m

■ 컨테이너 자동화 무인운송장비*(AGV)를 도입하여 현장 무인작업(원격사무실 근무)으로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항만의 안전성을 대폭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Automated Guided Vehicle: 기존 항만의 유인 트랙터 대신 바닥의 신호선을 따라 자동으로 컨테이너를 이송하는 운반차

■ 완전 자동화를 통해 감염병, 악천후 등 비상 상황에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져 24시간 멈춤없는 항만을 구현하고 하역 생산성을 최적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에 개장하는 터미널은 선박 3대가 접안할 수 있으며, 20미터 깊이의 수심을 확보하여 현존선 중 최대 크기인 24,000TEU급 선박도 안정적으로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개발되었습니다.

■ 이번 개장으로 연간 195만TEU(20피트 컨테이너 박스) 이상의 물동량 처리능력을 추가 확보하게 됨에 따라,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능력은 총 2,303만TEU로 전년대비(2,108만TEU) 9.3% 증가하게 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준공 기념, 자동화장비 시연행사 개최 ('23.10.27.)

부산항 신항 완전자동화항만 신규 개장

- 추진배경 부산항 신항 서'컨' 2-5단계 부두 완전자동화항만 신규 개장
- 주요내용 부산항 신항 완전자동화항만 신규 개장
 - 국내 최초 부두 내 전구간(안벽-이송-야드) 완전자동화
 - 현장 무인 작업을 통한 항만 안전성 및 생산성 제고
 - 연간 195만TEU 이상의 물동량 처리능력 추가 확보
- 시행일 2024년 상반기

국내 무역항에 항만종합서비스업 본격 도입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044-200-5773)

2023년 12월 21일부터 항만종합서비스업이 국내 무역항에 도입됩니다.〔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23.12.21. 시행〕

- ▣ 필수 항만 서비스의 체계적 수행 및 안전관리 체계 내실화를 위해 항만종합서비스업이 국내에 신설됩니다.
- ▣ 이는 「항만사업장 특별안전대책」(‘21.7.5. 관계부처 합동) 및 「항만안전특별법」(‘22.8.4. 시행)에 따른 ‘하역사 중심 항만사업장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제도 도입 과제의 후속조치로서,
- ▣ 기존 영세 항만서비스 업체 난립으로 인한 가격 덩핑, 안전관리조직 부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업체 규모화를 통한 중견 항만서비스 업체 육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 업종 구성은 기존 검수·감정·검량사업과 항만용역업을 통합하되, 필수 업종으로 검수·감정·검량사업 중 1개 이상과 항만용역업 중 화물고정업 및 출잡이업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계시예정)

항만종합서비스업 도입

- 추진배경 필수 항만 서비스의 체계적 수행 및 안전관리 체계 내실화를 위해 업체 규모화를 통한 중견 항만서비스 업체 육성 도모
- 주요내용 기존 검수·감정·검량사업과 항만용역업을 통합한 항만종합서비스업을 도입 (필수업종: 검수·감정·검량사업 중 1개 이상과 항만용역업 중 화물고정업 및 출잡이업을 포함)
- 시행일 2023년 12월 21일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 044-200-5757)

2024년 4월부터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대상이 확대됩니다.

- 핵심산업의 범위를 '해운항만물류 R&D'에서 '해양산업 R&D'로 확대하고, 연구개발업으로 제한된 기업 업종을 폐지하여 클러스터 내 기업 입주가 더욱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4년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대상 확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대상 확대

- 추진배경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추진
- 주요내용 입주대상 확대
 - 핵심산업 확대('해운항만물류 R&D' → '해양산업 R&D')
 - '연구개발업'으로 제한된 기업 업종 폐지
- 시행일 2024년 4월

공공성을 강화한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추진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 044-200-5969)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을 위해 취득부지를 일정 규모 이상 직접 사용하도록 사업계획을 제안한 민간사업자를 우대하여 사업시행예정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 또한, '실시협약'을 통한 사업시행자 지정절차(6~10개월)를 사업계획 '승인' 절차(3개월)로 개선하여 신속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 ▣ 이와 함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분양가액 상한제 및 공공용 토지 사전확보(매도청구 제한) 등이 2024년 하반기 「항만법」 일부개정 이후 항만배후단지 신규 제안사업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예정)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추진체계 및
절차 개선으로 공공성
강화

- 추진배경 조성토지의 높은 분양가, 국가귀속 토지의 매도청구 등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 과정에서 공공성 훼손 우려 제기
- 주요내용
 - (실수요자 우대) 항만물류 활성화 목적에 부합하는 직접 사용계획을 제안한 민간사업자를 우대하는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 신설
 - * 실수요자(취득토지의 40%범위) 중심의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민간제안·공모, 평가, 심의 등 평가체계 정비
 - (절차개선) 사업예정자 지정을 위한 '협상절차'를 일정기준에 부합하면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는 '승인' 절차로 행정절차 간소화
 - (공공성 강화) 분양가액 상한제를 도입하여, 민간의 과도한 이익 제한, 적정 수익보장,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매도청구 대상토지 범위 사전 결정
 - * 투입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여 분양하되, 분양가액을 총사업비의 115% 이내로 제한, 국가 귀속시설 중 도로·공원·녹지 등을 제외한 공공시설용부지 40% 사전 확보
- 시행일 2024년 하반기 (「항만법」 일부개정 이후)

보호구역 실태조사 도입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2753)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보호구역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가 도입됩니다.

- ▣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 통행량 등을 조사하여,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 ▣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도로교통법>법률 제19357호

보호구역 실태조사 도입

- **추진배경**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보호구역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가 도입됩니다.
- **주요내용** 실태조사 주요 내용: 차량 통행량,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 조사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 신설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2253)

1종 보통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자동면허)가 도입됩니다.

- ▣ 현재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적용되어,
 - 앞으로는 운전자 필요에 따라 1종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 면허종별 운전 가능 차량 비교 >

구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원동기
1종 보통	전체	15인 이하	12톤 미만	10톤 미만	3톤 미만	전체
2종 보통	전체	10인 이하	4톤 이하	3.5톤 이하	X	전체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431호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 신설

- 추진배경 현재 2종 보통면허에만 부과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제도 개선
- 주요내용
 - (기존) 2종 보통면허에만 수동면허&자동면허가 존재
 - (개정) 1종 보통면허도 수동면허&자동면허를 선택해서 면허취득 가능
- 시행일 2024년 10월 20일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2253)

경찰청 교통안전과 (☎ 02-3150-2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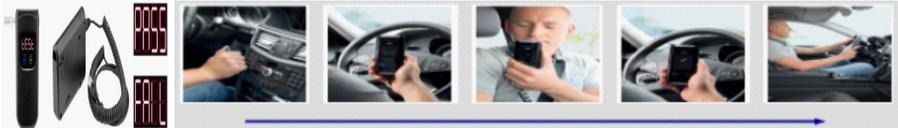
상습 음주를 예방하기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도입됩니다.

▣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쏘 국민적 요구에 따라 처벌 강화 등 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음주운전 재범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 상습 음주운전자(5년 내 2회 이상)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모습 〉



① 점화스위치 on ② 장치 워밍업 ③ 음주측정 ④ 시동 ⑤ 운전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도로교통법)법률 제19745호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 **추진배경**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 **주요내용**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일정 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음주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함

설치 대상	운영 형태	설치기간	교육 의무	비용	미설치 차량 운전 시			장치손상 형사처벌
					행정 처분	결격 기간	형사 처벌	
5년 내 2회 이상	의무형	당해 음주운전 결격기간과 동일	의무 교육	자비 부담	필요적 취소	1년	1년 ↓ 300만원 ↓	3년 ↓ 3,000만원 ↓

•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레미콘, 중요 관급공사 현장에 '우선납품제' 도입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 042-724-7068)

2024년 3월부터 재해복구, 국책사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 관급공사 현장에 레미콘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우선납품제'가 도입됩니다.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등 행정규칙 개정)

- 우선 납품현장은 관련 업계, 수요기관 및 조달청이 참여하는 '민관수급협의회'에서 결정하며,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레미콘 납품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납품하여야 하며, 위반 시 거래정지 등 제재를 받습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조달청 레미콘 계약제도 개선

- 추진배경 매년 건설성수기에 레미콘 공급차질이 발생하여 학교공사 등 중요 관급공사가 중단·지연 되어 국민피해가 발생
- 주요내용 원자재 부족 시에도 '민관협의체'에서 정한 중요 관급공사 현장에는 레미콘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시행일 2024년 3월 1일

시설공사 적격심사 건설안전 평가 강화

조달청 시설총괄과 (☎ 042-724-7085)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와 연계되는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대상을 전문공사로 확대합니다.

* 사고사망만인율: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

■ 기존에는 종합공사의 낙찰자 선정 시에만 사고사망만인율 지표를 활용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50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에 이를 도입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건설안전 평가 강화

- 추진배경 공사현장 안전이 국민의 생명보호와 직결되어 기업의 안전관리 능력(산업재해 이력)을 평가지표로 도입할 필요
- 주요내용 전문공사 낙찰자 선정 시 사고사망만인율 항목을 신설하여 가감점 부여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8

농림·수산·식품



1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70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시행일: 2024년 3월 29일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 공간 도시 중심의 국토계획체계로 인해서 농촌지역은 난개발이 방지되고 체계적 공간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 위해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재생 지원을 하는 농촌공간계획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중장기계획수립

농촌특화지구도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지원

2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71

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 요건 완화

시행일: 2024년 2월

Before

종전에는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은 초지
지급 요건이 한정적이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1회 이상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로 한정

After

앞으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초지 요건을
완화하고 확대합니다.



농업에 이용된 초지로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초지

3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72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

시행일: 2024년

Before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꾸준히 시행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51~70세
여성농업인

(규모) 9천 명



After

앞으로도 보다 많은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51~70세
여성농업인

(규모) 3만 명



4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73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도입

시행일: 2024년 3월 (예정)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농촌왕진버스)를 도입합니다.

- 병원, 의료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양한방,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합니다.



5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74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시행일: 2024년 4월 27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하여 합격 여부 결정합니다.



6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75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5일

Before

지금까지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은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으로 한정적이었습니다.



2인 이상 동물병원

After

앞으로 진료비 현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을 확대합니다.



모든 동물병원

7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76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시행일: 2024년 1분기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영농활동이 농업인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중간물떼기
(15만원/ha)

논물 얇게 갈러대기
(16만원/ha)

바이오차 투입
(36.4만원/ha)

저메탄사료 급이
(2.5만원/두)

환경개선사료 급이
(0.5만원/두)

8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77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시행일: 2024년 7월 26일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보급·확산 등 종합적인 육성·지원책을 규정하였습니다.

육성·지원체계

기본계획 수립,
지원센터 지정, 실태조사

인력양성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기반조성

기술 개발·실증, 기자재 검정,
표준화 사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거점단지 지정

보급·확산

육성지구 지정,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국제협력, 수출지원

9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78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시행일: 2023년 12월 13일

Before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MRL)은 '불검출' 이라서, 인근 농가로부터의 흩날림 등에 의한 미량의 농약검출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After

선의를 피해농가를 보호하며,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개선합니다.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0 이하이어야 하고, 잔류허용 기준이 미설정된 경우에는 0.01 mg/kg 이하일것

10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79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시행일: 2024년 3월

Before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소농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fter

중소농 소득안정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11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80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시행일: 2024년 2분기

Before

종전에는 경영이양직불 사업을 운영 시행하였습니다.



가입연령	65~74세
지급기간	75세까지
이양방식	매도 또는 임대
지원금액	연간 매도 330만 원/ha, 임대 250만 원/ha
경작허용면적	3천㎡ 이하
운영방식	농지연금 미연계

After

앞으로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가입연령	65~79세
지급기간	84세까지
이양방식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지원금액	연간 매도 600만 원/ha, 매도 조건부 임대 480만 원/ha
경작허용면적	1천㎡ 미만
운영방식	농지연금 연계

* 매도 조건부 임대 :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종료 후 농지를 매도하는 방식

12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81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

시행일: 2024년 4월

Before

지금까지 '음식점업'은 고용허용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After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이 신설됩니다.



13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82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앞으로 농식품 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통합지원 항목을 다양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합니다.

메뉴판 다양화: (기존) 2개 부류 15개 항목 → (변경) 3개 부류 32개 항목
 지원규모 확대: (기존) 43개소(예산 44억 원) → (변경) 325개소(예산 328억 원)

구분	사업 메뉴	
기반 조성	기존	수출컨설팅, 수출전문인력 양성, 제품개발(기술도입), 포장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권 출원, 해외인증등록, 상품홍관운송
	신설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 지원, 해외기업 신용조사, 온라인 수출상담회, 장기저장재 보급,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공동 선별 지원, 환만·공향 부대비용
마케팅 강화	기존	홍보콘텐츠 제작, 현지시장조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개별바이어 초청, 유통업체 판촉, 온라인 판촉, 미디어 홍보, 소비자 체험홍보
	신설	마켓테스트, 기획바이어 그룹 초청 및 생산현장 방문여, 온라인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현지화 지원	신설	법무·세무·회계 자문, 통번역(수출용 자료), 상품설명회 및 세미나, 수출공동브랜드 개발, 주류마켓 및 온라인을 신규 입점비, 지자체 사업(공유오피스 입차료, 임시직 고용 등)

14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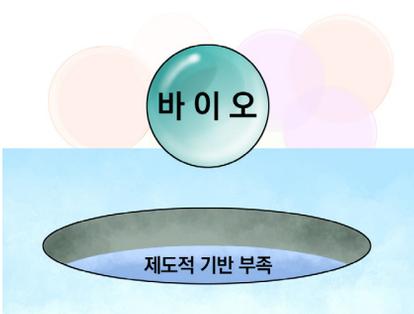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283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행일: 2024년 1월 2일 공포(잠정), 2025년 1월 3일 시행(잠정)

Before

지금까지 그린바이오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였습니다.



After

앞으로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15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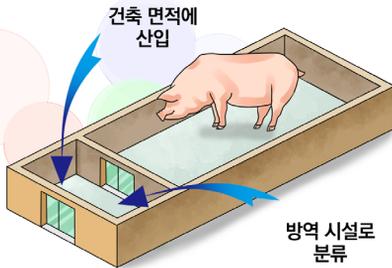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284

축산 농장 전실 설치 시 건축 면적 규제 완화

시행일: 2024년 3월 15일

Before

지금까지 전실은 방역시설에 해당하여 축산 농장의 건축 면적 산정 시 전실 면적도 포함되었습니다.



After

앞으로 전실을 소독설비로 재분류하여 축산 농장의 건축 면적에 전실 면적은 미산입됩니다.



16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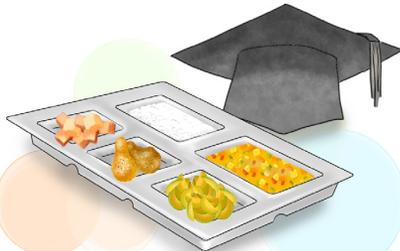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285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Before

대학생에게 쌀·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아침밥 사업을 꾸준히 시행하였습니다.



'23년 지원 예산 및 규모 : 2,501백만 원, 233만 명

After

청년층의 아침밥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확산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24년 지원 예산 및 규모 : 4,316백만 원, 397만 명

17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86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꾸준하게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작물을 지원하였습니다.

동계작물	밀, 보리 등 동계 식량·사료 작물(50만 원/ha)
이모작	논콩·가루쌀(100만 원/ha) 하계조사료(430만 원/ha)
하계작물	동계 밀 또는 조사료, 하계 논콩 또는 가루쌀 이모작시 ha당 100만 원 추가지급

After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직불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동계작물	밀, 보리 등 동계 식량·사료 작물(50만 원/ha)
하계작물	두류·가루쌀(200만 원/ha), 하계조사료(430만 원/ha), 옥수수(신규, 100만 원/ha) * 기존 논콩에 녹두, 잠두, 완두, 팥을 포함하여 대상 품목 두류로 확대
이모작	동계 밀 또는 조사료, 하계 논콩 또는 가루쌀 이모작시 ha당 100만 원 추가지급

18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87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추진

시행일: 2023년 12월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을 추진합니다.

-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저감 사료를 보급합니다.

- * 온실가스 : 지구 온난화 지수
이산화탄소(CO₂) 1 < 메탄(CH₄) 21 < 아산화질소(N₂O) 310



19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88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등 금지

시행일: 2024년 4월 25일

Before

그동안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유통기한



After

품질관리와 안전성을 위해 앞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진열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유통기한 경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89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그동안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방법이 변경됩니다.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
 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설정된 잔류허용기준 적용
 기준이 미설정된 동물용의약품 적용
 • CODEX 기준
 • 유사축종 최저기준
 • 평균제 0.01 mg/kg 이하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

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설정된 잔류허용기준 적용

기준이 미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0.01 mg/kg 이하로 일률 적용

※ 단, 성장보조제(성장촉진호르몬제 등),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적용

※적용대상: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달걀

21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324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 및 융자 비율 상향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어업인 등 수산업계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꾸준하게 지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가구당 경영비	'23년
~ 2억 원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100%까지
2억 원 ~ 5억 원	2억 원 + 2억 원 초과 소요액의 85%까지 가산
5억 원 ~ 10억 원	4억 5,500만 원 + 5억 원 초과 소요액의 75%까지 가산
10억 원 ~	8억 3,000만 원 + 10억 원 초과 소요액의 65%까지 가산

After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위해
어업경영자금 융자 비율을 상향합니다.

가구당 경영비	'24년
~ 2억 원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100%까지
2억 원 ~ 5억 원	2억 원 + 2억 원 초과 소요액의 95%까지 가산
5억 원 ~ 10억 원	4억 8,500만 원 + 5억 원 초과 소요액의 85%까지 가산
10억 원 ~	9억 1,000만 원 + 10억 원 초과 소요액의 75%까지 가산

22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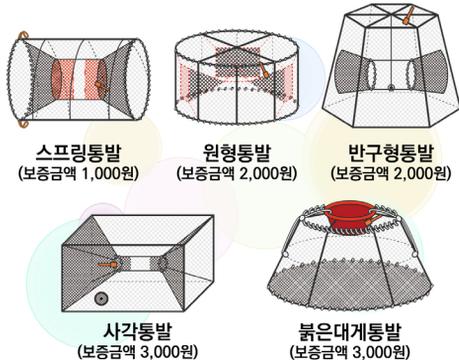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325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시행일: 2024년 1월 12일

어구보증금제도를
전면 시행합니다.

- 통발 종류별(스프링, 원형, 반구형, 사각, 붉은대계)
어구보증금액 포함하여 판매하고 사용 후
반납할 경우 보증금액을 반환합니다.



23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326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대상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 130만 원으로 인상

시행일: 2024년 1월

Before

지금까지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는 영세 어업인 등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After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대상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를 인상합니다.



24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327

전체 여성어업인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시행일: 2024년 4월

Before

종전에는 여성어업인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만 45세 이상
1,800명

국가 90%지원
자부담 10%

After

앞으로 전체 여성어업인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합니다.

만 51세 이상
전체 여성어업인

국가 50%,
지방자치단체 40% 지원,
자부담 10%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044-201-1516)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23년 3월 제정)을 2024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 그간 도시 중심의 국토계획체계로 인해서 농촌지역은 난개발이 방지되고 체계적 공간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 이를 개선하고자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해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농촌공간계획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 농촌공간계획은 정부가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이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하여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수립합니다.
 - * 시장·군수(계획수립권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며, 농식품부-시·군 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약칭) 본격 시행

- 추진배경 농촌공간을 중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중장기계획수립) 시·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대한 장기 전략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며,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종합적 사업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 (농촌특화지구도입)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생태 보호 등을 위해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7개 농촌특화지구 도입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지원) 농식품부-시·군 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지원
- 시행일 2024년 3월 29일

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 요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 (☎ 044-201-1564)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초지 요건을 확대합니다.

- 경관보전직불금 지급요건 대상을 2017년~2019년에 조건불리직불금을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에서 직불금 지원받은 실적과 관계없이 조건불리지역 내 초지로 지급대상 요건을 완화합니다.
- 이번 지급요건 개정을 통해,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입법예고)

경관보전직불금 지급요건 개정

- **추진배경** 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 중 '17~19년 직불금 지급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 대상에도 적용
- **주요내용** 경관보전직불금 신청 초지 지급 요건을 조건불리직불금 지원(17~19년) 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에서 조건불리지역 내 초지로 확대하여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기여
- **시행일** 2024년 2월 (예정, 시행령 개정 중)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 044-201-1566)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수건강검진 규모를 대폭 확대합니다.

- 2023년까지 9천 명 대상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2024년에는 검진인원이 3만 명으로 확대되면서 본사업으로 시행됩니다.
-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에게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확정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 **추진배경**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실시(2년주기)
- **주요내용** 51~70세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대상 확대 ('23년 9천 명 → '24년 3만 명)
- **시행일** 2024년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044-201-1574)

병의원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합니다.

-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시행(24년 예산 32억 원)됨에 따라 농촌의 의료접근성은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 왕진버스 도입

- 추진배경 병의원 등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농촌 주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병의원, 의료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양·한방,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운영
- 시행일 2024년 3월 (예정)
* 2024년 1~2월 사업 신청 접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044-201-2660)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의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 「동물보호법」(2022.4.26. 개정, 2024.4.27. 시행)

-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하여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기질평가 등 정책 영역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에 진출하여 건전하고 책임 있는 양육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내년부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첫 시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 **추진배경**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의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
- **주요내용**
 - 반려동물 교육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하여 합격 여부 결정
 -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기질평가 등 정책 영역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에 진출하여 건전하고 책임 있는 양육문화 조성 기대
- **시행일** 2024년 4월 27일 (시험 일정은 별도 공고 예정)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044-201-2652)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수의사법」 (2022.1.4. 개정, 2024.1.5. 시행)

-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인들이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진료항목별 진료비)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진료비사전 게시 의무 적용 대상 동물병원이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확대

- 추진배경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
- 주요내용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인들이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진료항목별 진료비)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게시
 - 게시항목: ① 진찰·상담(초진, 재진, 상담), ② 입원, ③ 백신접종(5종), ④ 검사(X-ray, 전혈구) 등 총 11개
 - 게시방법: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에 책자나 인쇄물 비치 또는 벽보 부착, 또는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
- 시행일 2024년 1월 5일 (수의사 1인 이상 모든 동물병원)
 - *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은 2023년 1월 5일부터 기 시행중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 044-201-2632)

농업분야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영농활동이 농업인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 활동별 지급단가: 중간물떼기(15만 원/ha), 논물 알게 걸러대기(16만 원/ha), 바이오차 투입(36.4만 원/ha), 저메탄사료 급이(2.5만 원/두), 환경개선사료 급이(0.5만 원/두)
- 농가 참여가 용이한 저탄소 활동의 중요성을 농업 현장에 알리고, 농축산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여나가겠습니다.
-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규모를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도입

- 추진배경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은 농가의 지속적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필요, 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 등 지원으로 참여 촉진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 (경종)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소속된 개별 농업인 및 법인소유 필지를 포함하여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경우
 - * (축산)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업인·농업법인이 운영하는 소/돼지 사육 농가
 - (지원내용)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을 위한 추가비용 등 보전
 - * (경종) 중간물떼기(15만 원/ha), 논물 알게 걸러대기(16만 원/ha), 바이오차 투입(36.4만 원/ha)
 - * (축산) 저메탄사료 급이(2.5만 원/두), 환경개선사료 급이(0.5만 원/두)
- 시행일

2024년 1분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 044-201-2421)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 26일 시행됩니다.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보급·확산 등 종합적인 육성·지원책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를 계기로 기존 농가의 스마트화 지원, 청년 스마트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산업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의 혁신과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스마트농업법 국회 본회의 의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추진배경**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농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적 기반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육성 및 지원체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연도별 시도 계획 수립 및 평가, 지원센터 지정, 실태조사 등
 - (인력 양성)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지도·기술보급·정보제공·상담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 (기반 조성)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 개발·실증 및 기자재 검증 지원,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효율적인 수집·활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보급 촉진을 위한 기자재 및 데이터 표준화 사업 추진, 경영체 육성, 기자재 실증 및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거점단지 지정
 - (보급 확산)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 집적화와 지역 단위 확산을 위한 육성지구의 지정,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국제협력·수출 지원 등
- **시행일** 2024년 7월 26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7)

2024년 상반기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이 개선됩니다.

-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MRL)은 '불검출' 이라서, 농가의 의도와 무관한 미량의 농약검출도 허용하지 않았으나,
- 2024년 상반기부터는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0이하'*(MRL이 미설정된 경우에는 0.01mg/kg 이하)로 조정됩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검출량과 상관없이 인증을 취소합니다.
 - * '19.7월 이전까지 적용하던 기준이며, 대부분의 국가도 일정수준의 허용기준을 정하여 운영 중
- 이를 통해 선의의 피해 농가를 보호하며,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농가의 농업환경 보전 효과 증진과 비의도적 오염 방지에 대한 의무를 추가하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 **추진배경**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 유지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활동을 위해 인증제도 개선
- **주요내용**
 -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일반농산물 MRL 1/20 이하'로 하고, MRL이 미설정된 경우 0.01mg/kg 이하로 조정
 - 농가의 농업환경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법과 비의도적 오염 방지에 대한 노력 의무를 추가
- **시행일** 2023년 12월 13일(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044-201-1772)

「농업·농촌공익직불제」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를 2024년부터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농의 농가 소득·경영안정망 확충을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인상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소농직불금 수령 대상 가구인 약 49만 호가 단가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4년 농식품부 예산안 18조 3천억 원 편성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 추진배경 중소농의 농가 소득·경영안정망 확충을 위해 소규모 농가 직불금 단가 인상
- 주요내용 「농업·농촌공익직불제」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 ('23) 120만 원/가구 → ('24) 130만 원/가구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 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 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 원 미만

- 시행일 2024년 3월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044-201-1774)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을 돕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우선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청년 농업인의 미래 농업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이란 고령 농업인(65~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경영이양직불 사업의 참여 연령, 지급 단가, 지원 기한 등 지원 조건을 개선하여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더욱 폭넓게 보장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청하세요!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 **추진배경**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 지원 및 이양 농지 청년농업인 최우선 공급을 통해 미래 농업 준비 필요
- **주요내용**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6~10년 동안 직불금 지급
 - (가입 연령 및 지급기간) 65~79세, 84세까지 지급(최대 10년간)
 - (지급대상 농지) 진흥지역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
 - (이양방법)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농지를 매도하는 방식
 - (지급금액) 매도는 매월 50만 원/ha(연간 600만원/ha), 매도 조건부 임대는 매월 40만 원/ha(연간 480만 원/ha)을 지급하며 최대 4ha까지 지급
- **시행일** 2024년 2분기(잠정) 지급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044-201-2170)

2024년부터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이 신설됩니다

■ (업종) 한식 음식점업

■ (지역) 주요 100개 지역

- 7개 특별·광역시 내 전체 기초(74곳): 서울(25), 부산(16), 대구(8), 인천(10), 광주(5), 대전(5), 울산(5)
- 7개 광역도 내 음식점 상위 3개씩(21곳): 경기(수원·성남·고양), 충북(청주·충주·제천), 충남(천안·아산·서산), 전북(전주·군산·익산), 전남(여수·순천·목포), 경북(포항·구미·경주), 경남(창원·김해·진주)
- 세종(1), 제주(1), 강원(3곳: 원주·춘천·강릉)

■ (업력) ①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년 이상

②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7년 이상

■ (직종) 주방보조원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개선으로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음식점업 경영주는 '24.4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청 가능(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www.eps.go.kr)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

- **추진배경**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용 추진
- **주요내용**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
 - (업종) 한식 음식점업
 - (지역) 주요 100개 지역
 - (업력)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 5년 이상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7년 이상
 - (직종) 주방보조원
- **시행일** 2024년 4월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 044-201-2176)

2024년부터 신선농산물 및 가공농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바우처형) 패키지 지원*(사업명: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이 확대됩니다.

*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을 메뉴판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 신청

- 지원항목(메뉴판)을 기반조성, 마케팅 등 2개부류 15개 항목에서 현지화 지원 등을 포함하여 3개부류 32개 항목으로 다양화하고,
- 지원 규모도 기존 43개소에서 325개소 규모로 확대(23년 44억 원 → 328억 원)하여 보다 많은 수출업체에 지원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4년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농식품글로벌성장 패키지(농식품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 **추진배경** WTO협정에 의해 '24년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농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형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메뉴판 다양화: (기존) 2개 부류 15개 항목 ⇨ (변경) 3개 부류 32개 항목
 - 지원규모 확대: (기존) 43개소(예산 44억 원) ⇨ (변경) 325개소(예산 328억 원)

구분		사업메뉴
기반 조성 (14)	기존(7)	수출컨설팅, 수출전문인력 양성, 제품개발(기술도입), 포장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권 출원, 해외인증등록, 샘플통관운송
	신설(7)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 지원, 해외기업 신용조사, 온라인 수출상담회, 장기저장재 보급,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공동 선별 지원, 항만·공항 부대비용
마케팅 강화 (12)	기존(8)	홍보콘텐츠 제작, 현지시장조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개별바이어 초청, 유통업체 판촉, 온라인 판촉, 미디어 홍보, 소비자 체험홍보
	신설(4)	마켓테스트, 기획바이어 그룹 초청 및 생산현장 투어, 온라인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현지화 지원(6)	신설(6)	법무·세무·회계 자문, 통번역(수출용 자료), 상품설명회 및 세미나, 수출공동브랜드 개발, 우유마켓 및 온라인몰 신규 입점비, 지사화 사업(공유오피스 임차료, 인시직 고용 등)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044-201-2137)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 개념: 농업생명자원(농·축산물, 미생물 등)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

- ‘그린바이오산업’ 개념을 6대 분야(증자·동물용의약품·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 등 관련 제품·서비스 생산·판매 산업으로 명확화하였고,
- 벤처창업,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전담기관, 혁신기술 개발, 그린바이오 기업의 데이터활용 지원 등 신산업 육성 지원,
- 신산업 수요 견인을 위한 그린바이오 제품(생물농약, 건강기능식품 등) 공공 우선구매제 도입 등 추진,
- 산업 성장 및 지역 확산을 위한 육성지구에 대한 첨단 연구·개발·생산 시설, 원료 공급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소재·기능성 물질 개발을 통한 수요창출 효과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비료·농약 사용에 따른 농업생산성 제고 효과를 기대합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 **추진배경** 그린바이오산업은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농업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 법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 정의(제1조~제4조)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 체계 마련(제5조~제6조)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제7조~제14조)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조성(제15조~제17조)
- **시행일** 2024년 1월 2일 공포(잠정), 2025년 1월 3일 시행(잠정)

축산 농장 전실 설치 시 건축 면적 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044-201-2519)

2024년 3월부터 축산 농장에서 소독,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전실의 면적을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23.9.14) 및 시행(’24.3.15)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9)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 기존 방역시설로 분류하였던 전실을 소독설비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이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게 됩니다.

*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9)에 따라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

이를 통해 건축 면적 제한으로 전실 설치가 곤란했던 축산농가에서도 전실을 설치할 수 있게되어 축사 내로의 오염원 유입 차단 등 보다 철저한 방역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축전염병 예방법(’24.3.15 시행)

축산 농장 건축 면적에 전실 면적 미산입

• **추진배경** 돼지,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가는 소독,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을 설치해야 하나, 건축 면적의 제한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필요

• **주요내용** 기존 방역시설로 분류된 전실을 소독설비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이 축산 농장의 건축 면적에 산입되지 않도록 개선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9)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 면적에 미산입

• **시행일** 2024년 3월 15일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044-201-1842)

청년층의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확산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의 쌀 소비 문화 형성을 위해 양질의 아침밥 (쌀가공식품 포함)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와 정부 등이 공동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1식 기준: 학생 1천 원 + 정부 1천 원 + 학교부담금 자율 + (지자체 자율)

■ 대학·학생 수요 급증에 따라 2024년 사업규모를 전년 대비 1.7배(233만 명→ 397만 명)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쌀 소비기반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규모 확대

- 추진배경 청년층의 쌀 중심 식습관 형성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대학생에게 쌀·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
- 주요내용
 - (사업대상) 4년제 대학, 전문대 등 전국 모든 대학교(사이버·원격 대학 제외)
 - (사업내용) 학교와 정부 지원으로 대학생에게 아침식사를 1천 원에 제공
 - 밥·국·반찬 포함 한식 식단 및 쌀 간편식(쌀빵 등) 메뉴 운영
- 시행일 2024년 1월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산업육성반 (☎ 044-201-2915)

2024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하계작물 논콩과 가루쌀의 직불금 단가가 대폭 인상됩니다.

- 기존 하계작물 중 논콩 품목을 두류로 확대하여 완두, 녹두, 잠두, 팥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 이외에도 하계작물에 옥수수가 추가됩니다.
- 두류와 가루쌀 직불금은 기존 ha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되고,
 - 옥수수는 ha 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 추진배경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전략작물 재배목표 대폭 확대
- 주요내용
 - 2023년
 - (동계작물) 밀, 보리 등 동계 식량·사료 작물(50만 원/ha)
 - (하계작물) 논콩·가루쌀(100만 원/ha), 하계조사료(430만 원/ha)
 - (이모작) 동계 밀 또는 조사료, 하계 논콩 또는 가루쌀 이모작시 ha당 100만 원 추가지급
 - 2024년(정부안) * 정부안으로 국회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동계작물) 밀, 보리 등 동계 식량·사료 작물(50만 원/ha)
 - (하계작물) 두류·가루쌀(200만 원/ha), 하계조사료(430만 원/ha), 옥수수(신규, 100만 원/ha)
 - * 기존 논콩에 녹두, 잠두, 완두, 팥을 포함하여 대상 품목 두류로 확대
 - * 하계작물에 옥수수(식용) 신규 추가
 - (이모작) 동계 밀 또는 조사료, 하계 논콩 또는 가루쌀 이모작시 ha당 100만 원 추가지급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지원과 (☎ 044-201-2359)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저감 사료를 보급합니다.

* 지구 온난화 지수: 이산화탄소(CO₂) 1 < 메탄(CH₄) 21 < 아산화질소(N₂O) 310

- 탄소저감 사료는 반추가축이 트림 등을 통해 배출하는 메탄가스를 줄이는 저메탄사료와 잉여 질소 감축을 통해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가스를 줄이는 환경개선사료가 대상입니다.
- 저메탄사료는 국립축산과학원의 사료공정심의 절차를 거쳐 메탄저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메탄저감제가 사료에 첨가된 것으로 일반 사료 대비 10% 이상 메탄저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 환경개선사료는 일반 사료 대비 단백질 함량을 2%p 낮춘 사료로 1분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2분기 이후 분뇨로 배출되는 잉여 질소 감축으로 온실가스와 냄새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농림축산식품부, 메탄 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추진

- **추진배경**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탄소배출 저감사료 보급
- **주요내용**
 - (저메탄사료) 소, 염소 등 반추가축이 트림, 방귀 등을 통해 배출하는 메탄가스를 저감할 수 있도록 메탄저감제를 첨가한 사료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23.10.4.)
 - (환경개선사료) 과잉 영양소 공급에 따라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잉여 질소 감축을 위해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을 제한한 사료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23.12.)
- **시행일** 2023년 12월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등 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59)

2024년 4월 25일부터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사료관리법」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그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 앞으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사료관리법('24.4.25 시행)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등 금지

- **추진배경**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반면, 사료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음
- **주요내용**
 -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기대효과)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
- **시행일** 2024년 4월 25일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044-201-2978)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 043-719-3853)

2024년 1월 1일부터 축산물 PLS제도가 시행됩니다.

- 축산물 PLS제도는 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허가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기준이 미설정된 경우는 일률기준(0.01 mg/kg이하)을 적용하여 잔류물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 동물용의약품 확충, 안전사용기준 정비, 제도 안내 등 사전준비 기간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 PLS 1단계 시행을 위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21.6.29., 시행 '24.1.1.)
- 1단계로 주요 다소비 축산물(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우유·계란)에 도입하기 위하여 주요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산란계)의 동물용의약품에 시행됩니다.

※ 2단계는 기타 축산물에 도입하기 위하여 소수 축종(양, 염소, 말 등)의 동물용의약품과 비의도적 농약 오염까지 확대하여 시행 예정(부처 협의 후 시행)
- 따라서,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축산농장마다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 수칙을 지키도록 교육 및 홍보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정책자료(영상)·농식품부 정책이야기(축산물 PLS 교육영상)에서 축산물 PLS로 안심과 경쟁력이 더욱 PLUS 됩니다.

축산물 PLS제도 시행

- 추진배경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식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축·수산물 PLS 제도 도입 추진
- 주요내용 축산물 PLS제도는 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허가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기준이 미설정된 경우는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하여 그 사용을 제한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라 발생한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기업의 손실에 대한 국가 보상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 044-201-2040)

전쟁, 재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식량 위기의 대응 수단인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이하 비상시 반입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합니다.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기업으로 신고한 기업이 정부의 비상시 반입명령을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가의 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 기업들이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비상시 반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10월 25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해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의 실효성을 높인다.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라 발생한 해외농업 산림자원개발 기업의 손실에 대한 국가 보상 도입

- **추진배경** 최근 상시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식량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책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법률 개정을 통해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명령의 실효성 강화
 - 현행 법에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기업에게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를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된 기업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미비
 - 비상시 반입명령 발령 시 손실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
 - 이를 통해, 비상시 기업들의 적극적인 반입 이행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
 - *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및 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 규정
-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11)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0)

2023년 12월 28일부터 지역 농림어업인의 소득·복지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농림어업협력법, 제정: '22.12.27.)」이 시행됩니다.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지역의 농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관광 및 이와 관련한 재화·용역의 생산 등과 연계하여 농산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추진 시 기존 정부 지원사업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서 민간의 지식과 경험, 자본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전에 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민간에게 성과보상금을 지원하는 성과보상금제가 농림어업분야에서 시행됩니다.
- 지자체의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발휘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농어촌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추진배경 농어촌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자체의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발휘된 민관협력 사업의 발굴 및 지원
- 주요내용
 -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복지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
 - 지자체는 지역농림어업 문제의 해결, 농림어가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기획·발굴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추진 계획과 민간 운영기관을 선정
 - 선정된 민간 운영기관이 지자체와 구체적인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
 - 사업 완료 후 별도의 평가기관이 실시협약에서 제시한 성과지표와 목표에 대해 성과를 측정·평가하고, 그 성과에 따라 민간 운영기관에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성과목표 미달성 시엔 성과보상금은 미지급
- 시행일 2023년 12월 28일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044-201-157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23.8.16 제정)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에 기반한 주민 등의 자발적, 주도적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2023년 8월에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사회적 농장 및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제*를 운영하여, 사회적 농업 육성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 인력, 운영계획 등 요건을 갖추고 농식품부, 지자체로부터 지정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약칭) 시행

- 추진배경 농촌 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및 활성화 계획 수립
 -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사회적 농장의 지정·지원 기준 및 요건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 체계 마련 방안
- 시행일 2024년 8월 17일

농촌관광 콘텐츠 발굴 및 판매채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044-201-1592)

농촌의 특색을 살린 테마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온라인여행사를 통한 원스톱 홍보-예약-결제 지원을 확대합니다.

- 지역 내 우수 농촌관광 경영체의 콘텐츠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테마상품(농촌 크리에이투어 (CREATOUR)) 발굴을 추진합니다.
-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발맞춰, 온라인 여행사(OTA)와 연계한 농촌관광 상품 판매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여행예약 경로: OTA 43.4%, 포털사이트·온라인쇼핑몰 26.5% 등 (2022, 여행신문)

농촌 크리에이투어 (CREATOUR) 지원사업 개요

- 추진배경 매력적인 관광상품 발굴 및 소비자 접근성 제고로 농촌관광 활성화
- 주요내용
 - 농촌관광 경영체의 시장경쟁력 확보 및 매출 향상을 위해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농촌 특화 테마관광 콘텐츠(ex. 달 소풍) 발굴
 - 지역 내 우수 농촌관광 경영체의 상품 콘텐츠를 연계한 테마상품 개발 및 운영, 홍보·마케팅 등 지원
- 시행일 2024년(사업 공모는 별도 공지 예정)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044-201-2662)

맹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도 및 기질평가제도를 도입합니다.

* 「동물보호법」 (2022.4.26.개정, 2024.4.27.시행)

-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 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10호)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동물보호법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 **추진배경**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 지속적 발생으로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주요내용**
 - 맹견 사육시 중성화, 동물등록, 맹견보험, 기질평가 등을 거쳐 시·도지사의 맹견사육허가 의무화
 - 기질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한 맹견 추가지정
 -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개,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개 대상
- **시행일** 2024년 4월 27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044-201-2656)

4대 주력산업(펫푸드, 펫테크 등) 육성, 성장 인프라 구축, 해외 수출산업화, 추진체계 마련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본격 육성합니다.

- 첫째,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하며,
- 둘째, 펫푸드 등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호와 상품성을 실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를 조성합니다.
- 셋째,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해 시장조사부터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의약품 등 안전성 보장 관리기준(GMP) 제도 신설 등으로 시장개척 지원을 강화합니다.
- 마지막으로, 연관산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검토(24년~)하여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합니다.

원-웰페어밸리 사업 개요

- 추진배경 펫푸드 등 제품 서비스에 대한 기호와 상품성을 실증하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부가·신제품 개발 촉진
- 주요내용
 - 실증 전용공간(생활·시험 등), 실증결과 데이터 확보·분석 등을 위한 실증 기관(위탁) 연구 장비·시설 구축
 -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한 컨설팅·공용시설(사무실, 연구장비 등) 지원, 기업 R&D 실증센터 운영 등
- 시행일 2024년(사업 공모는 별도 공지 예정)

동물용의료기기 수출 확대 위한 「GMP 인증제도」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 044-201-2475)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044-201-2552)

동물용의료기기 수출 확대를 위해 GMP 인증제도를 2024년부터 신설합니다.

■ 수출대상국에서 자국 규정에 따라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 시 GMP*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내는 GMP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등의 안전·유효성을 보장하는 관리기준

■ 이에,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을 개정하고 동물용 의료기기(체외진단 포함) 제조업자 중 수출을 목적으로 GMP 기준을 적용하려는 업체를 위해 GMP 인증제도를 신설합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GMP 인증제도 개요

- 주요내용**
 - 수출용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 시 우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규정 준수
 - 품질경영시스템 수립 및 품질매뉴얼을 문서로 작성
 - 품질경영시스템*의 문서화 및 실행
 - * 품질방침, 계약, 설계, 문서, 구매, 제품식별 및 추적, 공정, 제품(구매품) 검사, 부적합품 및 측정장비 등 관리, 시정예방조치, 제품관리, 교육 등
 - 구성원 책임권한 문서화, 품질기록 관리, 내외부 품질검사 등
- 시행일** 2024년 상반기(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중)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위한 방치된 농업기계 강제처리 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증자과 (☎ 044-201-1896)

2024년 6월 21일부터 농촌 미관저해 및 토양오염 등을 유발하는 무단 방치농업기계에 대한 강제처리 제도가 시행됩니다.

- 방치농업기계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적절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 방치농업기계인지 여부는 해당 농업기계의 상태,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등 기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방치농업기계를 강제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농업기계 무단 방치 예방 및 방치농업기계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보도자료 배포(예정)

방치된 농업기계 강제처리 제도 도입

- **추진배경**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폐농기계는 1만 4천여 대에 달했고, 폐농기계 상당수가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되어 자연경관 훼손, 녹물·폐유 등의 유출로 토양 및 수질오염이 심각함
- **주요내용**
 -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일정기간 이상 농업기계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의무 부과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
 -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치농업기계의 소유·점유자에게 수거·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조치가 어려울 경우 방치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음
 - 방치된 농업기계인지 여부는 농업기계의 상태, 장소,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
- **시행일** 2024년 6월 21일

건전한 과수 묘목 공급 활성화 정책추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증자과 (☎ 044-201-2479)

종자산업 육성 및 건전한 과수 묘목 공급 활성화를 위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법령이 2023년 12월 28일 시행됩니다.

- 종자업체가 과수 종자(묘목) 생산과정에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무병화인증기관(정부지정)에 인증 신청·심사를 통해 건전한 무병묘를 판매하는 무병화인증제도* 도입

 - * 대상 종자: 사과·배·복숭아·포도·감귤 및 그 밖에 장관이 고시하는 작물
 - 인증신청(포장 재식후 1개월 이내), 인증 표시(1주 또는 10주 단위), 유효기간(1년)
- 판매이외 목적으로 과수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 품종명칭 등 신고* 의무를 통해 해당 종자의 무단 유통 방지 및 분쟁 소지 차단

 - * 종자 수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 서식)를 국립종자원에 제출
- 종자관리사의 종자 보증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6시간 이상 정기적 교육 실시

 - * 종자업체에 종사하는 종자관리사는 '24.1.1.부터 '25.12.31.까지 교육 이수 필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업인은 건전한 과수 묘목을 안심하고 구매, 사용하여 농가소득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보도자료)「종자산업법」일부개정 법률 공포

과수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무병화 인증제도 도입

- **추진배경** 과수 무병묘 공급에 노력해 왔으나 별도 보증없이 생산자가 자가보증 형태로 판매하다 보니 과수품질 및 수확량 저하 등 부정적 영향 미침

 - 정부가 전문자격 기준을 갖춘 기관을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심사·지정하여 종자업체의 건전한 무병묘 생산·공급을 지원할 필요
- **주요내용** (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 종자의 무병화인증 및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의 묘목 종자 생산과정에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한 경우 무병화인증 후 판매할 수 있음
 - 무병화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
- **시행일** 2023년 12월 28일

고위험 동물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7)

매년 반복 발생하는 고위험 가축 질병 및 신·변종 질병에 대한 초기 대응력 강화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R&D)' 사업을 2024년 신규 추진합니다.

- 미래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신·변종 질병 국제공동연구 및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 가축질병협력체계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 분야: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가축질병협력체계고도화
- 관련 공고는 2024년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고위험 동물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추진배경** 고위험성 가축질병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동물감염병 대응 기법 확립 및 미래 방역체계 전환 기술개발 지원
- **주요내용**
 -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첨단 바이오 기술(mRNA, 초고속 PCR 등) 접목 차세대 동물감염병 대응 기법 확립 및 미래 방역체계 전환 기술 개발
 - (가축질병협력체계고도화) 신·변종 질병 국제공동연구 및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체계 고도화
- **시행일** 2024년 1월 1일(잠정, 세부계획 수립 중)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7)

차세대 바이오산업의 핵심 기술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R&D)' 사업을 2024년 신규 추진합니다.

- 마이크로바이옴 정보·실물 자원 확보를 위한 농산업혁신응용기술개발, 기존 사업에서 유래한 유용물질 및 성과물에 대한 산업화 연구를 위한 성과연계마이크로바이옴산업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 분야: 농산업혁신응용기술개발, 성과연계마이크로바이옴산업화지원
- 관련 공고는 2024년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 기술기반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추진배경** 차세대 바이오산업의 핵심 기술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기반 조성을 통해 농식품 산업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필요한 핵심 기술 선정
- **주요내용**
 - (농산업혁신응용기술개발) 농생명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의 유기적 연계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과 식품 마이크로바이옴 정보·실물자원 확보 및 이를 활용한 산업화 기반 마련
 - (성과연계마이크로바이옴산업화지원) 기존 관련 사업인 포스트게놈, 고부가가치식품 사업에서 유래한 유용물질의 산업화 지원 및 사업 성과물에 대한 산업화 연구를 통한 산업 및 핵심기술 개발
- **시행일** 2024년 1월 1일(잠정, 세부계획 수립 중)

농식품 융합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7)

농식품 미래 신산업의 경쟁 우위 확보 및 융복합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 연구인력양성(R&D)' 사업을 2024년 신규 추진합니다.

-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탄소중립 등 농식품 신산업 분야의 융복합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 분야: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
- 관련 공고는 2024년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농식품 과학기술융합형 연구인력 양성 연구 개발 지원

- **추진배경** 미래 新산업 분야 농식품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타 학제간 융복합 연구인력 양성 지원
- **주요내용**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탄소중립 등 농식품 新산업 분야 융복합 전문인력 확보
- **시행일** 2024년 1월 1일(잠정, 세부계획 수립 중)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 실태조사, 노무관리, 인권보호 교육·상담 지원 등 농업인력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 044-201-1724)

농업 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지원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4년 2월 15일 시행됩니다.

- 농업 분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인권보호 교육·상담 등을 지원하며,
- 농업 고용인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품목별 인력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고용인력 양성, 교육훈련, 인식개선 등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기존에 운영 중인 농촌인력증개센터를 시·군·구 인력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시·도 인력지원센터 신규 지정을 통해 인력수급 등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농업기술교육, 통역·한국어교육 지원, 기숙사 건립, 숙련인력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력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입법예고)「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알림(‘23.11.16.)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 **추진배경**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제정(‘23.2.14 공포)
- **주요내용**
 - 농어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 의무
 - 시·군·구인력지원센터, 시·도인력지원센터,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운영
 - 농어업고용인력 양성, 외국인 활용지원, 근로환경 개선 지원 등
- **시행일** 2024년 2월 15일

농작물재해보험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92)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2023년 70개에서 2024년 73개로 확대됩니다.

- ‘두릅’, ‘블루베리’, ‘수박’을 대상 품목으로 신규 도입함에 따라 2024년부터 총 73개의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가 보험을 통해 자연재해 위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연재해 피해,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 수입 감소 시 보상하는 수입보장보험이 개편됩니다.

- 농가의 수입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수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보장수준 등이 개편되며,
- 예산 확대(’23년 25억 원 → ’24년 81억 원)와 함께 운영 품목도 7개에서 10개로 늘어납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및 수입보장보험 품목 확대 추진

- 추진배경 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보험 혜택의 균형 있는 확산 유도
- 주요내용
 - 2024년 신규 도입 품목 3개(두릅, 블루베리, 수박)를 포함하여 총 73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 수입보장보험 개편 및 대상품목을 3개 추가하여 총 10개 품목에 대해 시범사업 추진
- 시행일 2024년 상반기

청년농업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044-201-1532)

청년들이 영농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농지·자금·교육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가 개설됩니다.

- 각 기관별·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보기 어려웠던 정보를 앞으로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외에도 우수농업 사례, 영농 관련 소식, 지역별 현장 전문가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청년농업 정보 종합 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추진배경** 영농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관련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농진입 확대 지원
- **주요내용**
 - (지원사업) 중앙정부·지자체 지원사업들을 분야(농지, 주거, 일자리 등), 단계(준비, 창업, 성장 등)별로 맞춤형 정보 제공
 - (우수사례) 지역별, 품목별 우수사례를 제공
 - (관련사이트 연계) 영농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정보를 분야별로 제공
 - (지역별 안내) 관심 지역의 정보문자가 가능하도록 지역별 사업담당자 연락처 제공
 - (뉴스 및 문의) 주요 영농뉴스 제공 및 영농 문의 질의답변 게시판 마련
- **시행일** 2024년 하반기

청년 맞춤형 농업창업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 (☎ 044-201-1558)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044-201-1532)

농업 창업에 관심있는 청년들을 위한 소득·농지·주거 등 종합 지원이 강화됩니다.

- 농업 창업시 초기 소득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을 5천 명으로 확대합니다. 사업에 선정된 청년들은 창업 관련 교육과 농지·자금도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 ('23년) 4천 명 → ('24년) 5천 명

-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농지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농지 선임대-후매도 사업, 공공임대 등 청년 맞춤형 농지물량이 2023년보다 50% 이상 확대 공급되어 청년들의 농지 확보 지원이 강화됩니다.

- 또한, 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더 많은 청년가구의 농촌 유입·정착 확대를 위해 2024년 청년농촌 보금자리* 신규 지구를 2배 확대(4 → 8개)**하여 농촌 청년가구 특화 주거지원을 강화합니다.

* 농촌에 주거안정, 육아부담 완화 등 청년층의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보육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 조성

** ('23년) 48억 원(신규 4개소) → ('24년) 152억 원(신규 8개소, 단가상향)

청년 맞춤형 농업창업 지원 확대

- **추진배경** 농업 분야 청년농업인 감소 상황에서 적극적인 청년들의 농촌 유입 및 농업 창업 지원
- **주요내용**
 - (초기생활) 초기 소득불안 완화를 위해 월별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 확대('23년 4천 명 → '24년 5천 명)
 - (농지) 농업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청년농업인 대상 공급물량 확보 및 임대 지원 강화
 - (주거) 청년농촌보금자리 확대('23년 4개소 → '24년 8개소) 조성을 통해 농촌지역 청년 가구 대상 주거지원 강화
- **시행일** 2024년 1월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펀드 신규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044-201-1752)

농촌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비수도권) 지역 소재 농식품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경제활성화펀드’를 2024년 신규 조성합니다.

- 정부·지자체·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500억 원 규모 펀드를 2024년 하반기에 조성할 계획이며 1개의 펀드에 여러 지자체(수도권 제외 시·도)가 참여 가능합니다.
 - * '24년 농식품모태펀드 신규 예산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펀드 결성규모 변동 가능
- 또한 펀드에 출자한 각 지자체 출자금액의 2배 이상을 해당 지자체 소재 농식품 기업에 의무투자하도록 하여 농업·농촌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펀드 신규 조성

- 추진배경 농촌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비수도권) 지역 소재 농식품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2024년 정부·지자체·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지역경제활성화펀드’ 신설(500억 원)
 - 해당 펀드에 출자한 각 지자체(수도권 제외 시·도) 출자금의 2배 이상을 해당 지자체 소재 농식품 기업에 의무투자
- 시행일 2024년 하반기(상반기 펀드 운용사 선정 후 하반기 결성)

식품·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원가부담 완화 등 지속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 044-201-2123)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044-201-2157)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2)

식품·외식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외식업계 세제지원을 지속 지원하여 원가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소비자가격 인하 등 민생대책을 추진합니다.

■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을 2년 더 연장하고,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 공제율 확대**를 3년 더 연장합니다.

* (면세농산물 등) 공제한도 10%p 상향: '23.12. → '25.12.(2년)

**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 공제율 확대(8/108→9/109): '23.12. → '26.12.(3년)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조치는 2년 더 연장합니다.

* (커피, 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23.12. → '25.12.(2년)

■ 아울러,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하여 서민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소비자가격 인하 등 민생대책을 추진합니다.

*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계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보도자료 배포(예정)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 등 지속 지원

- **추진배경** 식품·외식업계 물가안정을 위해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원가부담 완화, 서민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소비자가격 인하 등 민생대책 추진
- **주요내용**
 -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공제율 확대 및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
 - * (면세농산물 등) 공제한도 10%p 상향: '23.12. → '25.12.(2년)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 공제율 확대(8/108→9/109): '23.12. → '26.12.(3년)
 - ** (커피, 코코아 등)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23.12. → '25.12.(2년)
 - 병·캔 등 개별포장된 단순가공식품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
 - *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 '23.12. → '25.12.(2년)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푸드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센터 구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 044-201-2126)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합니다.

- 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고, 지역대학·연구기관에서 푸드테크 기업에 기술애로 컨설팅을 실시하며, 중소기업업체에 푸드테크 기술의 현장 실증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1분기에 공모하여 전국에 3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개소당 105억 원)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4년 농식품부 예산안 18조 3천억 원 편성('23.08.28.)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 **추진배경**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 실험·연구·제품화될 수 있도록 기회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사업내용) 지역별 푸드테크 기업 유치기반을 조성하고, 산·관·학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외식업체 대상 푸드테크 신기술 실증 및 적용 모델 구축
 - (사업기간) '24년~'26년
 - (사업규모) '26년까지 전국 3개소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 (시행주체) 지자체(시도)
 - (지원대상) 푸드테크 기업, 연구기관·대학, 중소기업·외식업체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K-미식벨트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044-201-2155)

식재료, 식품명인, 양조장 등 유무형의 특색있는 미식 자원을 융합한 K-미식벨트를 2024년부터 조성합니다.

-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 경관자원 등을 연계한 미식 관광상품을 2024년 1개 벨트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TOP 3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또한, 미식관광해설사 양성, 거점 미식문화공간 조성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내 미식관광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K-미식벨트 조성

- **추진배경** 국내 특색있는 미식 테마 발굴, 미식관광 상품 고도화를 통해 관광소비 확대, 지역경제 및 K-푸드 수출 활성화
- **주요내용** 지역별 농업자원·전통주 향토음식 등이 결합된 K-미식벨트 조성(~32년)
 - 국내 특색있는 미식 테마 TOP 30* 발굴 및 미식관광 상품 고도화(24년 1개 벨트 운영)
 - * 예) 김치벨트, 전통주벨트, 증가벨트, 나물벨트, K-바비큐벨트 등
 - ※ 조성계획(누적): (24) 1 → (25) 4 → (26) 8 → (27) 15 → (28) 18 → (29) 21 → (30) 24 → (31) 27 → (32) 30곳
 - 미식 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음식관광 자원의 전시·체험·홍보·교육 기능을 종합 수행하는 거점 미식문화공간 조성(25~30년, 5개소)
- **시행일** 2024년 상반기

권위 있는 국제미식행사,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첫 한국 유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044-201-2152)

미식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행사가 2024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 아시아 지역의 최고 레스토랑 50곳을 발표하는 시상식, 미식업계가 주목하는 화두에 대해 논의하는 '베스트 50 토크(#50 Best Talks)', 서울의 다양한 미식과 한국의 식재료를 선보이는 '요리사의 만찬 (Chefs' Feast)' 등 다채로운 행사가 3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국제 미식 관광지로서의 한국의 입지가 강화될 뿐 아니라 국내 외식업계 관계자, 요리사들이 해외 미식계와 교류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한국 개최

- **추진배경** 국제 미식 관광지로서의 한국 입지 강화 및 국내 외식업계 관계자·요리사들의 해외 미식계와의 교류 기회 제공
- **주요내용**
 - 아시아 지역 최고 레스토랑을 50곳의 순위를 발표하는 시상식 등 3일간 다양한 행사* 개최
 - * 미식업계가 주목하는 화두에 대해 논의하는 '베스트 50토크(#50 Best Talks)', 서울의 다양한 미식과 한국 식재료를 선보이는 '요리사의 만찬 (Chefs' Feast)' 등
 - 세계적인 유명 요리사, 미식 미디어 등 외식업계 선구자들에게 한국의 다채로운 식문화와 서울의 품격있는 미식을 선보일 예정
- **시행일** 2024년 3월 24~26일

곤충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044-201-2142)

곤충가공업과 곤충유통업만 가능하던 산업단지 입주가 곤충 생산업도 포함하여 입주가 허용됩니다.

- 곤충가공업을 위해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을 부대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공장의 제조공정에 원료 또는 재료로 전량 사용 되어야 합니다.
-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곤충 대량생산에 따른 곤충 생산성 향상 등 곤충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지방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킬러규제 확 견어낸다.(’23.9.20.)

곤충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 추진배경 산업집적법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 곤충산업 중 곤충가공업 유통업은 입주 가능하나 곤충생산업은 입주 불가하여, 곤충생산을 분리·운영해야 하는 기업에 발생
- 주요내용 곤충가공업을 위해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 (해당 공장의 제조공정에 원료 또는 재료로 전량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부대시설의 범위에 포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시행일 2024년 2월(잠정)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통한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044-201-2519)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축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차량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신설*됩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23.9.14) 및 시행(24.9.15), 외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24.9월) 예정

■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가축운송업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 및 조치 의무 신설에 따라 분뇨 유출로 인한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 및 악취 민원 해소 등이 기대됩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축전염병 예방법('24.9.15 시행)

가축 분뇨의 차량 외부 유출 방지 관련 규정 신설

- **추진배경** 가축운송업자의 차량에서 분뇨가 유출되는 사례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 및 악취 민원 등이 제기됨에 따라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가축운송업자는 가축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차량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신설
 - *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2024년 9월 15일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044-201-2552)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개정·시행('23.12.1)

- 인체용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유효성분으로서 '23년 11월 30일 이전에 동물용으로는 품목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의약품의 유효성분이거나,
- 인체용 및 동물용으로 모두 품목허가를 받은 유효성분 중 별도로 정하는 22개의 유효성분으로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용 고부가가치 신약 개발, 고가의 수입의약품 대체 및 경쟁을 통한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 가계부담 완화 등 동물의약품 시장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개정 알림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시설기준령 개정

- 추진배경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중복투자 부담이 있어 규제개선 필요
- 주요내용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기존 의약품 제조시설로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시설을 갈음할 수 있는 세부요건 마련
 - ① 인체용 의약품 중 '23년 11월 30일 이전에 동물용으로는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의 유효성분 또는 인체용 및 동물용으로 모두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유효성분 중 별도로 정하는 22개의 유효성분일 것
 - ②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③ 오염 우려가 없을 것
- 시행일 2023년 12월 1일

국산 밀 품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준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044-201-1835)

2024년부터 새로운 국산 '밀 품질관리기준'이 도입됩니다

■ 국산 밀을 가공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별(강력·중력)로 구분하고, 주요 품질인자(단백질·용적중·회분)에 따라 등급을 세분화합니다.

- (종전) 용도 구분없이 '양호', '보통' 등급
- (개선) 용도별 구분(강력·중력)하고 용도에 따라 1, 2, 3등급 등으로 구분

■ 또한, 새로운 국산 밀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공공비축 매입가격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 (기존) 품종 구분 없이 3만 9천 원/40kg → (개선) 품종별 생산단수 차 반영 ±5~10% 차등

■ 이를 통해 국산 밀 품질을 제고하여 수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산 밀 품질관리기준(안)

• 추진배경 국산 밀 품질 제고를 위해 국산 밀을 사용 용도별로 구분하고, 품질관리항목을 세분화하여 수요 확대 도모

• 주요내용

< (현행) 국산 밀 품질기준 >

안전성	품종 순도	단백질 함량	품질 종합등급
적합	80% 이상	• 금강·새금강 11.0% 이상 • 조경·백강 12.0% 이상	양호
	60% 이상		보통
부적합	60% 미만	• 금강·새금강 11.0% 미만 • 조경·백강 12.0% 미만	미흡

< (개선) 국산 밀 품질관리기준(안) >

사용용도	품종	등급	단백질(%)	용적중(g/L)	회분(%)
강력분용 (빵용)	백강, 조경, 금강	1등급	12.0~15.5	780 이상	1.70 이하
		2등급	15.6 초과	750~780	1.90 이하
		3등급	10.0~11.9	750~780	1.90 이하
		등외	10.0 미만	750 미만	1.90 초과
중력분용 (면용)	새금강	1등급	10.0~13.2	780 이상	1.65 이하
		2등급	8.2~9.9, 13.2 초과	750~780	1.85 이하
		등외	8.2 미만	750 미만	1.85 초과

• 시행일 2024년 2월(잠정)

밀·콩·가루쌀 관련 지원사업 통합·운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044-201-1838)

2024년부터 기존 사업 중 지원내용이 유사한 밀·콩·가루쌀 생산·유통·가공 관련 지원사업을 재정관리 효율성 및 집중도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산업화지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생산 확대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거나, 일반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는 작물로써 이모작 등의 작부체계로 재배하여 논 활용도 제고 및 쌀 수급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작물

** (기존)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272억 원) + 쌀가루산업화(71억 원) + 밀 가공확대지원(20억 원) + 논범용화 용수공급체계구축(3억) → (통합) 전략작물산업화지원(437억 원, 71억 원↑)

▣ 제품화 패키지 지원을 통해 밀·콩·가루쌀의 신제품 개발, 시제품 생산, 마케팅 등에 필요한 지원, 국산 밀·가루쌀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조성을 위한 제분·유통비 등을 신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전략작물에 대한 산업 경쟁력 제고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가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시행

전략작물산업화지원 개요

- **추진배경** 식량작물에 대한 기존사업 구조조정 및 전략작물에 대한 유통·가공·소비 분야 종합지원으로 식량자급률 및 재정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밀·콩·가루쌀 농가의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에 대한 생산기반 확충
 - 전략작물 생산에 따른 유통·가공 활성화를 위해 전략작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 지원
- **시행일** 2024년 1월

수확기 벼 매입자금지원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044-201-1838)

수확기 농가 벼 판로를 확보하고 산지 쌀 유통 기능 활성화를 위해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을 정부지원 RPC*에서 정부지원 RPC, DSC** 등으로 확대합니다.

* 미국종합처리장 ** 건조저장시설

- 매년 정부지원 RPC, DSC 등을 선정하고, 쌀산업 기여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벼 매입자금을 지원합니다.
- 2024년 미국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지원 사업시행지침 개정 시 반영되어 2024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국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수확기 농가 벼 판로 확보 및 산지 쌀 유통기능 활성화
- 주요내용
 -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에 DSC 등을 추가
 - 매년 쌀산업 기여도 평가를 통해 벼 매입자금 차등 지원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24년 미국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지원 사업시행지침 개정 시)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업용 배수장·저수지 설계기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 044-201-1855)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 강도가 증가되는 추세에 대비하여 농업용 배수장 및 저수지의 설계기준을 강화하여 2024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 최근 극한 강우추세, 도시펌프 사례 등을 감안하여 농업용 배수장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지역별·재배작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홍수대응능력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 (당초) 벼 20년, 발작물 30년 → (변경) 벼 20년 이상, 발작물 30년 이상

- 또한, 저수지의 경우에는 농업용수 이용량 이외에 홍수조절용량까지 고려하여 저수지 규모를 결정하고, 홍수대비 비상 방류시설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설계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배수·농업용댐편)

농업용 배수장·저수지 설계기준 강화

- **추진배경** '23년 장마피해 등 이상기후 및 영농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농업생산기반 시설(배수장·저수지) 설계기준 개정 추진
- **주요내용**
 - (배수장) 강우추세, 도시펌프 사례 등을 감안하여 농업용배수장 설계기준 강화*
* (현행) 벼 20년, 발작물 30년 → (개정안) 벼 20년 이상, 발작물 30년 이상
** 하천 배수펌프 30년 이상, 하수도 도시빗물펌프장 30년 이상 (필요시 50년 이상)
 - (저수지) 농업용수 이용량 이외에 홍수조절용량을 고려한 저수지 규모 결정, 홍수대비 비상 방류시설 설치기준 명확화 등 저수지 설계기준 보강
- **시행일** 2024년 1월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배수·농업용댐편))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요건 대폭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044-201-2329)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활성화와 농촌지역 정주환경 보전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2024년 「사업시행지침」을 대폭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 '19년부터 노후·난립 축사를 ICT 인프라를 구비한 단지로 집적화하는데 필요한 전기·도로 등의 기반조성 및 관제센터 신축 비용 지원

- 먼저, 단지 조성규모를 15ha에서 3ha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지자체는 토지이용현황과 공간활용계획 등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해 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노후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방식을 통해 스마트축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신규 부지 확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끝으로, 조성되는 스마트축산단지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4.3.29.시행 예정)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축산업을 위한 지속적 관리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스마트축산단지 사업개편

'24년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 개선

- **추진배경**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활성화 및 정주환경 보전의 조화로운 달성
- **주요내용** 토지 이용현황과 공간 활용계획 등 지역특성을 감안해 맞춤형 사업 추진 지원
 - ① 스마트축산단지 조성규모 다양화, ② 축사가 밀집한 현 단지에 대한 재개발 방식 허용, ③ 해당 스마트축산단지를 축산지구로 지정해 축산업 지속 가능성 확충 등
- **시행일** 2024년 1월 (예정)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65)

2023년 한우로 시작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이 2024년부터는 양돈, 낙농으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이상 온실가스를 줄인 농가를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2023년 국내 최초 저탄소 인증 한우를 출하하였으며, 2024년에는 저탄소 돼지고기와 유제품도 출시합니다.
- 또한, 농가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증 지원농가 규모도 확대('23년 50건 → '24년 150건)할 예정입니다.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확대를 통해 농가와 소비자의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내 최초 저탄소 인증 한우농가 27개소 탄생!'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

- **추진배경** 농가의 저탄소 생산방식 확산을 통해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 및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도모
- **주요내용**
 - 인증대상: 한우, 낙농, 양돈
 - 사전요건: 친환경축산물,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축산분야 7개 인증 중 1개 이상 사전 취득
 - 탄소감축기술: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시설 도입 등의 기술 적용
- **시행일** 2024년 7월

농산물도매시장 양파 줄망 반입을 제한하고 기계·수작업망으로 유통방식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201-2221)

'24.1.1일부터 농산물공영도매시장에 양파 줄망 반입을 전면 제한하고, 수작업망(줄잡이 없이 사람이 직접 망에 양파를 담아 중량을 맞춘 형태), 기계망에 한하여 도매시장에 반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 다만,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조직 및 양파망 제작업체 산업분야에서도 사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가락시장부터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농산물공영도매시장(32개소)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 가락시장(~'24.1.1.) → 중앙도매시장(~'24.6.30.) → 지방도매시장(~'24.12.31.)

이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 산지 인력 부족 개선, 작업효율성 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농산물도매시장 양파 유통방식 개선 방안('23.11월)

농산물도매시장 양파 유통방식 개선 방안

- **추진배경** 줄망작업에 따른 유통비용 과다, 인력확보 곤란, 작업 비효율성, 생산·유통 기계화 애로 등 문제 발생
 - ※ 관련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0조, 제81조
- **주요내용**
 - 양파 도매유통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락시장을 중심으로 줄망 거래 관행을 기계망으로 단계적 전환
 - '24.1.1일부터 줄망 반입을 전면 제한하고, 수작업망(줄잡이 없이 사람이 직접 망에 양파를 담아 중량을 맞춘 형태), 기계망에 한하여 반입허용
 - 단계적으로 산지에 양파 자동포장 설비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스마트 APC 구축을 통해 다양한 규격 자동포장으로 줄망 포장 대체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농산물분야 의무자조금의 운영관리 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201-2219)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가격안정 도모 및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구축을 위한 농산물 분야 의무자조금의 운영관리비 기준 및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완화하였습니다.

■ 자조금의 기능이 강화되고, 최근 거출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자조금 운영을 활성화하고 인력 및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비 한도가 최대 4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 (당초)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20%, 10억 원 미만 30%
- (변경) 총사업비 5억 원 초과 30%, 5억 원 ~ 3억 원 35%, 3억 원 이하 40%

참고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국민소통>훈령·예규·고시>「농산물분야 농수산물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농산물분야 의무자조금 운영관리 규제 완화

- **추진배경**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스스로 농산물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 등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구축을 위해 품목별 자조금단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
- **주요내용**
 - (의무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의 기준) 총사업비의 최대 40%까지 완화
 - (당초) 총사업비(해당연도에 사용한 의무자조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의무자조금 사용액의 20%, 10억 원 미만 30%
 - (변경) 총사업비(해당연도에 사용한 의무자조금)이 5억 원 초과 30%, 5억 원 ~ 3억 원 35%, 3억 원 이하 40%
- **시행일** 2024년 상반기(농산물분야 농수산물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인삼경작신고 의무화 및 신고기관 인삼 품목 조합(농협)으로 일원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044-201-2238)

인삼 관련 지도·교육, 안전성 확보, 생산자단체 자율적 수급 조절 체계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12월 21일부터 인삼의 경작신고가 의무화됩니다

- 신고업무 효율화를 위해 인삼 경작신고 기관이 기존 지자체·인삼농협에서 인삼농협으로 일원화됩니다.
- 또한, 경작신고 및 상속·양수·합병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시스템(law.go.kr)법령>인삼산업법

인삼경작신고 의무화 및 신고기관 일원화

- **추진배경**
 -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통해 인삼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해져 소비자 신뢰도 및 품질 제고 효과
 - 생산자단체 자율적 수급 조절 체계를 갖추기 위한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 또는 인삼경작지를 상속·양수·합병 시 인삼경작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준수자에 대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업무 효율화를 위한 경작신고 수리 주체를 지자체·인삼농협에서 인삼농협으로 일원화
- **시행일** 2023년 12월 21일

농식품바우처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044-201-2274)

수혜자 편의 제고를 위해 농식품바우처* 신청자 정보를 유관기관 정보와 연계하여 비대면 사업 신청·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식품바우처 통합관리플랫폼이 2024년 상반기에 구축됩니다.

* 농식품바우처란?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국산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전자 바우처

-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자는 통합관리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정 여부, 지원금액 및 사용 내역,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복지부)·금융기관(바우처카드)·유통업체(사용처) 정보를 연계한 신청·조회 서비스 등을 2024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바우처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 추진배경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시행('25년)에 대비하여 농식품바우처 수혜자 편의 제고 및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 (사업신청 및 정보조회)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 자격정보(복지부)를 금융기관(바우처카드)·유통업체(사용처) 정보와 연계하여 온라인 사업신청 및 바우처 지원금액·사용내역·잔액 조회 기능 제공
 - (사업 운영 및 관리)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자 정보와 금융기관·유통업체 정보를 연계하여 예산 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 추진
- 시행일 2024년 하반기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 및 융자 비율 상향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044-200-5431)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저리(1~3%)로 공급 중인 수산정책자금(이차보전자금)의 신규 공급액을 7,000억 원 확대*(’23년 3.4조 원 → ’24년 4.1조 원)합니다.

* 양식어업 경영자금(+5,800억 원), 신고·마을 중요생산어업 경영자금(+500억 원), 배합사료 구매자금(+500억 원) 등

■ 특히, 어업경영자금* 개인·법인별 융자한도를 5억 원 상향**하고, 융자비율도 +10%p 상향합니다.

* 양식어업 경영자금, 어선어업 등 경영자금, 신고·마을 중요생산어업 경영자금

** 개인: (’23년) 10억 원 → (’24년) 15억 원 / 법인: (’23년) 15억 원 → (’24년) 20억 원

〈어업경영자금 융자비율〉

가구당 경영비	’23년	’24년
~2억 원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100%까지(A)	좌동
2억 원~5억 원	2억 원(A)+2억 원 초과 소요액의 85%까지 가산(B)	2억 원(A)+2억 원 초과 소요액의 95%까지 가산(B’)
5억 원~10억 원	4억 5,500만 원(B)+5억 원 초과 소요액의 75%까지 가산(C)	4억 8,500만 원(B’)+5억 원 초과 소요액의 85%까지 가산(C’)
10억 원~	8억 3,000만 원(C)+10억 원 초과 소요액의 65%까지 가산	9억 1,000만 원(C’)+10억 원 초과 소요액의 75%까지 가산

재해, 경영위기 등으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규모도 800억 원 확대(’23년 200억 원 → ’24년 1,000억 원)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4년 수산정책자금 공급 확대 보도자료(’24.1월 배포 예정)

수산정책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 확대

- **추진배경**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에게 긴급 유동성 공급 필요
- **주요내용**
 - 수산정책자금 신규 공급액 7,000억 원 확대(3.4 → 4.1조 원)
 - 어업경영자금 융자한도 상향(개인 10 → 15억 원, 법인 15 → 20억 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규모 800억 원 확대(200 → 1,000억 원)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관리과 (☎ 044-200-5608~9)

2024년 1월 12일부터 생산·수입되어 판매되는 통발 어구에 대하여 어구보증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가 판매되고, 어업인 등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반환하면 어구에 포함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 통발 종류에 따라 스프링 통발은 1,000원, 원형 통발과 반구형 통발은 2,000원, 사각통발과 붉은대게 통발은 3,000원의 보증금이 각각 판매금액에 포함됩니다.
-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사용한 어업인이나, 바닷가에 버려진 어구를 누구나 수거하여 지정된 회수관리 장소(11개 시도 180개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 분	주체별 역할
생산·수입업체	-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라는 환급 문구 표시(보증금 표시) - 어구 출고 시 판매량 정보와 보증금을 보증금 관리기구로 이관
자치단체 (회수관리자)	- 페어구 회수장소를 지정, 설치·운영, 어업인 대상 어구보증금제 지도 - 페어구 처리의 의무(수협에서 업무 대행, 비용은 지자체가 지급) - 어업인이 반환한 페어구를 수거, 반환정보 제공 - 반환된 페어구의 처리, 회수장소 관리·운영, 페어구 반환 지도·교육
지구별수협	- 회수관리자(지자체)로 부터 수탁업무 수행
어업인	- 보증금 포함 어구 구입·사용 - 페어구를 지정된 회수장소에서 반환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수산자원공단)	- 어구보증금 표시 제작·관리, 어구보증금 지급(→어업인) - 미반환보증금의 집행·관리, 어업인 대상 페어구의 회수 교육 홍보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23.3.~23.9. 어구보증금제도 시행

어구보증금제도 시행

- **추진배경** 해양환경 보존 및 수산자원 보호,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의 자발적 회수를 유인하는 실효적 수단 필요
- **주요내용** 통발 종류별(스프링, 원형, 반구형, 사각, 붉은대게)로 어구보증금액을 포함하여 판매하고 사용 후 반납할 경우 보증금액을 반환
- **시행일** 2024년 1월 12일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대상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 130만 원으로 인상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 044-200-5452)

2024년부터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지급단가가 1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 고시 개정 시행)

-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는 영세 어업인 등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신설·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2024년부터는 직불금 지급단가를 10만 원 인상하여 1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3년) 120만 원/연 → ('24년) 130만 원/연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4년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관련 보도자료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 **추진배경**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및 어업인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 **주요내용**
 - (대상) 소규모 어가 및 내국인 어선원
 - (지급액) 130만 원/연
 - (절차)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자격검증 후 직불금 지급
- **시행일** 2024년 1월

전체 여성어업인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3)

2024년부터 전체 여성어업인(만 51세 이상) 15,706명에 대해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 '22~'23년에 만 45세 이상 여성어업인 1,800명 대상 시범사업 실시

- 검진비용의 90%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며, 여성 어업인은 2만 원의 비용으로 근골격계 질환, 난청 등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4년 전체여성어업인 대상 특화건강검진 실시 관련 보도자료

여성어업인 특화건강 검진 실시

- **추진배경** 여성어업인의 모성 보호 및 직업질환에 대한 예방 등을 위해 건강검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함('18년 12월)
 - 국정과제 「모든 여성어업인에게 특화건강검진 제공」('24년~)
- **주요내용**
 - (지원대상) 만 51세 이상 여성어업인 15,706명
 - (지원내용) 근골격계질환 등 유병률이 높은 어업직업 기인 질환 검진 지원
- **시행일** 2024년 4월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강화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 044-200-5808)

2024년 1월 1일부터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어류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일률기준(0.01ppm) 적용하여 국내 수산물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잔류물질허용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① 원칙적 규제 상태에서, ② 허가된 물질을 목록화하는 것으로 의약품 및 농약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안전관리제도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 식품 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한 약품의 사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 대상 동물, 용법·용량, 휴약기간, 주의사항 등 약품의 허가사항
- 아울러, 어업인의 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도록 미설정 수산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사용기준을 지속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참고

한국수산물 FSIS 수산물 안전정보 홈페이지)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이 강화됩니다.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강화

- **추진배경**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된 수산물이 생산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양식 수산물을 공급
- **주요내용**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어류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일률 기준 (0.01ppm) 적용하여 안전성조사 실시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무동력 선박 형태 바지 허용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044-200-5520)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무동력 선박 형태 바지 사용이 허용됩니다.

-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어업인 편의 제고를 위해 총 길이 16m 이하 추진축 및 추진동력 장치가 없는 배 형태의 바지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추가 허용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어구보증금제도 세부이행방안 마련 등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무동력 선박 형태
바지 허용

- 추진배경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어업인 편의제고를 위해 무동력 선박 형태 바지 사용 허용
- 주요내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별표1의2] 실뱀장어안강망 어구에 선박형태 바지를 추가하고, 선박규모 및 상태 규정
 - 평균전장 16m 이하, 추진축계 및 추진동력이 없는 무동력선에 한정
- 시행일 2024년 1월 11일(「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공포 후 즉시)

우리동네 마트도 수산물 할인행사 참여 가능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044-200-5627)

2024년 1월부터는 지역의 중소 유통업체도 수산물 할인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체 선정 기준(수산매출액)을 완화**합니다.

* 대한민국 수산대전 / 수산물 구매시 최대 50% 할인 (정부 20% 지원)

** (예시) 최고점을 1,000억 원 이상 → 800억 원 이상

■ 이를 통해,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 위주로 진행되어 온 수산물 할인행사를 동네 마트에서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국민과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대한민국 수산대전 개최(*24.1월부터 매월 할인행사 개최시 배포 예정)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물 할인행사

- **추진배경**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전통시장에서 수산물 할인행사 추진
 - * 온·오프라인 할인행사(유통업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전통시장)
- **주요내용**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마트,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와 연계, 수산물 구매시 국비 20% 할인(유통업체 자체할인 포함 최대 50% 할인)
 - 참여 업체 선정기준 중 '수산 매출액' 기준을 완화*하여 참여 확대
 - * (예시) 최고점을 1,000억 원 이상 → 800억 원 이상
- **시행일** 2024년 1월 중(매월 시행)

어선 고속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대상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044-200-5553)

기존 5톤 미만 어선까지 도입하였던 어선 고속기관의 비개방정밀검사의 대상을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합니다.

- 그간 5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은 10년 주기로 어선 고속기관을 개방검사로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고속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검사를 받게 되어 어선주의 검사 비용과 시간 부담이 줄어듭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어선 규제혁신으로 편의·안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23.12.18.)

어선 고속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대상 10톤 미만까지 확대

- **추진배경** 기관 제조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방검사에 소요되는 선주의 비용·시간적 부담 대비, 개방검사 필요성(고장 가능성)이 낮아짐
- **주요내용** (검사 주기 개선) 5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 고속기관 개방검사
 - (기존) 10년 주기 개방검사
 - (개선) 10년째 비개방정밀검사 → 15년째 비개방정밀검사 → 20년째 개방검사
- **시행일** 2023년 12월 18일

양식장 임대 사업 실시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14)

2024년부터 청년, 귀어인 등의 어촌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 사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 「양식산업발전법」 개정('23.6.28.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장을 확보(임차)하여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는 '양식장 임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이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확보한 양식장을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에게 임대 시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양식장 임대사업'을 추진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청년, 귀어인 등 어촌사회 정착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24.2월 배포 예정)

양식장 임대 사업 개요

- **주요내용**
 - (사업목적) 신규 양식인 유입을 통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양식산업 구축을 위해 개방성을 강화한 임대형 양식장 운영
 - (사업규모) 임대형 양식장 10개소 운영('24년)
 - (사업내용)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장을 확보(임차)하여 청년 귀어인 등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고, 임대료 등 지원(국비 50%, 자부담 50%)
- **시행일** 2024년 상반기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확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044-200-5633)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이 확대됩니다.〔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기존 활용 제품(소결제)의 용도를 확대*하고 복토재·양빈재 등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을 재활용 유형에 포함하였습니다.

* (현행) 제철용 소결제 → (개선) 소결제(용도 확장)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4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2024년 초 개정 이후 확대된 용도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확대 시행('24년 상반기 배포 예정)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확대

- **추진배경**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재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신기술이 개발·상용화되는 상황 반영
- **주요내용** 이미 사용중인 제품(소결제)의 용도확대*와 복토재·양빈재 등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을 재활용 유형에 포함
* (현행) 제철용 소결제 → (개선) 소결제(제철용으로 한정된 용도를 확장)
- **시행일** 2024년 상반기

먹는해양심층수 무라벨 제품 날개 판매 허용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044-200-5241)

먹는해양심층수 무라벨 제품도 날개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는 표시사항*이 없는 경우 날개 판매가 불가능하였으나, 표시방법 중 하나로 QR 코드 방식을 도입하여 무라벨 제품도 날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 제품명, 취수해역, 유통기한, 전화번호 등

- 개정내용은 2024년 10월 중(잠정)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개정 보도자료

먹는해양심층수
무라벨 제품도
날개 판매 허용

- **추진배경** 먹는해양심층수 무라벨 제품은 날개 판매가 불가능했으나, QR코드 표시 방식을 도입하여 날개 판매 가능하도록 함
- **주요내용** 표시사항(제품명, 취수해역, 유통기한, 전화번호)을 QR코드로 표시 가능하도록 개정
- **시행일** 2024년 10월 중(잠정)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ASTIS)에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신청 및 결과 확인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 063-238-0921)

농업과학기술정보 기반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4년 6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하고 국민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 「농촌진흥법」, 「지방자치법」에 따른 농촌진흥기관이 생산한 연구·기술보급 정보는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ASTIS)을 통해 등록·관리됩니다.

※ 농촌진흥기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도·특별자치도에 두는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에 두는 직속기관)

■ ASTIS를 통해 농업인(일반인)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 7. 1. 서비스 개시)

※ 제공 서비스: 유용 미생물 신청, 조직 배양요 분양, 농산물 종합가공실 이용, 친환경 축산관리(조사료 분석 등), 영농상담 컨설팅 신청 등

참고 <http://astis.rda.go.kr> 회원가입 후 주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시행

- **추진배경** 전국 농촌진흥기관이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과 농업환경 분석 관련 정보 및 유용 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공유체계 개선
- **주요내용**
 -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 농업과학기술정보 수집 분석·가공 및 서비스 제공
 - (기술보급·확산 지원단) 농촌진흥기관과 민간 등 기술보급 협의체 운영
 - (지방농촌진흥기관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시설·장비 등 지원
- **시행일** 2024년 6월 21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신고제도 시행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 042-481-4088)

2024년 2월 17일부터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23. 7. 27. 제정, ’23. 8. 16. 공포)

■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업

- ① 산림전용 방지에 관한 사업 ② 산림의 황폐화 방지에 관한 사업 ③ 산림의 보전에 관한 사업
- ④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에 관한 사업 ⑤ 산림 탄소 축적 증진에 관한 사업
- 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규조림에 관한 사업
- ⑦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조림에 관한 사업

■ 사업계획이 신고 수리된 사업자는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

- ①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 ② 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령>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에 관한 법률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신고제도 시행

- 추진배경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의 의무와 역할을 정하고, 사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법 제정
- 주요내용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산림청장에게 사업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수리된 사업자는 재정 여건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시행일 2024년 2월 17일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자격 완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042-481-4192)

2024년 1월 1일부터 전문임업인과 귀산촌인의 산림사업종합자금(임업 분야 정책자금 대출) 지원자격이 완화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 전문임업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최근 3년 내에 전문교육기관에서 12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하여야 했지만, 임업분야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으면 위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같습니다.

※ 전문임업인: 독립가,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임업분야 외 타 산업분야에서 근로 중인 귀산촌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을 하여야 했지만, 단기 근로자(월 60시간 미만)는 타 산업 분야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보>산림행정미디어센터>보도자료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자격 완화

- **추진배경** 산림사업 투자활성화 및 임가소득 증대를 위해 임업인에 대한 불필요한 제도 개선
- **주요내용**

 - 전문임업인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신청 자격 요건
 - (기존) 전문임업인 선발 이후 사업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12시간 이상 수료한 자
 - (개선) 전문임업인 선발 이후 사업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12시간 이상 수료한 자, 다만 임업분야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전문교육기관 교육 12시간을 수료한 것으로 간주
 - 귀산촌인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신청 자격 요건
 - (기존) 임업(농업 및 수산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는 지원 불가
 - (개선) 임업(농업 및 수산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는 지원이 불가하나, 단기 근로자(월 60시간 미만)는 타 산업 분야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신청 가능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9

국방·병무



1 국방부

자세한 내용은 p.344

2024년 병 봉급 인상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병역의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 봉급을 인상하였습니다.



'23년 병 봉급

구분	봉급액 (원)
병장	1,000,000
상병	800,000
일병	680,000
이병	600,000

After

'24년도에도 병역의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이 인상됩니다.



'24년 병 봉급

구분	봉급액 (원)
병장	1,250,000
상병	1,000,000
일병	800,000
이병	640,000

2 국방부

자세한 내용은 p.345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병사 전역 시 사회진출을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After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 및 전역 후 목돈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을 인상합니다.



3 국방부

자세한 내용은 p.346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초급간부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단기복무 간부의 장려금(장려수당)이 인상되고 주택수당이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
· 단기복무 장려금(장려수당)

구분	보급액(만원)
(장교)장려금	900
(부사관)장려수당	750

-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 지급 제외

〈변경 (24년)〉
· 단기복무 장려금(장려수당)

구분	보급액(만원)
(장교)장려금	1,200
(부사관)장려수당	1,000

-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들에게도 지급



4 국방부

자세한 내용은 p.347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가
보급됩니다.

-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를 보급하여, 방상내·외피 등 동계피복과 교대·중복처용을 통해, 동절기 근무여건을 보장하고 장병 만족도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5 병무청

자세한 내용은 p.350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시행일: 2024년 5월 1일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이 금지됩니다.

·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6 방위사업청

자세한 내용은 p.359

방위사업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 시행

시행일: 2024년 5월 1일

방위사업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을 시행합니다.

- 계약의 특례 범위 확대
- 지체상금 부과 및 감면 관련 규정 개선
-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확대
- 핵심기술 등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신설
-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및 사유 확대
- 국방조달계약심의위원회 신설
- 기타 방위사업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개선



7 방위사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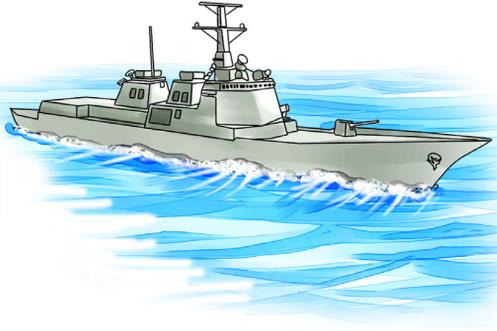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360

군함 감리 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품목포괄수출허가 적용

시행일: 2024년 3월 1일(예정)

군함 감리 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품목포괄수출허가제도가 적용됩니다.

- 조선소가 해외 선급을 통한 감리업무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고, 사업기간 동안 군함의 도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품목포괄수출허가제도가 도입됩니다.



2024년 병 봉급 인상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748-6614)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2024년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병장을 기준으로 계급별 차등 적용하여 책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3년	600,000	680,000	800,000	1,000,000
'24년	640,000	800,000	1,000,000	1,250,000
비교		+160,000	+200,000	+250,000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4년도 국방예산 확정

2024년 병 봉급 인상

• 추진배경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병 봉급 인상을 추진

• 주요내용

구분	'23년	'24년	'25년
합계	100만 원	165만 원	205만 원
병 봉급(병장 기준)	100만 원	125만 원	150만 원
자산형성프로그램 (월 최대 지원금)	30만 원	40만 원	55만 원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748-6614)

병사 전역 시 학업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 지원금을 2024년부터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원금의 100%)으로 인상합니다.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2024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 추진배경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 및 전역 후 목돈마련
- 주요내용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4.1월 적립분부터 전역(만기) 시 원금의 100%의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

* (법령근거) 병역법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복무기간 18개월, 월 40만 원 납입시] 약 1,469만 원 (①+② = 14,685,000원)

- ① 원금 + 은행 기본금리 (5%내외) = 748.5만 원 (720만 원 + 28.5만 원)

- ② 매칭지원금 = 720만 원 (원금의 100%)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748-6613)

열악한 초급간부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단기복무 간부의 장려금(장려수당)이 인상되고 주택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 초급간부 지원률 향상에 실질적인 유인이 될 수 있도록 단기복무(장교)장려금(부사관)장려수당이 인상됩니다.

(단위: 원)

구 분	'23년	'24년
단기복무(장교) 장려금	9,000,000	12,000,000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7,500,000	10,000,000

- 주택수당이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22년 전수조사 결과, 임관 3년 미만 간부 중 관사나 간부숙소를 지원받고 있지 못하는 4,700명 반영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군의 노력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창끝부대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초급간부의 복무개선은 「튼튼한 국방과 확 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핵심사업임
- 주요내용
 - 단기복무하는 간부의 임관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및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을 33% 인상하였습니다.
 - * 단기복무 간부: (장교) 장려금 900만 → 1,200만
 - (부사관) 장려수당 750만 → 1,000만
 - 관사나 간부숙소를 지원받지 못하는 간부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을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까지 지급하도록 2024년부터 대상 확대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국방부 물자관리과 (☎ 02-748-5726)

2024년 1월 입대 병사부터 '플리스형 스웨터'를 보급합니다.

- 기존 간부에게만 보급하던 플리스형 스웨터를 동계 복무여건 향상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전군 입대 병사들까지 보급합니다.
-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를 보급하여, 방상내·외피 등 동계피복과 교대·중복착용을 통해, 동절기 근무여건을 보장하고 장병 만족도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 추진배경 병사들의 동계 복무여건 향상을 위해 기존 간부에게만 보급하던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병사에게 확대 보급
- 주요내용 2024년 1월 입대 병사부터 기존 개인에게 지급하던 방상내피, 방상외피에 더하여, '플리스형 스웨터'를 추가 보급함으로써, 동계피복을 교대·중복착용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여 만족도 향상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군 장병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748-6625)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정책팀 (☎ 044-215-2551)

군 장병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경제교육 전문기관에서 「맞춤형 경제교육」을 운영합니다.

※ 국방부-기획재정부-경제교육단체협의회-한국개발연구원이 함께 협력하여 장병 맞춤형 경제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 및 교육지원

■ 병 봉급 증가 등 군 장병의 소득증가에 따라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확대되어 장병에게 적합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지역별 경제교육 전문기관에서는 교육프로그램 및 강사를 지원합니다.

■ 또한, 장병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산관리 등 경제생활 관련 상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군 장병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

- 추진배경 군 장병의 소득증가에 따른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24년 상반기(2월 예정)부터 경제교육 전문기관에서 경제교육 운영
- 주요내용 군 장병 대상 맞춤형 경제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지역별 부대와 경제교육 전문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교육프로그램 및 강사를 지원하며, 필요시 자산관리 등 경제생활 관련 상담을 지원
- 시행일 2024년 2월 ~ 3월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직접청구 앱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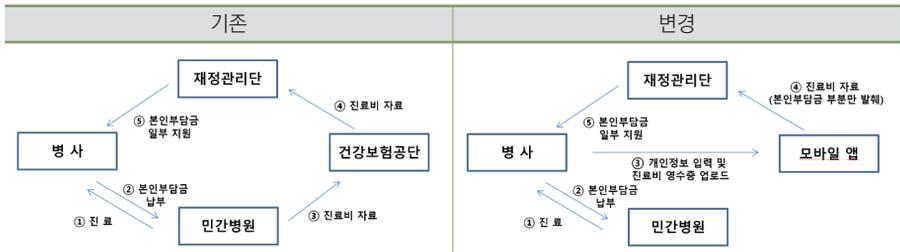
국방부 보건정책과 ☎ 02-748-6657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간접청구 방식에서 병사들이 직접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모바일 앱(나라사랑포털 앱)을 통해 병사가 민간병원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여 지급기간이 5~6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됩니다.

* 「국방 환자관리 훈령」 개정 예정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개선안〉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직접청구 앱 구축

- 추진배경 기존에는 진료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전달받아 자료 수신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진료비 지급까지 평균 5~6개월이 소요, 이에 따라 지급기간 단축에 대한 민원소요가 다수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청구 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2024년 2월 이후 진료 건에 대하여 병사들의 직접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한 진료비 지원 가능
- 시행일 2024년 2월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병무청 병역조사과 (☎ 042-481-2780)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그동안은 온라인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단속하거나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 5월 1일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시행됩니다.
- 이번 처벌 규정 신설로 병역면탈 조장 정보의 게시·유통에 대한 단속은 물론 사이버를 통한 병역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 추진배경 브로커가 온라인을 통해 병역의무자에게 뇌전증 위장 수법을 전수, 이를 악용한 금전수수 사건을 계기로 병역면탈 조장 정보 단속 강화를 위해 처벌규정 마련
- 주요내용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및 위반자 처벌 근거 마련 「병역법」개정(’23.10.31. 공포)
 -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금지 근거 신설(병역법 제81조의3)
 -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근거 신설(병역법 제87조의2)
- 시행일 2024년 5월 1일

사회복무요원 등 정치 운동 금지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042-481-3010)
병무청 병역공개과 (☎ 042-481-2774)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이 금지됩니다.

- 그동안은 「병역법」 제33조제2항제2호 중 일부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의 정당 가입 외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었으나,
- 2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 등의 정치 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 정치 운동 금지 위반 시마다 경고처분 및 5일 연장복무, 4회 이상 경고처분 시 고발(징역 1년 이하의 형)
-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동시에 업무에 전념하여 공무수행자로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관계법령 : 병역법 제32조의3, 제33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사회복무요원 등 정치 운동 금지

- **추진배경** 「병역법」 제33조제2항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기준 명확화
 - * 헌법재판소 2019헌마534('21.11.25.결정) 관련
- **주요내용**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금지
 -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하는 것
 -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 **시행일** 2024년 2월 1일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의무와 괴롭힘 금지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042-481-3010)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의무와 괴롭힘 금지가 시행됩니다.

- 그동안은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었고, 복무기관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또한 없었습니다.
- 5월 1일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은 직무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고, 복무기관장 및 직원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 시 복무기관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유도과 권익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관련법령: 「병역법」 제31조의4, 제31조의5, 제31조의6, 제95조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의무와 괴롭힘 금지

- 추진배경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를 유도하는 한편, 복무기관 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의 지속 발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금지
 -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 지체없이 객관적 조사 실시 및 피해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 복무기관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과태료 부과
 -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1천만 원 이하
 - 피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비밀 누설 금지 등 의무 위반시: 500만 원 이하
- 시행일 2024년 5월 1일

병역판정검사 등 이동중 부상자 치료비 지급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18)

병역판정검사 등 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이 확대됩니다.

- 그동안은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만 국가 부담으로 치료가 가능했으나,
- 2023년 12월 21일부터는 병역판정·입영판정검사 등 검사를 위해 직접 이동하거나 검사 후 지체없이 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병역판정검사 등 이동중 부상자 치료비 지급

- 추진배경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이동 중 부상 시 국가 부담의 치료로 병역이행의 자긍심 고취 및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병역판정검사 등 검사를 위해 직접 이동하거나 검사 후 지체없이 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부담 치료 대상 확대
* 「병역법」 제75조(보상 및 치료) 개정으로 이동중 부상자 보상 근거 마련
- 시행일 2023년 12월 21일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및 그 자녀 관리 기준 조정

병무청 자원관리과 (☎ 042-481-2891)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고소득자 및 그 자녀의 관리 기준이 조정됩니다.

*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

- 그동안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 ‘최고 세율(10억 원 초과)’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를 고소득자(자녀)로 병적을 별도관리 하였으나,
- 2023년 12월 21일부터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5억 원 초과)’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까지 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 관리대상 고소득자(자녀):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 원 초과자로 확대
- 이를 통해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및 그 자녀 관리 기준 조정

- 추진배경 소득세법 개정으로 ‘최고 세율’ 적용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금액이 5억 원에서 10억 원 초과로 상향되어 관리 인원이 축소, 종전과 같이 기준을 조정하여 제도 실효성 확보
- 주요내용 고소득자(자녀) 관리대상에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도 포함되도록 관리 기준 조정
* (현행)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 원 초과
- 시행일 2023년 12월 21일

병역의무자의 병역정보 안전조치 강화

병무청 정보보호팀 (☎ 042-481-1932)

병역의무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병역정보의 안전조치가 더욱 강화됩니다.

- 그동안은 병무행정시스템의 병역정보의 기술적 안전성에 치중하여 점검·조치하였으나,
- 병무행정시스템이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선정됨에 따라 1월부터는 공공시스템으로서 운영 강화를 위하여 「병무행정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등 병역정보가 더욱더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병역의무자 민감정보 등 병역정보 안전조치 강화

- 추진배경 디지털 플랫폼 정부, 빅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가속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 주요내용 병무행정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선정되어 강화된 개인정보 안전조치 계획 수립·이행
 - (시스템 관리체계) 협의회 설치·운영, 시스템별 책임자 지정 등
 - (접근권한 부여·관리) 인사시스템 연계, 최소한 권한부여 등
 - (접속기록 점검) 접속기록 점검 및 이상행위 탐지기능 도입 등
 - (담당인력 및 시스템 확충) 전담인력 확충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단기 국외여행허가 신청 즉시 처리결과 확인

병무청 자원관리과 (☎ 042-481-2965)

단기 국외여행허가 신청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동안은 병역의무자가 단기여행을 위해 ‘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원 신청 후 처리결과 통보 시까지 2일이 걸렸으나,
- 2023년 11월 27일부터는 단기 국외여행허가 신청 즉시 처리결과 확인 및 허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사회복무요원·전문/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 등 보충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단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자 등은 즉시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기 국외여행허가 자동처리 시스템 구축

- 추진배경 국외여행허가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단기여행 허가처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편의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적용대상)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보충역·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허가요건) 1회 6개월 내, 통틀어 2년 범위, 27세 이하,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자동처리 대상에서 제외됨
 -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 중인 사람(소속기관장의 추천서 필요)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자 및 병적별도관리 대상자(담당자 확인 필요)
 -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소집 기피자 등 허가제한자
- 시행일 2023년 11월 27일

육군 사이버작전병(전문특기병) 신설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19)

육군의 사이버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특기병인 사이버작전병이 신설됩니다.

- 그동안은 정보보호 특기병이 사이버 위협 대응 업무를 수행했으나, 2023년 11월부터는 사이버 위협 식별·예방, 해킹 대응기술 개발 등 임무를 수행하는 사이버작전병을 모집합니다.
- 지원자격은 정보보호 등 사이버 관련 분야 전공·자격자, 실무 경력자 또는 국내·외 공모전 수상자 등입니다.
- 이번 전문특기병 신설로 군 전력 강화는 물론, 관련 분야 우수 인재들이 군 복무중에도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육군 사이버작전병 (전문특기병) 신설

- 추진배경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육군의 사이버전 능력 강화
- 주요내용
 - 모집분야/특기명: 육군 전문특기병 / 사이버작전병
 - 지원자격
 - 정보보호(안) 사이버 관련 학과 3학년 수료 이상(전문학사 포함)
 - 정보보호 전문 자격증(정보보안(산업)기사, CISSP 등) 소지자
 -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프로그램(BoB) 수료자
 - 사이버 전문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자
 - 국내 외 해킹대회 및 사이버(정보보호) 공모전 수상자
-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모집병)모집안내서비스)안내 및 지원절차
- 시행일 2023년 11월 1일('24년 2월 입영)

동원훈련 단체수송 및 입영절차 디지털화

병무청 정보기획과 (☎ 042-481-2652)

동원훈련 단체수송 시 예비군의 차량 탑승과 입영 확인 등 모든 과정이 모바일 기반으로 디지털화됩니다.

- 그동안은 동원훈련 단체수송 시에 예비군 차량 탑승과 입영 확인이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대기시간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 2024년도 동원훈련 단체수송부터 모바일 기반 수송·관제시스템 도입으로 예비군이 지참한 신분증, 종이 또는 디지털 통지서 (병무청 앱, e-병무지갑)를 활용하여 신속한 차량 탑승과 입영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 이를 통해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의 편의성 향상과 단체수송 중 위급상황 등 발생 시 신속한 대응·지원으로 국민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원훈련 단체수송 및 입영절차 디지털화

- 추진배경 동원훈련 단체수송 및 입영 과정 디지털화로 병역의무자 편의 제고 및 안전 강화
- 주요내용 신분증, 종이 또는 디지털 통지서(병무청 앱, e-병무지갑) 바코드를 인식하여 신속·간편한 승차 확인 및 입영 처리
- 시행일 2024년도 동원훈련부터

방위사업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 시행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 (☎ 02-2079-6912)

2024년 5월 1일부터 방위사업계약제도가 실질적으로 개선됩니다.

(‘23. 10. 31.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

-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 등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방위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계약제도가 개선 시행됩니다.
-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 및 계약변경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더라도 제한 이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해서는 착수금 및 중도금이 지급 가능합니다.
-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장병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은 낙찰자 결정시 가격보다는 품질·성능 위주로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보도자료>방위산업 발전의 걸림돌 해소, 도전적 연구개발 보장한다!

방위사업계약제도 개선

- 추진배경 방산업계의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위사업계약제도 개선
- 주요내용
 -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R&D)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 또는 계약변경
 -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전에 체결한 다른 계약의 경우 착중도금 지급
 -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부여
 - 장병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군수품은 품질·성능 위주의 낙찰방식 도입
- 시행일 2024년 5월 1일

군함 감리 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품목포괄수출허가 적용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 02-2079-6831)

2024년 3월부터 군함 건조 시, 감리 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수출은 품목포괄수출허가* 제도가 적용됩니다.

*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 (해당 기간 동안 수출자가 대상 품목 및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결정)

■ 해외 선급을 통해 수출 군함의 감리 업무를 추진하게 될 때, 해당 기술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기술에 해당될 경우 품목포괄수출허가제도가 시행됩니다.

■ 조선소(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포괄수출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으로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 첨부 서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제35조.

1. 계약서, 가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2. 최종사용자, 구매자 및 최종수하인의 개요
3. 프로젝트 설명서, 최종사용용도 설명서
4. 최종사용자 서약서
5. 예상되는 수출품목의 개요

수출군함 감리업무 포괄수출허가제도 시행

- 추진배경 해외선급을 통한 감리업무 수행의 경우, 조선소가 함정의 도면을 작성하고 선급으로부터 도면의 승인을 받기 위한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건조일정 준수를 위해 허가업무의 효율성 향상 필요
- 주요내용 조선소가 해외 선급을 통한 감리업무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고, 사업기간 동안 군함의 도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품목포괄수출허가제도 도입
- 시행일 2024년 3월 1일(예정)

주요 연구개발 무기체계 수출예비승인 제도 도입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 02-2079-6831)

‘주요방산물자’로 지정받기 이전의 연구개발 무기체계도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예비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모든 연구개발 무기체계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수출허가 이전에 주요방산물자 지정’이 확실히 되는 경우에 한해 수출예비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2월,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발령 이후 적용됩니다.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보도자료>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정 보도자료

수출군함 감리업무 포괄수출허가제도 시행

- 추진배경 방산 수출 활성화에 따라, 연구개발 최종 단계의 무기체계에 대한 홍보자료 제공 등의 수출상담 요청 급증
- 주요내용
 - (원칙) 주요방산물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예비승인을 받아야 함.
 - (예외) 수출허가 이전에 주요방산물자로 지정될 것이 확실히 되는 개발중인 무기체계를 수출예비승인 대상에 포함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0

행정·안전·질서



1 법무부

자세한 내용은 p.369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25일

Before

지금까지 신상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신상공개 대상범죄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에 한정
신상공개 대상자	피의자에 한정
강제촬영 여부	동의없는 '머그샷' 촬영 및 공개 불가



After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해집니다.

신상공개 대상범죄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내란·외환죄 폭발물사용죄 중상해·특수상해죄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
신상공개 대상자	피의자 및 피고인
강제촬영 여부	공개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 공개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수집·보관 중인 사진·영상물 활용 가능 '머그샷' 강제 촬영, 공개 가능



2 법무부

자세한 내용은 p.370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

시행일: 2024년 1월 12일

Before

기존에는 스톱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미리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제도 부존재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불비



After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하여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국선변호사 제도 등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도입



3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376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시행일: 2024년 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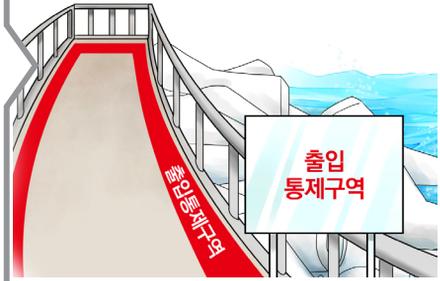
Before

그동안 항만시설 내 위험구역 등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판 등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After

앞으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4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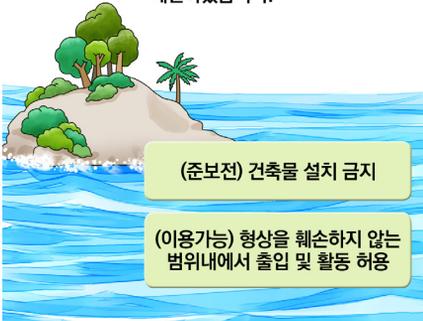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377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제한 완화

시행일: 2024년 2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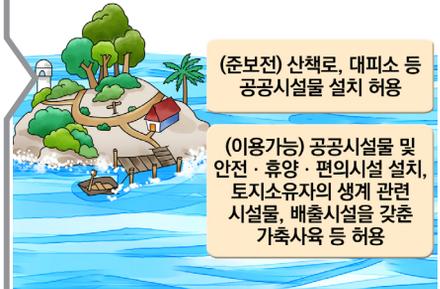
Before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를 제한하였습니다.



After

앞으로 무인도서 관리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제한이 완화됩니다.



5 행정안전부

자세한 내용은 p.381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

시행일: 2024년 상반기

Before

현 세대주의 전입신고 시 전입자 또는 전 세대주 중 한 명의 확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였습니다.



After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가 개선됩니다.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6 행정안전부

자세한 내용은 p.382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시행일: 2024년 1분기

Before

지금까지 교통위반 신고는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관리하였습니다.



행안부 '안전신문고'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After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로 일원화됩니다.



* 타 민원 시스템으로 접수되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저분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 법제처

자세한 내용은 p.385

법령상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 완화

시행일: 2023년 11월 21일

Before

종전에는 과도한 학력기준으로 인해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After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력기준이 완화됩니다.



8 국민권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410

공익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상향

시행일: 2023년 12월 19일

Before

그동안 공익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After

국민 누구나 부정청구를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도 상향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기간통신사업 등록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 044-202-6661)

2024년 1월 19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비영리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가능해 집니다.(*24. 1. 19.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 그간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 운영이 제한되었으나, 공공와이파이와 사물인터넷(지자체 사무 목적)의 경우 적합성 평가를 거쳐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지자체의 공공와이파이 확대와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현이 보다 용이하게 되어 주민 편익과 소외계층 등에 대한 통신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기간통신사업 허용

- 추진배경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통신복지를 위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등 공익목적의 비영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합성 평가를 거쳐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시행일 2024년 1월 19일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

법무부 형사법제과 (☎ 02-2110-3562)

중대범죄자에 대해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경찰이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

■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신상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해집니다.

■ 피고인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신상공개가 가능해집니다.

- 지금까지 신상공개 대상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해 신상공개가 가능해집니다.

*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사람

**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

■ 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강제촬영과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 모자·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

- 추진배경 이상동기범죄나 보복범죄 등으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할 필요
- 주요내용 신상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 대상을 피고인 까지 확대하며, 일명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 신설 등
- 시행일 2024년 1월 25일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

법무부 형사법제과 (☎ 02-2110-3562)

스토킹은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가해자의 접근을 조기에 차단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기존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미리 파악할 수 없었지만, 2024년부터는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시킬 수 있습니다.
- 한편,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

- **추진배경** 스토킹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보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할 필요
- **주요내용**
 - 스토킹행위자 제재 강화: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 피해자 보호 강화: 국선변호사 제도 등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도입
- **시행일** 2024년 1월 12일

스토킹 행위자 접근 차단을 위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법무부 전자감독과 (☎ 02-2110-3808)

2024년 1월 12일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스톱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 스톱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기존에는 전자감독대상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경보가 발생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해자 접근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가해자에게 전화하여 의도적 접근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장 출동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
- 그 밖에 피해자 보호장치를 휴대가 편리한 형태로 보급되고, 향후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스톱킹 행위자 접근 효과적 차단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스토킹 행위자 접근
효과적 차단

- 추진배경 ‘부산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의 보복범죄 예방 관련 정책 제언(가해자 관련 알림 서비스 필요)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필요
- 주요내용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 시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
 - *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
- 시행일 2024년 1월 12일

안정적인 배당을 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정비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167)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이 변경됩니다.

-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달라지는 부채평가 방식*을 반영할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과도하게 축소될 여지가 있으므로,
 - * 원가평가 → 시가평가

-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보험상품과 연계된 거래*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 * ①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채무증권·파생상품의 거래, ②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의 거래, ③ 변액보험계약 등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안정적인 배당을 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 이익 산정 기준' 정비

- 추진배경** '23.1.1.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이 과도하게 축소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

- 주요내용**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거래와 연계하여 ① 보험계약 관련 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채무증권·파생상품의 거래, ②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의 거래 또는 ③ 변액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한 경우 각각의 거래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2023년 12월 19일 시행

CBT 방식의 변호사시험(논술형) 역대 최초 시행

법무부 법조인력과 (☎ 02-2110-3389)

2024년 1월 제13회 변호사시험의 논술형(주관식)을 역대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시행합니다.

■ 법무부는 그동안 CBT 시행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법학전문대학원과 협력하여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의 전국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3차례(‘23. 6. ~ 10.) 모두 장애 없이 실시하였습니다.

※ ‘23. 8.부터 ‘법무부 홈페이지’에 CBT 체험 서비스(일명 ‘튜토리얼’)를 제공하여 응시자는 언제든지 답안 작성 전 과정의 연습이 가능함

■ 제13회 변호사시험 논술형에서 최초 시행되는 CBT 응시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새롭게 마련, 공고함으로써 응시자가 사전에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① 시험 시작 및 종료 방식, ② 노트북 로그인 방법 및 시기, ③ 휴식시간 임의조작 금지, ④ 장애 발생시 대응 요령 등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응시자준수사항 등 공고 보도자료

CBT 방식의 변호사 시험(논술형) 역대 최초 시행

- 추진배경 교육 현장 및 실무에서의 컴퓨터 활용도 증가, 정보통신(IT) 기술 발달 등에 따른 지속적인 변호사시험 개선 요구를 수용
- 기대효과 법조인 양성 제도 선진화, 응시자·시험위원 등의 편의 증진,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등
- 주요내용 변호사시험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
- 시행일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1월 9일 ~ 1월 13일)

난민인정심사 화상면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법무부 난민정책과 (☎ 02-2110-4160)

2024년 상반기부터 난민인정심사에 화상면접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 화상면접 시스템 구성(예시)



-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소수언어·수어 통역인 등을 전국 심사기관에서 활용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 또한, 비대면 심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난민신청자, 면접관 및 통역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속한 난민인정심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 스위스 등 9개국에서 운영 중인 화상면접 시스템의 도입은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선진적 난민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난민인정심사 화상면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추진배경: 근거리 통역인 부재 등으로 면접 절차 지연 중인 난민신청자 구제
- 주요내용: 난민면접관, 난민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난민인정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화상면접 시스템을 구축
※ 심사기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인천공항
- 시행일: 2024년 상반기

마약사범재활전담 교정시설 확대 운영 및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 02-2110-3508)

마약사범 재범방지를 위해 교정시설의 치료재활 기능과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마약사범재활전담 교정시설*로 지정되어 시범 운영 중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를 정식 운영하고 2개 교정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4개 권역별(서울·대전·대구·광주지방교정청)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 통합과정 실시: 인지행동치료, 동기강화상담, 12단계 촉진치료, 치료공동체 운영 등으로 구성

- 마약사범이 출소하기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를 안내하고 재활대상으로 등록*하게 하여, 출소 직후 사회 내 재활과 연계합니다.

* 개인심리·회복상담, 집단프로그램, 치료연계, 자조모임 참여 등 지원

※ 마약사범이 출소 전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서비스 신청서 제출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법무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업무협약 체결 보도자료

마약사범재활전담
교정시설 확대 운영 및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 추진배경 '마약청정국 지위회복'을 위한 교정시설 치료·재활기능 강화
- 주요내용
 - 마약사범재활전담 교정시설 시범 운영 중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정식 운영, 2개 교정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4개 권역별(서울·대전·대구·광주지방교정청) 전담 교정시설 운영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력하여 마약사범이 출소 후 지역 내 마약류 중독 재활센터에서 재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연계
- 시행일 2024년 상반기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 044-200-5955)

방파제 등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구역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매뉴얼」 개정

■ **그간**, 항만시설 내 위험구역 등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입구부에 공고내용을 알리는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출입통제구역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표지판과 함께 붉은선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 (출입통제구역 표지판)출입통제구역 공고내용(지정사유, 위치, 기간 등)을 입구부 등에 표시한 시설, (출입통제구역 표시선)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빨강색으로 표시한 선

■ **또한**, 네발방파석(테트라포드)에 부착하여 추락 위험성을 알리는 ‘위험 경고판’과 항만시설 난간이나 경계부에서 빛을 발산하는 ‘표지병’(로드아이), 안전한 항만시설 이용을 안내하는 ‘로고젝터’를 설치하여 야간에도 출입통제구역을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개선 보도자료(예정)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 **추진배경**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와 중대재해 예방
- **주요내용**
 - 의무사항: 출입통제구역 표지판, 출입통제구역 표시선(지정일 30일전까지 설치)
 - 선택사항: 위험경고판, 표지병(로드아이), 로고젝터, 진입방지시설, CCTV 등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제한 완화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044-200-5355)

2024년 2월 17일부터 준보전 무인도서에 산책로, 대피소 등 공공시설물 설치가 허용되고, 이용가능 무인도서에 공공시설물 외 토지 소유자의 주택 등 생계를 위한 시설물 설치와 배출시설을 갖춘 가축 사육이 허용됩니다.

▣ 다만,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는 「무인도서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보도자료>「무인도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23.7.27)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제한 완화

- 추진배경 해양레저 및 사유지 활용이 증가하는 무인도서의 이용수요를 반영하고, 보전위주의 경직된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 최소한의 공공목적 사업과 토지 소유자의 생계를 위한 창고설치도 불가
- 주요내용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시설물 설치 허가제도 및 위반 관련 벌칙 규정 정비
 - * (보전) 절대보전/준보전, (이용)이용가능/개발가능 무인도서로 지정관리 중
 - (준보전) 산책로, 대피소 등 공공시설물 설치 허용
 - (이용가능) 공공시설물 설치, 토지소유자의 생계 관련 시설물 설치, 배출시설을 갖춘 가축사육 등 허용
- 시행일 2024년 2월 17일

국제선박보안증서 등 선박증서 온라인 발급 개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 044-200-5852)

그동안 종이증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국제선박보안증서 등 14종*에 대한 온라인 전자증서 발급 서비스를 2024년 2월 1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5월 1일 본격 시행합니다.

* 국제선박보안증서, 선박안전관리증서, 안전관리적합증서, 선박국적증서,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재화중량톤수증서, 임시선박국적증서,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 ▣ 발급받은 전자증서는 국내외 규정 등을 반영한 형태로 발급되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며, QR Code 또는 고유식별번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선박 전자증서 발급시스템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든 증서를 쉽고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어, 비용·시간 경감 및 분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선박 전자증서 발급 대국민 서비스 시작('24.1.29. 잠정)

선박증서 온라인 발급 개시

- **추진배경** 종이증서로 인한 선박에서의 행정부담 경감
- **주요내용**
 - 선박 전자증서(총 14종) 발급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발급
 - 실시간 전자증서 유효성 확인
 - * 「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20.11.4. 제정, '20.12.18. 시행)
- **시행일** 2024년 2월 1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044-200-5818)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24. 1. 5. 「해사안전법」 시행)

*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 운반선 등

** 안전관리책임자란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선박소유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안전관리체제의 시행·개선, 선원 교육, 선박 안전운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 그간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항해사·기관사 면허를 기본자격으로 요구하였으나, 2024년 1월 5일부터는 국가전문자격증인 '선박안전관리사(1~3급)'를 취득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해사안전법」이 시행됩니다.

■ 항해사·기관사로 근무한 경력이 없더라도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는 3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개최('23.11.23.)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 추진배경 선박의 대형화·첨단화에 따른 해사분야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신설(「해사안전법」 제5장제3절 신설)
- 주요내용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해사안전법」 개정·시행
- 시행일 2024년 1월 5일

해상 안전수칙을 규정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044-200-5821)

2024년 1월 26일부터 기존 「해사안전법」이 분법되어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새롭게 시행됩니다.

- 제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해사안전기본법」으로 규정하여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 항법 등 국민이 준수해야 할 안전규제는 「해상교통안전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23.6.30.)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해사안전
법제 개편 시행

- 추진배경 「해사안전법」 '86년 제정 후 28회의 개정을 거쳐 법의 체계와 내용이 복잡해져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어려움 존재
- 주요내용
 - (원칙) 해사안전법 분법을 통해 해사안전에 대한 기본원칙 마련 및 누구나 쉽게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 (해사안전기본법) 해사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국민의 책무, 국가해사안전 기본계획,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해사안전 관련 전반적인 시책 반영
 - (해상교통안전법) 통항금지해역 등 수역 안전관리, 선박 안전관리체제 등 선박·사업장 안전관리 및 항법 등 해사안전법 안전규제 관련 조문 반영
- 시행일 2024년 1월 26일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주민과 (☎ 044-205-3147)

앞으로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現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제시는 생략하고, 행정정보공용이용을 통한 가족관계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주민등록주소가 바뀔경우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보자료)나 몰래 전입신고 안돼!, 전입신고 절차 개선으로 전세 사기 막는다(‘23.11.14.)

허위 전입신고 예방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

- 추진배경 전(前) 세대주와 현(現) 세대주가 다른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본인 확인 규정을 약용한 허위 전입신고 사례 다수 발생에 따라,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입신고 절차와 서식 등 개선 추진
- 주요내용
 -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 시행일 2024년 상반기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044-205-4226)

2024년 1분기에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됩니다.

- 과속·난폭운전 또는 이륜차 인도 주행 등과 같은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안전신문고의 '자동차 교통위반'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등 타 민원 시스템으로 접수되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처분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안전신문고(앱,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교통법규 위반 등 모든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통합('23.4.12.)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 **추진배경**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 발표)」의 일환으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 **주요내용**
 -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 안전신문고의 '자동차 교통위반' 메뉴를 통해 위반 사항 신고 가능
 - 안전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신고 이송 단계 단축으로 신고 접수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신속해짐
- **시행일** 2024년 1분기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QR코드 부여

행정안전부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 044-205-6472)

앞으로는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정식명칭 대신 간단한 명칭이나 기호만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식에 간편이름*이 부여됩니다.

* 간편이름에는 정식 명칭의 핵심 단어로 구성된 약칭과, 로마자와 숫자로 조합된 약호가 있음

▣ 정식 명칭이 길어 제각각 불리거나, 다른 행정서식과 명칭이 혼동될 수 있는 일부 행정서식에 간편이름 (약칭 또는 약호)을 부여함으로써, 민원·행정 처리 정확성과 검색 편의가 높아집니다.

※ 예시)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 → '어디서나 민원신청서'
'정보공개청구서' → 'A249'

▣ 또한, 서식에 QR코드를 표기하여, 이용자가 민원 서비스 관련 정보(구비서류, 수수료 등)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변경 서식은 2024년 1월,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간편이름 및 QR코드 부여

- **추진배경** 서식 이름(한글·영문)이 길거나 다른 서류와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이용자 불편과 행정처리의 비효율 발생
- **주요내용**
 - 간편이름: 약칭과 약호로 구성
 - 약칭: 서식의 정식 명칭을 핵심 단어로 축약한 것
 - 약호: 로마자 1개+숫자 3개(+로마자 1개 추가 가능)
 - ※ 신청서는 A(application), 증명서는 C(certificate)로 시작
 - QR코드: QR코드를 기재하여, 민원에 관한 사항(구비서류, 수수료 등) 안내
 - 관련근거: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행안부 예규, '23.11.6.)
- **시행일** 2024년 1월 이후, 순차적으로 행정서식 소관 법령 개정 후 시행 예정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 여부 결정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 044-205-3390)

주민조례청구의 절차 진행이 더욱 신속해질 예정입니다.

-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내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처리 기한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 등에 관한 홍보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 ▣ 해당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정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여 2024년 2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여부 결정된다.(’23.8.15.)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여부 결정

- **추진배경**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서명확인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홍보 의무 부여
- **주요내용**
 - (홍보의무) 국가 및 지자체의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 등 제도홍보 의무 부여
 - (처리기한)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절차 종료 후 3개월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 수리·각하 결정
- **시행일** 2024년 2월 17일

법령상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 완화

법제처 법령정비과 (☎ 044-200-6577)

학력 제한으로 인한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상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이 완화됩니다.

※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31개 법령 일괄정비 완료('23.11.21, 공포·시행)

- ▣ '4년제 대학 졸업자' 등으로 제한되었던 학력 기준이 완화되어, 실무경력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전문대학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등도 취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상 사료안전관리인 등 총 31개 분야 적용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보도자료)청년 채용 시 학력 제한 완화하는 법령 일괄개정안, 11월 21일부터 시행

법령상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 완화

- 추진배경 학력 제한으로 인한 고용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법령정비 추진
- 주요내용 법령상 인력 요건 중 학력 기준을 '4년제 대학 졸업' 등으로 제한하던 것을, 실무경력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경우 '전문대학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등까지 완화
- 시행일 2023년 11월 21일

법제처

지방사무에 관한 법령상 기준 삭제 등 지방자율성 제고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 (☎ 044-200-6846)

지자체가 소관 사무를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합니다.

- ▣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고,
-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사무에 관한 중앙부처의 사전 승인, 협의 또는 보고를 사후 통보 등으로 전환합니다.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보도자료)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대폭 강화된다

지방사무에 관한 법령상 기준 삭제 등 지방자율성 제고

- **추진배경**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 추진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고, 그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사무에 관한 중앙부처의 사전 승인, 협의 또는 보고를 사후 통보 등으로 전환
- **시행일** 2023년 11월 17일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 044-201-8215)

2024년부터 실시되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등의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하향됩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24.1.1. 시행〕

-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은 20세 이상이나,
-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면서, 각종 법령상 연령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도 18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공무담임권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단, 교정·보호직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20세 이상으로 유지

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보도자료>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보도자료('22.11.8.,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 추진배경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피)선거권, 8급 이하 채용시험 응시연령 등 '18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법령상 연령기준의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
- 주요내용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 단, 교정·보호직렬의 경우 20세 이상 유지
 - *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편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 044-201-8215)

2024년부터 실시되는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이 새롭게 정립된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됩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 ’24.1.1. 시행)

-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등을 검정하기 위한 기준인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 2024년부터는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의 ‘공무원 인재상’에 맞추어 개편되고, 이에 따라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정안〉

현행		개정안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1.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2.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3.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

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보도자료)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보도자료(’23.7.25., ‘공무원 면접시험,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편

- **추진배경**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인식·태도·가치 정립의 기준이 될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역량 있는 인재를 채용할 필요
- **주요내용**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편
 -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을 기본으로,
 -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 추가 가능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지방공사·공단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이용 가능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 (☎ 044-201-8053)

지방공사·공단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기관에 추가돼 2024년 1월 1일부터 국가 인재DB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인사혁신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만 제공하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재추천 서비스를 범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공단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활용기관 확대: '00년 국가기관 → '05년 지자체 → '20년 (중앙)공공기관 → '24년 지방공기업
-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기관장을 포함한 지방공기업 임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및 채용시험위원 등을 추천받거나 직접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보도자료>해외인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담긴다' 보도자료(2023.6.13.)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개요

- **개요** 정부 주요인사를 적시에 지원하고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지식·기술·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인물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 인물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운영('99년 도입)
※ (근거) 국가공무원법(제19조의3),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 **주요내용**
 - (수록) 공무원, 교수, 기업임원, 전문직 등 총 365,848명 수록('23.10.기준)
 - (활용) 주요직위 발굴 시 인사처에 후보자 추천요청 또는 직접 검색 이용
 - (인재추천서비스) 중앙행정기관 등 수요 기관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인재풀에서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적합 인재 추천
 - (직접검색서비스) 수요기관이 직접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접속 및 검색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전국 표준화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 시행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044-205-7541)

전국 시도별, 업무별 분산 운영 중인 예방·민원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의 표준화된 '소방예방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 소방 예방업무의 창구 일원화로 효율적 행정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방문 위주 민원 체계를 원스톱 온라인 접수체계로 전환하여 국민 편의성과 만족도를 제고 할 것입니다.
- 이 시스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참고 관련 홈페이지(대국민용) 소방민원포털(<http://safeland.go.kr>),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서비스 시행

- **추진배경** 시도별, 업무별 분산 운영중인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표준화된 중앙시스템으로 통합하여 국민 편의성 증대
- **주요내용**
 - 전국 소방 예방업무를 클라우드 기반 표준 중앙시스템으로 통합
 - 전국 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으로 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 방문 위주 민원 체계를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창구로 전환
 - 방문민원 21종 전산화 등 내·외부 연계된 온라인 접수체계 구축
 - * 일괄처리(민원접수 → 검토 및 전자결재 → 민원처리 공개 → 결과 출력)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044-205-7531)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호스의 꼬임 현상이 우려되고 혼자서 작동이 어려운 일반 옥내소화전은, 혼자서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호스릴소화전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비화재보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염확인 및 감도조정 등 비화재보에 효과적인 아날로그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또한 지하주차장 각 동이 연결된 구조는 대형화재 우려로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를 10개에서 30개로 변경됩니다.
- 제정 고시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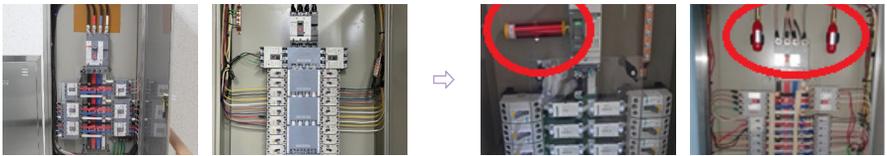
- 추진배경 대형화재 등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 주요내용 호스릴(hose reel)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강화, 자동화재탐지설비 기능·성능 개선, 비상방송설비, 유도등 등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044-205-7532)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분전반 및 배전반에는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 가연물이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수원의 저수량이 각각 2배에서 9배까지 늘어납니다.

구분	현행	개선
옥내소화전설비	5.2 m³/130L/min×2개×20분	10.4 m³ (2배)/130L/min×2개×40분
스프링클러설비	32 m³/80L/min×20개×20분	288 m³ (9배)/160L/min×30개×60분
소화수조	1배/(연면적 ÷ 12,500)×20m³	2.5배/(연면적 ÷ 5,000)×20m³

- 대공간으로 피난거리가 먼 특성을 반영하여 피난구 상단에 부착되는 유도등의 크기가 소형에서 대형으로 변경됩니다.

구분	현행	개선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소화수조	가로·세로 약 19cm (표시면적 0.036㎡ 이상)	가로·세로 약 32cm (표시면적 0.1㎡ 이상) 면적기준 약 3배

- 제정 고시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창고시설에 적용됩니다.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 강화

- 추진배경: 대형화재 등 방지를 위해 창고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 주요내용: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옥내소화전설비 저수량 확대,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강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수원 확대, 유도등 개선 등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으로 민원서비스 편의 향상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 02-6399-7177)

재외공관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도입되어서 민원서류발급을 위해 재외공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기존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등을 발급받을 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는 2023년 12월부터 LA·상해·싱가포르·말레이시아 영사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합니다.

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 **추진배경**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이 각종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사업 추진
- **주요내용**
 - 재외국민의 이용빈도가 높은 민원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등) 발급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가능하게 될 경우,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 및 재외국민 편의 증진, 재외공관 업무 경감 및 효율화 기대
 - 2023년 12월 LA 총영사관(2대), 상해 총영사관(1대), 싱가포르 대사관(1대), 말레이시아 대사관(1대) 대상 무인민원발급기 시범운영 실시
- **시행일** 2023년 12월 1일

재외동포인증센터 구축·운영으로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도입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 02-6399-7172)

이제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해외에서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 재외동포가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내 휴대전화 가입, 원거리 재외공관 방문 또는 국내 신용카드 보유가 필요했었으나, 이제는 해외에서도 이런 번거로움 없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1차적으로 주민번호가 있는 재외국민부터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전자여권과 민간 전자인증 사업자 앱을 활용하여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향후 서비스 대상을 전 재외동포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외동포 인증센터 도입

- **추진배경** 재외동포가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원확인 수단이 필요하나, 원거리 재외공관 방문, 국내 휴대전화 가입 또는 국내 신용카드 보유로 내국인 대비 매우 불편
- **주요내용**
 - 총 3년간('24~'26년)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개발 등을 추진하여 정부 서비스뿐만 아니라 택시·쇼핑 등 국내 민간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향상
 - 2024년 주민번호 있는 재외국민을 시작으로 서비스 대상 범위 확대 추진
- **시행일** 2024년 10월(예정)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확대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 (☎ 042-724-7200)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존 지원 사업들에 더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원하는 시기에 제공하는 신규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 기존의 해외조달시장 지원 사업은 한정된 사업 내용과 제한된 모집기간 등으로 기업의 다양한 요구 충족과 적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습니다.
- 신규 사업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시, 기업의 원하는 지원내용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방식의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의 지원 업체 모집은 2024년 1월 시작합니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확대

- 추진배경
 - 기존 지원 사업은 한정된 내용 및 모집기간 등의 제한으로 기업의 다양한 요구 충족과 적시 서비스 제공에 한계 발생
 - 업체가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지원 사업 필요
- 주요내용
 - 사업 선정 지원업체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필요 서비스 제공(지원한도액 내)
- 시행일
 - 2024년 1월

수계약 적합성 평가, 공정성·전문성 강화

조달청 공정평가관리팀 (☎ 042-724-6099, 7075)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수계약의 경우* 수요기관이 직접 제안서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건이 단일 응찰로 유찰된 경우

- 그간 평가 대상 기업들은 개별 기관의 한정적인 평가위원 풀, 평가 진행절차 미숙 등으로 인해 평가 참여 시 불편을 겪었으며, 일부 평가의 공정성·전문성 등에 대한 의문도 있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는 다양한 위원풀을 갖추고, 수년간 평가업무 경험으로 평가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조달청이 평가업무를 대행할 계획입니다.
- 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 업무대행 서비스는 2023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참고 조달청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공공조달 평가' 키워드는 '공정성·투명성·전문성'

공공조달 평가
키워드는 '공정성·
투명성·전문성'

- **추진배경** 수요기관 자체적으로 수계약 적합성 평가 시 평가 전문성 및 경험 부족으로 평가 대상 기업 불편 초래
- **주요내용** 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 대행 서비스 제공
→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수요기관·조달기업 만족도 향상
- **시행일** 2024년 1월 (본격시행)

부정당제재 사유 발생에 따른 판매중지 사유 삭제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 042-724-7283)

우수조달물품 계약 관련 부정당제재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처분의 확정 이전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중지하지 않습니다.

▣ 다만, '긴급하게 판매를 중지하지 않을 때 국민의 생명·안전이 위협되는 경우'에는 사유와 관계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2월 1일 이후 신규계약 및 수정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부정당제재 사유 발생에 따른 판매중지 사유 삭제

- 추진배경 언론보도 또는 제재사유 발생만으로 판매중지하는 것은 업체에 과도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업체 부담 완화 필요
- 주요내용 우수조달물품 계약 관련 부정당제재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처분의 확정 이전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중지하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안전이 위협되는 경우에는 판매 중지
- 시행일 2023년 12월 1일

비촉사업 관련 불공정 전매행위 관리 강화

조달청 전략비촉물자과 (☎ 042-724-7146)

2024년부터 조달청이 방출하는 비촉물자와 관련한 불공정행위(전매) 관리가 강화됩니다.

- 기존에는 「조달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촉물자의 전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용업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2023년 3월에 개정된 「비촉물자 이용약관」에 따라 조달청 비촉물자 이용실적이 있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전매행위 발생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정부 비촉사업의 신뢰성 및 효과성 훼손을 예방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전매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는 2024년 2분기에 시행 예정입니다.

비촉사업 관련 불공정 전매행위 관리 강화

- **추진배경** 「조달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촉물자 전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불공정행위 적발에 한계
 - 실효성 있는 조사수단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어려운 상황
- **주요내용**
 - 「비촉물자 이용약관」개정('23.3월)을 통해 조달청 비촉물자 이용실적이 있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진행
 - 조사결과 전매행위가 적발될 경우 등록말소, 전매차익 환수 등 조치
- **시행일** 2024년 2분기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게 직접생산확인 제도 개선

조달청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 (☎ 054-716-8034)

조달청 직접생산확인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24. 1. 1. 전면개정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시행)

- ▣ 제조등록시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 등* 제출 폐지로 제조등록 제출서류가 간소화되어 업체 부담이 완화됩니다.

* 품명별 세부기준(안전관리물자) 및 자체기준표(일반물자)
- ▣ 직접생산위반 판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변화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직접생산확인 제도 개선

- 추진배경 제조등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하고, 직접생산위반 판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
- 주요내용

 - 제조물품 등록 시 자체기준표 등 사전제출을 폐지하고, 직접생산 점검 시 업체가 사후에 제시하는 제조공정표로 직접생산여부 확인
 - 직접생산 위반 대상을 구체화하여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통계데이터 이용 서비스 확대 및 비용 완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 042-481-2330)

데이터 개방과 자료 연계·결합 활성화에 발맞춰 확대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계자료 제공 서비스 수수료를 개편합니다.

- ▣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통계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부과 방식을 개편하여 서비스 이용 제약 요인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 또한, 이용자가 더 쉽게 이용하도록 해당 비용을 완화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수수료를 단순하게 개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참고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통계청고시, 2024년 1월초 개정 시행 예정)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개편

- **주요내용**
 - (1) 원격접근서비스 및 센터서비스
 - 원격접근서비스의 종량제 폐지 및 정액제 완화
 - 원격접근서비스와 센터서비스 수수료 체계 일원화
 - 센터 설치기관 무료 이용서비스 실시
 - (2) 명부제공 및 연계·분석서비스
 - 서비스 수수료 기준 단순화
 - (3) 데이터 보관서비스(신설)
- **시행일** 2024년 1월 초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 신임교육 과목·시간 변경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 02-3150-0950)

2024년 1월 1일부터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의 신임교육 과목 및 시간이 변경됩니다.
(‘23. 7. 17. 제정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 ▣ 변화하는 경비환경을 고려하여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의 신임교육 과목 및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신임교육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경찰청 공문(‘23. 11. 28.) ‘경비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경비원(일반, 특수) 및 경비지도사 교육 안내’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 신임교육 과목·시간 변경

- **추진배경** 과학기술의 발달 등 변화하는 경비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일반·특수경비원, 경비지도사 신임교육 과목 및 시간 변경
- **주요내용**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을 총 24시간으로 유지하되, 시설경비실무를 2 → 4시간으로 조정하고, 직업윤리 및 서비스 등 일부 과목 시간을 단축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을 88 → 80시간으로 단축하고, 과목에 「인권 및 경비관련 범죄 및 현행법 체포 규정», 「야간경비요령」 등 추가
 - (경비지도사) 신임교육 시간을 44 → 40시간으로 단축하고, 과목에 「CCTV 등 보안장비 사용법»,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지도·감독 요령」 등 추가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02-2100-3047)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채용 면접, 복지수급자 선정 등과 같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2024년 3월 15일부터 완전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는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있으면 자동화 결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자동화된 결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인 국민의 대응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추진배경**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인사채용, 복지수급자 선정 등)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 제기
- **주요내용** 완전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거부·설명 등 요구권 부여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있으면 자동화 결정의 적용 배제·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조치 의무 규정
- **시행일** 2024년 3월 15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률보호정책과 (☎ 02-2100-3087)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3.14.)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가 도입·시행됩니다.

-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향상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존 관리수준 진단 제도에서 평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 수준 향상을 위해 평가대상을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및 시·도교육청까지 확대(800개 → 1,600개)하였고,
-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우수직원에게 포상 등의 우대조치를 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개선권고 및 점검등을 통해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 추진배경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취약점을 도출·개선 유도를 통한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역량 향상
- 주요내용
 - (대상) 1,600여개 공공기관 대상
 - (내용)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의 수행 및 보호법에 따른 의무 준수 여부
 - (절차)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 자료제출 → 수준평가·검증 → 평가결과 연차보고서 및 홈페이지 공개
- 시행일 2024년 3월 15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본격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보호정책과 (☎ 02-2100-3050)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해 법령에 따른 사항을 적정하게 작성하고 있는지, 정보주체인 국민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고, 접근이 용이한지를 평가하여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부터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처리방침 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도입

- 추진배경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 주요내용
 - (평가대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매출액 규모,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 유형,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방식, 법 위반행위 발생 여부, 아동·청소년 등 정보주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선정
 - (평가기준)
 -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 (평가절차) 평가계획 수립 → 평가대상 통보 → 처리방침 평가 수행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확정
- 시행일 2023년 9월 15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의무대상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 (☎ 02-2100-3142)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의 의무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무적용 기준이 현행 매출액 5천만 원 및 이용자 수 1천 명 이상에서 매출액 10억 원 및 정보주체 수 1만 명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또한, 공공기관(일부 예외), 공익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책임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한 수탁사에게 개인정보 저장·관리를 위탁한 소상공인의 경우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 ※ 의무적용 기준 및 면제 대상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중 (2023.11.23. ~ 2024.1.2.)
- 개정내용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차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의무대상 개선

- **추진배경** 의무대상이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적용기준 조정
- **주요내용**
 - (원칙)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및 저장·관리 중인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1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
 - (예외) ① 공공기관(단, CPO 자격요건 적용대상인 기관은 제외), ② 공익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③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수탁사에게 개인정보 저장·관리 업무를 위탁한 소상공인은 의무 면제
- **시행일** 2024년 3월 15일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한 입찰 자료 요청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 044-200-4329)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늘어났습니다.

* (개정 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개정 후) 기존 기관+준정부기관(55개), 기타 공공기관(260개), 지방공기업(410개) (※ 총 725개 추가, '23년 기준)

- 현행법은 국가·지자체·공기업 외에 지방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은 자료 제출 및 협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이들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행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방지 조치 대상에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함으로써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치가 보다 용이 하였습니다.
- 또한,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은 조달청의 조달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 시스템으로도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한 입찰 자료 요청 대상 확대

- **추진배경**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지방공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담합행위 적발에 어려움
- **주요내용**
 -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방지 조치 대상에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을 포함
 -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이 조달청 조달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매각시스템으로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2023년 12월 21일

대규모유통업자 경영간섭행위 금지 규정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 044-200-4961)

2024년 2월 9일부터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금지 규정이 신설됩니다.

■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주)가 자사몰의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경영활동 간섭)를 적용하여 과징금 13.6억 원을 부과(21.9.)

■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이러한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적용해 왔습니다.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대규모유통업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규모유통업자 경영간섭행위 금지 규정 신설

- **추진배경**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경영 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
-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금지 규정 신설
- **시행일** 2024년 2월 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 044-200-4303)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 내 6개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상임위원을 1명씩 두고, 상임위원이 각 협의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 * 공정거래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 하도급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 가맹사업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 대리점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 약관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 최초 협의회 설립 이래로 조정원 협의회의 분쟁조정 업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6개 협의회의 위원은 조정원장 외에는 모두 교수·변호사 등 생업을 병행하고 있는 비상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이에, 이번 6개 법률 개정을 통해 조정원 내 6개 협의회에 상임위원을 각 1명씩 두고 상임위원이 각 협의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조정원 협의회가 보다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안건을 심의·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대규모유통업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도입

- 추진배경 최초 협의회 설립 이래로 조정원 협의회의 분쟁조정 업무가 갈수록 증가
- 주요내용 조정원 내 6개 협의회에 상임위원을 각 1명씩 두고 상임위원이 각 협의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함
- 시행일 2024년 2월 9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적 근거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 044-200-4306)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서, 2001년부터 민간 주도로 도입되었고, 공정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CP 등급평가 제도 등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CP 제도는 그간 법적 근거 없이 하위 예규에 의하여만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CP 도입·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등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CP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CP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상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적 근거 마련

- 추진배경 CP 제도는 그간 법적 근거 없이 하위 예규에 의하여만 운영되어 CP 도입·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에 한계
- 주요내용
 - CP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
 - CP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상황 평가
 -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 시행일 2024년 6월 21일

공익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상향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044-200-7757)

2024년부터 공익신고를 하거나 보조금 부정청구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최고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공익신고·공공재정 부정신고 포상금: (종전) 2억 원 → (개정) 5억 원

■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471개 법률에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가 없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 신고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오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 다만,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의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국민권익위, 공익신고,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최대 5억 원 지급(예정)

공익신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상향

- 추진배경 공익신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활성화
- 주요내용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 시행일 2023년 12월 19일

원자력발전소 상시검사 체계로 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 02-397-7257)

원자력발전소의 충분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정기검사 시기를 개선합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24.3 시행예정)

- 기존에 사업자의 정기정비 기간에 한정하여 수행하던 정기검사를 원자로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시기를 변경합니다.
- 아울러, 발전소 별 이상징후와 취약·특이점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심층검사)를 도입하여, 철저한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 행		➔	개 선	
구 분	시 기		구 분	시 기
정기 검사	사업자의 정기정비 기간	정기 검사	운전검사	운전중
			정비검사	정기정비 기간
			심층검사	이상징후 및 취약 특이점 발견시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 시기 개선

- **추진배경**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를 상시검사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법령 개정('24.3 시행예정) 및 제도개선 추진
-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시기 및 기간을 변경
 - 1.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를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하고
 - 2. 그 기간을 정기검사 종료 익일부터 다음 정기검사 종료일까지로 함
- **시행일** 2024년 3월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신구대비표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 (증여자) 직계존속 • (공제한도) 1억 원 ※ 단,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 (증여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 (증여재산) 증여추정·외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p>	<p>상속세 및 증여세법 (*24.1.1.)</p> <hr/> <p>기획재정부 자산세제과 (044-215-4312)</p>
<p>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견/중소 : 3/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확대 • 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 : 3/7/10 → 5/10/15% - (추가공제) : 10/10/15%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p>	<p>조세특례제한법 (*24.1.1.)</p> <hr/> <p>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3)</p>
<p>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 세액감면 신설</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 (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 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 원) 	<p>조세특례제한법 (*24.1.1.)</p> <hr/> <p>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3)</p>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대상)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 (30만\$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② 아래 요건(㉓+㉔+㉕+㉖)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③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④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⑤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자배 관계 ⑥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율) 10년간 50% • (적용기한) '23.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8.12.31.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p>	<p style="text-align: center;">조세특례제한법 ('24.1.1.)</p> <p style="text-align: center;">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p>
<p>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근로자 비과세 금액 • 일반 국외 근로자: 월 100만 원 •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 건설근로자: 월 30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근로자 비과세 금액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500만 원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3년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규칙 개정안</p>	<p style="text-align: center;">소득세법 시행령 ('24.1.1.)</p> <p style="text-align: center;">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p>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 단절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34세로, 병역(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이행시 그 기간(6년 한도)을 연령에서 차감 • (감면율) 70%(청년은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 •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 (적용기한) '23.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p>(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업종) 컴퓨터학원 등 추가 • '26.12.31.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p>	<p>조세특례제한법 ('24.1.1.)</p> <hr/> <p>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p>
<p>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황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명진흥법」 §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 연 70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p>	<p>소득세법 ('24.1.1.)</p> <hr/> <p>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p>

기획재정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공제한도) 300~1,800만 원 <table border="1" data-bbox="308 492 520 627"> <tr> <td colspan="2">상환기간 15년 이상</td> <td colspan="2">상환기간 10년 이상</td> </tr> <tr> <td>고정금리 + 비거차식</td> <td>고정금리 또는 비거차식</td> <td>기타</td> <td>고정금리 또는 비거차식</td> </tr> <tr> <td>1,800만 원</td> <td>1,500만 원</td> <td>500만 원</td> <td>300만 원</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차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차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차식	1,8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 (좌 등) • 600~2,000만 원 <table border="1" data-bbox="546 492 812 627"> <tr> <td colspan="2">상환기간 15년 이상</td> <td colspan="2">상환기간 10년 이상</td> </tr> <tr> <td>고정금리 + 비거차식</td> <td>고정금리 또는 비거차식</td> <td>기타</td> <td>고정금리 또는 비거차식</td> </tr> <tr> <td>2,000만 원</td> <td>1,800만 원</td> <td>800만 원</td> <td>600만 원</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p>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차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차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차식	2,000만 원	1,800만 원	800만 원	600만 원	<p>소득세법 (‘24.1.1.)</p> <p>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p>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차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차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차식																								
1,8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차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차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차식																								
2,000만 원	1,800만 원	800만 원	600만 원																								
<p>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만 원 이하: 15% - 1천만 원 초과: 30%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좌 등) - 3천만 원 초과: 40%('24.12.31.까지)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p>	<p>소득세법 (‘24.1.1.)</p> <p>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p>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p>	<p>■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및 지급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 • (지급액) 자녀1인당 최대 80만 원 <p>- 홑벌이 가구</p> <table border="1" data-bbox="308 520 524 586"> <thead> <tr> <th>총급여액등</th> <th>자녀장려금</th> </tr> </thead> <tbody> <tr> <td>2,100만 원 미만</td> <td>자녀 1인당 80만 원</td> </tr> <tr> <td>2,1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td> <td>80만 원 -(총급여액등 - 2,100만 원) × 1,800분의 30</td> </tr> </tbody> </table> <p>- 맞벌이 가구</p> <table border="1" data-bbox="308 710 524 776"> <thead> <tr> <th>총급여액등</th> <th>자녀장려금</th> </tr> </thead> <tbody> <tr> <td>2,500만 원 미만</td> <td>자녀 1인당 80만 원</td> </tr> <tr> <td>2,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td> <td>80만 원 -(총급여액등 - 2,500만 원) × 1,500분의 30</td> </tr> </tbody> </table>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1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 원	2,1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80만 원 -(총급여액등 - 2,100만 원) × 1,800분의 30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5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 원	2,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80만 원 -(총급여액등 - 2,500만 원) × 1,500분의 30	<p>■ 소득요건 상향 및 지급액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p>- 홑벌이 가구</p> <table border="1" data-bbox="546 520 823 586"> <thead> <tr> <th>총급여액등</th> <th>자녀장려금</th> </tr> </thead> <tbody> <tr> <td>2,100만 원 미만</td> <td>자녀 1인당 100만 원</td> </tr> <tr> <td>2,1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td> <td>100만 원 -(총급여액등 - 2,100만 원) × 4,900분의 50</td> </tr> </tbody> </table> <p>- 맞벌이 가구</p> <table border="1" data-bbox="546 710 823 776"> <thead> <tr> <th>총급여액등</th> <th>자녀장려금</th> </tr> </thead> <tbody> <tr> <td>2,500만 원 미만</td> <td>자녀 1인당 100만 원</td> </tr> <tr> <td>2,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td> <td>100만 원 -(총급여액등 - 2,500만 원) × 4,500분의 50</td> </tr> </tbody> </table>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p>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1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	2,1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100만 원 -(총급여액등 - 2,100만 원) × 4,900분의 50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5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	2,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100만 원 -(총급여액등 - 2,500만 원) × 4,500분의 50	<p>조세특례제한법 ('24.1.1.)</p> <p>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3)</p>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1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 원																										
2,1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80만 원 -(총급여액등 - 2,100만 원) × 1,800분의 30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5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 원																										
2,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80만 원 -(총급여액등 - 2,500만 원) × 1,500분의 30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1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																										
2,1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100만 원 -(총급여액등 - 2,100만 원) × 4,900분의 50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5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																										
2,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100만 원 -(총급여액등 - 2,500만 원) × 4,500분의 50																										
<p>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p>	<p>■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한도) 월 10만 원 	<p>■ 비과세 한도 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월 20만 원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p>	<p>소득세법 ('24.1.1.)</p> <p>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p>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영유아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 원) • (공제율) 15% • (공제한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② ① 외의 부양가족: 70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 (좌 동)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 원) • (좌 동) ①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② (좌 동)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p>	<p>소득세법 (‘24.1.1.)</p> <hr/> <p>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p>
<p>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소득 분리과세 • (적용대상) 사적연금소득*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세율) 연령별 3~5% * (-69세) 5%, (70~79세) 4%, (80세-) 3% • (기준금액) 연간 1,200만 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좌 동) • (기준금액) 연간 1,500만 원 이하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p>	<p>소득세법 (‘24.1.1.)</p> <hr/> <p>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5)</p>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 휴직 급여수당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 휴직급여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 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소득확대 • (좌 동) • (좌 동)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p>☞(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p>	<p>조세특례제한법 (‘24.1.1.)</p> <hr/> <p>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p>
<p>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진찰 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 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 •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도 공제 적용 • (좌 동) • (좌 동)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p>☞(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p>	<p>소득세법 시행령 (‘24.1.1.)</p> <hr/> <p>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p>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금액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감액지급 * 정기 신청기한(5.31) 다음날 부터 6개월 이내 • 장려금 산정액의 90%를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금액 인상 • 장려금 산정액의 95%를 지급 <p>☞(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p>	<p>조세특례제한법 (‘24.1.1.)</p> <hr/> <p>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3)</p>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 다른 완전자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부 보유할 경우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확대 •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90% 이상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 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90% 이상 지배하는 경우 포함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 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가산율 조정 • (좌 동)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 현행 법인세 최저세율(9%)을 기준으로 가산율 산정($\frac{9\%}{1-9\%} \approx 9.9\%$) • (좌 동) <p>☞(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3 세제개편안 발표</p>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세제혜택)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에서 공제 - (납입한도) 연 24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납입한도 상향 • (좌 동) - 연 300만 원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3 세제개편안 발표</p>	<p>조세특례제한법 (24.1.1.)</p> <hr/> <p>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p>
<p>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지원 조세특례* 가입시 소득 요건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 제한 -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p>〈단서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대상 확대 (좌 동) • 육아후직급여(수당)가 있는 경우는 가입 허용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3 세제개편안 발표</p>	<p>조세특례제한법 (24.1.1.)</p> <hr/> <p>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p>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 연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지원 조세특례 가입시 소득요건 • (소득상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청년희망적금(이자소득 비과세) ②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형 장기펀드(납입액 40% 소득공제) - 서민형* ISA(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소득요건이 없는 일반형 ISA 대비 비과세한도 확대(200→400만 원) ③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도약계좌(이자소득 비과세) • (소득 기준연도) 직전년도 <단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요건 판단기준 개선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조세특례제한법 (‘24.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득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 활용 * 단, 직전년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소득을 적용 <p style="text-align: center;">*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3 세제개편안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p>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 모펀드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주식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타인 소유 주식 출자지분 매입 취득제외)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또는 출자 지분 ● 조합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 조합의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함 ● 적용기한: 2025.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추가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추가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3 세계개편안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조세특례제한법 (`24.1.1.)</p> <hr/> <p style="text-align: center;">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1)</p>
<p>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저율과세 구간) 60억 원까지 10%, 60억 원 초과분 20% ● (연부연납 기간) 5년 ● (사후관리-인증변경) 증분류 내 변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혜택 확대 ● (저율과세 구간) 확대 120억 원까지 10%, 120억 원 초과분 20% ● (연부연납 기간) 확대 15년 ● (사후관리 요건 완화) 대분류 내 변경 가능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p>	<p style="text-align: center;">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4.1.1.)</p> <hr/> <p style="text-align: center;">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2)</p>

기획재정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 • (업종변경 요건) 중분류 내 변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요건 완화 • (업종변경 요건 완화) 대분류 내 변경 가능 <p>☞(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p>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1)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일정비율 지출의무 •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공익 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3개년도 평균가액으로 산정 • (지출실적 산정기준) 당해 과세 연도 사용실적 • (위반 시 제재)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 보유분 증여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합리화 • (산정기준 변경) 5개년도 평균가액으로 산정 • 지(출실적 산정기준) 추가당해 과세연도와 직전4개 과세연도의 5개년도 평균 사용 실적도 지출실적으로 인정 • (위반 시 제재 합리화) (5% 초과 보유 법인)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5% 이하 보유 법인)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p>☞(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p>	상속세 및 증여세법 ('24.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1)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환급 최소기준 • 1회 거래가액 3만 원 이상 ■ 즉시환급 한도 • 1회 거래가액 50만 원 미만 • 총 거래가액 250만 원 이하 ■ 도심환급 한도 • 1회 거래가액 500만 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환급 최소기준 • 1회 거래가액 1.5만 원 이상 ■ 즉시환급 한도 • 1회 거래가액 100만 원 미만 • 총 거래가액 500만 원 이하 ■ 도심환급 한도 • 1회 거래가액 600만 원 이하 <p>☞(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p>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동 시행규칙 ('24.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3)

기획재정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p>	<p>■ 주세율(종량세)의 물가 연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주기) 매년 조정 • (조정방식) 직전연도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 	<p>■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탄력세율 제도로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 비정기 조정 • 기본세율*의 ±30% 범위내에서 탄력세율 조정 <p>*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중인 맥주·탁주 세율을 법률로 상향입법(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p>	<p>주세법 시행령 ('24.1.1.)</p> <hr/> <p>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p>																									
<p>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p>	<p>■ 석유가스(LPG)에 대한 종류별 개별소비세율 (원/kg)</p> <table border="1" data-bbox="308 883 520 1015"> <thead> <tr> <th>구분</th> <th>기본 세율</th> <th>탄력 세율</th> </tr> </thead> <tbody> <tr> <td>부탄</td> <td>252</td> <td>275</td> </tr> <tr> <td>프로판</td> <td>20</td> <td>14 (가정·상업용)</td> </tr> </tbody> </table>	구분	기본 세율	탄력 세율	부탄	252	275	프로판	20	14 (가정·상업용)	<p>■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 세율 적용(기본세율의 △30%) (원/kg)</p> <table border="1" data-bbox="546 883 817 1040">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기본 세율</th> <th>탄력 세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부탄</td> <td>일반</td> <td rowspan="2">252</td> <td>275</td> </tr> <tr> <td>수소제조용</td> <td>176.4</td> </tr> <tr> <td rowspan="2">프로판</td> <td>일반</td> <td rowspan="2">20</td> <td>-</td> </tr> <tr> <td>가정·상업용 수소제조용</td> <td>14</td> </tr> </tbody> </table>	구분		기본 세율	탄력 세율	부탄	일반	252	275	수소제조용	176.4	프로판	일반	20	-	가정·상업용 수소제조용	14	<p>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4.4.1.)</p> <hr/> <p>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p>
구분	기본 세율	탄력 세율																										
부탄	252	275																										
프로판	20	14 (가정·상업용)																										
구분		기본 세율	탄력 세율																									
부탄	일반	252	275																									
	수소제조용		176.4																									
프로판	일반	20	-																									
	가정·상업용 수소제조용		14																									
<p>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p>	<p>(신설)</p>	<p>■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 ②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③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 투자 • (공제율) 투자 또는 출자액의 3%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p>	<p>조세특례제한법 ('24.1.1.)</p> <hr/> <p>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3)</p>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소득 법인세 감면 • (대상) 2년 이상 경영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복귀하는 기업 • (감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 5년 100% + 2년 50% ② 수도권 내로 부분복귀: 3년 100% + 2년 50% • (업종요건) 국외사업장과 국내 이전 복귀사업장 간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동일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 폭·기간 확대 및 업종 요건 완화 • (좌 동) • 감면 폭 및 기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7년 100% + 3년 50% ② (좌 동) • 업종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유통기업 관련 위원회에서 업종유사성 확인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월)</p>	<p>조세특례제한법 ('24.1.1.)</p> <hr/> <p>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3)</p>
<p>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시기 • 소득산입규칙: '24.1.1. • 소득산입보완규칙: '2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시기 • (좌 동) • 소득산입보완규칙: '25.1.1.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 ('23.7월)</p>	<p>국제조세 조정법 ('24.1.1.)</p> <hr/> <p>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 (044-215-4663)</p>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확대</p>	<p>■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p> <p>(추가)</p>	<p>■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p>	<p>국세기본법 (‘24.1.1.)</p>
			<p>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1)</p>
<p>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p>	<p>■ 조세불복시 소액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금액 3천만 원 미만 • (이의신청·심사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 (조세심판 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심조세심판관 단독 심리 결정 	<p>■ 소액사건 기준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금액 5천만 원 미만 • (좌 동) • (좌 동)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p>	<p>국세기본법 시행령 (‘24.4.1.)</p>
			<p>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1)</p>
<p>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p>	<p>■ 매각결정기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찰일부터 7일 이내 <p>(단서 신설)</p>	<p>■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최고가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 전 재산 취득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 허용 <p>*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p>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p>	<p>국세징수법 (‘24.1.1.)</p>
			<p>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2)</p>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자 휴대품 중 향수별도 면세 한도 • (향수) 60밀리리터(m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수 면세한도 인상 • 100밀리리터(mL)로 상향 <p>☞ (참고) 국무조정실홈페이지)보도자료) 민생규제혁신방안 발표 ('23.11월)</p>	<p>관세법 시행규칙 ('24.1.1.)</p> <hr/> <p>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7)</p>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발유, 경유 및 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단력세를 인하조치 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 발전용 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단력세를 인하조치 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p><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발유, 경유 및 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단력세를 인하조치 기한: 2024년 2월 29일까지 <p>< 발전연료 개세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용 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단력세를 인하조치 기한: 2024년 6월 30일까지 <p>☞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3.12월)</p>	<p>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24.1.1.)</p> <hr/> <p>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p> <hr/> <p>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4.1.1.)</p> <hr/> <p>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p>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표 3억 원 이하 20%, 과표 3억 원 초과 25% 등 ■ 상장주식 과세대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 <table border="1" data-bbox="308 578 520 669"> <thead> <tr> <th></th> <th>지분율</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코스피</td> <td>1%</td> <td rowspan="3">10억 원</td> </tr> <tr> <td>코스닥</td> <td>2%</td> </tr> <tr> <td>코넥스</td> <td>4%</td> </tr> </tbody> </table>		지분율	금액	코스피	1%	10억 원	코스닥	2%	코넥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보유금액 기준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50억 원 이상 <table border="1" data-bbox="546 578 817 669"> <thead> <tr> <th></th> <th>지분율</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코스피</td> <td>1%</td> <td rowspan="3">50억 원</td> </tr> <tr> <td>코스닥</td> <td>2%</td> </tr> <tr> <td>코넥스</td> <td>4%</td> </tr> </tbody> </table>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주식 양도세 조정 보도자료</p>		지분율	금액	코스피	1%	50억 원	코스닥	2%	코넥스	4%	<p>소득세법 시행령 ('24.1.1.)</p> <hr/> <p>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1)</p>
		지분율	금액																				
코스피	1%	10억 원																					
코스닥	2%																						
코넥스	4%																						
	지분율	금액																					
코스피	1%	50억 원																					
코스닥	2%																						
코넥스	4%																						
<p>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국고채의 경우 개인은 국고채 전문딜러(PD)를 통한 입찰대행 등 간접적으로 매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의 통해 직접 구매 가능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개인투자용 국채, 확실한 자산형성 위한 새로운 선택</p>	<p>국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4. 상반기)</p> <hr/> <p>기획재정부 국채과 (044-215-5134)</p>																				

금융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은행별 경영현황* 자율공개 실시 * (주요 공개항목) 이자·수수료 이익, 예대금리차, 성과급·희망퇴직금, 주주배당 등 <p>☞ (참고) '22년도 경영현황 보고서 시범 공개 (은행연합페이지)보도자료>은행 경영현황 공개보고서 발표</p>	<p>(`24.4월)</p> <hr/> <p>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53)</p>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늘봄학교 본격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늘봄학교 시범운영 • 8개 시범교육청에, 459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 학교를 전국에 본격 도입 	<p>(‘24.3월)</p> <hr/> <p>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044-203-6522, 6606)</p>
<p>개정 「학교폭력예방법」, 2024년 1학기부터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다(신설) ■ 라. 교육감은 학교폭력 조사 상담 등을위한전문/관설치운영기능 ■ 마~파(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사이버폭력 정의 신설 ■ 나.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등 안내서 개발보급 ■ 다.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 회복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설치·운영 및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운영 ■ 라.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통합지원 등을 위한 전담부서 및 전문기관 설치 의무화 ■ 마. 학교폭력 담당 교사 수업시간 조정 의무화 및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또는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 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추가, 경미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하여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는 경우 학교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 권유 가능 ■ 사. 학교폭력 책임규약 운영 및 학교폭력 예방 등 홍보영상 제작 및 방송사업자 송출 등 요청 ■ 아.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신설, 피해학생 긴급보호 조치 추가 ■ 자. 국가에서 사이버폭력에 의해 유포된 촬영물, 개인정보 등 삭제 지원 및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삭제 등 소요 비용 상환청구권 신설 ■ 차. 학교장이 학교폭력 인지 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조치 의무화 및 위반 시 출석 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가중 ■ 카. 학교장 긴급조치에 '학급교체' 추가, 피해학생 측 요청 시 학교장이 전담기구 심의를 통한 가해학생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 가능 	<p>「학교폭력예방법」 (‘24.3.1.)</p> <hr/> <p>교육부 학생생활문화과 (044-203-6978, 6979)</p>

교육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개정 「학교폭력예방법」, 2024년 1학기부터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 행정쟁송 관련 절차 개선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학교에 행정심판 청구사실 및 심판청가 안내 ● 행정소송 제기 사실 및 소송참가에 관한 안내사항을 피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통지 ●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 청취 의무화 ● 교육감(장)은 집행정지 신청 사실, 결과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통지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 부여 ■ 파. 가해학생 측 행정소송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도록 하고, 재판기간 명시 <p>☞ (참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 계획(안) 발표 예정</p>	<p>교육부 학생생활문화과 (044-203-6978, 6979)</p>
<p>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이원화 ● 유치원은 교육부(시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지자체)에서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 영유아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시도교육청에 이관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앙 부처 업무 이관 우선 추진 <p>☞ (참고) 교육부 누리집<보도자료>교육부,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로 책임 있는 유보통합 실현한다</p>	<p>(‘24년)</p> <p>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 전략기획과 (044-203-7192)</p>
<p>초3 중1 책임교육 학년제 도입</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3 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 초3 중1 전체 학생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지원 ● 학업성취 수준 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규수업 및 방과후 지도, AI 맞춤형 학습, 학습관련 튜터링 연계 제공 	<p>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23.6월)</p> <p>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044-203-6747, 6735)</p>

교육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 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 조치 강화</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경과 및 결과 보고 시 축소·은폐하는 경우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 협박상 공무방해죄, 업무방해,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부당한 교육활동 간섭 또는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 반복 제기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추가 ■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조치, 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찰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 시 교원 보호 공제사업 실시 및 위탁 근거 마련 ■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대상 확대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자 불이익 금지 ■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권보호위원회 업무 관계자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위반 시 벌금 부과 ■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추진현황과 실적 보고서를 매년 국회 제출 ■ 교육활동 침해 시안 실태조사 주체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변경 ■ 교원의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 	<p>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24.3.28.)</p> <hr/> <p>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487)</p>
<p>대학과산업체·연구기관 등의 협동수업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퍼스 외 지역에서의 정규 교육 과정 운영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연구기관 등에서 해당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가능 • 학생들은 협동수업으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까지 협동수업으로 취득 가능 <p>※ (참고) 교육부홈페이지>보도자료>대학의 담대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p>	<p>고등교육법 시행령 (‘23.12월 ~’24.1월)</p> <hr/> <p>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 (044-203-6935)</p>

기획재정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배움e」를 통해 경제교육 콘텐츠, 온라인 강의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경제교육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기관의 콘텐츠와 편의기능을 맞춤형으로 제공 	(‘24.6월)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사업팀 (044-215-2991)

여성가족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 중위 60% 이하 (자녀연령) 만 18세 미만 자녀 (지원금액) 월 20만 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금액) 월 35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 중위 63% 이하 (자녀연령)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지원금액) 월 21만 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자녀 연령</th> <th>지원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0~1세</td> <td>40만 원</td> </tr> <tr> <td>2세 이상</td> <td>35만 원</td> </tr> </tbody> </table> 	자녀 연령	지원 금액	0~1세	40만 원	2세 이상	35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24.1.1.)																																	
			자녀 연령	지원 금액																																						
0~1세	40만 원																																									
2세 이상	35만 원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1)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비율(‘23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중위소득)</th> <th colspan="2">정부지원비율</th> </tr> <tr> <th>0~5세</th> <th>6~12세</th> </tr> </thead> <tbody> <tr> <td>75% 이하</td> <td>85%</td> <td>75%</td> </tr> <tr> <td>120% 이하</td> <td>60%</td> <td>20%</td> </tr> <tr> <td>150% 이하</td> <td>15%</td> <td>15%</td> </tr> <tr> <td>150% 초과</td> <td>-</td> <td>-</td> </tr> </tbody> </table> 아이돌봄서비스 8만5천 가구 지원 	소득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비율		0~5세	6~12세	75% 이하	85%	75%	120% 이하	60%	20%	150% 이하	15%	15%	150% 초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비율(‘24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3">소득기준 (중위소득)</th> <th colspan="3">정부지원비율</th> </tr> <tr> <th colspan="2">1자녀</th> <th rowspan="2">2자녀</th> </tr> <tr> <th>0~5세</th> <th>6~12세</th> </tr> </thead> <tbody> <tr> <td>75% 이하</td> <td>85%</td> <td>75%</td> <td rowspan="4">본인 부담금 10% 추가 지원</td> </tr> <tr> <td>120% 이하</td> <td>60%</td> <td>30%</td> </tr> <tr> <td>150% 이하</td> <td>20%</td> <td>15%</td> </tr> <tr> <td>150% 초과</td> <td>-</td> <td>-</td> </tr> </tbody> </table> 아이돌봄서비스 11만 가구 지원 (신설)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 부모 가구(0~1세) 돌봄 비용의 90% 지원 	소득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비율			1자녀		2자녀	0~5세	6~12세	75% 이하	85%	75%	본인 부담금 10% 추가 지원	120% 이하	60%	30%	150% 이하	20%	15%	150% 초과	-	-	아이돌봄 지원법 (‘24.1.1.)
			소득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비율																																						
0~5세	6~12세																																									
75% 이하	85%	75%																																								
120% 이하	60%	20%																																								
150% 이하	15%	15%																																								
150% 초과	-	-																																								
소득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비율																																									
	1자녀		2자녀																																							
	0~5세	6~12세																																								
75% 이하	85%	75%	본인 부담금 10% 추가 지원																																							
120% 이하	60%	30%																																								
150% 이하	20%	15%																																								
150% 초과	-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02-2100-6365)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대상: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약 6만명 • 지원내용: 학습지원,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비 • 지원액(연간): 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60만 원 	<p>다문화가족지원법 (’24년)</p> <p>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69)</p>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 (지원 대상) 고립·은둔 학교 밖 청소년 (9~19세) 및 그 가족 • (지원내용) 방문 상담, 방문 학습, 치유프로그램, 자립 지원 등 	<p>(’24.3.1.)</p> <p>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6)</p>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 클리닉’ 프로그램 운영 ■ 고위기청소년 종합심리평가 사업(6개월) ■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수당 지원(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 클리닉’ 프로그램 전담인력 신규 배치하여 많은 청소년을 대기 없이 신속 지원 ■ 고위기청소년 종합심리평가 사업(1년) ■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5년) - 자립지원관은 사례관리 중에도 지급 가능 <p>☞ (참고) 여성가족부<보도자료>위기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강화한다 보도자료</p>	<p>(’24.1.1.)</p> <p>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5, 6278)</p>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주거지원 시범사업 시행 • 6개 시도 운영 * 서울, 부산, 인천, 충남, 전남,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 사업운영기관 전국 17개 시도 확대 • 24시간 운영 및 주거지원 시설 내 안전 장비 구축 <p>☞ (참고) 여성가족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4년 예산안 보도자료</p>	<p>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4. 하반기)</p> <p>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02-2100-6427)</p>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가정폭력 보호시설 (이주여성 포함)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지침 Ⅲ.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 지원금 2. 사업 개요 마. 지원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50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지침 Ⅲ.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 2. 사업 개요 마. 지원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500만 원 ※ 동반아동 입소 시 250만 원 추가 지원 	<p>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4.1.1.)</p> <hr/> <p>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트트킹방지와 (02-2100-6424) 권익구조과 (02-2100-6455)</p>
<p>취약 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통합운영 (온가족보듬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전문 상담(18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다양한 갈등 상황을 경험 중인 가족에 대한 상담 ■ 가족희망드림(98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 위기사건을 직면한 긴급위기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돌봄지원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173개소) ■ 1인가구 사회적경제망 형성지원 (36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심리정서상담, 돌봄지원 및 사회적경제망 형성지원 ■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2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부의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등 지원 ■ 원가정회복지원(14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임(보호)아동 및 원가정의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 교육, 관계개선 프로그램 ■ 면접교섭서비스(18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 위기가족 지원사업(온가족보듬사업)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가족: 한부모·다문화·조손가족, 노부모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부모, 1인가구, 이혼 위기 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 긴급위기가족: 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가족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생애주기별 다양한 갈등상황을 경험 중인 가족에 대한 상담 - 사례관리: 서비스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제공 및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 지원 등 자원연계 -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부모·양육교육, 1인가구 사회적경제망 형성, 원가정회복지원, 면접교섭 프로그램 등 - 긴급위기지원: 긴급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심리·정서, 돌봄지원 	<p>(‘24.1.1.)</p> <hr/> <p>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02-2100-6329)</p>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소득기준) 중위 60% 이하 • (지원금액) 월 2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소득기준) 중위 63% 이하 • (지원금액) 월 25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24.1.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1)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유형) 모자가족(기본·공동·자립), 부자가족(기본·공동·자립), 미혼모자가족(기본·공동), 일시지원 • (기본입소기간) 최소 6월(일시지원)~최대3년(모자가족, 부자가족) ■ 공동생활형 매입임대주택 • (운영호수) 266호 • (보증금지원) 최대 9백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유형) 출산지원(임산-자녀 3세 미만), 양육지원(자녀 6세 미만), 생활지원(자녀 18세 미만), 일시지원 • (기본입소기간) 최소 6월(일시지원)~최대 5년(생활지원) ■ 공동생활형 매입임대주택 • (운영호수) 306호 • (보증금지원) 최대 10백만 원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동법 시행규칙 (‘23.10.12.)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8)
아이돌보미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보미 ‘선 채용 후 교육’ 방식 • 선발 아이돌보미만 교육 ■ 교육대상 및 시간 • 신규자 과정(100시간 선발 아이돌보미) • 자격자 과정(16시간, 보육·초·중고 교사, 의료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선 교육 후 채용’ 방식 • 아이돌보미 및 민간까지 교육 ■ 교육대상 및 시간 • 신규자 과정 확대(120시간, 민간 포함) 	아이돌봄 지원법 (‘24.1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체계 개선TF (02-2100-6247)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 •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 지원내용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교육: 가족센터) 사전 직업 소양 교육, 전문 한국어 교육 실시 - (직업훈련: 훈련기관)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 개발·운영 - (사후관리: 가족센터 등) 취업연계 및 취업유지 현황 파악 등 	<p>다문화가족지원법 ('24년)</p> <hr/> <p>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74)</p>
<p>학교 밖 청소년 자립· 취업 지원 서비스</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 (지원 대상) 학교 밖 청소년(15~24세) • (지원 내용) 맞춤형 직업훈련, 인턴십, 직장 체험 지원 	<p>('24.1.1.)</p> <hr/> <p>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9, 6317)</p>
<p>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의무 위반 시 시정 명령·과태료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 가족부장관에게 재발방지대책 제출 ■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재발방지대책 제출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 제출 ■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의무 위반 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p>☞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의무 어기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23.3.30.)</p>	<p>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4.4.19.)</p> <hr/> <p>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02-2100-6392)</p>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성폭력 등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해바라기 센터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 신문 사업 전담인력(25개소, 각 1명) 배치 ■ 해바라기센터 39개소 운영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사업 전담인력(38개소, 각1명) 배치(+13개소 추가 지원) ■ 해바라기센터 2개소 추가 개소 예정 	<p>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4년)</p> <hr/> <p>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02-2100-6398)</p>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 단위 통합지원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긴급전화 1366 중심 「통합 솔루션지원단」 2개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긴급전화 1366 중심 「통합솔루션 지원단」 5개소 운영 	<p>('24년)</p> <hr/> <p>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02-2100-6306)</p>
고부가가치 직업교육 훈련 확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운영 • 구인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 대상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 경력단절여성 등의 기술 및 숙련수준 제고를 위한 신기술·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AI·SW·바이오·반도체 등) 과정 확대 	<p>('24.1월)</p> <hr/> <p>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100-6204)</p>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기준 대폭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생계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 (지원기준)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162만 1천 원 ■ 2023년 주거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 • (기준임대료) 급지가구별 16.4만 원 ~ 62.6만 원 수준 ■ 2023년 교육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지원비) 초등 41만 5천 원, 중 58만 9천 원, 고등 65만 4천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생계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 (지원기준)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183만 4천 원(+21만 3천 원) ■ 2024년 주거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 (기준임대료) 급지가구별 17.8만 원 ~ 64.6만 원 수준(+1.1만~2.7만 원) ■ 2024년 교육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지원비) 초등 46만 1천 원, 중 65만 4천 원, 고등 72만 7천 원 <p>☞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기준 역대 최대인 13.16%(4인가구 기준) 인상</p>	<p>-</p> <p>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4)</p>
	<p>자살예방상담전화 통합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전화 1393 운영 중 ■ 다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393와 함께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 019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들어줄게' 어플 등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전화는 109로 통합 개편 ■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은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안내 <p>☞ (참고) 국민통합위원회·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자살예방 통합상담번호 관련</p>

보건복지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영아반 인센티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료 지원 체계 • (원칙) 현원 아동당 지원 <p>* (예시) 0세반 2명 재원시 - 부모보육료 2명분 + 기관 보육료 2명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료 지원 체계 • (원칙) 현원 아동당 지원 • (추가) 영아반 인센티브 도입 <p>* (예시) 0세반 2명 재원시 - 부모보육료 2명분 + 기관보육료 2명분 + 인센티브(기관보육료) 1명분</p>	<p>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2)</p>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 및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는 경우, 수급자 가구에 만 30세 미만 보호종료아동이 있는 경우, 수급자 가구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족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금지 기준 및 기본재산 공제액 • 대도시 22,800만 원, 중소도시 13,600만 원, 농어촌 10,150만 원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 및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는 경우, 수급자 가구에 만 30세 미만 보호종료 아동이 있는 경우, 수급자 가구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족인 경우,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단,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금지기준 개편 및 공제액 상향 조정 • 서울 36,400만 원, 경기 29,400만 원, 광역·세종·창원 28,300만 원, 기타 19,500만 원 공제 <p>☞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국민 기초생활보장으로 빈곤 사각 지대를 해소한다</p>	<p>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24.1.1.)</p> <p>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 3094, 3095)</p>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인·다자녀 수급가구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업용 자동차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 자동차가액의 50%에 대해서만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인·다자녀 수급가구 • 2,500cc 미만 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업용 자동차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 자동차 가액 100%를 재산 산정에서 제외 <p>☞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p>	<p>「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보건복지부 고시, '24.1.1. 시행)</p> <p>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4)</p>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비급여 보고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고 * 가격공개항목 565 + 신의료 기술등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 의원급이상 의료기관이 1,017개* 이상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고 * 급여화, 급여기준 변경 등에 따라 변동 가능 <p>☞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23.9.5.)</p>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23.9.4.)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7, 2668)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세 아동('22.1.1일 이후 출생아)에게 부모급여 지급 • (지급금액)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 (지급방식) 현금 또는 바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 지급 • (지급금액)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지급방식) 현금 또는 바우처 <p>☞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미정</p>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24.1.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7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산정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질환에 한정하여 총액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1인당 발생하는 모든 질환에 대하여 의료비를 합산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1.1.)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4)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지원 금액 (원/월)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구성원수</th> <th>지원금액</th> </tr> </thead> <tbody> <tr><td>1인</td><td>623,300</td></tr> <tr><td>2인</td><td>1,036,800</td></tr> <tr><td>3인</td><td>1,330,400</td></tr> <tr><td>4인</td><td>1,620,200</td></tr> <tr><td>5인</td><td>1,899,200</td></tr> <tr><td>6인</td><td>2,168,300</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인 이상은,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 	가구구성원수	지원금액	1인	623,300	2인	1,036,800	3인	1,330,400	4인	1,620,200	5인	1,899,200	6인	2,168,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지원 금액 (원/월)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구성원수</th> <th>지원금액</th> </tr> </thead> <tbody> <tr><td>1인</td><td>713,100</td></tr> <tr><td>2인</td><td>1,178,400</td></tr> <tr><td>3인</td><td>1,508,600</td></tr> <tr><td>4인</td><td>1,833,500</td></tr> <tr><td>5인</td><td>2,142,600</td></tr> <tr><td>6인</td><td>2,437,800</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인 이상은,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 	가구구성원수	지원금액	1인	713,100	2인	1,178,400	3인	1,508,600	4인	1,833,500	5인	2,142,600	6인	2,437,800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24.1.1.)(예정)
		가구구성원수	지원금액																												
1인	623,300																														
2인	1,036,800																														
3인	1,330,400																														
4인	1,620,200																														
5인	1,899,200																														
6인	2,168,300																														
가구구성원수	지원금액																														
1인	713,100																														
2인	1,178,400																														
3인	1,508,600																														
4인	1,833,500																														
5인	2,142,600																														
6인	2,437,800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간금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원/월)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구성원수</th> <th>지원금액</th> </tr> </thead> <tbody> <tr><td>1인</td><td>1,558,419</td></tr> <tr><td>2인</td><td>2,592,116</td></tr> <tr><td>3인</td><td>3,326,112</td></tr> <tr><td>4인</td><td>4,050,723</td></tr> <tr><td>5인</td><td>4,748,016</td></tr> <tr><td>6인</td><td>5,420,986</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인 이상은, 1인 증가 시마다 659,651원씩 추가 지급 	가구구성원수	지원금액	1인	1,558,419	2인	2,592,116	3인	3,326,112	4인	4,050,723	5인	4,748,016	6인	5,420,9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원/월)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구성원수</th> <th>지원금액</th> </tr> </thead> <tbody> <tr><td>1인</td><td>1,671,334</td></tr> <tr><td>2인</td><td>2,761,957</td></tr> <tr><td>3인</td><td>3,535,992</td></tr> <tr><td>4인</td><td>4,297,434</td></tr> <tr><td>5인</td><td>5,021,801</td></tr> <tr><td>6인</td><td>5,713,777</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인 이상은, 1인 증가 시마다 672,468원씩 추가 지급 	가구구성원수	지원금액	1인	1,671,334	2인	2,761,957	3인	3,535,992	4인	4,297,434	5인	5,021,801	6인	5,713,777	<p>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8, 3059)</p>
	가구구성원수	지원금액																													
1인	1,558,419																														
2인	2,592,116																														
3인	3,326,112																														
4인	4,050,723																														
5인	4,748,016																														
6인	5,420,986																														
가구구성원수	지원금액																														
1인	1,671,334																														
2인	2,761,957																														
3인	3,535,992																														
4인	4,297,434																														
5인	5,021,801																														
6인	5,713,777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폐지 	<p>모자보건법 (24.1월)</p> <p>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적용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한 1년4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폐지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한 2년, 의사소견 시 예외기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폐지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1.1일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p>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4.1.1.)</p> <p>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7)</p>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난임부부 사술비 지원 사업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임부부 사술비 지원사업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폐지 	<p>모자보건법 (‘24.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정부 지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병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 회당 최대 100만 원, 부부당 2회 지원 	<p>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정부 지원 없음(일부 지자체에서 신혼부부 검진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계획 단계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 - 여성 10만 원(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 	<p>모자보건법 (‘24.4월)</p> <p>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403)</p>
<p>전국민 마음투자 지원</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 위험군 8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 	<p>정신건강복지법 (‘24. 하반기)</p>
	<p>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지원체계 없음 * 일부 지역 자체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 체계 구축 • (상시발굴체계) 온라인, 129콜 등 원스톱 도움 요청 창구 마련 • (전담지원체계) 4개 지역 전담인력 배치 (총 3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상담을 거쳐 일상회복, 소통기술, 공동생활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공식 도움 요청자, 1,903명) 23년 실태 조사 시 발굴된 대상자, 전담기관과 연계 지원

기획재정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차수별 분리 징수 및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2차 시험 응시수수료 • 통합 2만 원 ■ 1차 시험 시행전 접수취소 • 20일전 60% • 10일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2차 차수별 분리징수 • 차수별 3만 원 ■ 차수별 시험 시행전 접수취소 • 20일전 60% • 10일전 50%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2 세법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p>	관세사법 (*23.12.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8)

고용노동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적용대상) 공사예정금액 공공 50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 (단말기 설치)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공사에 단말기 설치가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적용대상) 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 (단말기 설치)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공사에 단말기 설치 의무, 3억 원 미만 건설공사 등은 단말기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24.1.1.)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9)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인해 고용 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 부터 인상된 보험료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인해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보험료율을 적용 	고용상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24.1.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73)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p>'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 (통상임금 100%) 지원 ※ 월 상한액은 매월 인상하여 지급→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 지원 ※ 월 상한액은 매월 인상하여 지급→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 원 	<p>고용보험법 시행령 (24.1.1.)</p> <hr/> <p>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12)</p>
<p>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p>	<p>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4.1.1. 잠정)</p> <hr/> <p>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36)</p>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안전동행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투자 혁신사업 ■ 사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23년(3년간) ■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비용의 50% (최대 7천~1억 원)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중 뿌리 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보유 또는 고위험 3대 업종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동행 지원사업 ■ 사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29년(6년간) ■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비용의 50%(최대 1억 원)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비용의 40%(최대 8천만 원)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보유 또는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중소기업 기본법령 상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사외하청 사업장으로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청에서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직접지원 받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장또는 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매칭 건설링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p style="margin-top: 10px;">☞ (참고) 안전동행지원사업 홈페이지)사업 안내)사업공고</p>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용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24.1월)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령과 상이한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령) 작업장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까지의 수평거리 50m 이하 • (건축법령) 자동화 생산시설에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공장의 경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75미터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p style="margin-top: 10px;">☞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p>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11.1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2)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 (추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 또는 이용조치 	<p>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24.2.1.)</p> <hr/> <p>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9)</p>
위라벨 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단축제) 시행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2시간 이상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 (지원요건)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계획 수립 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2시간 이상 실근로시간 감소한 경우 • (지원 기간, 주기) 1년간, 3개월 단위 • (지원 금액)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 <p>☞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기타*2024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예정)</p>	<p>고용보험법 ('24.1.1. 예정)</p> <hr/> <p>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044-202-7222)</p>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 26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 27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 	<p>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24.1월)</p> <hr/> <p>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50)</p>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연령 18~34세 ■ 월 57.7천 원(23년) 이상 소득 발생시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예] 월 50만 원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90만 원 소득 발생시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연령 15~34세+병역의무 이행기간 (최대 3년) ■ 월 133.7만 원(24년) 내에서 발생한 소득 만큼 차감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월단위 지급액 50~90만 원 한도) * [예] 월 50만 원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90만 원 소득 발생시 구직촉진수당 43.7만 원 지급(133.7만 원 -90만 원) 	<p>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24.2.9.)</p> <p>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044-202-7193)</p>
<p>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 중소·중견기업 내 재택·원격근무 제도화 지원을 위해 컨설팅 제공 (400개소)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 중소·중견기업의 재택·원격근무 활용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보안·근태관리시스템 구축비 일부 지원 (투자비의 50%, 2천만 원 한도) ■ 유연근무 장려금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선택·재택·원격근무 활용에 대해 활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1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 재택근무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 유형 전반 (재택·원격·선택·시차출퇴근)에 대한 컨설팅 제공(400개소)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유지 • 시차출퇴근·선택근무 활용을 위해 필요한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지원 신설 (투자비의 70%, 250만 원 기준, 3년) ■ 유연근무 장려금(유형 추가) • 선택·재택·원격근무 장려금 유지 • 30인 이하 사업장의 육아기 근로자 '시차 출퇴근' 활용에 대해서도 신규 지원(1인당 월 최대 20만 원, 1년 지원) 	<p>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4.1.1.)</p> <p>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97)</p>
<p>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연 2회 제출 • 전년도 장애인 고용 실시 상황 및 해당 연도 고용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상반기 장애인 고용 상황을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연 1회로 축소 • 전년도 장애인 고용 실시 상황 및 해당 연도 고용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 	<p>장애인고용법 시행령 (*24.1.1.)</p> <p>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p>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 임차비 미지원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제3자의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임차료 지원을 신설	직장어린이집등 설치·운영 규정 (‘24.1.1. 예정)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9)
일자리 채용 청년 지원금(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신설)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취업하여 근속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 지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23.10.1.~'24.9.30.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한 청년 (만15세~34세) • (대상기업) 빈일자리 중소기업,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요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 • (지원내용) 취업 후 3개월차 100만 원, 6개월차 100만 원 지원(최대 200만 원) 	(‘24.1.22.)
			고용노동부 공정재용기반과 (044-202-7453)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 훈련 신설	■ 특화 직업훈련 없음	■ 특화 직업훈련 신설·시범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만 18~24세의 청년 200명 • (주관기관) 한국폴리텍대학 • (훈련수준) NCS레벨 2~4 수준(기존 폴리텍 전문기술과정과 동일) • (훈련기간) 6개월 • (훈련내용) 전공, 한국어, 직장문화 적응, 진로상담 등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자료>폴리텍, 다문화 자녀 기술교육 이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24.1.1.)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77)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 50%를 지원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자료) '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p>국가기술자격법 ('24.1.1.)</p> <hr/> <p>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0)</p>
<p>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분야 중심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자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분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분야 중심 → + 첨단산업 분야 + 융·복합 분야 + 기타 공급 부족 분야 ■ 지원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자 중심 → + 재직자 맞춤형 과정 신설 ※ (참고) 고용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 훈련-예규고시)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 	<p>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24.1월)</p> <hr/> <p>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11)</p>
<p>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하여 매출 및 소득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자영업자의 경우, 연매출(수입 금액) 1.5억 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지원 •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국민내일 배움카드 발급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 제공 • 자영업자의 경우, 연매출(수입금액) 4억 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도 지원 •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최근 3개월 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도 지원 ※ (참고) 고용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 훈련-예규고시)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 	<p>국민내일 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24.1.1.)</p> <hr/> <p>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18)</p>

고용노동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당초 일반직종 훈련 및 각 부처에서 실시하던 돌봄분야 훈련을 내일배움카드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으로 통합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 등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신설 ■ 납부한 훈련비 전액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 수료 후 훈련분야와 동일직종 취업 및 취업 후 6개월이상 근속시 선부담한 훈련비 전액 환급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2024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24.1.1.)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13)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의 우수 훈련 프로그램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유·개방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규 도입(24.1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24.1월 예정)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78)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도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취업 청년 등 청년 구직자를 위한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신설(24.1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24.1월 예정)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24)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청사의 훈련인프라를 활용하여 외국인력 대상 직무-언어-문화 교육을 제공하는 'E-9 특화훈련' 도입(23.3월) • 조선업 시범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9 특화훈련'을 조선업 외 뿌리산업 등 타업종으로 본격 확대 추진(24.1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24.1월)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78)
2024년 적용 최저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10,580원) ■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5%, 복리후생비 1% 초과 금액 (월환산액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60,740원) ■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복리후생비 전부 산입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4.1.1.)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970)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재정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원 대상 • 사업주 ■ 재정지원 요건 • 월 평균보수가 242만 원(최저 임금의 120%)미만인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원 대상 • 사업주 + 근로자 ■ 재정지원 요건 • 월 평균보수가 268만 원(최저임금의 130%)미만인 근로자 	<p>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4.1.1.)</p> <hr/> <p>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0)</p>
	<p>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교육 이수기간 • 신규교육 이수일 기준, 전후 3개월 사이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 • 매분기 6시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교육 이수기간 • 신규교육 이수일 기준, 전후 6개월 사이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 • 매분기 12시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시 교육시간 • 일용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 1시간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 8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 시 교육시간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 근로자채용 시 교육시간 1시간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 4시간 • 상기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 8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근로자 교육 시간면제 •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특별)교육 이수 후 1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 	<p>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 (044-202-88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 교육시간 감면 • 보건에 관한 사항만 교육하는 사업(광산 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 안전법)의 경우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1/2이상 실시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정기 안전 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정기 교육시간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내용 정비 • 근로자-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추가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공모방식 • 공단 지원품목: 29종 ※ 월 상한액은 매월 인상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 판매업체 (공급자) 방식의 제안제도 → 공단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상시 (연중)공모방식(자율품목, 관리품목) • 공단 지원품목 29종 ※ 신규품목발굴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 판매업체(공급자)의 제안제도 → 공단검토 → 도입 - 신청사업장(수요자)의 희망 제품 신청 → 공단평가(검중) → 지원 또는 도입 - 유관기관(중기부등) 추천 및 기타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 → 공단검토 → 도입 	<p>용자급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24.2월)</p> <p>고용노동부 중대재해로드맵이행 총괄팀 (044-202-8867)</p>
<p>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계 기둥 간격 • 비계기둥은 가로(띠장방향) 1.85m, 세로(장선방향) 1.5m 이하로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해 비계 안정성 확보 시 각 2.7m 이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계 기둥 간격 • 비계기둥은 가로(띠장방향) 1.85m, 세로(장선방향) 1.5m 이하로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② 장비 반입·반출을 위하여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조검토 후 각 2.7m 이하 가능 <p>☞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p>	<p>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11.14.)</p> <p>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37)</p>
<p>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진단 등 안전성평가 의무 (제52조) 1. 굴착·형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 2.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不同沈下)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 발생 3.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 4. 화재 등으로 내력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 5.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건축물 등의 재사용 6. 그 밖의 잠재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 의무 (제52조) 1. ~ 5. (기존과 같음) 6. (신설) 건축물등의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7. (기존 제6호와 같음) <p>☞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11.14.)</p> <p>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p>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p>	<p>■ 제329조(강재의 사용기준) (생략) 별표 10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10] 강재의 사용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308 429 524 702"> <thead> <tr> <th>강재의 종류</th> <th>인장강도 (kg/㎠)</th> <th>신장률 (%)</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강관</td> <td>34 이상 41 미만</td> <td>25 이상</td> </tr> <tr> <td>41 이상 50 미만</td> <td>20 이상</td> </tr> <tr> <td rowspan="3">강판, 형강, 평강, 경량형강</td> <td>50 이상</td> <td>10 이상</td> </tr> <tr> <td>34 이상 41 미만</td> <td>21 이상</td> </tr> <tr> <td>41 이상 50 미만</td> <td>16 이상</td> </tr> <tr> <td>50 이상 60 미만</td> <td>12 이상</td> </tr> <tr> <td>60 이상</td> <td>8 이상</td> </tr> <tr> <td rowspan="2">봉강</td> <td>34 이상 41 미만</td> <td>25 이상</td> </tr> <tr> <td>41 이상 50 미만</td> <td>20 이상</td> </tr> <tr> <td>50 이상</td> <td>18 이상</td> </tr> </tbody> </table>	강재의 종류	인장강도 (kg/㎠)	신장률 (%)	강관	34 이상 41 미만	25 이상	41 이상 50 미만	20 이상	강판, 형강, 평강, 경량형강	50 이상	10 이상	34 이상 41 미만	21 이상	41 이상 50 미만	16 이상	50 이상 60 미만	12 이상	60 이상	8 이상	봉강	34 이상 41 미만	25 이상	41 이상 50 미만	20 이상	50 이상	18 이상	<p>■ 제329조(재료의 사용기준) (생략) 한국 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삭제></p>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11.14.)</p>
	강재의 종류	인장강도 (kg/㎠)	신장률 (%)																										
강관	34 이상 41 미만	25 이상																											
	41 이상 50 미만	20 이상																											
강판, 형강, 평강, 경량형강	50 이상	10 이상																											
	34 이상 41 미만	21 이상																											
	41 이상 50 미만	16 이상																											
50 이상 60 미만	12 이상																												
60 이상	8 이상																												
봉강	34 이상 41 미만	25 이상																											
	41 이상 50 미만	20 이상																											
50 이상	18 이상																												
<p>■ 제332조 (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p> <p>7.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에 대해서는 (생략)</p> <p>12. 동바리로 사용하는 목재에 대해서는 (생략)</p> <p>13. 보로 구성된 것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p> <p>가. 보의 양끝을 지지물로 고정시켜 보의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p> <p>나. 보와 보 사이에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보가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p> <p>■ 제335조(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략)</p>	<p><삭제></p> <p><삭제></p> <p>5. 보 형식의 동바리(강재 갑판(steel deck), 철재트러스 조립 보 등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말한대의 경우 가.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못, 용접 등으로 양끝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p> <p>나. 양끝에 설치된 보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p> <p>다.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p> <p>■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하 이 조에서 “콘크리트타설장비”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생략)</p>	<p>고용노동부 건설안전예방정책과 (044-202-8940)</p>																											

고용노동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굴착면 붕괴 예방 기술기 기준 합리화</p>	<p>■ 제338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술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table border="1" data-bbox="308 487 524 624"> <thead> <tr> <th>구분</th> <th>지반의 종류</th> <th>기술기</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보통흙</td> <td>습지</td> <td>1:1~1:1.5</td> </tr> <tr> <td>건지</td> <td>1:0.5~1:1</td> </tr> <tr> <td rowspan="2">암반</td> <td>면암</td> <td>1:1.0</td> </tr> <tr> <td>경암</td> <td>1:0.5</td> </tr> </tbody> </table>	구분	지반의 종류	기술기	보통흙	습지	1:1~1:1.5	건지	1:0.5~1:1	암반	면암	1:1.0	경암	1:0.5	<p>■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굴착면의 기술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술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table border="1" data-bbox="546 503 823 624"> <thead> <tr> <th>지반의 종류</th> <th>굴착면의 기술기</th> </tr> </thead> <tbody> <tr> <td>모래</td> <td>1:1.8</td> </tr> <tr> <td>연암 및 풍화암</td> <td>1:1.0</td> </tr> <tr> <td>경암</td> <td>1:0.5</td> </tr> <tr> <td>그 밖의 흙</td> <td>1:1.2</td> </tr> </tbody> </table>	지반의 종류	굴착면의 기술기	모래	1:1.8	연암 및 풍화암	1:1.0	경암	1:0.5	그 밖의 흙	1:1.2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11.14.)</p> <p>고용노동부 건설산업예방정책과 (044-202-8940)</p>
	구분	지반의 종류	기술기																							
보통흙	습지	1:1~1:1.5																								
	건지	1:0.5~1:1																								
암반	면암	1:1.0																								
	경암	1:0.5																								
지반의 종류	굴착면의 기술기																									
모래	1:1.8																									
연암 및 풍화암	1:1.0																									
경암	1:0.5																									
그 밖의 흙	1:1.2																									
<p>건설업체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p>	<p>■ 평가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순위 1천위 이내 종합건설 업체(1천개社) <p>■ 정의개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임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전담 조직 정의 <p>■ (공통항목) 사업주 안전보건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 사업주 현장점검 또는 행사참여 결과 반영 <p>■ (공통항목)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및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통합산정 • 정규직 비율 기준 최소 20% ~ 최대 60% <p>■ (공통항목) 전담 안전보건 조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위 외 업체 평가기준 부재 <p>■ (가점항목)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180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받은 경우 5점, 심사 중인 경우 2점 	<p>■ 평가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에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종합건설 업체(약 19천개社) <p>■ 정의개념 재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전담 안전보건 조직 정의 재정비 • 본사 안전보건전담자 정의 신설 <p>■ (공통항목) 사업주 안전보건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활동분야 배정 사항 • 현장 간담회 참여 등 사업주 활동 내용 명확화 <p>■ (공통항목)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및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개별산정 • 정규직 비율 기준 최소 40% ~ 최대 70% <p>■ (공통항목) 전담 안전보건 조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위 외 업체 평가기준 마련 • 「중대재해처벌법」 상 전담조직 구성의무 고려 평가 세부기준 개편 <p>■ (가점항목) 안전보건경영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변경(KOSHA-18001 → KOSHA-MS) • 인증 심사 중인 경우 가점 상황(2→3점) 	<p>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24.1.1.)</p> <p>고용노동부 건설산업예방정책과 (044-202-8938)</p>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근골격계부담작업 수시 유해요인조사 합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산재승인)시 '지체없이' 수시 유해요인조사 실시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산재승인) 등 사유 발생 시마다 수시 유해요인 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유해요인조사 시기를 '1개월 이내'로 합리화 ■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 요인조사(최초, 정기, 수시)를 실시하여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한 경우 수시 유해 요인조사 생략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4년 예정)</p> <hr/> <p>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044-202-8892)</p>
<p>고소작업대 안전사각 지대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을 제한 ■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형태 기준 부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작업대를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 가능 ■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재질 개수·설치방법 등 설치 <p>☞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자료)낮은 산업안전기준 개선으로 기업활력은 높이고 현장은 더욱 안전하게,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p>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3.11.14.) 및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23.12.2.)</p> <hr/> <p>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7)</p>
<p>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재하중 0.5톤 미만의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의무 부존재 •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낙하방지장치 설치 •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낙하방지장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에 적재하중 0.5톤미만의 산업용 리프트 추가 <p>☞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자료)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기준 강화 • 산업용 리프트의 운행거리와 관계없이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 장치, 낙하방지장치) 설치 <p>☞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자료)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p>	<p>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24.3.2.)</p> <hr/> <p>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7)</p>

중소벤처기업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비율 (20-50%)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규모 (2.5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비율(50-80%)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예산규모(4만 명) 	소상공인법 제12조의 7 (24.1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044-204-7857)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선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선원법 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선원법」 개정 및 시행 •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의 선내 괴롭힘 금지,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사실 확인 및 조사, 피해선원 보호 등 조치 규정 (안 제25조의3, 제25조의4) • 선박소유자는 '선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포함해 취업규칙 작성 (안 제119조) • 관련 규정 이행력 확보를 위해 처벌규정 신설 (안 제168조, 제179조) • (적용례 신설) 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한 법 제25조의4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한 선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 (부칙 제2조) 	선원법 (24.1.25.)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44-200-5744)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실시(시범사업) • (지원 내역) 10개 항로 x 운영비 0.9억 원 x 국고보조비율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실시(확대) • (지원 내역) 20개 항로 x 운영비 0.9억 원 x 국고보조비율 50% * (기존) 10개소 + (추가) 10개소 	농어업인살의질법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15.7.20.)
			섬발전촉진법 제13조의3 (교통편의 증진 지원) (23.5.16.)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확대추진 (게시예정)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243)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세계 최초 한국 주도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 회의 개최</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주도의 최초 아태 식품규제 기관장 협의체 출범 • (글로벌 논의 주도) 아태 지역 내 식품 안전 분야 국제협력 주도권 확보 • (연대 강화, 수출지원) 한국과 교역량이 많은 외국 규제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규제장벽 이슈 발생 시 신속한 해소, 글로벌 스탠다드 논의 주도 <p>☞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보도자료)대한민국, 아프라스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p>	<p>아프라스 사무국 설치 및 운영 규정 ('24.1.1.)</p> <hr/> <p>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043-719-1354)</p>
<p>마약류 상담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개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시범운영 ('23.9~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본격운영 ('24.1월) 	<p>('24.1월)</p> <hr/> <p>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 (043-719-2582)</p>
<p>청소년·취약계층 등 마약류 예방교육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 예방전문강사가 실시 하는 마약류 예방교육 저조 • (청소년) 전체 청소년 31만명 (5%, '22년 기준) 교육 제공 • (군인 등) 군인 대상 5천명 (2.5%, '22년 기준) 교육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강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예방교육 확대 • (청소년) 196만명의 청소년(전체 청소년의 약 33%)에게 맞춤형 교육 제공 • (군인 등) 군인 대상 교육 6만명(약 30%) 등으로 확대 • (교재 배포) 학교·군부대 등 마약류 예방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강사 맞춤형 교재 제작·보급 	<p>('24.1월)</p> <hr/> <p>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 (043-719-2582)</p>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 관리 강화, 품목갱신 시행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품목갱신 시행 • 2024년부터 의료기기 품목갱신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의료기기 업체는 제품별로 지정된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 '25년 1월 첫 유효기간 만료 품목이 발생, '24년부터 본격 품목갱신 신청 접수 예정 ☞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제 개정 고시 등 	의료기기법 ('20.10.8.) * '24.5월 품목갱신 신청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9)
한미 공동 SI 활용 의료제품 분야 국제 심포지엄 개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 규제기관과 국내외 업계 학계와 SI 활용 의료제품 개발 촉진방안 논의 ■ 첨단기술 활용 의료제품의 글로벌 선도를 위한 국가 간 협력 강화 	('24.2.26.~2.29.)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043-719-1352)
수출 애로 FREE (Food Regulation Expert for Export) 서비스 운영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국 기준·규격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 및 엡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24.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043-719-2032)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축·수산물의 동물용 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 검출 시 • 다음 각 항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DEX 기준 - 유사 식용동물의 잔류허용기준 중 해당부위의 최저기준 - 항균제인 경우 0.01 mg/kg • 적용대상: 축·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 검출 시 • 일률기준(0.01 mg/kg)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성장보조제 및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기준 적용 • 적용대상: 축·수산물 중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어류 <p>☞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p>	<p>식품위생법 (*24.1.1.)</p> <hr/> <p>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043-179-3851)</p>
	<p>동일사 동일식품 기준 변경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제32조 [별표10] 4.가.마. • (식품)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 • (축산물가공품) 생산국·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제품명·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제32조 [별표10] 4.가.마. • (식품)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 • (축산물가공품) 생산국·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 <p>☞ (참고) 수입식품정보마루·알림자료·교육·홍보자료·교육자료'23년 수입식품 영업자 민원 설명회 자료</p>
<p>백신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 교육 본격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 해외 인허가 지원을 위한 전문 교육시설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 해외 인허가 지원을 위한 백신 규제 전문가 양성 교육시설 구축 및 전문교육 실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 지원금 1인당 연간 11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 지원금 1인당 연간 13만 원 <p>☞ (참고)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www.mnuri.kr)</p>	<p>문화예술진흥법 (’24.2.1.)</p> <hr/> <p>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044-203-2516)</p>
<p>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전면 시행</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해당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 • (표시의무대상)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 • (예외) 다음 명시한 게임물은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케이드 게임물 - 교육 목적 등 등급분류 예외 게임물 -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p>☞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보도자료</p>	<p>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시행령 (’24.3.22.)</p> <hr/> <p>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4)</p>
<p>여행업 등록기준 자본금, 납입자본금으로 명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여행업 등록 시 자본금 의미 불명확 • (원칙) 자본금의 의미를 ‘실질자본금’으로 보아 증빙서류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대차대조표 제출 필요(-’22년 까지) • (예외) 법제처 유권해석 및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거쳐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모두 인정 (’22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여행업 등록 시 등록기준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으로 명시 • ’24년 2월 9일부터 실질자본금 증빙 필요 없음 *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해 대차대조표 제출 받고 있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24년 2월부터 불요 • 납입자본금 증빙자료(법인등기부등본 등) 제출로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 판단 	<p>관광진흥법 (’24.2.9.)</p> <hr/> <p>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044-203-2840)</p>

문화체육관광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 (금지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연법 (‘24.3.22.)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44-203-2732)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 2024년 11월 개관 예정(잠정)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044-200-6058)

문화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 용어 및 분류체계 사용 • 문화재 용어 사용 •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전면 개선 • (명칭개칭) ‘문화재(財)’ ⇒ ‘국가유산(遺産)’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유산(遺産)’으로 패러다임 변화 ⇒ 국가유산체제 전환 • (분류체계 재정립)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연계하여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통칭 ‘국가유산’ 용어 채택 	국가유산기본법 (‘24.5.17.)
			문화재청 국가유산 정책기획단 (042-481-319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인공자능(AI) 홍수예보 체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특보 발령 • 전국 75개 지점 홍수특보지점 운영 • 소수 전문인력이 물리모형으로 홍수예측 • 홍수특보 발령 전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지점씩 특보 발령 - 주의보, 경보 순차적 발령 - 발령서, 전파내용 수동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특보 발령('24.5월) • 전국 223개 지점 홍수특보지점 운영 • 시활용 자동예측 및 위험지점 도출, 물리 모형 재검증 및 특보 발령 • 홍수특보 발령 전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지점 또는 다수지점 동시 발령 - 급격한 수위 상승 예상 시 바로 경보 발령 - 자동 입력 	<p>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5.15.)</p> <hr/> <p>환경부 물재해대응과 (044-201-7664)</p>
<p>한강권역 도시침수 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위험지도 서비스 • 전국 607개소(시범지역157+ 낙동강권역450) 읍면동에 대한 도시침수지도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위험지도 서비스 • 한강권역 528개소를 추가한 총 1,135개소 읍면동에 대한 도시침수지도 정보 제공 	<p>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hr/> <p>환경부 물재해대응과 (044-201-7664)</p>
<p>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이월 승인 기준 • 계획기간 내 이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차(3차, 4차) 배출권과 상쇄배출권(KAU, KCU)의 순매도량만큼 이월 • 계획기간 간 이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과 상쇄배출권(KAU21~KAU25, KCU21~KCU25)의 연평균 순매도량만큼 이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이월 승인 기준 • 계획기간 내 이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차(3차/4차)배출권과 상쇄배출권(KAU, KCU)의 순매도량의 3배만큼 이월 - 무상 할당량이 배출량보다 적은 업체외 경우, 보유한 배출권 및 상쇄배출권 • 계획기간 간 이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권과 상쇄배출권(KAU25, KCU25)의 순매도량의 3배만큼 이월 - 무상 할당량이 배출량보다 적은 업체외 경우, 보유한 배출권 및 상쇄배출권 <p>☞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설명)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23.9월)</p>	<p>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4.6.1.)</p> <p>* 2024년 KAU23 이월 신청 시부터 반영</p> <hr/> <p>환경부 기후경제과 (044-201-6593)</p>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 개선</p>	<p>【전략환경영향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사업 사업규모 증가 판단 시 최소 지역범위 적용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7개) <p>【환경영향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협의 합리화 • 그 밖에 협의내용 변경 시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들도록 정한 사항 • <신설> <p>【소규모 환경영향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협의 합리화 • 부지면적의 30% 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대상 합리화 •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소규모 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개발·보전사업 - 주요 지하매설물 설치사업 - <신설>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급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자격 기준 • 환경평가 실무,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평가실무 수행한 자 	<p>【전략환경영향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사업(도로, 철도)도 사업규모 증가 판단 시 최소 지역범위 적용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소하천·하천기본계획을 포함(9개) <p>【환경영향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협의 합리화 • 주요 보호지역 내 사업계획 변경, 주요 저감대책 변경 등으로 명확화 • 환경보전방안 접수 시 10일 이내 협의 요청 <p>【소규모 환경영향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협의 합리화 • 녹지면적이 감소하면서 부지면적의 30% 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대상 합리화 •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개량사업 - 일반 지하매설물 설치사업 - 친수지구 내 배출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급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자격기준 합리화 • 환경분야 근무,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환경분야 근무한 자 	<p>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3.12월)</p> <hr/> <p>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1)</p>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등)에 따라 인허가 받고 시장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경제분야 신기술·서비스 시험검증 활성화,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해 규제 신속확인, 일괄처리,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도입 • (신속 확인) 규제 여부에 대해 30일 내 신속 확인 및 규제 여부 통보 • (실증 특례) 규제 ○, 안전성 미흡 → 일정 조건하에서 실증테스트 허용 → 실증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 법령 정비 • (임시 허가) 규제 ○, 안전성 확보 → 시장 출시 위한 임시허가하고 유효성 등 입증되면 관련 규제 법령 정비 <p>☞ (참고) 환경부홈페이지)보도자료)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p>	<p>순환경제 사회전환 촉진법 (‘24.1.1.)</p> <p>환경부 자원순환 정책과 (044-201-7347)</p>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검토하여 순환자원 ‘인정’ • (근거)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 • (대상)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높은 등 기준 충족시 품목 제한 없음 • (절차) 개별 신청접수 → 검토·조사 → 순환자원 인정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사업자 신청 없이도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 일괄 ‘지정·고시’ • (근거)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3조 • (대상)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품목 중 세부기준(용도, 방법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절차) 환경부 검토 → 지정·고시 → 순환자원 활용 <p>■ 지정·고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존의 순환자원 인정제도 병행</p> <p>☞ (참고) 환경부홈페이지)보도자료)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한다</p>	<p>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 (‘24.1월)</p> <p>환경부 자원순환 정책과 (044-201-7350)</p>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기준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시설기준 일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시설기준 적용 • 제조설비 내 배관에 대해 국제기준 인증 인정 • 설비 내 안전장치를 시설기준으로 인정 • 안전장치를 갖추고 소량 취급하는 설비는 소량취급시설 기준 적용 	<p>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24.1월 예정)</p> <p>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7)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044-830-4381)</p>

환경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팔공산 국립공원 승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공산 도립공원 • 관리체계 이원화(대구, 경북) • 도립공원(1980년 지정) 당시 탐방로 등 기본시설 조성 • 멸종위기종 관리체계 부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 관리체계 일원화(국립공원공단) • 노후시설 전면개선 및 다양한 탐방 체형 인프라 조성 • 멸종위기종 모니터링 및 서식지보호를 위한 특별보호구역 설정 	<p>팔공산국립공원 지정 고시 (’23.12.31.)</p> <hr/> <p>환경부 자연공원과 (044-201-7314)</p>																		
<p>‘유기성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 제도’ 시행</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 제도」 시행 • 공공·민간 대상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공공 ‘25-, 민간 ‘26-) <table border="1" data-bbox="546 855 823 1214"> <thead> <tr> <th>구분</th> <th>공공</th> <th>민간</th> </tr> </thead> <tbody> <tr> <td>시행</td> <td>’25-</td> <td>’26-</td> </tr> <tr> <td>의무 생산자</td> <td>전국 지자체</td> <td>유기성폐자원 대규모 배출·처리자</td> </tr> <tr> <td>바이오 가스화 대상</td> <td>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분뇨, 음식물류폐기물</td> <td>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td> </tr> <tr> <td>생산 목표 * 5년 주기 재설정</td> <td>발생·처리량의 50%</td> <td>발생·처리량의 10%</td> </tr> <tr> <td>달성 방법</td> <td colspan="2">직접생산, 위탁생산, 실적 거래* *공공은 거래로 구입한 생산실적의 90%만 인정</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가스센터, 바이오가스 종합정보 시스템 설치·운영 및 의무생산자 재정지원 근거 마련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 및 재정지원 차등화 	구분	공공	민간	시행	’25-	’26-	의무 생산자	전국 지자체	유기성폐자원 대규모 배출·처리자	바이오 가스화 대상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분뇨,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생산 목표 * 5년 주기 재설정	발생·처리량의 50%	발생·처리량의 10%	달성 방법	직접생산, 위탁생산, 실적 거래* *공공은 거래로 구입한 생산실적의 90%만 인정		<p>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23.12.31.)</p> <hr/> <p>환경부 생활하수과 (044-201-7027)</p>
구분	공공	민간																			
시행	’25-	’26-																			
의무 생산자	전국 지자체	유기성폐자원 대규모 배출·처리자																			
바이오 가스화 대상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분뇨,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생산 목표 * 5년 주기 재설정	발생·처리량의 50%	발생·처리량의 10%																			
달성 방법	직접생산, 위탁생산, 실적 거래* *공공은 거래로 구입한 생산실적의 90%만 인정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분류) 제조·공공행정·교육·서비스·보건·기타서비스·기타산업 등 업종별 6개 ■ (공개단위) 사업장 단위로 공개하여 투자정보로의 활용도 부족 ■ (공개항목) 투자 등 중요성 적은 항목이 다수 있어 기업의 부담 야기 ■ (공개시점) 12월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분류) 산업전반·산업기반(공공행정) 2개 ■ (공개단위) 법인 단위로 전환하여 재무정보와 환경정보의 기초단위 통일 ※ 주권상장법인(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상 ■ (공개항목) 핵심정보(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의무화, 비핵심 정보(환경관련 수상·협약, 환경오염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등) 과감히 제외·통합 ■ (공개시기) 8월말로 앞당겨 투자정보로서 재무정보와의 공개시기 통일 ※ 주권상장법인(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상 	<p>(‘24.1월부터 단계적 시행)</p> <p>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93)</p>
플레이스택 평시 관리를 위해 발열량 기준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레이스택 사고발생시 매년 관리 보고사항 등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레이스택에서 배출되는 관리대상물질 98% 이상 저감을 위해 발열량 기준 도입 및 모니터링 의무 부여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p>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4.1.1.)</p> <p>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14)</p>
수도시설 관리인력대상 교육 주기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마다 35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마다 35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 (참고) 대한민국 전자관보)관보보기> 대통령령제33883호<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또는 국가정보법령센터> 수도법 시행령 	<p>수도법시행령 (‘23.11.21.)</p> <p>환경부 수도기획과 (044-201-7119)</p>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수질TMS 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 행정처분 기준 •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측정기기부착사업장 기본·초과 배출부과금 산정기준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 농도의 "3시간 평균치" 활용 ■ 측정기기부착사업장별 수질오염 물질 배출량 공개 • 사업장별 연간 배출량을 매년 6월 30일까지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 행정처분기준 • 24시간 평균치 1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측정기기부착사업장 기본·초과 배출부과금 산정기준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의 '24시간 평균치' 활용 ■ 측정기기부착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공개 • 일 배출량을 매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개 <p>☞ (참고) 환경부홈페이지) 보도자료)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 확대한다</p>	<p>물환경보전법 ('24.1.1.)</p> <hr/> <p>환경부 수질수생태과 (044-201-7061)</p>
	<p>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가 실내 공기질 측정 후 지자체에 측정결과와 제출 및 입주민에게 결과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가 입주예정자 입회 하에 실내공기질 측정 후 지자체에 측정결과와 제출 및 입주민에게 결과 공고
<p>'환경보건법' 위반 어린이용품의 '자발적 회수' 시행</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건법 위반 어린이용품의 자발적 회수 시행 • 자발적 회수 조치 완료 시 형의 감면 	<p>환경보건법 ('24.2.17.)</p> <hr/> <p>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4)</p>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청년대상 창업지원사업 '청년 그린창업 스프링 캠프' 시행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시행 • (목적) 청년대상 녹색산업 창업기회 제공 • (지원대상) 39세 이하가 대표인 3년 이내의 창업기업 30개사 • (지원내용) 창업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자금) 8천 3백만 원 내외 - (역량강화 프로그램) 창업교육, 상담 (멘토링, 진단(컨설팅), 투자연계 등 ※ 민간운영사(창업기획자) 매칭 예정	('24.2월 예정)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3)
효율적인 도시침수 관리를 위한 '도시침수방지대책법' 시행	< 홍수대응 설계기준 > ■ 기후변화로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극한 홍수 발생 * '20년 남부지방 홍수, '22년 수도권 집중호우, '23년 중부 지방 집중호우 < 홍수/도시침수 예보 > ■ 국가하천 중심의 홍수예보 체계로 운영 • 국가하천 중심의 75개 홍수예보 지점 운영, 도시침수 예보는 대상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과거 최대강우량 등을 고려해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 • 도시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을 하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하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침수예보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침수 범위 등 예보 • 하천 및 하수도 수위 등을 연계 분석해 도시지역의 침수를 예측하여 국민계 정보를 제공 	도시하천구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24.3.15.) 환경부 물재해대응과 (044-201-7551)
야생동물 수입검역 시행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동물 수입검역 시행 • (검역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유입 야생동물 • (검역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에 대해 수입검역 실시 • (검역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5.19.)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51)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해양방사능 감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정점: 12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조사) 52개 • (신속조사) 75개 ■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조사) 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 (신속조사) 해수 ■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조사) 세슘, 플루토늄, 삼중수소, 스트론튬 등 • (신속조사) 세슘, 삼중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정점: 16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조사) 60개 • (신속조사) 105개 ■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조사) 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 (신속조사) 해수 ■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조사) 세슘, 플루토늄, 삼중수소, 스트론튬 등 • (신속조사) 세슘, 삼중수소 <p>☞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보도자료> '24년 해양방사능 감시 강화</p>	<p>해양환경 측정망 구성·운영계획 (`24.1월)</p> <hr/> <p>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7)</p>
<p>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방사능 모니터링 실시</p>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대상)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10개 정점 • (조사 주기) 연 2회(상·하반기) • (조사 항목) 세슘, 삼중수소 	<p style="text-align: center;">-</p> <hr/> <p>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44-200-5241)</p>
<p>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업권자에게 과태료(100만 원)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최대 250만 원, 연 2회 <p>☞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자율적인 어장 환경 개선 노력을 위해 어업인 책임을 강화한다.</p>	<p>어장관리법 (`23.12.28.)</p> <hr/> <p>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23)</p>

기상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후변화 상황지도 시범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위주의 기후통계 및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도 기반으로 쉽게 조회하고 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추세 및 미래 전망정보 제공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24.10.25.)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 (042-481-7425)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육상특보구역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각 각 1개의 육상특보구역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광역시 3개 구역, 울산광역시 2개 구역의 육상특보구역 운영 	예보업무규정 ('24.5월)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496)
기상청 호우 긴급제한 문자(CBS) 직접발송 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지역 시범운영 수도권(서울·경기·인천)시범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운영 전한 및시범운영 지역 확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정규운영 실시 광주·전남 지역에 대한 시범운영 추가 실시 	-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493)
눈의 무게를 고려한 상세 강설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눈의 유무, 눈의 양에 대한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눈의 유무, 눈의 양과 함께 '무거운 눈'과 같은 정성적인 정보도 제공 	-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496)
악한 바람에 대한 정보로 황사·미세먼지 예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사·미세먼지 통합예보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총 4종) 상세 풍속 및 악한바람 구역 (지상/850hPa), PBL(행성경계층) 고도, 지상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사·미세먼지 통합예보맞춤형 기상정보 확대 제공(총 7종) 정체지수, 역전층 정보, 대기안정도 추가 제공 	-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49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데이터분쟁조정 제도 도입</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신설 • (대상) 데이터 관련 분쟁 • (방법)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www.ddrc.go.kr) • (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분쟁조정 신청 접수 ② 조정위원 구성 ③ 사실관계 확인 & 당사자 의견 청취 ④ 조정안 제시 ⑤ 수락시, 조정성립 • (비용) 무료 <p>☞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p>	<p>데이터산업법 (’22.4.20.)</p> <hr/>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 (044-202-6292)</p>
<p>연구실사고 인정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사고에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만 포함 • (범위)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조사대상)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연구실 • (보상대상)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후유장애·부상·질병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활동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공간에서 연구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연구실사고에 포함하도록 범위 확대 • (범위)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 • (조사대상)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연구실 및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 • (보상대상) 연구실 및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후유장애·부상·질병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활동 종사자 <p>☞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p>	<p>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4.5.1.)</p> <hr/>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2)</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통신비 부담 완화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비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23.11)의 후속조치로 '3만 원대 5G 요금제 신설' • 데이터 중·소량 이용자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3만 원대 5G 요금 신설 • 선택권이 제한적인 소량(30GB 이하)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이 보다 세분화 • 단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제조사와 협의하여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 3~4종이 '24년 상반기 내 출시 예정 ☞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보도자료)통신비 부담완화 방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2-6655)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출입물품 세관검사 수수료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물품 세관검사수수료 부과 • 세관공무원이 보세창고 등 세관 검사장이 아닌 장소에 출장검사 하는 경우 검사 수수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폐지 • 수수료 폐지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 ('23.7월) 	관세법 (’24.1.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7)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용도세율 적용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세율 적용대상 • 잠정세율, 긴급·특정국물품긴급·특별긴급·조정·할당·계절·국제협력·일반특혜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세율 적용대상 확대 • 덤핑방지, 상계, 보복, 편의 관세 추가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 ('23.7월)</p>	<p>관세법 (24.1.1.)</p> <hr/> <p>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7)</p>
<p>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소(§12) • 인증요건 미충족 시 취소 가능 • <신설> ■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 (§44) •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입수 또는 그 밖의 부정행위 방법으로 신청해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 원산지 등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 제출 또는 고의로 미제출한 자 등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필요적 취소사유 추가 • (좌동)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행위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함 ■ 부과대상 추가 • (좌동) • (좌동)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행위 방법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자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 ('23.7월)</p>	<p>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4.1.1.)</p> <hr/> <p>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1)</p>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발전설비는 전력시장 거래가 원칙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직접 공급 불가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ESS에 저장 후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판매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전력시장 외 거래 유형 신설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에 직접 공급 허용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ESS에 저장 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 신설 	<p>전기사업법 (‘24.5.1.)</p> <hr/> <p>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044-203-3916)</p>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계통영향평가) 평가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지역 내 입주하려는 신규 대규모 전력 소비자의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 평가 실시 ■ (분산^e 특화지역) 전력 직접거래 등 규제 특례 적용을 위한 특화지역 도입 ■ (배전망운영) 배전사업자에게 배전계통에 연결된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예측·감사·평가수행 등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 부여 ■ (통합발전소) 소규모의 분산에너지를 통합하여 시장에 입찰 참여하는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사업 신설 및 등록*제도 규정 <p>^e(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통과</p>	<p>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24.6.14.)</p> <hr/> <p>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07)</p>
사업재편 지원범위에 디지털전환·탄소중립 유형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재편제도 지원범위 • ① 과잉공급 해소, ② 신산업진출, ③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재편제도 지원범위 • ① 과잉공급 해소, ② 신산업진출, ③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④ 디지털전환, ⑤ 탄소중립 <p>^e(참고)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p>	<p>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24.3.29.)</p> <hr/> <p>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044-203-4231)</p>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수소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의 대한민국 수소경제 성과를 알리고 정부포상을 통하여 수소경제에 참여하는 산·학·연의 사기 진작을 위한 「수소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p>※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수소의 날」 세계(글로벌) 수소 선도국 도약 결의를 다져</p>	<p>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2.1.)</p> <hr/> <p>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044-203-3957)</p>
<p>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 명확히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2.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3.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분리발주 사유를 전기공사업법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사 3.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p>전기공사업법 (‘24.1.4.)</p> <hr/> <p>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6)</p>

중소벤처기업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기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 	<p>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 제74조 (’24. 미정)</p> <hr/> <p>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526),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3)</p>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일부를 보전(총 2,520억 원 규모) 	<p>소상공인법 제9조 (’24. 상반기 별도 공고)</p> <hr/> <p>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25)</p>

중소벤처기업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벤처기업법 상시화, 인재 유인책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주식 취득 조건: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 	<p>〈성과조건부 주식 활용 근거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주식 취득 조건: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 	<p>벤처기업법 (’24.7.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상 대학 교원 ■ 국공립기관 연구원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원 	<p>〈공공기관 연구원 휴·검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대학 및 연구원 	<p>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044-204-7706)</p>
<p>중소기업 기술보호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액의 3배 이내 	<p>〈중소기업 기술분쟁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액의 5배 이내 	<p>상생협력법 기술보호법 (’24.1.9. 공포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협력법: 자료범위 불명확 ■ 기술보호법: 자료요구권 없음 	<p>〈중소기업 기술분쟁 법원 자료송부요구권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협력법: 송부대상 자료 '행정조사 기록전체목록등' 명시 ■ 기술보호법: 행정조사 자료 활용 규정 신설 	<p>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044-204-7785)</p>

해양수산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중소·연안선사 지원제도 개편 및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중소 외항선사 •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중고선 및 S&LB - 보증: 친환경 신조 • (한도) LTV 70% 이내 • (기간) 5년 • (규모) 5년간 2,500억 ■ '대출이자 지원사업' 개편 • (대상) 중소 외항선사 ■ (신설) ■ 비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대상 홍보 및 컨설팅 실시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중소 외·내항선사 •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신조·중고선, S&LB - 보증: 신조·중고선, 선박 담보부 대출 • (한도) LTV 80% 이내 • (기간) 5년+1~3년(거치) • (규모) 5년간 5,000억 ■ '대출이자 지원사업' 개편 • (대상) 중소 외·내항선사 ■ '선박 담보부 보증사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사가 선박도입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선박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시, 선박의 잔여 담보가치에 대해 공사가 보증 제공 ■ 비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재 선사를 발굴하여 방문홍보 및 컨설팅 강화 • 환경규제 대응 바꾸쳐 지급 <p>☞ (참고)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보도자료)중소·연안선사 지원 확대(예정)</p>	(24.1분기)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17)
	해양수산 신기술 제품·공사 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한 조달특례 지원	<p>〈해양수산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의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절차 없음 <p>〈해양수산 신기술 적용제품·시설에 대한 조달 특례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시설 확인 절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확인 신청 • (확인) 신기술 적용 제품·시설에 대한 1,2,3차 심사·평가를 거쳐 확인서 발급 ■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 ■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 ■ 계약예규상 기술능력분야 평가방법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 신기술을 활용한 실적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개정 (24.9.15. 시행)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44-200-6221)

관세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우수재활용 인증제품 원산지증명서 간편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수산물의 생산자 및 제조자 등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FTA 활용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 ■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하는 품목 및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품목(별표 1)~(별표 5)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설〉 • 인정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수산물, 식품 및 재활용 물품의 ----- ----- ----- ■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하는 품목 및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별표 6] ---- ⑥ [별표 6] 재활용 공산품: 25개 품목 • 인정서류 <table border="1" data-bbox="546 632 826 768"> <tr> <td>재활용공산품</td> <td>⑥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서</td> <td>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td> <td>국가기술 표준원 지원순환 산업 인증원</td> <td>서식 19</td> </tr> </table> <p>☞ (참고) 관세청 홈페이지)보도자료 공지(사항)친환경 정책 보도자료</p>	재활용공산품	⑥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국가기술 표준원 지원순환 산업 인증원	서식 19	<p>「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23.9.7.)</p> <p>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1-481-7968)</p>
재활용공산품	⑥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국가기술 표준원 지원순환 산업 인증원	서식 19				

특허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범위는 50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700만 원까지 확대하고, •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 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p>* 법인세법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p> <p>☞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p>	<p>소득세법시행령 (24.1.1.)</p> <p>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5920)</p>

특허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되어 있는 상표 또는 먼저 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출원하더라도 등록이 거절됨 * (선등록) 상표법 §34①7 거절 이유 적용 * (선출원) 상표법 §35① 거절 이유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도 선권리자가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등록받고 사용이 가능함 • 적절한 동의서에 의해 상표법 §34①7 또는 §35①의 거절이유 해소됨 • (예외)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표장 및 지정 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 적용 제외 <p>☞ (참고) 특허청홈페이지)보도자료)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소상공인 상표 사용에 '숨통'</p>	<p>상표법 (*24.5.1.)</p> <hr/> <p>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p>
<p>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전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우선심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국가첨단기술 분야를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어 이차전지로 확대 ■ 우선심사 대상인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를 17개 분야에서 19개 분야로 확대 <p>* 4차 산업혁명 19대 기술 분야: 기존 ①인공지능, ②사물인터넷, ③삼차원 프린팅, ④자율주행차, ⑤빅데이터, ⑥클라우드컴퓨팅, ⑦지능형로봇, ⑧스마트시티, ⑨가상·증강현실, ⑩혁신신약, ⑪신재생에너지, ⑫맞춤형 헬스케어, ⑬드론, ⑭차세대 통신, ⑮지능형반도체, ⑯첨단소재, ⑰블록체인) + 추가(⑬스마트제조, ⑰차세대 바이오 의약품)</p> <p>☞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주요제도)특허/실용신안제도)우선심사제도</p>	<p>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 (*24.1월 잠정)</p> <hr/> <p>특허청 특허제도과 (042-481-8243)</p>

특허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심판청구서 직권보정제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판장은 각 보정사항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도록만 규정 <p>제141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은 동일하지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는 단서 추가 <p>제141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① ----- ----- -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④ 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은 제1항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권보정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청구인이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p>	<p>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24.3.15.)</p> <p>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481-5583)</p>
<p>심판참고인제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특허법」은 특허심판에서 '이해관계인'만 심판청구 또는 심판 참가(=소송당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 <p>■ <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법」 제154조의3에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특허법」 제154조의3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실용신안법에도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 <p>제154조의3(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의 선정 및 비용, 준수사항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24.3.15.)</p> <p>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481-5583)</p>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GTX-A 개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TX-A 전 구간 공사 중 • 수서~동탄 79분 소요(지하철, 버스 기준) • 파주 운정-서울역 50분 이상 소요(지하철, 버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TX-A 개통 • 3월 수서~동탄 개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서~동탄 19분 소요 • 연말 파주 운정-서울역 개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정-서울역 20분 소요 <p>※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GTX-A 수서~동탄, 종합시험운행 본격 착수</p>	<p>-</p> <p>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044-201-3981)</p>
출산가구에 특별 (우선)공급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가구 중심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 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출산 시 특별(우선)공급 제도 신설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 •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분양: 연 3만호 수준 - 민간분양: 연 1만호 수준 - 공공임대: 연 3만호 수준 <p>※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아이와 함께 행복한 일상, 출산 가구 주택 지원 강화한다.</p>	<p>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4.3.25.)</p> <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4.3.25.)</p> <p>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17)</p> <p>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p>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날에 모두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 • 동시 당첨시, 모두 부적격 처리 및 6~1년간 청약신청 제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날에 모두 당첨된 경우 선 접수분 당첨 효력 인정 • 동시에 당첨될 경우 先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 인정 • 당첨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당첨자에 대해서는 당첨자로 관리하지 않으며, • 청약통장을 미사용한 것으로 간주 <p>※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p>	<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4.3.25. 예정)</p> <p>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p>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 도입</p>	<p>■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대중교통 이용 전·후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적립(최대 60회)</p> <table border="1" data-bbox="308 446 520 553"> <thead> <tr> <th>알뜰</th> <th>~2천 원</th> <th>2~3천 원</th> <th>3천 원~</th> </tr> </thead> <tbody> <tr> <td>일반</td> <td>~250원</td> <td>~350원</td> <td>~450원</td> </tr> <tr> <td>청년</td> <td>~350원</td> <td>~500원</td> <td>~650원</td> </tr> <tr> <td>저소득</td> <td>~700원</td> <td>~900원</td> <td>~1,100원</td> </tr> </tbody> </table> <p>비고 이동거리 비례 적립(최대800m)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p>	알뜰	~2천 원	2~3천 원	3천 원~	일반	~250원	~350원	~450원	청년	~350원	~500원	~650원	저소득	~700원	~900원	~1,100원	<p>■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 환급 (최대 60회)</p> <table border="1" data-bbox="546 446 817 553"> <thead> <tr> <th>알뜰</th> <th>적립률</th> <th>예) 1,500원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일반</td> <td>20%</td> <td>300원</td> </tr> <tr> <td>청년</td> <td>30%</td> <td>450원</td> </tr> <tr> <td>저소득</td> <td>53%</td> <td>800원</td> </tr> </tbody> </table> <p>비고 이동거리 무관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p>	알뜰	적립률	예) 1,500원 기준	일반	20%	300원	청년	30%	450원	저소득	53%	800원	<p>대중교통법 제10조의 12 (‘24. 상반기 개정안 시행 예정)</p> <p>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044-201-5082)</p>
	알뜰	~2천 원	2~3천 원	3천 원~																											
일반	~250원	~350원	~450원																												
청년	~350원	~500원	~650원																												
저소득	~700원	~900원	~1,100원																												
알뜰	적립률	예) 1,500원 기준																													
일반	20%	300원																													
청년	30%	450원																													
저소득	53%	800원																													
<p>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리강화</p>	<p>■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p> <p>1. ~ 28. (현행과 같음) (신설)</p> <p>29. (생략)</p> <p>②·③ (생략)</p> <p>■ 제11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① 영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p>1. ~ 5. (생략) (신설)</p> <p>② (생략)</p>	<p>■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 ----- ----- ----- ----- ----- ----- ----- ----- ----- -----</p> <p>1. ~ 28. (현행과 같음)</p> <p>2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30. (현행 제29호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① ----- ----- ----- ----- ----- ----- -----</p> <p>1. ~ 5. (생략)</p> <p>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p> <p>② (현행과 같음)</p>	<p>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24년)</p> <p>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3)</p>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용적률 완화는 법적상한 내에서만 가능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 ■ 용적률 완화는 법적상한 내에서만 가능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그 요청을 수락할 경우 정비 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함 ■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의 용적률 완화는 법적상한의 1.2배까지 가능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p>※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9560호, 시행 2024.1.19.)</p>	<p>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4.1.19.)</p> <hr/> <p>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4)</p>
<p>항공 및 위치서비스 분야에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본격 시행</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PS의 위치오차를 3m 이내로 보정하는 신호를 우리나라 전역에 제공해 현재보다 정확도 높은 정밀위치정보 활용 <p>※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 항공위성서비스(KASS)로 위치정보서비스 정확성 높인다.</p>	<p>(‘23.12.28)</p> <hr/> <p>국토교통부 항행위성 정책과 (044-201-4350)</p>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 별도의 번호판 없이 일반 번호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새로운 등록번호판 제도 시행 • (적용대상) 취득가액 8천만 원 이상의 승용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소유 - 법인명의 리스-렌트(1년이상 장기) 차량 - 관용차(보안, 경호, 수사 등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 • (취득가액 판단기준) 자동차 제작증상 출고가액이 8,000만 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 차량(중고차)은 취득세 과세 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 • (번호판의 색상) 연녹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인트 방식,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도입 • (적용대상) '24.1.1이후 신규 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는 승용차 <p>☞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4년시행 정책 및 예산사업</p>	<p>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24.1.1.)</p> <p>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57)</p>
<p>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 연관기업 대출이자 지원을 조정 (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매입비·건축비·분양비의 대출금 이자액 기준금리 • (원칙) 연2.0% 이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매입비·건축비·분양비의 대출금 이자액 기준금리 • (원칙) 집행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 (예외) 단, 시도에서 사업예산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낮은 비율로 지원 가능 	<p>가이드라인 제정 ('18.1.1.)</p> <p>이자액 지원을 조정(개정) ('23.12.15.)</p> <p>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 (044-201-4470)</p>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사공능력평가 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 이하 ■ 신인도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30% 이하 • 부실벌점: 벌점에 따라 (-)1%~(-)3% 감점 • 사망사고만인율에 따라 (-)3~(-)5%로 감점 • 불공정행위: 벌폐입찰 등 과징금 (-)5% 감점 • 영업정지(과징금): 부실시공 한정 정지월수×(-)1% 감점 • 건설신기술: 신기술지정시 (+)2% 가점 • 해외건설: 해외건설인력고용 (+)1%~(+2) 가점 • 부도: 건설사 회생, 워크아웃 등 (-)5% 감점 • 고용평가: 등급에 따라 (+)3~(+5) 가점 • 체불: 상습체불사업자 등 (-)30% 감점 <p>(이하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2.5배 이하 ■ 신인도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50% 이하 • 부실벌점: 벌점에 따라 (-)1%~(-)9% 감점 • 사망사고만인율에 따라 (-)5%~(-)9%로 감점 • 불공정행위: 벌폐입찰 등 과징금(-)7% 감점 • 영업정지(과징금):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정지월수×(-)2% 감점 • 건설신기술: 신기술지정시 (+)4% 가점 • 해외건설: 해외건설인력고용 (+)3%~(+5) 가점 • 부도: 건설사 회생, 워크아웃 등 (-)30% 감점 • 고용평가: 등급에 따라 (+)4~(+6) 가점 • 체불: 상습체불사업자 등 (-)30% 감점, 대금체불시정명령 (-)4% 감점 • 시공평가: 시공평가 점수(-)2%~(-)4% 감점 • 하자발생: 하자보수 시정명령 횟수 ×(-)4% 감점 • 안전관리수준평가: 점수에 따라 (+)2% 가점 또는 (-)2%~(-)4% 감점 • 중대재해: 중대재해로 처벌 (-)10% 감점 • 불법행위 근절노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4% 가점 • 환경법 위반: 소음, 폐기물 등 법령 위반시 (-)4% 감점 <p>※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건설사업기본법 시행규칙</p>	<p>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3.12.27.)</p> <hr/> <p>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2)</p>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건설기계 수급조절 일부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및 3톤 미만 소형타워크레인(‘20.7월 이전 형식신고) 신규등록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 타워크레인(‘20.7월 이전 형식신고한 3톤 미만) 신규등록 제한 유지 ■ 영업용 덤프트럭은 전년도말 등록대수 기준 3% 범위내 신규등록 허용 ■ 영업용 콘크리트펌프는 전년도말 등록대수 기준 5% 범위내 신규등록 허용 	<p>건설기계관리법 (‘24.1.1.)</p> <hr/> <p>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37)</p>
<p>도로점용허가 모바일 기반 서비스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점용허가증 수작업발급(우체국 발송) • 허가증 수작업 작성 • 1차 등기우편 발송 • 2차 등기우편 발송(1차 등기 반송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 발급(시스템 발송) • 허가증 자동생성 • 1차 모바일 자동발송 • 2차 등기우편 자동발송(모바일 미수신자) 	<p>도로법 제61조 (‘24.1월)</p> <hr/> <p>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044-201-3917)</p>
<p>K-드론 배송 상용화 표준모델 본격 시행</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단위사업으로 선정시 섬·공원·항만 대상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지자체 사전 설명회(‘23.12), 공모 및 선정(‘24.1-2), 사업 시행(‘24.3-) - (규모) 섬배송* 10개(광역·도) 이내, 공원 5~10개(시·군) 이내, 항만 3개 이내 	<p>(‘24.3월)</p> <hr/> <p>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044-201-4206)</p>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리츠 자산운용 전문인력 보수교육 도입</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츠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 3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의무 <p>※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 보도자료)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	<p>부동산투자회사법 (‘24.2.17.)</p> <hr/> <p>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044-201-3415)</p>
<p>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스터플랜 수립) 정비기본방침(정부)·정비기본계획(1기 신도시)을 '24년 중 투트랙으로 수립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침) 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한 적정밀도 계획, 단계별 정비물량 산정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제시 - (도시 재구조화) 인구·산업구조 변화, 주거 환경 개선요구 등을 반영 하여 낡은 신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제시 (특례규정) 특별정비구역 내 안전진단 완화·면제, 도시·건축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여, 이주단지 조성 등 공공성 인정 시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면제 <p>※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보도자료) '23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본회의 의결</p>	<p>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자원에 관한 특별법 (‘24.4월)</p> <hr/> <p>국토교통부 도시정비산업과 (044-201-4958)</p>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은 지하층, 학교, 청사, 주민공동시설 등은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 ■ 건축법에 의한 주상복합 건축 사업은 사업인 건축 연면적 산정시 제외규정 없음 ※ 부과산식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공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건축법에 의한 주상복합건축사업의 건축 연면적 산정시 지하층, 학교, 청사, 주민 공동시설 등은 제외 ※ 부과산식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지하층, 학교, 청사, 주민공동시설, 복리시설 등 면적 제외)} - 공제액 	<p>광역교통법 (‘24.7.1.)</p> <p>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044-201-5050)</p>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작권지정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지구를 운영 하려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 이상의 사도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가능 	<p>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지원에 관한법률 (‘24.7월)</p> <p>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044-201-3852)</p>
고등교육법 상 학교 (대학·전문대 등)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 상 '단지내도로'에 포함하여 대학 내 도로의 교통안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사고 발생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 상 '단지내도로'에 포함 •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의무화 및 지자체장의 실태점검 시행 	<p>교통안전법 개정 (‘24.8.17.)</p> <p>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044-201-3868)</p>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경제활동 및 지방시대를 지원하는 도로 연결망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간 이동시간 정제 ● 파주~양주(파주읍~양주시 회암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거리 : 33km - 이동시간 : 41분 ● 안성~구리(금광면 장죽리~구리시 토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거리 : 81km - 이동시간 : 54분 ● 국립생태원~서천C(마서면 송내리~화양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거리 : 11km - 이동시간 : 15분 ● 화성 팔탄~봉담(팔탄면 가재리~봉담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거리 : 5.2km - 이동시간 : 15분 ● 천안 서북~성거(서북구 신당동~성거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거리 : 7.7km - 이동시간 : 15분 ● 안동 용상~교리1(서후면 교리~안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거리 : 12.9km - 이동시간 : 2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간 이동시간 단축 ● 파주~양주(파주읍~양주시 회암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거리 : 24.8km(8.2km 단축) - 이동시간 : 15분(26분 단축) ● 안성~구리(금광면 장죽리~구리시토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거리 : 64.1km(16.9km 단축) - 이동시간 : 35분(19분 단축) ● 국립생태원~서천C(마서면 송내리~화양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거리 : 10km(1km 단축) - 이동시간 : 10분(5분 단축) ● 화성 팔탄~봉담(팔탄면 가재리~봉담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거리 : 5.2km - 이동시간 : 5분(10분 단축) ● 천안 서북~성거(서북구 신당동~성거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거리 : 4.4km(3.3km 단축) - 이동시간 : 5분(5분 단축) ● 안동 용상~교리1(서후면 교리~안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거리 : 8.4km(4.5km 단축) - 이동시간 : 10분(15분 단축) 	<p>-</p> <p>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044-201-3891)</p>
<p>생활물류법상 운송수단을 드론·로봇까지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물류법 제2조(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배서비스사업 :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 ● 제5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 ● 생활물류법 제2조(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배서비스사업 현행과 같음 ● 제3호(신설)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 이륜자동차,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여 ~ 	<p>「생활물류법」 (*25.1월) *개정안 통과 (*23.12.20.)</p> <p>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044-201-4152)</p>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지원대상) 19~34세 소득 3천 6백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원 • (저축금액) 2~50만 원 • (이자혜택) 우대금리 제공 (1.5%p)을 통해 최대 4.3% 이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지원대상) 19~34세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 (저축금액) 2~100만 원 • (이자혜택) 우대금리 제공(1.7%p)을 통해 최대 4.5% 이자지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4.2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4)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신규 개장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항 '컨' 부두 하역능력 증가 •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하역능력 합산 (만TEU) * ('22) 2,108만TEU → ('23) 2,303만TEU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항만 준공 기념, 자동화장비 시연행사 개최 보도자료 	부두개장 ('24. 상반기)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3)
항만종합서비스업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수·감정·검량사업자와 항만 운영업자가 각각 업종별로 사업을 등록하여 개별적으로 항만서비스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검수·감정·검량사업과 항만운영업을 통합한 항만종합서비스업을 도입하여 필수 항만 서비스(검수·감정·검량사업, 항만운영업)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내실화 • (필수 업종) 검수·감정·검량사업 중 1개 이상과 항만운영업 중 화물고정업 및 출잡이업을 포함 	항만운송사업법 ('23.12.21.)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200-5773)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항만물류 R&D로 입주대상 제한 ● 핵심산업: 해운항만물류 R&D ● 신청업종: 연구개발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으로 해양산업 R&D수행시 입주 가능 ● 핵심산업을 '해운항만물류R&D'에서 '해양산업 R&D'로 확대 ● '연구개발업'으로 제한된 기업 업종 폐지 <p>☞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4년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대상 확대 보도자료</p>	<p>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 개발계획 (24.4월)</p> <hr/> <p>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7)</p>
<p>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사업자가 개발한 전체 토지 중 투입한 총사업비 만큼 토지 취득후 직접사용 또는 분양하며, 분양가액 제한은 없으나, 초과 이익에 대한 개발이익을 공공시설에 재투자 필요 ■ 민간사업자가 개발한 토지 중 국가귀속 토지에 대하여 민간 사업구역에 반영된 토지는 매도 청구를 통해 취득 후 분양이 가능하며, 이때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절하지 못함 ■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절차 진행 ■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실시 계획 승인을 받더라도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사업자가 개발한 전체 토지 중 투입한 총사업비 만큼 토지 취득 후 일정비율 (40%) 이상 직접 사용해야 하며, 잔여부지 분양시 분양가액을 총사업비의 115% 이내로 제한하는 분양가액 상한제를 도입 하고 실효성이 없는 개발이익 환수조항 삭제 ■ 민간사업자가 개발한 전체 토지 토지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되, 일정규모(40%) 이상을 공용-공공용 토지로 계획하여 민간사업자의 매도청구를 제한하여 공공성을 강화 ■ 항만배후단지 조성 및 이용계획 등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승인' 받는 절차로 개선 ■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 시 항만시설 사용허가에 대하여 의제처리 가능 <p>☞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예정)</p>	<p>항만법 (*24. 하반기)</p> <hr/> <p>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9)</p>

경찰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보호구역 실태조사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구역 실태조사와 관련된 규정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아래 교통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실태조사 하고, 결과를 보호구역 운영에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 발생현황 - 차량 통행량 -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등 <p>※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도로교통법 법률 제19357호</p>	<p>도로교통법 (24.1.1.)</p> <hr/> <p>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753)</p>
자동변속기 조건부 1중 보통면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중 보통면허에만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중 보통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여,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 1중 자동·수동 면허를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함 <p>※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431호</p>	<p>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4.10.20.)</p> <hr/> <p>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253)</p>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음주운전방지 장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각종 정책 실시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감소하지 않던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으로, 음주운전방지 장치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여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함 <p>※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도로교통법 법률 제19745호</p>	<p>도로교통법 (24.10.25.)</p> <hr/> <p>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253)</p> <p>교통안전과 (02-3150-2252)</p>

조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레미콘 우선납품의무제 도입</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공사현장 레미콘 우선납품제 도입 • (운영) 각 지방청 단위로 '민관수급협의회'를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수급협의회'에서 중요공사 현장 및 우선납품대상 물량을 선정 • (납품) 계약상대자는 우선납품제로 통보된 현장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납품일정에 따라 납품 • (관리) 우선납품의무제를 위반하여 납품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는 지체상금 부과 및 거래정지·물량배정중단 등 제재조치 	<p>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24.3.1.)</p> <hr/> <p>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042-724-7068)</p>
<p>시설공사 적격심사 건설안전 평가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종합공사) 사고사망만인율 가점 부여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종합공사) 사고사망만인율 가감점 부여 • (전문공사) 사고사망만인율 가감점 신설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없음 	<p>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24.1.1.)</p> <hr/> <p>조달청 시설총괄과 (042-724-7085)</p>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대한 장기 전략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 농촌특화지구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7개 농촌특화지구 도입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시·군 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지원 	<p>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24.3.29.)</p> <hr/> <p>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16)</p>
<p>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 요건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초지: ‘17~‘19년 조건불리지역소득 보조금 1회 이상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초지: ‘03~‘05년 농업에 이용된 초지로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초지 	<p>「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2. 개정 예정)</p> <hr/> <p>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 (044-201-1564)</p>
<p>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규모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51~70세 여성농업인 • (규모) 9천 명 • (내용)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51~70세 여성농업인 • (규모) 3만 명 • (내용)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 <p>☞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확정</p>	<p>여성농업인 육성법</p> <hr/> <p>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044-201-1566)</p>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농촌 왕진 버스) 도입</p>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농촌 왕진버스) 지원 예정 	<p>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74)</p>
<p>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p>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첫 시행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증 <p>※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첫 시행</p>	<p>동물보호법 (‘24.4.27.)</p> <hr/> <p>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044-201-2660)</p>
<p>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 대해 적용(전체 5천여 개소 중 1천여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의사 1인 이상 모든 동물병원에 확대 적용(5천여 개소) 	<p>수의사법 (‘24.1.5.)</p> <hr/> <p>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044-201-2652)</p>
<p>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p>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규 도입 <p>* 중간물때기(15만 원/ha) 논물 알개 걸러대기(16만 원/ha) 바이오차 투입(36.4만 원/ha) 저메탄사로 급이(2.5만 원/두) 환경개선사로 급이(0.5만 원/두)</p>	<p>(‘24. 1분기)</p> <hr/> <p>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044-201-2632)</p>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육성·지원체계) 기본계획 수립, 지원센터 지정, 실태조사 • (인력양성)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 (기반조성) 기술 개발·실증, 기자재 검정, 표준화 사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거점단지 지정 • (보급·확산) 육성지구 지정,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국제협력, 수출지원 <p>☞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스마트농업법 국회 본회의 의결</p>	<p>스마트농업법 (‘24.7.26.)</p> <hr/> <p>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044-201-2421)</p>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 되지 않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0 이하이어야 하고, 같은 고시에서 잔류허용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0.01mg/kg 이하일 것 • 농가는 농업환경 보전효과를 높이는 방법과 비의도적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p>☞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p>	<p>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23.12.13.)</p> <hr/> <p>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7)</p>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농직불금 단가 120만 원/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농직불금 단가 130만 원/가구 	<p>농업농촌 공익직불법 (‘24.3.2.)</p> <hr/> <p>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044-201-1772)</p>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바이오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육성·지원 제도적 기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 ‘그린바이오산업’ 개념을 6대 분야(증자·동물용의약품·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 등 관련 제품·서비스 생산·판매 산업으로 명확화 • 벤처창업, 인력양성, 실태조사, 전담기관, 혁신기술 개발, 그린바이오 기업 데이터활용 지원 등 신산업 육성 지원 • 신산업 수요 견인을 위해 그린바이오 제품(생물농약,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공공 우선구매제 도입 등 추진 • 산업 성장 및 지역 확산을 위해 육성지구에 대한 첨단 연구·개발·생산 시설, 원료 공급 시설 설치 등 지원 <p>☞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p>	<p>「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4.1.2. 공포(잠정))</p> <hr/> <p>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044-201-2134)</p>
<p>축산 농장 건축 면적에 전실 면적 미산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실은 방역시설에 해당하여 축산 농장의 건축 면적 산정 시 전실 면적도 포함 • 축산 농장의 건폐율이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전실 설치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실을 소독설비로 재분류하여 축산 농장의 건축 면적에 전실 면적을 미산입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9)에 따라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 면적에 미산입 • 따라서 축산 농장의 건폐율에 관계없이 전실 설치 가능 <p>☞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24.3.15. 시행)</p>	<p>가축전염병 예방법 (‘24.3.15.)</p> <hr/> <p>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19)</p>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청년들에게 힘 보태는 '천원의아침밥' 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지원 예산 및 규모: 25억 1백만 원, 233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지원 예산 및 규모: 43억 1천6백만 원, 397만 명 	<p>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044-201-1842)</p>
전락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대상품목 및 직불금 단가 • (동계작물) 밀, 보리 등 동계 식량 사료 작물(50만 원/ha) • (하계작물) 논콩가루쌀(100만 원/ ha), 하계조사료(430만 원/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정부안) 대상품목 및 직불금 단가 • (동계작물) 밀, 보리 등 동계 식량 사료 작물(50만 원/ha) • (하계작물) 두류가루쌀(200만 원/ha), 하계조사료(430만 원/ha), 옥수수(신규, 100만 원/ha) * 기존 논콩에 녹두, 참두, 완두, 팥을 포함 하여 대상 품목 두류로 확대 * 하계작물에 옥수수(식용) 신규 추가 	<p>전락작물직불금사업시행 지침서 (24.1.1.)</p> <p>가루쌀산업육성반 (044-201-2915)</p>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추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메탄사료) 일반 사료 대비 10% 이상 메탄저감 효과 기대 ■ (환경개선사료) 일반 사료 대비 단백질 함량을 2%p 낮춘 사료로 가축 분뇨로 배출되는 잉여 질소 감축을 통해 아산화질소 발생 저감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농식품부, 메탄 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p>	<p>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23.10.4.)</p> <p>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지원과 (044-201-2359)</p>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등 금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진열 금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p>☞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관리법</p>	<p>사료관리법 (24.4.25.)</p> <p>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지원과 (044-201-2359)</p>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축산물 PLS제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 • 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 설정된 잔류허용기준 적용 • 기준이 미설정된 동물용의약품 적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CODEX 기준 ② 유사축종 최저기준 ③ 평균제 0.01 mg/kg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 적용방법 변경 • (변경 전과 동일) • 기준이 미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0.01 mg/kg 이하로 일률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성장보조제(성장촉진호르몬제 등),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적용 ※ 적용대상: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달걀 <p>☞ (참고) 농식품부 누리집 정책자료(영상) 농식품부 정책이야기(축산물 PLS 교육영상)</p>	<p>식품의 기준 및 규격 ('24.1.1.)</p> <hr/> <p>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044-201-2978)</p> <p>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043-719-3853)</p>
<p>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라 발생한 해외농업 산림자원개발 기업의 손실에 대한 국가 보상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상 비상시 반입 의무 규정(제33조) • 명령에 따를 의무는 부과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은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 • 비상시 반입명령 발령 시 손실보상 의무 규정 신설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해 해외농업-산림 자원 반입 명령의 실효성을 높인다.</p>	<p>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24.10.25.)</p> <hr/> <p>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044-201-2040)</p>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지역농림어업 발전 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복지 증진, 지역 주인의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농림어업협력법 시행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추진 시 기존 정부 지원사업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서 민간의 지식과 경험, 자본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전에 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민간에게 성과보상금을 지원하는 성과보상금제 실시 	<p>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3.12.28.)</p> <hr/> <p>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11)</p> <p>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0)</p>
<p>「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농장, 지역서비스공동체는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으로 사회적 농장 및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제 운영(‘24.8.17. 이후) 조직, 인력, 운영계획 등 요건을 갖추면 농식품부, 지자체 지정 기존 지원사업자는 농촌돌봄농장,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원 	<p>농촌경제 사회서비스법 (‘24.8.17.)</p> <hr/> <p>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72)</p>
<p>농촌관광 콘텐츠 발굴 및 판매채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경영체 또는 협의회 단위 농촌관광 상품 개발 및 판매지원 소규모(개별경영체), 지역단위, 주민주도 농촌관광 콘텐츠 발굴 온라인 여행사(OTA) 연계 판매 지원 상품 수 한정(4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관광 콘텐츠 다변화 및 온라인 판매·홍보 강화 우수한 농촌관광 경영체의 콘텐츠를 연계한 테마 상품을 신규로 발굴(‘농촌크리에이 투어(CREATOUR)’) 온라인 여행사(OTA) 연계 농촌관광 상품 판매지원 확대 	<p>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044-201-1582)</p>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맹견사육허가 및 기질 평가제 도입</p>	<p>■ 5개 품종 및 그 잡종에 대하여 맹견 지정</p> <p>• 도사견, 핏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볼테리어, 로트와일러</p> <p>(신설)</p>	<p>■ 기질평가 통해 맹견 추가지정</p> <p>• (대상)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개,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개</p> <p>☞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p> <p>■ 맹견사육허가제 도입</p> <p>• (허가조건) 중성화, 동물등록, 책임보험, 기질평가 등</p> <p>•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사육허가 거부 가능</p> <p>☞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p>	<p>동물보호법 (*24.4.27.)</p> <p>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 동물의료팀 (044-201-2662)</p>
<p>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본격화</p>	<p>(신설)</p>	<p>■ 4대 주력산업 육성, 성장 인프라 구축, 해외 수출산업화, 추진체계 마련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본격 육성</p> <p>•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육성 전략을 추진</p> <p>• 펫푸드 등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호와 상품성 실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인프라 조성</p> <p>• 시장조사부터 수출바우처, 해외 규격인증 등 수출산업화 지원</p> <p>• 연관산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검토</p>	<p>(*24년 예정)</p> <p>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044-201-2656)</p>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동물용의약품 수출 확대 위한 GMP 인증 제도 신설</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용의약품 수출확대를 위해 GMP 인증제도 신설 • 수출 상대국에서 자국 규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제조 시 GMP 기준을 요구하나 국내에는 없음 •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을 개정하여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자 중 수출을 목적으로 GMP 기준을 적용하려는 업체를 위해 제도 신설 <p>☞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예정)</p>	<p>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24. 상반기)</p> <hr/> <p>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5)</p> <hr/> <p>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044-201-2552)</p>
<p>쾌적한 농촌 환경을 위한 방치된 농업기계 강제처리 제도 도입</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된 농업기계 강제처리 법적 근거 마련 •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일정기간 이상 농업기계를 방치해서는 안되는 의무 부과 • 방치된 농업기계는 지자체장이 일정 장소로 옮긴 후 소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따르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매각 폐기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보도자료 배포(예정)</p>	<p>농업기계화촉진법 (*24.6.21.)</p> <hr/> <p>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증자과 (044-201-1896)</p>
<p>건전한 과수 묘목 공급 활성화 정책추진 강화</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법률 시행 (*23.12.28.) • 종자의 무병화인증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종자) 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의 묘목 - (무병화인증 신청) 정부가 지정한 무병화 인증기관에 포장재식후 1개월 이내 - (인증 유효기간) 1년 - (인증표시) 1주 또는 10주 단위 • 판매의 목적의 자가소비·연구용 등 종자 수입신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종자) 과수 - (신고처) 국립종자원 - (신고서류) 시행규칙 별지제26호의2호 사용 •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실시 (2년마다 6시간 이상 이수) 	<p>종자산업법 (*23.12.28.)</p> <hr/> <p>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증자과 (044-201-2479)</p>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고위험 동물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 가축질병 및 신·변종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가축질병협력체계고도화 연구 중점 지원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 사업공고 ('24.1월)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생명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농산업혁신융기술개발, 성과연계 마이크로바이옴산업화 연구 중점 지원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 사업공고 ('24.1월)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농식품 융합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미래 신산업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양성 연구 중점 지원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 사업공고 ('24.1월)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농업고용인력전문기관 운영, 실태조사, 노무관리, 인권보호 교육·상담 실시 등 농업 분야 고용인력에 대한 농업인력 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운영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17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23.2.14. 공포, '24.2.15. 시행) •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을 운영하여 노무관리·인권보호 교육·상담 등 지원 •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시행 • 기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시·군·구인력지원센터로 변경, 시도 인력지원센터 신규 지정,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착 지원 강화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입법예고) 「농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p>	<p>농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24.2월)</p> <p>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044-201-1724)</p>
<p>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재해보험 가입기준 • '23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가능한 품목이 70개 • 수입보장보험 운영 품목 7개 (고구마, 가을감자, 콩, 양배추, 마늘, 양파, 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재해보험 품목 확대 • 품목 3개(두름, 블루베리, 수박)를 신규 도입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가능 품목이 73개로 확대 • 3개품목 추가하여 10개 품목 판매 	<p>('24. 상반기)</p> <p>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2)</p>
<p>청년농업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지자체별 정보 분산 제공 • 청년 영농 정보 확인 위해 해당 홈페이지별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농업 관련 통합 정보제공 홈페이지 구축 • (지원사업) 중앙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을 분야(농지, 주거, 일자리 등), 단계(준비, 창업, 성장 등)별로 맞춤형 정보 제공 • (우수사례) 지역별, 품목별 우수사례 제공 • (관련사이트 연계) 영농 관련 정보를 제공 하는 사이트 정보를 분야별로 제공 • (지역별 안내) 관심 지역의 정보문의가 가능하도록 지역별 사업담당자 연락처 제공 • (뉴스 및 문의) 주요 영농뉴스 제공 및 영농 문의 질의답변 게시판 마련 	<p>후계청년 농업인법 ('24. 하반기)</p> <p>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정책팀 (044-201-1532)</p>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청년 맞춤형 농업 창업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생활) 정착지원금 지원 규모 4천 명 ■ (농지) 맞춤형 농지지원 물량 2,760ha ■ (주거) 청년농촌보금자리 신규 조성 4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생활) 정착지원금 지원 규모 5천 명으로 확대 ■ (농지) 맞춤형 농지지원 물량 4,210ha로 확대 ■ (주거) 청년농촌보금자리 신규 조성 8개소로 확대 	<p>후계청년농업인법 ('24.1월)</p> <hr/> <p>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 (044-201-1558)</p> <p>청년농육성정책팀 (044-201-1532)</p>
지역경제활성화펀드 신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지역펀드'는 특정 지자체 단독으로만 참여하여 100억 원 규모로 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지자체가 출자 가능한 '지역경제활성화펀드'를 5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 • 펀드에 출자한 각 지자체 출자금의 2배 이상을 해당 지자체 소재 농식품 기업에 의무투자 	<p>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24. 하반기)</p> <hr/> <p>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2)</p>
식품·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원가부담 완화 등 지속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10%p 상향 • '22.7.1.~'23.12.31. ■ 영세 개인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8/108 → 9/109) 확대 • '22.7.1.~'23.12.31. ■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 '22.7.1.~'23.12.31. ■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 면세 • '22.7.1.~'23.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p 상향 • '24.1.1.~'25.12.31.(2년 연장) ■ 영세 개인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8/108 → 9/109) 확대 • '24.1.1.~'26.12.31.(3년 연장) ■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 '24.1.1.~'25.12.31.(2년 연장) ■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 면세 • '24.1.1.~'25.12.31.(2년 연장) 	<p>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식품외식산업과 (044-201-2123, 2157)</p> <p>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2)</p>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p>	<p>■ 푸드테크 스타트업에 특화된 인프라 부족</p>	<p>■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3개소, 총 사업비 315억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 1분기 공모를 통해 선정 예정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보도자료)2024년 농식품부 예산안 18조 3천억 원 편성</p>	<p>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044-201-2126)</p>
<p>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K-미식벨트 조성</p>	<p>(신설)</p>	<p>■ 국내 향토음식-경관자원을 활용한 미식 관광상품 개발·보급(~32년까지, TOP30)</p>	<p>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044-201-2155)</p>
<p>권위있는 국제미식행사 첫 한국 유치</p>	<p>(신설)</p>	<p>■ 미식계의 아카데미상, 「2024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서울 개최('23.3월)</p>	<p>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044-201-2152)</p>
<p>곤충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p>	<p>■ 곤충가공업 및 곤충유통업만 산업단지 입주 허용</p>	<p>■ 곤충생산업도 입주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곤충가공업을 위해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해당 공장의 제조공정에 원료 또는 재료로 전량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부대시설의 범위에 포함 <p>※ (참고) 행정안전부홈페이지) 보도자료) 규제해소 관련 보도자료 ('23.9.20.)</p>	<p>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2월 잠정)</p> <hr/> <p>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044-201-2142)</p>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가축 분뇨의 차량 외부 유출 방지 관련 규정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 관련 규정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운송업자는 가축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가축운송업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p>※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24.9.15. 시행)</p>	<p>가축전염병 예방법 (24.9.15.)</p> <hr/> <p>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19)</p>
<p>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예는 별도의 동물용 전용 제조 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및 제조품목 허가를 받도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반려동물용 의약품 전용 제조시설을 별도 설치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동물용 의약품 생산 가능 • 인체용 의약품 중 '23.11.30일 이전에 동물용으로는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의 유효성분 또는 인체용 및 동물용으로 모두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유효 성분 중 별도로 정하는 22개의 유효성분으로 제조하려는 경우 가능 •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오염 우려가 없어야 함 	<p>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개정 (23.12월)</p> <hr/> <p>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044-201-2552)</p>
<p>국산 밀 품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준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용도 구분 없이 '양호', '보통' 등급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용도별 구분(강력·중력)하고 용도에 따라 1, 2, 3등급 등으로 구분 	<p>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044-201-1835)</p>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밀·콩·가루쌀 관련 지원사업 통합·운영 (전략작물산업화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27,233백만 원), 쌀가루산업화 (7,100백만 원), 밀가공확대지원 (2,000백만 원), 논범용화용수 공급체계구축(300백만 원)으로 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구조조정 및 전략작물에 대한 유통·가공·소비 분야 종합지원으로 식량자급률 및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 산업화지원, 개편』 ● 밀·콩·가루쌀 유통·가공·소비 분야 종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역사업) 교육·건설링,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제품확대키지지원, 전략작물가공확대지원, 논범용화용수 공급체계 구축 	<p>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044-201-1838)</p>
<p>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자격 ● 정부지원 R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자격 ● 정부지원 RPC, DSC 등 	<p>미국종합처리장 벼 매입 자금지원 사업시행지침 (‘24.1.1.)</p>
<p>농업용 배수장·저수지 설계기준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배수장 설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벼 20년, 밭작물 30년 ■ 농업용댐 설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수 이용량 고려 저수지 규모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배수장 설계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벼 20년 이상, 밭작물 30년 이상 ■ 농업용댐 설계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수 이용량 이외 홍수조절용량 까지 고려하여 저수지 규모결정 가능 <p>☞ (참고)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 > 농업생산지반시설 설계기준 (농지배수 농업용댐편)</p>	<p>농업생산지반시설 설계기준 (‘24.1.1.)</p> <p>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044-201-1855)</p>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요건 대폭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규모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ha 내외 • 정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무관, 6,250백만 원 ■ 대상지역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부지를 확보해 기존 노후 축사 이전 ■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관리체계나 제도가 부재 ■ 조성 및 운영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축산농가 등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ha~30ha 내외 • 단가(조성면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당 350백만 원 • 축사 밀집한 현 부지 활용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허용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 • 시도 허용 • 시·군·구 또는 시도의 직접 운영 허용 	<p style="text-align: center;">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 (‘24.1월)</p> <hr/>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29)</p>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도입 • (‘23년) 한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 • (‘24년) 낙농, 양돈 추가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보도자료)보도자료배포(예정)</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지원과 (044-201-2365)</p>
농산물도매시장 양파 출망 반입을 제한하고 기계·수작업망으로 유통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에 양파 수작업 망, 기계포장 출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 양파 출작업 망 반입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락시장(‘24.1.1.) → 중앙도매시장(‘24.6.30.) → 지방도매시장(‘24.12.31.)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도매시장 양파 유통방식 개선 방안(23.11월)</p>	<p style="text-align: center;">농산물공영도매시장 양파 유통방식 개선방안 (‘24.1.1.)</p> <hr/>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1)</p>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농산물분야 의무자조금의 운영관리 규제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운영관리 비용의 기준 •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20% • 총 사업비 10억 원 미만: 30% (단,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금 운영관리비를 총사업비의 최대 40%까지 완화 • 5억 원 초과: 30% • 5억 원 ~ 3억 원: 35% • 3억 원 이하: 40%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 국민소통)훈령·예규·고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p>	<p>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24. 상반기)</p> <hr/> <p>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19)</p>
	<p>인삼경작신고 의무화 및 신고기관 일원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경작 임의 신고 - 신고기관 지자체·인삼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경작 의무 신고 - 미준수자에 대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기관 인삼농협으로 일원화 <p>☞ (참고) 국가법령정보시스템(law.go.kr) 법령)인삼산업법</p>
<p>농식품바우처 통합관리플랫폼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바우처 사업 신청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바우처 사업 신청 시 온라인 신청을 추가하고 지원금액, 사용내역, 잔액 등 조회 서비스 제공 * 일부 지자체 대상으로 '24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 예정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전체 여성어업인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진대상) 만45세 이상 1,800명 ■ (검진비) 국가 90%지원, 자부담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진대상) 만 51세 이상 전체 여성어업인 ■ (검진비) 국가 50%, 지방자치단체 40% 지원, 자부담 10% 	<p>여성농어업인 육성법 (‘24.4월)</p> <hr/> <p>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3)</p>
	<p>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수산물의 체내 잔류 허용 기준이 미설정된 성분에 대해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 하여 안전성 관리 ■ 시범도입(‘2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 동물용의약품 중 모든 수산물에 사용되는 항균·항생제 우선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용의약품이란? 항균제, 항생제, 소독제, 구충제, 진정제, 살충제, 성장보조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대상 확대(‘2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모든 수산물의 항균·항생제 (확대) 모든 수산물의 항균·항생제 + 어류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p>실뱀장어안강망어업 무동력 선박형태 바지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루그물 또는 자루그물과 바지(barge)로 구성된 어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적합한 어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자루그물과 바지(barge)로 구성된 어구. 이 경우 바지는 총 길이 16m 이하의 추진축 및 추진동력 장치가 없는 배 모양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p>☞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어구보충금지도 세부이행방안 마련 등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p>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대한민국 수산대전 참여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트, 온라인몰 등중 대형 유통업체 참여, 전통시장 내 수산물 판매 소상공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체, 소상공인 참여 확대 • (은오프라인 할인행사) 지역-중소유통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완화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627)</p>
어선 고속기관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톤 미만 어선만 고속기관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 • 5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은 10년 주기로 개방검사를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톤 미만 어선까지 고속기관 비개방정밀 검사 대상 확대 • 5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은 마지막 개방검사일로부터 10년째, 15년째는 비개방정밀검사를 받고, 20년째는 개방검사를 받아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어선법 시행규칙 (‘23.12.18.)</p> <p style="text-align: center;">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53)</p>
양식장 임대 사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장 임대사업 지원 • (사업목적) 신규 양식인 유입을 통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양식산업 구축 • (사업규모) 임대형 양식장 10개소 운영 (‘24년) • (사업내용)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장을 확보(임차)하여 청년 귀어인 등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고, 임대료 등을 지원 (국비 50%, 자부담 50%) <p>※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청년, 귀어인 등 어촌사회 정착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양식산업발전법 개정 (‘23.6.28.)</p> <p style="text-align: center;">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4)</p>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19개 (FR-1~FR-7) ① 재활용 유형 중 소결제는 제철용으로만 활용 가능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20개 (FR-5-3 추가) ① 제철용으로 한정된 용도를 확장하여 모든 용도의 소결제로 재활용 가능 ②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양빈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 추가 	<p>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 상반기)</p> <hr/> <p>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3)</p>
<p>먹는해양심층수 무라벨 제품 날개 판매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라벨 제품은 날개 판매가 안되며, 소포장하여 표시사항을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표시방법 중의 하나로 QR코드 방식을 도입하여 무라벨 제품도 날개 판매 가능 <p>☞ (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보도자료)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개정</p>	<p>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24.10월(잠정))</p> <hr/> <p>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44-200-5241)</p>

농촌진흥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ASTIS)에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신청 및 결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과학기술정보 미도입 •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실시 •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간 기술정보 공유 및 활용 미흡 	<p>(법령: 농업과학기술정보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과학기술정보 개념 및 활용 체계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농업과학기술정보 및 농업과학기술정보 서비스의 정의 •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관리, 제공 및 공동활용 플랫폼 기반 마련 •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민간협력을 위한 기술보급확산체계 마련 <p>☞ (참고)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2023.6.22.)</p>	<p>농업과학기술정보법 (‘24.6.21.)</p> <hr/> <p>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063-238-09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과학기술정보 서비스 (ASTIS) 플랫폼 미구축 • 농업인이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및 상담 	<p><플랫폼: 농업과학기술정보 서비스 (ASTIS) 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과학기술정보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신청 기능 개시(‘24.7.1.) • 방법: 인터넷망(모바일 웹, PC) * http://astis.rda.go.kr * 회원가입 후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로 서비스 신청 및 결과 확인 • 신청서비스: 분석(농산물안전, 가족분뇨, 조사료, 토양, 식물체, 수질, 쌀품질, 병해충), 분양(미생물, 꽃가루, 조직배양묘, 초유), 농산물중합기공 등 <div data-bbox="565 1247 800 143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a651; color: white; padding: 2px;">고객용 (농업인) / 20만여 명</p> <p style="text-align: center;">검색/신청 결과확인</p> <p style="text-align: center;">↓ (인터넷망) http://astis.rda.go.kr ↑</p>  </div>	<p>농업과학기술정보 플랫폼 (‘24.4.1.)</p> <hr/> <p>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063-238-0915)</p>

산림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신고제도 시행</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신고 	<p>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에 관한 법률 (*24.2.17.)</p> <hr/> <p>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042-481-4088)</p>
		<p>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자격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사업 지원 자격 및 요건 ● 전문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중 산림청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산림교육원 포함)에서 운영하는 임업 관련 교육을 사업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12시간 이상(기간 내 합산 가능) 이수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제외 대상 ●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p>* 농업 인정범위: ① 임업(농업 포함), ② 농업 겸업, ③ 수산업 겸업</p>
<p>〈귀산촌인 대출 자격 요건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제외 대상 ●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p>* 농업 인정범위: ① 임업(농업 포함), ② 농업 겸업, ③ 수산업 겸업</p> <p>* 단기 근로자(월 60시간 미만)는 타 산업 분야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신청 가능</p>	<p>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2)</p>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2024년 병 봉급 인상</p>	<p>■ '23년 병 봉급</p> <table border="1" data-bbox="308 346 524 528"> <thead> <tr> <th>구분</th> <th>봉급액(원)</th> </tr> </thead> <tbody> <tr> <td>병장</td> <td>1,000,000</td> </tr> <tr> <td>상병</td> <td>800,000</td> </tr> <tr> <td>일병</td> <td>680,000</td> </tr> <tr> <td>이병</td> <td>600,000</td> </tr> </tbody> </table>	구분	봉급액(원)	병장	1,000,000	상병	800,000	일병	680,000	이병	600,000	<p>■ '24년 병 봉급</p> <table border="1" data-bbox="546 346 823 528"> <thead> <tr> <th>구분</th> <th>봉급액(원)</th> </tr> </thead> <tbody> <tr> <td>병장</td> <td>1,250,000</td> </tr> <tr> <td>상병</td> <td>1,000,000</td> </tr> <tr> <td>일병</td> <td>800,000</td> </tr> <tr> <td>이병</td> <td>640,000</td> </tr> </tbody> </table> <p>* 공무원보수규정별표[3] 군인의 봉급표 수장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반영 예정</p>	구분	봉급액(원)	병장	1,250,000	상병	1,000,000	일병	800,000	이병	640,000	<p>공무원 보수규정 (24.1.1.)</p> <hr/> <p>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4)</p>
	구분	봉급액(원)																					
병장	1,000,000																						
상병	800,000																						
일병	680,000																						
이병	600,000																						
구분	봉급액(원)																						
병장	1,250,000																						
상병	1,000,000																						
일병	800,000																						
이병	640,000																						
<p>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p>	<p>■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 (적금의 정부지원)</p> <p>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7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p>■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 2 (적금의 정부지원)</p> <p>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입금일부터 만기일(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날까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입금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삭제) 2.(삭제) 	<p>병역법 시행령 (24.1.1.)</p> <hr/> <p>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4)</p>																				

국방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p>	<p>■ '23년</p> <table border="1" data-bbox="308 371 524 512"> <thead> <tr> <th>구분</th> <th>보급액(만 원)</th> </tr> </thead> <tbody> <tr> <td>(장교) 장려금</td> <td>900</td> </tr> <tr> <td>(부사관) 장려수당</td> <td>750</td> </tr> </tbody> </table>	구분	보급액(만 원)	(장교) 장려금	900	(부사관) 장려수당	750	<p>〈 단기복무 간부 장려금·장려수당 인상〉</p> <p>■ '24년</p> <table border="1" data-bbox="546 371 823 512"> <thead> <tr> <th>구분</th> <th>보급액(만 원)</th> </tr> </thead> <tbody> <tr> <td>(장교) 장려금</td> <td>1,200</td> </tr> <tr> <td>(부사관) 장려수당</td> <td>1,000</td> </tr> </tbody> </table>	구분	보급액(만 원)	(장교) 장려금	1,200	(부사관) 장려수당	1,000	<p>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24.1.1.)</p>
	구분	보급액(만 원)													
(장교) 장려금	900														
(부사관) 장려수당	750														
구분	보급액(만 원)														
(장교) 장려금	1,200														
(부사관) 장려수당	1,000														
<p>■ '23년 소위·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사람은 제외한다.</p>	<p>〈 주택수당 지급 대상 확대〉</p> <p>■ '24년 소위·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 이하인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1조 2항 개정</p>	<p>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3)</p>													
<p>플라스틱형 스웨터 보급 (병사대상)</p>	<p>-</p>	<p>■ '24년 1월 입대 병사부터 '플라스틱형 스웨터' 보급</p>	<p>('24.1.1.)</p> <p>국방부 물자관리과 (02-748-5726)</p>												
<p>군 장병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p>	<p>■ 군 내부 강사 및 일부 경제교육 기관에서 장병 경제교육 실시</p>	<p>■ 경제교육 전문기관에서 부대별 연계를 통해 장병 경제교육 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p>	<p>('24.2~3월)</p> <p>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25)</p>												
<p>진료비 직접청구 앱 구축 통한 지급기간 단축</p>	<p>■ 건강보험공단 통해 자료를 전송 받아 진료비 지급까지 평균 5~6개월 소요</p>	<p>■ 병사가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진료비 지급까지 평균 2~3개월 소요 예정</p>	<p>국방 환자관리 훈령 ('24.2월)</p> <p>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7)</p>												

병무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강화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및 위반자 처벌 규정 신설 • 정보통신망을 통해 병역면탈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 금지 • 위반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역법 (‘24.5.1.)
			병무청 병역조사과 (042-481-2780)
사회복무요원 등 정치운동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의 정당 가입에만 제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정치운동 금지 •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금지 	병역법 (‘24.2.1.) 대체역법 (‘24.2.1.)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0) 병무청 병역공개과 (042-481-2774)
사회복무요원의 성실 복무 의무와 괴롭힘 금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의무를 상위 법령에 명시 ■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 피해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 • 비밀누설 금지 • 과태료 부과: 발생시 1천만 원 이하, 조치 위반 500만 원 이하 	병역법 (‘24.5.1.)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0)
병역판정검사 등 이동중 부상자 치료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은 국가 부담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판정검사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직접 이동 중이거나 검사 후 지체없이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 부담 치료 	병역법 (‘23.12.21.)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병무청

구 분	중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병적 별도관리대상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의 기준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적 별도관리대상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 원 초과자 •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적 별도관리대상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 원 초과자 • 「소득세법」에 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 	병역법 (‘23.12.21.)
			병무청 자원관리과 (042-481-2891)
병역의무자의 병역정보 안전조치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정보의 기술적 안전성 점검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관리시스템 선정에 따른 「병무행정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계획」 이행 여부 점검 	제도 개선 (‘24.1.1.)
			병무청 정보보호팀 (042-481-1932)
단기 국외여행허가 신청 즉시 처리결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업무담당자 확인 후 처리(2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국외여행허가 신청 즉시 자동 처리 (신청 즉시) • 단기여행허가 요건* 충족할 경우 신청 즉시 자동 처리 * 요건: 1회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범위, 27세까지,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 일 5일 전까지 • (예외) 다음의 경우 자동처리 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 중인 자 -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소집 기피자 등 허가 제한자 등 	제도개선 (‘23.11.27.)
			병무청 자원관리과 (042-481-2965)
육군 사이버작전병 (전문특기병) 신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작전병 특기 모집 ※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모집병)모집안내 서비스)안내 지원절차 	제도 개선 (‘23.11.1.)
			병무청 현역모집과 (042-481-2719)
동원훈련 단체수송 및 입영절차 디지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원훈련 단체수송 및 입영 과정 수작업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 또는 디지털 통지서(병무청 앱, e-병무지갑)를 활용하여 신속한 승차 확인 및 입영 처리를 모바일 기반으로 디지털화 	제도 개선 (‘24년 동원훈련부터)
			병무청 정보기획과 (042-481-2652)

방위사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방위사업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의 특례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국방연구개발, (2) 필수적인 수리부속품, (3) 방산물자 ■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및 감면 	<p>< 계약의 특례 범위 확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의 특례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국방연구개발, (2) 필수적인 전력화지 원요소,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 (3) 방산물자, (4) 긴급사태 대응 군수품, (5) 장병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에 관한 계약 <p>< 지체상금 부과 및 감면 관련 규정 개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사업법에 지체상금 부과 및 감면 근거 마련하고, 방산 특성에 맞는 감면 사유 추가 • (감면사유) 계약상대자 책임이 없는 경우, 국방연구개발 중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 되는 경우 성실하게 이행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하도급업체 귀책사유나 가혹한 시험 조건 등 지체의 책임 전부를 계약상대자에 게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p>방위사업법 (24.5.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제한 처분 전에 업체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불가 	<p><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확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제한 처분 전에 업체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단, 제한처분의 사유와 경중 등에 따라 차등 지급) <p>< 핵심기술 등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신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기술 등 적용업체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적격심사시 가점 또는 제안서평가시 평가항목에 반영) 	<p>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 (02-2079-6912)</p>

방위사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 청렴서약서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p> <p>〈제한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 향응 수수 • 방위사업 관련 특정정보 제공 요구 또는 획득 • 특정정보 임의 제3자 제공 또는 누설 • 방위사업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또는 이행 중 하도급자로부터 금품 수수 또는 부당 불공정행위 	<p>〈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및 사유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서약과 관련없이 부정당행위에 해당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p>〈제한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 향응 수수 • 답합 • 알선·청탁 • 방위사업 관련 정보 제공 요구 또는 획득 및 임의 제3자 제공 또는 누설 • 방위사업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또는 이행 중 하도급자로부터 금품 수수 또는 부당 불공정 행위 	
	<p>■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계약심의회 설치 및 운영</p> <p>〈대상안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과징금 • 기타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심의회 심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p>〈국방조달계약심의회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조달계약 심의회 설치 및 운영하고, 기존 계약 심의회보다 대상 안건 확대 <p>〈대상안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과징금 • 지체상금 부과 및 감면 • 계약의 변경 • 계약의 계속이행 여부 • 기타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심의회 심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p>■ 대부분 국가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방위사업 추진</p>	<p>〈기타 방위사업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사업 특성에 맞는 특례 규정 신설 • 장비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의 경우 가격보다는 품질·성능 중심의 낙찰자 결정 근거 마련 • 방위사업 특성에 맞는 개산계약 정산 기준 및 범위 근거 마련 • 방위사업계약 체결시 예정가격 결정 기준 및 방법 근거 마련 	

방위사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출 군함의 감리업무 품목포괄수출허가제도 도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포괄수출허가제도 도입 •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별표8에 속하는 전략기술의 경우 품목포괄수출허가 	<p>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23.1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포괄수출허가제도 • 군용물자품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포괄수출허가제도 • 수출군함 감리업무 전략기술에 한해 적용 	<p>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별표 8 (‘24.3월)</p>
			<p>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02-2079-6831)</p> <p>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044-203-4836)</p>
주요 연구개발 무기체계 수출예비승인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예비승인제도 • (대상) 주요방산물자 • (시기) 수출허가 이전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예비승인제도 • (대상) 주요방산물자(수출허가이전 주요 방산물자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 되는 연구 개발 무기체계 포함) • (시기) 수출허가 이전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 	<p>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23.12월)</p>
			<p>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02-2079-6831)</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 기간통신사업 등록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통신사업의 등록결격에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어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합성 평가를 거쳐 예외적으로 기간통신 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24.1.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044-202-6661)

법무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상공개 대상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에 한정 ■ 신상공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에 한정 ■ 강제촬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없이 '머그샷' 촬영 및 공개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상공개 대상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 내란·외환죄 • 폭발물사용죄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 중상해·특수상해죄 • 아동대상성범죄 • 조작·마약범죄 ■ 신상공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 및 피고인 ■ 강제촬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 공개 •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수집·보관 중인 사진·영상물 활용 가능 • '머그샷' 강제 촬영 및 공개 가능 <p>[※]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	중대범죄신상공개법 ('24.1.25.)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1-3562)

법무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킹행위자 제재 공백 •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제도 부존재 ■ 피해자 보호에 공백 •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킹행위자 제재 강화 •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 피해자 보호 강화 • 국선변호사 제도 등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도입 <p>☞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스토킹 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	<p>스토킹처벌법 (‘24.1.12.)</p> <hr/> <p>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1-3562)</p>
<p>스토킹 행위자 접근 차단을 위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보호장치 (손목착용식 스마트워치) 지급 •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 발생 • 경보 발생 즉시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해자 접근 사실과 대처요령 안내 • 가해자에게 전화하여 의도적 접근여부 등을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 지시하며, 현장 출동 등 개입조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 ‘스토킹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추가 • 보호장치를 휴대가 편리한 형태로 보급, 향후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 추진 •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 발생,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문자로 자동 통지 ※ 경보가 발생하는 가해자- 피해자의 일정 거리와 피해자에게 문자로 통지 하는 가해자-피해자의 일정 거리는 동일하지 않음(비공개) • 경보 발생 즉시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해자 접근 사실과 대처요령 안내 • 가해자에게 전화하여 의도적 접근여부 등을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 지시하며, 현장 출동 등 개입조치 실시 ※ 스토킹 잠정조치 전자감독 대상자의 경우 경찰에서 즉시 현장 출동 등 피해자 보호 조치 <p>☞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스토킹 행위자 접근 효과적 차단</p>	<p>스토킹처벌법 (‘24.1.12.)</p> <p>전자장치부착법 (‘24.1.12.)</p> <hr/> <p>법무부 전자감독과 (02-2110-3808)</p>

법무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안정적인 배당을 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 이익 산정 기준'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 • (원칙) 배당가능이익산정 시 미실현손의 상계 금지 • (예외)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 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 변경 • (원칙) 배당가능이익산정 시 미실현손의 상계 금지 • (예외)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 외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과 연계된 다음 거래에 대하여도 상계 허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 관련 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채무증권·파생상품의 거래 -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의 거래 - 변액보험계약 등 <p>☞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법무뉴스) 보도자료)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회의 통과 보도자료</p>	<p>상법 시행령 (’23.12.19.)</p> <hr/> <p>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p>
	<p>CBT 방식의 변호사 시험(논술형) 역대 최초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시험 논술형(기록형 사례형) 필기시험 답안 작성 방식 • 수기(手記)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시험 논술형(기록형 사례형) 필기시험 답안 작성 방식 •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 • 수기(手記) 방식 ※ CBT 방식과 수기 방식 중 선택 가능 <p>☞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응시자준수사항 등 공고</p>

법무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난민인정심사 확장면접 시스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인정심사 대면심사 • 난민통역인이 난민신청자 체류 관찰 심사기관으로 방문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난민 면접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인정심사 (비)대면심사 • (원칙) 대면심사 • (예외) 확장면접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역인을 구하기 어렵거나 이동에 제한이 있는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 향상 - 감염병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면접 가능 	<p>(’24. 상반기)</p> <hr/> <p style="text-align: center;">법무부 난민정책과 (02-2110-4160)</p>
<p>마약사범재활전담 교정시설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사범재활전담 교정시설 운영 • 마약사범재활전담 교정시설 2개 교정기관 시범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사범재활전담 교정시설 확대 운영 및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 마약사범재활전담 교정시설 정식운영 및 2개 교정기관 추가 지정, 4개 권역별(서울·대전·대구·광주지방교정청) 운영 • 마약사범이 출소 후 지역 내 마약류 중독 재활센터에서 재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연계 	<p>(’24. 상반기)</p> <hr/> <p style="text-align: center;">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02-2110-3508)</p>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출입통제구역 내 안전 시설 설치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 (의무사항) 출입통제구역 지정일 30일 전에 안전시설* 설치 후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통제구역 표지판 • (선택사항) 필요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방지시설(울타리 등) - 구명설비(구명환 등) - 정보취득시설(CCTV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 (의무사항) 출입통제구역 지정일 30일 전에 안전시설* 설치 후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통제구역 표지판 - 출입통제구역 표시선 • (선택사항) 필요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경고판 - 로고젝터 - 표지병(로드아이) - 진입방지시설(울타리 등) - 구명설비(구명환 등) - 정보취득시설(CCTV 등) <div style="border: 1px solid #00a0e3;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p>  <p style="text-align: center;">출입통제구역 표지선(의무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위험경고판(선택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로고젝터(선택사항)</p> </div> <p>※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 시설 설치기준 강화 보도자료(예정)</p>	<p style="text-align: center;">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매뉴얼 개정 ('24.1.1.)</p> <hr/> <p style="text-align: center;">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044-200-5955)</p>
<p>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제한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보전무인도서) 건축물 설치, 낚시 활동과 같은 동식물의 채취·포획 행위금지 ■ (이용가능무인도서)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출입 및 활동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소, 선착장, 방화·방재 시설, 안내판, CCTV 등 공공시설물 설치 허용 ■ 공공시설물 및 유선장, 전망대, 휴게소 등 휴양 편의 시설 허용 • 소유자의 시설물 설치, 증개축 및 가축사육 허용 	<p style="text-align: center;">무인도서법 일부개정 법률안 시행 ('24.2.17.)</p> <hr/> <p style="text-align: center;">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044-200-5355)</p>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선박 전자증서 온라인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증서로만 발급 • 국제선박보안증서 등 14종 선박 증서는 종이증서로만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증서와 전자증서 동시 발급 • 국제선박보안증서 등 14종의 선박증서를 종이증서와 전자증서로 동시 발급 가능 • 실시간 전자증서 진위여부 확인 가능 	<p>국제선박항만보안법 등 총 3개 법령, 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24.2.1.)</p> <p>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52)</p>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기 위한 자격으로, 경력교육기준 충족 요구 • (경력) 안전관리(책임)자 경력 불필요 • (자격검증) 검증체계 없음 • (교육) 안전관리교육을 최초 1회만 받으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기 위한 자격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신설)을 보유하고 주기적(6~24개월) 선박안전관리 교육 이수 요구 • (경력) 일정기간 안전관리(책임)자 근무 의무화 • (자격검증)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 (교육) 주기적(매2년)으로 재교육 시행 <p>※ (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보도자료>선박 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보도자료</p>	<p>해사안전법 (‘24.1.5.)</p> <p>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8)</p>
해상 안전수칙을 규정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해사안전법」은 정책·규제·교통질서 규범의 혼재로 법률을 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 제도·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해사안전기본법」과 안전 규제를 다루는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p>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24.1.26.)</p> <p>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1)</p>

행정안전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차단을 위한 전입 신고 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세대주의 전입신고 시 전입자 또는 전 세대주 중 한 명의 확인으로 전입신고 가능 • 신고자 외 전입자 또는 전 세대주의 신분증 제시 불필요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에게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해주는 서비스 부재 ■ 전입세대확인서 내 말소자 또는 거주불명자도 예외 없이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세대주의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 세대주 확인 규정 삭제) • 신고자인 현 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제시 필요 ■ 본인의 주소 변경 사실을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주는 주소변경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입세대확인서 내 말소자 또는 거주불명자 표기 여부 생략 <p>☞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나 몰래 전입신고 안돼!, 전입신고 절차 개선으로 전세 사기 막는다 ('23.11.14.)</p>	<p>주민등록법 시행령 ('24. 상반기)</p> <hr/> <p>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7)</p>
	<p>교통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위반 신고 창구 이원화 • 행안부의 ‘안전신문고’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 앱을 통해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위반 신고 창구 일원화 •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앱을 통해 신고 <p>☞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교통법규 위반 등 모든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통합('23.4.12.)</p>
<p>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QR코드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QR코드 부여 시행 • (간편이름) 약칭과 약호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칭: 서식의 정식 명칭을 핵심 단어로 축약한 것 - 약호: 로마자 1개+숫자 3개(+로마자 1개 추가 가능) ※ 신청서는 A(application), 증명서는 C(certification)로 시작 ※ 다른 로마자나 숫자와 혼동될 여지가 있는 글자 5개(I, L, O, 1, 1, 0)는 쓰지 않음 • (QR코드) QR코드를 기재하여, 민원에 관한 사항(구비서류, 수수료 등) 안내 <p>☞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QR코드에 관한 규정</p>

행정안전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 여부 결정	■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자체의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 등 제도홍보 의무 부여(신설) ■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절차종료 후 3개월 범위내 조례에서 정하는 기간 내 수리·각하 결정(신설) <p>※ (참고) 행정안전부홈페이지)보도자료)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여부 결정된다 (23.8.15.)</p>	주민조례발안법 ('24.2.17.)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044-205-3390)

법제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법령상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학력 기준 제한 • 실무경력을 통해 전문성의 확보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도 4년제 대학 졸업 등으로 학력 기준을 과도하게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기준의 다양화·유연화 • 사료안전관리인 등 31개 분야에 대해 전문 대학 또는 특성화고 졸업 등까지 학력 제한을 완화하되, 필요한 경우 실무경력을 추가로 쌓도록 하여 학력 기준 다양화·유연화 <p>※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보도자료)청년 채용 시 학력 제한 완화하는 법령 일괄개정안, 11월 21일부터 시행</p>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31개 법령 ('23.11.21.)
			법제처 법령정보과 (044-200-6577)
지방사무에 관한 법령상 기준 삭제 등 지방자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입법권 제약 • 지방사무에 관한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거나,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위임 ■ 지방자율성 제약 • 지방사무 추진 시 지자체가 중앙부처에 사전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입법권 강화 • 지방사무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모두 위임 ■ 지방자율성 제고 • 지자체가 중앙부처에 통보하도록 함 <p>※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보도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대폭 강화된다</p>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총 147개 법령 ('23.11.17. 등)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 (044-200-6846)

인사혁신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p>	<p>■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20세 이상 ※ 8급 이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단, 교장보호직렬은 20세 이상)</p>	<p>■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교장·보호직렬의 경우 20세 이상으로 유지 *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 <p>☞ (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보도자료)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보도자료 ('22.11.8.,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p>	<p>공무원임용시험령 ('24.1.1.)</p>
		<p>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215)</p>	
<p>국가공무원 면접시험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편</p>	<p>■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평정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 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임</p>	<p>■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 추가 가능 <p>☞ (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보도자료)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보도자료 ('23.7.25., "공무원 면접시험,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p>	<p>공무원임용시험령 ('24.1.1.)</p>
		<p>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215)</p>	
<p>인재정보 제공기관 확대</p>	<p>■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한해 제공</p>	<p>■ 범국가적으로 인재디비를 활용하기 위해 정보 제공기관에 지방공기업(지방공사·공단) 추가('24.1.1.부터 시행)</p> <p>☞ (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보도자료) 해외인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담긴다' (2023.6.13.)</p>	<p>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4.1.1.)</p>
		<p>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 (044-201-8053)</p>	

소방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전국 표준화 소방예방 정보시스템 통합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시스템 분산으로 예방업무 활용에 한계 ■ 시도별 데이터 관리로 정합성 문제 상존 ■ 대상물정보(주소,속성) 변경 수기 현행화 ■ 건축허가 동시시 제출된 도면 활용 ■ 자체점검대상소방설비수기 현행화 ■ 방문 위주 민원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통합으로 예방업무 일원화, 효율적 행정 ■ 데이터 분석 활용 등 예방데이터 활용가치 제고 ■ 건축행정 연계로 대상물 정보 자동 현행화 ■ 건축물 완공대장 연계로 최신 도면 획득 ■ 온라인 민원과 예방행정 연계로 소방설비 자동 현행화 ■ 원스톱 온라인 민원 체계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41)</p>
<p>공동주택의 화재안전 성능기준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내소화전설비) • 일반 옥내소화전 설치 ■ (스프링클러설비)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등은 기준 개수 10개 ■ (자동화재탐지설비) • 일반감지기 ■ (비상방송설비) •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것에있어서는1W)이상일것 ■ (유도등) • 특정소방대상물의 유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용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아파트, 기숙사 - 소형피난구 유도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내소화전설비) • 호스릴(hose reel)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 ■ (스프링클러설비)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 등은 기준개수 10개(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에 1.6세 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개수는 30개로 할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 • 감지기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설치해야한다 1. 패널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 성능이 인정되는 것으로 설치할 것 ■ (비상방송설비) • 아파트 등의 경우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이 음성입력은 2W 이상일 것 ■ (유도등) 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소형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할 것. 다만, 세대 내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중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할 것 3.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옥상 출입 문에는 대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의 화재안전 성능기준(NFPC 608) (‘24.1.1.)</p> <p style="text-align: center;">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p>

재외등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재외공관 무인민원 발급기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국민이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창구에서 대면으로 처리해야 함에 따라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공관 무인민원 발급기 도입으로 창구에서 대기하지 않고 민원서비스 처리 가능 LA 총영사관, 상해 총영사관, 싱가포르 대사관, 말레이시아 대사관 시범운영 ('23.12.~) 	-
			재외등포청 재외등포 서비스지원센터 (02-6399-7177)
재외동포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동포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본인확인을 위해 국내 휴대전화 가입유지, 원거리 재외공관 방문 또는 국내 신용카드 보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센터 도입으로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전자여권과 민간전자인증 사업자 앱을 활용한 비대면 디지털 본인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 가능 	-
			재외등포청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 (02-6399-7172)

조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수출지원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G-PASS지정제도 전략기업 육성사업 수출상담회 개최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신규사업 시장조사, 해외인증, 현지실증 관련 등 지원기업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 (042-724-7200)

조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수의계약 적합성 평가, 공정성·전문성 강화</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기관에 조달청의 전문적인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 대행서비스' 제공 	<p>-</p>
<p>부정당제재 사유 발생에 따른 판매중지사유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조달물품 계약이행 중 부정당 제재사유 발생 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를 추정 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고 판매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수요기관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행정처분 시까지 판매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조달물품 계약이행 중 부정당제재사유 발생에 대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사유 삭제 • 다만, 부정당제재사유가 '긴급하게 판매 정지를 하지 않을 때에 국민의 생명·안전이 위협되는 경우'라면 판매중지 시행 	<p>조달청 공정평가관리팀 (042-724-7068)</p> <p>물품구매(제조) 계약추가특수조건 ('23.12.1.)</p>
<p>비촉사업 관련 불공정 전매행위 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촉물자 전매행위 실태조사 • 정기적으로 실시 • 이용업체의 자발적인 협조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촉물자 전매행위 실태조사 • 정기적으로 실시 * 매년 4월 말까지 과세자료 제출 •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업체에게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과 * 기한내과세자료 미제출 시 배정 중지 • 불공정행위 적발 시 등록말소, 전매처의 환수 등 조치 	<p>조달청 비촉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촉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23.4.1.)</p> <p>조달청 전략비촉물자과 (042-724-7146)</p>

조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 style="color: #0070C0;">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게 직접생산확인 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등록시 자체기준표 제출 • 공장, 시설, 인력, 공정 등 확인 ■ 제조등록시 제출한 자체기준표를 통해 직접생산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등록시 자체기준표 제출 폐지 • 공장, 시설, 인력, 공정 확인을 폐지하되, 최소인력 및 공정은 유지 ■ 점검시 실제 생산한 방식을 기재한 제조 공정표를 통해 직접생산확인 	<p style="text-align: center;">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24.1.1.)</p> <hr/> <p style="text-align: center;">조달청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 (054-716-8161)</p>

통계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원격접근서비스(R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종량제) 데이터이용량에 따라산정 • 기본료(20,000원/1MB) + 이용량 구간별 추가액 나. (정액제) 기관 규모(이용기관의 종사자수)에 따라 산정 • 개인 정액제는 기관정액제의 소형기관 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원격접근서비스(RAS) 및 센터서비스 (SDC/R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간제) 이용기간에 따라 산정 • 일단가 10,000원 × 이용기간 일수 나. (정액제) 개인과 기관을 구분하여 산정 (적용기간: 1년) • 센터 설치기관 기관정액제 무료 이용 (해당기관 직원에 한함) 	<p style="text-align: center;">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고시) (*24.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RDC)·통계데이터센터(S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간제) 이용기간에 따라 산정 (이용 횟수 무관) 	<p>(1번으로 수수료 체계 통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가구사업체 명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가구 명부 및 요도) 1,500원/조사구당 나. (사업체 명부) 요청 건수에 따라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가구사업체 명부제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가구 명부 및 요도) 1,500원/조사구당 나. (사업체 명부) 요청 건당 3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사망자료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요청 건수에 따라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사망자료 연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본수수료에 가산하여 부과 • 수수료 = 100,000원(기본수수료 1천건 이하) + 천 건 초과 건수 × 건당 5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통계자료 분석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단순 분석 통계표 작성 나. 변수를 새로 생성하거나 별도 조건을 설정한 통계표 작성 (단순 분석 수수료의 50% 할증) 다. 데이터 시계열 연계, 다른 데이터 간 연계 분석 등 (단순 분석 수수료의 100% 할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통계자료 분석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표 개수 당 산정 • 집계표 개당 150,000원 ■ 5. 데이터 보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 종료일 3개월 후 용량별 주단위로 부과 • 최대 보관 일수: 사용 종료일 이후 2년까지 	

경찰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경비원 및 경비지도사 신임교육 과목·시간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경비원 • (시간) 총 2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경비실무 2시간 - 체포호신술 3시간 - 직업윤리 및 서비스 3시간 ■ 특수경비원 • (시간) 총 88시간 •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 대응요령 4시간 -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등 관계 법령 8시간 - 정신교육, 예절교육 4시간 ■ 경비지도사 • (시간) 총 44시간 •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원경찰법 등 관계법령 7시간 - 분사기 사용법 2시간 - 테러 대응요령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경비원 • (시간) 총 2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경비실무 4시간 - 체포호신술 2시간 - 직업윤리 및 서비스 2시간 ■ 특수경비원 • (시간) 총 80시간 •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 및 재난 대응요령 4시간 - 경비업법, 경직법 등 관계 법령 8시간 - (삭제) ■ 경비지도사 • (시간) 총 40시간 •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4시간 - 장비 사용법 2시간 - 범죄·테러·재난 대응 요령 2시간 	<p>경비업법 시행규칙 (*24.1.1.)</p>
			<p>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0950)</p>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관련 별도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완전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거부·설명 등 요구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있으면 자동화 결정의 적용 배제·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조치 의무 규정 <p>※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p>	<p>개인정보 보호법 (’24.3.15.)</p> <hr/> <p>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47)</p>
<p>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23년)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등) • (대상) 800여개 공공기관 대상 시행 • (주요내용) 보호법에 따른 의무 사항 이행여부 • (결과환류) 미흡기관 현장컨설팅 및 기획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24년~)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 (대상) 1,600여개 공공기관 대상 시행 •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의 수행 및 보호법에 따른 의무 준수 여부 • (결과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우수직원 포상 - 개선권고 및 조치결과 요구 등 - 미흡기관 현장컨설팅 및 기획점검 실시 	<p>개인정보보호법 (’23.9.15.)</p> <hr/> <p>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02-2100-3087)</p>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도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및 개선권고를 통해 처리방침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 • (평가대상)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매출액 규모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 유형 -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방식 - 법 위반행위 발생 여부 - 아동·청소년 등 정보주체의 특성 •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절하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p>개인정보보호법 (’23.9.15.)</p> <hr/> <p>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02-2100-3050)</p>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의무대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손해배상의 보장제도 의무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한정 • (원칙) 전년도 매출액 5천만 원 및 저장·관리 중인 개인정보의 이용자 수 1천명 이상 • (예외)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대상이 개인정보처리자 일반으로 확대 • (원칙) 전년도 매출액 10억 및 저장·관리 중인 개인정보의 정보 주체 수 1만명 이상 • (예외) 다음의 경우 의무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단, CPO 자격요건 적용 대상*은 제외) * ① 연 매출액 1,500억 원 이상인 자로서,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거나 재학생 수 1만명 이상인 대학, ②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상급종합병원, ③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한 수탁사에게 개인정보 저장·관리 업무를 위탁한 소상공인 <p>☞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차 개정안 입법예고</p>	<p>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24.3.15.)</p> <hr/> <p>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 (02-2100-3142)</p>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한 입찰 자료 요청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은 국가·지자체·공기업 외에 지방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은 자료 제출 및 협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방지 조치 대상에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을 포함 ■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이 조달청(조달시스템분)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자산매각시스템으로도)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p>☞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	<p>공정거래법 (*23.12.21.)</p> <hr/> <p>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29)</p>
	<p>대규모유통업자 경영 간섭행위 금지 규정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유통업자의 남용업자 등에 대한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금지 규정 신설 <p>☞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 대규모유통업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
<p>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원 6개 협의회의 위원은 조정원장 외에는 모두 교수 변호사 등 생업을 병행하고 있는 비상임 위원들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원 내 6개 협의회에 상임위원을 각 1명씩 두고 상임위원이 각 협의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함 <p>☞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 대규모유통업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
	<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적 근거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 제도 법적 근거 없이 하위 예규로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 제도 법적 근거 마련 •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상황 평가 •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p>☞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

국민권익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익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상향	■ 신고 포상금 2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포상금 5억 원 ※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12.19.)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7)

원자력안전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원자력발전소 상시감사 체계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 • (기존)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를 정기정비 기간 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 • (변경)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를 운전 중 예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시기 및 기간 변경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원자력 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24.3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02-397-7257)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책자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의 각종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정 사항을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정책팀
T. 044) 215-2555, 2553

20
24



대한민국정부
korea.kr